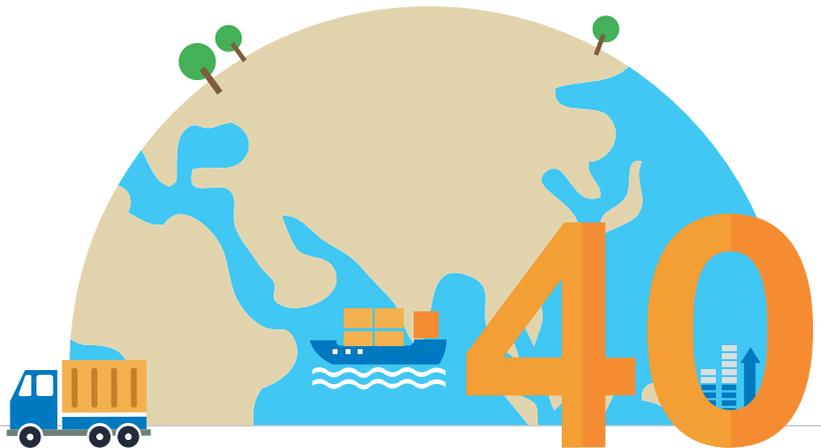


FTA 활용기업의 필수지침서
Business Model 40선





안녕하십니까?

관세청장 김낙회입니다.

2014년 11월 10일 한-중 FTA의 실질적 타결로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이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과의 FTA는 우리 수출기업에게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잡하고 다양한 원산지기준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FTA를 적극 활용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간 FTA 집행기관인 관세청은 우리 기업들이 어려운 원산지기준 등을 잘 이해하여 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기업의 특성에 맞는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 중소기업용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의 개발 및 보급, FTA 활용사례 전파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2009년도부터 발굴한 FTA 활용사례 중에서 중소기업이 FTA를 잘 활용하여 수출 증대로 연결된 사례, 검증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사례 등 유의미한 내용을 40개의 모델로 그룹화하여 Business Model로 발간한 것입니다. 또한 FTA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 벤치마킹하여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모델별로 생생한 현장사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 FTA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노하우를 습득함으로써 우리 중소기업들이 FTA라는 좋은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4년 12월
관세청장

김 낙 회

제1장 | 산업·협정 특화형

▶ 산업별 특화형

- 모델 01** | FTA 특혜적용 신제품 개발 모델(섬유) 12
 1-1. 위기의 '섬유' FTA 파고 넘어 세계로 비상
 1-2. 손바닥 크기의 안경달이 포 세계를 휘감다
- 모델 02** | 농수산가공품 FTA 수출 경쟁력 제고 모델(식품) 21
 2-1. 속이 꽉찬 한국만두,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다
 2-2. 달콤한 한국산 유자차, 세계를 마시다
- 모델 03** | 원산지정보 이력관리시스템 도입 모델(농산물) 29
 3-1. 굴껍질, FTA를 품고 한국을 알리다
- 모델 04** | 지역특화산업 FTA 수출형 모델(신발, 안경) 33
 4-1. 한-미 FTA로 "중국산 신발 비켜~!"
 4-2. 한-미 FTA는 미국시장 진출의 교두보
- 모델 05** | 순원가법 활용을 통한 FTA 활용 모델(자동차) 38
 5-1. 순원가법 연구를 통한 자동차기업 경쟁력 강화

▶ 협정별 특화형

- 모델 06** | 물품취급수수료 면제 활용 모델(한-미 FTA) 43
 6-1. 물품취급수수료 100억원 면제, 한-미 FTA의 숨은 혜택
- 모델 07** | DDP(관세지급인도) 조건 활용 모델(한-미 FTA) 48
 7-1. DDP, 한-미 FTA 수출에 활용하세요
 7-2. DDP 활용으로 FTA혜택 내 주머니로, 싹!
- 모델 08** | 원산지 검증 적극대응 모델(한-미 FTA) 54
 8-1. 세관의 검증지원으로 미국세관 배제결정도 '총족'으로
- 모델 09** | 수리(개조)물품 관세면제 활용 모델(한-미 FTA) 58
 9-1. 수리(개조) 후 재수입물품 면세 근거





모델 10 원산지 인증수출자 관리 모델(한-EU FTA)	61
10-1. 생체분해성 합성봉합원사로 원산지 인증수출자 획득	
10-2. 중견기업의 롤 모델, 원산지 인증수출자	
모델 11 합리적 의심 사전차단 원산지검증 회피 모델(한-EU FTA)	68
11-1. 사전발급으로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다	
모델 12 국내가공 FTA특혜 활용 모델(한-중 FTA)	71
12-1. 가공식품 한-중 FTA 특혜활용	
 ▶ 규모별 특화형	
모델 13 동반성장 모델	75
13-1. FTA 적극 활용하니, 동반성장 따라 오네~	
모델 14 글로벌 강소기업 성공 전략 모델	78
14-1. FTA로 세계를 낚은 1g의 작은 보물	
14-2. 강소기업, FTA로 세계를 사로잡다	
모델 15 FTA를 활용한 영세기업 성장 모델	85
15-1. 영세기업도 한-미 FTA 활용할 수 있다!	
15-2. 영세 중소기업 제품, FTA로 북미시장을 날다	
모델 16 완제품 생산자와 수출기업 협력형 모델	90
16-1. 협력사와 상생(相生) FTA로 글로벌 동반성장 이끈다	
16-2. 생산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FTA활용 극대화	
모델 17 체약상대국 FTA를 활용한 생산·물류거점 활용 모델	96
17-1. 해외 생산시설 설립으로 FTA 2배 활용!	

제2장 | 원산지관리 효율화형

▶ 구매선 및 생산시설 전환

- 모델 18 | 역외산 재료의 국내산 전환 모델** 100
- 18-1. 원산지확인서 수령으로 FTA특혜세율 적용
18-2. 무한경쟁시대에 FTA 신형엔진 장착
- 모델 19 | 비체약국에서 체약국으로 구매선 전환 모델** 105
- 19-1. FTA활용, Step by Step
19-2. FTA 활용과 변화
- 모델 20 | 비체약국에서 체약국으로 임가공 전환 모델** 112
- 20-1. 한-아세안 FTA, 해외임가공에도 도움이 됨
- 모델 21 | FTA활용을 위한 생산시설 국내유턴 모델** 115
- 21-1. 국내 유턴을 통해 옛 영광을 재현하다
21-2. FTA... "생산물량을 국내로 U턴 시키다"
21-3. FTA로 주얼리 연합의 새로운 꿈을 꾸다
- 모델 22 | FTA를 통한 해외투자 유치형 모델** 123
- 22-1. 외국투자기업이 한국의 FTA체결 효과 "톡톡"
22-2. FTA로 외국인 투자자가 돌아온다

▶ 원산지관리 역량 강화

- 모델 23 | 트레이스(Trace) 방식 원산지관리 모델** 128
- 23-1. FTA는 사돈의 팔촌? 알고보니 일촌지간!
23-2. 공작기계 강소업체의 FTA성장기반 조성
- 모델 24 | 다단계거래 단순화 모델** 134
- 24-1. FTA, 절차의 복잡함을 SIMPLE하게 활용하라
24-2. 섬유업계 QR Code를 입고 미국으로 Smart-Runway
- 모델 25 | 원산지 검증을 활용한 FTA학습 모델** 139
- 25-1. 원산지 검증을 통한 원산지관리의 인식 전환
25-2. 원산지 사전검증을 통한 FTA활용 리스크 제거



▶ 비용절감

- 모델 26** | 수출입 쌍방향 FTA 활용 모델 **144**
26-1. FTA를 통해 수출입 쌍방향 관세혜택을 얻다
26-2. 사전준비를 통한 수출입 쌍방향 FTA 활용
- 모델 27** | FTA로 인한 가격인하 활용 모델 **149**
27-1. 가격인하 압박, FTA로 가뭄하게 날려 버리다
27-2. FTA 특혜관세, 가격경쟁력 확보의 기본!
- 모델 28** | 관세환급과 FTA특혜 동시 활용 모델 **154**
28-1. 원재료는 관세환급, 제품은 FTA특혜로 경쟁력 UP!
28-2. FTA로 “관세환급+FTA특혜” 두 마리 토끼를 잡다
- 모델 29** | 기술력과 FTA 가격인하 효과 활용 모델 **160**
29-1. 짝퉁과의 전쟁, 승리의 FTA
29-2. 탄산와인, 국내 최초 해외수출에서 대박 터뜨리다
- 모델 30** | 고용효과 창출형 FTA 활용 모델 **170**
30-1. 우물안 개구리, 글로벌 하늘을 향해 힘찬 점핑!
30-2. F1(FTA No.1) 그랑프리, 거침없는 무한질주!



제3장 | 원산지 규정 활용형

모델 31 미소기준(최소허용기준) 활용 모델	180
31-1. 미국시장에서도 기술력을 인정한 의류 전문 업체	
31-2. 미소기준 적용으로 한-미 FTA 활용	
모델 32 중간재규정 활용 모델	186
32-1. 차근차근 풀어보는 FTA, 모범답안을 찾대!	
32-2. 중간재 활용으로 한-EU FTA 원산지 규정 극복	
모델 33 누적기준 활용 모델	193
33-1. FTA, 수출전선에 무지개를 띄우다	
모델 34 특정공정 수행기준 활용 모델	197
34-1. 화학기업 3가지 약점을 버리고 1가지 장점으로	
34-2. 협력업체를 통한 손쉬운 FTA 활용	
모델 35 완전생산기준 활용 모델	202
35-1. 역내산이 된 진도 맛김	



제4장 | 민·관 협력형

모델 36 관세청 YES FTA 지원 프로그램 활용 모델	208
36-1. 「YES FTA」 지원으로 비용은 절감, 수출은 증가	
36-2. 「YES FTA」 지원으로 미국세관 검증대응에 성공	
모델 37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 활용 모델	213
37-1.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으로 원산지 관리 점검	
모델 38 원산지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원산지관리 모델	216
38-1. 포장재로 FTA시장을 포장하다!	
38-2. 한국산 CCTV로 FTA ZOOM-IN	
모델 39 Job Matching을 활용한 FTA 인재 영입 모델	221
39-1. 아줌마도 FTA 잘해요, 경단여성 FTA인재 일자리 창출	
39-2. FTA를 만난 학생들, 이걸 특급기획야!	
모델 40 품목분류 상이 극복모델	226
40-1. 까다로운 검증! 약이 되는 건강검진입니다!	
40-2. 적극적인 검증대응, 900만불 사수하다	



부 록

▶ 민원사례로 본 알기쉬운 FTA활용법

I. 품목분류 상이	232
II. 원산지증명서	235
III. 직접운송	249
IV. 여행자휴대품 등 소액물품 통관	252
V. 기타 특혜관세 제도	254

▶ FTA 주요 지침

257



제1장

산업·협정 특화형

▶ 산업별 특화형

모델 01	FTA 특혜적용 신제품 개발 모델(섬유)	12
모델 02	농수산가공품 FTA 수출 경쟁력 제고 모델(식품)	21
모델 03	원산지정보 이력관리시스템 도입 모델(농산물)	29
모델 04	지역특화산업 FTA 수출형 모델(신발, 안경)	33
모델 05	순원가법 활용을 통한 FTA 활용 모델(자동차)	38

▶ 협정별 특화형

모델 06	물품취급수수료 면제 활용 모델(한-미 FTA)	43
모델 07	DDP(관세지급인도)조건 활용 모델(한-미 FTA)	48
모델 08	원산지검증 적극 대응 모델(한-미 FTA)	54
모델 09	수리(개조)물품 관세면제 활용 모델(한-미 FTA)	58
모델 10	원산지 인증수출자 관리 모델(한-EU FTA)	61
모델 11	합리적 의심 사전차단 원산지검증 회피 모델(한-EU FTA)	68
모델 12	국내가공 FTA특혜 활용 모델(한-중 FTA)	71

▶ 규모별 특화형

모델 13	동반성장 모델	75
모델 14	글로벌 강소기업 성공 전략 모델	78
모델 15	FTA를 활용한 영세기업 성장 모델	85
모델 16	완제품 생산자와 수출기업 협력형 모델	90
모델 17	체약상대국 FTA를 활용한 생산·물류거점 활용 모델	96



모델 01

FTA 특혜적용 신제품 개발 모델(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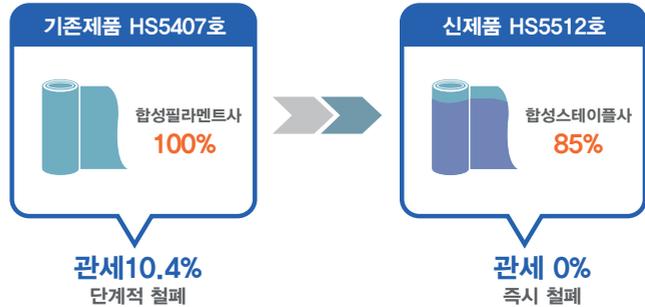
01 | 개요

- 직물은 원재료의 혼용률에 따라 품목분류가 상이하므로 관세가 즉시 철폐 되는 품목이 되도록 비슷한 기능을 가진 다른 원재료의 함량을 높여 FTA를 활용할 수 있는 신제품 개발 모델

02 | 비즈니스 모델

- 섬유제품에 적용되는 복잡한 원산지규정이 FTA 원산지 물품으로 수출하는 데에 걸림돌이 됨
- 원산지규정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특혜적용이 가능한 신제품을 개발하여 극복

FTA 신제품 개발 모델



원재료 CHANGE! 관세 ZERO!

03 | 활용 및 확산분야

- 원재료 구성비 변경 등 생산기술과 접목이 가능한 분야
- 특히, 섬유 · 의류 품목과 한-미, 한-EU FTA에 유용

산업/협정별 특화형 | 1-1

위기의 '섬유' FTA 파고 넘어 세계로 비상

1. 배경

- 중국 등 후발국의 저가 물량 공세로 지역 섬유업계가 최대 위기를 맞이했지만 EU, 미국, 터키 등 섬유 수출국과 FTA가 체결되어 FTA 활용 여부가 최대 관건으로 부상
 - 과거에는 유행을 잘 활용하거나 염색기술 등 품질로 중국과 경쟁력이 있었지만, 후발국의 기술력 향상으로 원가 무한 경쟁시대 돌입
 - FTA 활용을 위해 타 품목에 비해 까다로운 원산지기준을 충족해야 함
- * 한-미 FTA : yarn forward rule(원사규정)

2. 장애 요소

- 어렵고 복잡한 섬유류 품목분류에 대한 전문 지식 부족
 - 원재료의 혼용률에 따라 품목분류 상이, 품목별 관세철폐 스케줄 상이
- 한-미 FTA의 까다로운 원산지규정으로 FTA 활용 미리 포기
 - 섬유제품의 경우 원사기준(yarn-forward rule)을 적용함에 따라 역내산 '실'을 사용하여 직물을 제직·편직하고, 역내에서 직물 및 의류 등 섬유 완제품을 재단·봉제해야만 원산지 인정
- 섬유업체 대부분이 중소기업·영세업체로 FTA 활용 및 특혜대상 신제품 개발 여력 절대적 부족

3. 극복 방안

- 섬유업계 FTA 활용 지원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MOU) 체결(대구세관-한국섬유개발연구원)

- 섬유업체 대상 FTA 실무교육 및 컨설팅 상시지원체제 가동
- 주요 섬유제품에 대한 미국 품목분류 'HS 해설서' 발간
- 대구세관-경상북도-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합동 섬유 생산기술 활용 FTA 지원사업 실시(경상북도 등 예산 2억 유치)
 - FTA 체약국별 양허조건 분석, 관세 즉시철폐 및 기간단축 품목 발굴
 - 생산기술과 FTA 전문지식을 접목하여 관세혜택 품목 신제품 연구·개발

4. 활용 효과

1) 원사 혼용률 조정을 통한 특혜대상 품목 개발로 미국시장진출(Y사)

구분	수출물품	HS	한-미 FTA 관세철폐스케줄	특징
FTA 활용 전 (기존생산물)	합성필라멘트 직물 (*장섬유)	5407.52 〈원재료〉 ① 합성필라멘트사(100%)	10년 단계적 철폐 (*14년 10.4%)	- 원재료 상대적 으로 저렴
FTA 활용 후 (신제품 개발)	합성스테이플 섬유 직물 (*단섬유)	5512.19 〈원재료〉 ① 합성스테이플섬유사(85%) ② 합성필라멘트사(15%)	즉시철폐 (0%)	- 관세 즉시철폐 대상(원가상승분 상쇄) - 품질 우수

- Y사의 주요 생산품인 합성필라멘트 직물(HS 제5407.52호)은 한-미 FTA 관세 즉시 철폐품목에서 제외되어 있어, 중국 등 경쟁국 제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 열세 → **미국시장 진출 애로**
* HS 제5407.52호 : 관세 철폐 스케줄(10년, '14년 10.4%)
- 직물의 원재료인 원사의 혼용률을 변환시켜 한-미 FTA 관세 즉시 철폐 품목에 해당하는 신제품 개발(HS 제5512.19호)
- 합성스테이플섬유사는 합성필라멘트사보다 원가가 조금 높지만, 수출제품(직물)이 FTA 관세 즉시 철폐 품목이 됨으로써 원가 상승분을 충분히 상쇄시켰으며, 합성필라멘트직물보다 품질이 고급화되어 미국 시장 공략 성공
- ▶ 미국 M사와 년 12만 yards(48만볼) 계약 성사 등 향후 10년간 500만볼 이상 對미 수출 파급 효과 창출

2) 한-미 FTA 예외원사를 사용하여 'yarn-forward rule' 극복(T사)

구분	수출물품	HS	한-미 FTA 관세철폐스케줄	특징
FTA 활용 전 (기존생산물품)	합성필라멘트 편직물	6006.32 〈원재료〉 ① 합성 필라멘트사 (원산지 : KR)	10년 단계적 철폐 ('14년 7%)	- 원재료 상대적으로 저렴
FTA 활용 후 (신제품 개발)	(합성필라멘트) 비스코스레이온 편직물	6006.42 〈원재료〉 ① 비스코스레이온사* (원산지 : CN)	즉시철폐 (0%)	- 관세 즉시철폐 대상 - 인체친화형 고품질니트

* 비스코스레이온사(HS 제5403.31호, HS 제5403.32호)

'비스코스레이온사'는 펄프(나무)로부터 생산되는 천연원사로 촉감이 견과 아주 흡사하여 인간이 만든 비단(인견)으로 불리며, 천연섬유에 가까워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고 땀흡수 및 통풍성이 뛰어나. 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가공에 상당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원사

- 한-미 FTA 섬유품목은 'yarn-forward rule'이 일반적이어서 FTA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산 원사를 사용해야 하며, 한국산 원사를 사용하더라도 수출물품의 한-미 FTA 관세철폐 스케줄이 10년이므로 관세 혜택을 즉시 받을 수 있는 고품질 품목 개발 시급
- '비스코스레이온사'는 한-미 FTA 'yarn-forward rule' 제외품목인 것을 확인(비원산지 원사 사용 가능), 역외산을 수입하여 편직물품 생산
 - * 단, 합성필라멘트 비스코스레이온사만 가능하고 합성스테이플 비스코스레이온사 (HS 제5510호)는 'yarn-forward rule' 적용
- 또한, '비스코스레이온사'로 편직된 'HS 제6006.42호' 품목은 한-미 FTA 관세 즉시 철폐 품목
- ▶ 한-미 FTA 맞춤형 신제품 개발을 통한 적극적인 FTA 활용으로 미국시장 진출 성공 및 향후 10년간 300만불 이상 수출 예상

3) 전략적 신제품 개발로 특정시장(터키, 미국) 공략(D사)

구분	수출물품	HS	한-터키 수출	한-미 FTA
FTA 활용 전 (기존생산품)	FABRICS (PET직물)	5407.69	반덤핑관세 부과 (최고 40%)	관세철폐스케줄 : 10년('14년 10.4%)
		〈원재료〉 ① Poly(96%) ② Span(4%)		
FTA 활용 후 (신제품 개발)	FABRICS (PET/Modal* 교직물)	5516.22	반덤핑관세 없음	관세철폐스케줄 : 즉시철폐(0%)
		〈원재료〉 ① Poly(49%) ② Modal(51%)*		

* '모달'이란 재생섬유의 하나로, 만드는 방법과 기능은 비스코스 레이온과 거의 같으며, 너도밤나무에서 추출한 천연섬유로 21세기 꿈의 섬유로 일컬어짐

- 주요 생산품인 합성필라멘트 직물(HS 제5407.69호)은 터키 수출시 최고 40% 반덤핑관세 부과됨
- 한-미 FTA에서는 관세 즉시 철폐품목에서 제외

* HS 제5407.69호 : 관세 철폐 스케줄(10년, '14년 10.4%)

▶ 터키 및 미국 시장 진출 애로

- 직물의 원재료인 원사의 혼용률을 변환시켜 한-터키 및 한-미 FTA 동시 활용 가능 신제품 개발(HS 제5516.22호)
- 신제품인 Poly/Modal 교직물은 Modal사를 사용하여 Poly 직물보다 원가가 조금 높아졌지만, 한-미 FTA 즉시 관세철폐 및 한-터키 반덤핑관세 부과 제외 대상이 됨으로써 원가 상승분을 상쇄시키고, 기존 직물보다 품질이 향상되어 터키 및 미국시장 공략

▶ 반덤핑관세 회피 및 즉시 특혜관세 혜택으로 향후 200만불 수출 효과

5. 시사점

- FTA 교육 및 컨설팅 등 일반적인 FTA 활용지원이 아닌, 지역 산업 특성에 맞는 품목분류 및 기술개발·연구 등 실질적인 지원
- 체약국별 양허 조건 분석, 관세 즉시철폐 품목 발굴 및 투입된 원사의 혼용률 조정 등 생산기술과 접목한 적극적인 FTA 활용

-
- 수출시장에서 대표적인 사양 산업으로 꼽혔던 섬유산업을 유관기관별 역할분담을 통하여 재도약의 발판 마련
 - 15개 업체 FTA 활용 신제품 개발, 매출증가 100억원(평균 9.1% 신장), 고용창출 30명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역의 근간산업인 섬유업계에 FTA 활용에 대한 자신감 고취
 - 협정별/품목별 철저한 원산지결정기준 및 관세철폐 스케줄 분석을 통한 고품질의 한국산 신제품 개발이 수출 가격 경쟁력을 향상
 - FTA 활용으로 8~32%의 관세가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되어 중국산과의 가격 차이를 거의 상쇄하며, 유사 제품일 경우 바이어 입장에서는 품질과 디자인이 우수하고 납기를 준수하는 한국산 선호
 - FTA 활용 여력이 부족한 중소·영세업체를 위해 민-관-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 주요 산업의 실질적인 FTA 활용을 지원한 사례

산업/협정별 특화형 | 1-2

손바닥 크기의 안경댐이 포 세계를 휘감다

1. 기업 및 제품소개

- T사는 2010년 설립되어 초극세사 클리너 및 프로모션 섬유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해외 100개국(약 1,000여 업체) 시장 개척으로 매출의 97% 이상을 수출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기업
- 제품소개 : 안경댐이 포(HS)



2. FTA 활용전 상황

- '10년부터 매해 30회 이상의 해외전시회 참여, 해외시장 개척으로 초극세사 클리너를 판매할 바이어를 발굴하였으나, FTA 활용 관리 미흡
 - 한-EU FTA, 한-미 FTA 발효를 기점으로 FTA 체결국 바이어들의 원산지증명서 요구가 쇄도하였으나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연 또는 미발행 등 원산지 관리체계 미흡 ▶ 해외 바이어의 클레임 다수 발생
 - FTA 시대 개막과 동시에 상품 품질에 대한 경쟁력은 갖추었으나,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경쟁국과의 우위를 위해 FTA 활용이 필수

3. 장애 요소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불확실
- 외주임가공 생산 의존도가 높아 BOM 관리 미흡
- 인증수출자 신청을 위한 자료 준비

4. 극복 방안

● (사전진단) 원산지관리 문제점 진단

- 원산지 관리의 기초지식, 원재료 관리방법 맞춤형 컨설팅 실시

* 한-EU FTA 원산지기준 “MC 40%” - 비원산지 재료비 관리 필수

- ▶ 국내가공 원재료의 원산지(포괄)확인서 징구 문제 컨설팅

* 한-미 FTA 원산지기준 “원사 기준(yarn-forward)”

- ▶ 편직물에 사용된 원사의 원산지관리 방안 컨설팅

● (솔루션 제공) FTA 원재료 관리 솔루션 제공

- 한-EU FTA(MC40%) 및 한-미(yarn-forward) FTA 원산지기준 충족을 위한 원재료 원산지 검토
- 안경뿔이 포 원재료 구성내역

원재료	원산지	원산지
YARN	미상	KR
염료	미상	미상
전사지	미상	KR
잉크	미상	KR

* 임가공업체가 구입한 원사(Yarn)의 원산지(포괄)확인서 징구를 위해 공급업체에게 원재료 원산지관리 등 컨설팅 지원

- ▶ 비원산지 비율 감소로 원산지기준 충족

* 편직물을 국내업체로부터 공급받았으나(원산지 미상) 편직기 8대를 도입하여 역내산 Yarn으로 직접 편직

- ▶ 부가가치 상승 및 'yarn-forward' 규정 충족

● (원산지 검증) 프랑스에서 날아온 FTA 원산지 검증 완벽 대응

- '13. 2월 프랑스로 수출한 안경뿔이 포에 대해 원산지검증 실시
- ▶ 무혐의 종결

5. 활용 효과

- 對EU 24%, 對미 21% 수출 금액 증가
 - 한-EU FTA 발효전 수출은 약 3백만불(1,316건)이었으나, 발효 후에는 약 4백만불(1,737건)로 금액기준 24%, 건수기준 31% 증가
 - 한-미 FTA 발효전 수출은 약 1백만불(623건)이었으나, 발효 후에는 약 2백만불(791건)로 금액기준 21%, 건수기준 26% 증가
- 직원수 대비 136% 고용 창출 효과 발생
 - '13년 하반기 수출량과 생산량 증가에 따른 설비투자 확대에 사무직 15명, 생산직 49명을 추가 고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사후검증 대비 완료 및 새로운 판로개척 기대
 - 전사적인 원산지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정확한 원산지 판정 등 효율적인 원산지관리가 가능해져 향후 FTA 원산지 검증 불안 해소

5. 시사점

- FTA 활용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영세업체를 위한 민-관-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 주요산업의 실질적인 FTA 활용을 지원한 사례

모델 02

농수산가공품 FTA 수출 경쟁력 제고 모델(식품)

01 | 개요

- 세계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우리 농산물인 배, 차, 김, 김치 등의 가공식품이 수출 확대의 기회로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원재료를 가공하여 활용하는 모델

02 | 비즈니스 모델

- FTA 최대 피해산업으로 인식되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식품의 FTA 활용 방법을 마련하고 수출경쟁력 있는 상품으로의 변화 필요
- 우리 농어업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체제로 개편하여 농업강국과의 FTA에서 비교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계기 필요

농수산가공품 FTA 수출 경쟁력 제고 모델



03 | 활용 및 확산분야

- FTA 피해산업으로 인식되던 농수축산물 가공업
 - 국산 농수산물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여 해외 수출판로를 확대하고, 국산 원재료의 사용을 촉진하여 농가 소득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산업/협정별 특화형 | 2-1

속이 짝찬 한국만두,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다

1. 기업 및 제품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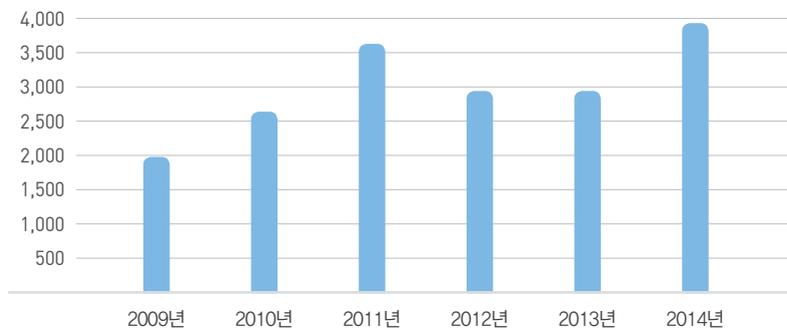
- A사는 '95년에 설립되어 만두, 국수, 음료수 등 한국식품을 제조하여 '08년부터 세계 20여개 국가로 수출하고 있는 중소기업
 - 유럽과 미국으로의 수출이 전체 수출금액(3,262천불)의 60% 이상 차지
- 제품소개

품명(HS)	적용협정	원산지결정기준	미소기준	기본세율	협정세율
만두(1902)	한·미	CC	10%(가격)	6.5	0

2. FTA 활용전 상황

- 서양인, 한국만두 맛에 감탄하다!

A사 해외 만두 판매량



- 대한민국 No.1 만두공장인 A사는 서양인 입맛에 맞는 식물성 콩고기 만두소를 개발하여 유럽진출에 성공

3. 장애 요소

(위기의 시작) 만두의 원산지가 한국산이 아니라고?

한-EU FTA 활용을 위한 인증수출자 획득 실패

- 유럽으로의 수출 비중(30%)이 가장 높았던 A사는 '11년 한·EU FTA 발효 전 세관을 찾아 원산지 인증수출자를 신청하였으나, 협정에 제11류에 해당하는 원재료는 역내산일 것을 요구하고 있어 역외산 밀가루(제11류)를 사용한 A사 만두는 원산지기준을 불충족하여 인증수출자 획득에 실패

(두번째 위기) 미국시장에서도 원산지를 의심받다!

만만치 않은 미국시장, 만두의 원산지를 의심하다

- '12년 한·미 FTA 발효로 재도약을 꿈꾸지만, 미국시장에 수출판로가 많지 않았던 A사는 미국 거래처 확보에 고민
- 본격적인 미국 진출을 위해 미국시장에 많은 거래처를 두고 있던 무역업체 B사를 통해 수출하였고 B사는 FTA 활용을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으나, 미국 거래처는 정확한 원산지 판정을 요구하며 원산지를 의심
- 만두의 한-미 FTA 원산지기준(CC)을 검토한 결과, 만두의 원재료인 중국산 당면과 만두가 HS 2단위 세번이 제19류로 동일하여 원산지기준 불충족임을 확인

예상치 못한 컨설팅 비용과 협력사로의 원가공개 위기!

- 원산지관리 능력이 없던 A와 B사는 민간컨설팅 업체에 컨설팅을 의뢰함에 따라 예상치 못한 컨설팅 비용이 발생하였고, A사는 컨설팅 업체와 B사로부터 수입산 당면의 미소 기준 충족 여부 심사를 위한 원가공개 요청을 받게 됨

미국 거래처의 거래중단 통보!

- 예상치 못한 컨설팅 비용과 타업체로의 원가공개 위기에 FTA 활용을 고민하게 되고, 미국 거래처는 답변이 늦어짐에 따라 거래 중단을 통보

4. 극복 방안

● 서울세관 컨설팅

- 만두의 20여개 원재료에 대한 품목분류 및 원산지 증빙서류 작성 방법에 대하여 재검토
- 수입산 당면의 가격이 한-미 FTA 미소기준(제품 가격기준 10%)을 충족하여 만두를 한국산으로 인정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관의 무료 제도인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 확인”을 통해 컨설팅비용 절감 및 타업체로의 원가공개 위기 극복
 - 세관차원의 원산지판정으로 수출자 발행의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에 신뢰성을 부여하여 거래 중단 위기였던 미국 거래처 확보

(과정1) 「YES FTA 센터*」을 통한 세관의 지속적인 컨설팅!

* FTA활용 단계에 따라 상이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맞춤형으로 지원

- **(준비단계)** ① 원산지관리 종합시스템인 FTA-PASS의 설치 및 방문 컨설팅으로 시스템 사용방법 교육 ② 서울세관에서 매주 수요일 실시하고 있는 FTA 상설교육 수강 ▶ 원산지관리 능력 향상
- **(활용단계)** ① 수출물품의 원산지판정 및 사전검증 실시 ② 원산지 증명서 형식요건 사전심사 ▶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지원
- **(해결단계)** 원산지관리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FTA 인력 연계 요청 (서울세관 하반기 구인·구직 연계행사 참여 예정) ▶ 원산지전담 인력 보충으로 FTA 활용 지원

(과정2) 한·EU 인증수출자 획득 실패를 수출 거래선 변화로 극복!

* FTA활용 단계에 따라 상이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맞춤형으로 지원

- 한-미 FTA 발효 이후 유럽 → 미국으로 수출 거래선 변경
 - 수출의존도가 높은 A사는 한-EU 인증수출자 지정 실패 이후 손실 절감을 위한 수출 거래선 다변화 등 여러 가지 자구책 마련
 - '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으로 수출 거래선을 변경하여 6.5%의 관세혜택 공유(한-EU FTA 관세혜택 미활용 금액 상쇄)

5. 활용 효과

- **(관세절감)** 한·미 FTA 활용에 따른 관세절감 효과 연간 약 3,200만원

- **(수수료절감)** 통관단계 물품취급수수료* 절감 효과 연간 약 800만원
 * 물품취급수수료(MPF, Merchandise Processin Fee) 미국세관이 모든 수입물품에 대하여 징수하는 일종의 행정 수수료(최소 25달러 ~ 최대 485달러)
- **(가격경쟁력)** 관세 및 수수료 절감을 제품 원가에 반영하여 가격 인하
- **(수출증대)** '13년(상반기) 대비 '14년(상반기) 미국수출액 150% 증가
- **(거래처확보)** 미국의 유기농 식품매장인 Whole Food Market에 유통 시작
- **(마케팅효과)**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 물품을 마케팅으로 활용
- **(FTA활용 및 검증대비)** 원산지 관리 능력 향상으로 향후 발효될 FTA 협정에 신속하게 활용 가능하고, 검증에 사전 대비
- **(노하우공유)** 무역업체를 통한 수출 마케팅 노하우 공유로 독자 수출판로 개척

6. 시사점

-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을 통한 생산-수출의 Win-Win 전략
 - 우수한 기술력과 생산력은 갖추고 있으나 해외시장 개척능력이 미비한 업체와 수출시장 확대능력은 갖추고 있으나 제품 생산능력이 없는 기업이 다수 존재
 - 생산기업과 무역기업의 특화영역 간 결합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가능하게 하고,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을 통한 원산지의 신뢰성 확보 및 원산지 관리 능력 향상으로 FTA 활용을 극대화
- 농수축산가공품도 FTA를 활용하면 경쟁력 확보 가능

산업/협정별 특화형 | 2-2

달콤한 한국산 유자차, 세계를 마시다

1. 기업 및 제품소개

- R사는 '96년에 설립되어 전통 차(茶)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우수한 품질을 바탕으로 국내 대형유통업체는 물론 세계적 유통기업인 월마트에도 입점
- 제품소개
 - 유자차(HS 제2008.30호)는 유자를 재료로 만든 차를 말하며, 신맛이 많고 신경통, 관절염 등에 유효하며 주독을 풀거나 소화에 좋다고 알려짐

2. FTA 활용전 상황

- 한-EU FTA를 활용하여 내수시장 뿐 아니라 해외시장으로 판로를 넓혀 유럽인의 입맛에 맞는 달콤한 유자차를 만들어 한국의 전통 차를 널리 알리고자 하였으나 직수출 경험이 없어 FTA 활용상 애로를 겪음
- 서울세관 YES-FTA센터를 통해 '원산지 사전 확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용하고자 함

3. 장애 요소

(위기1) 우리 농산물인데 한국산임을 증명하라고?

쉽지 않은 세계시장으로의 진출

- 세관에 원산지 사전확인을 신청하여 심사받는 중 유자차가 생유자가 아닌 설탕에 절인 당침유자를 공급받아 제조되면서 원산지기준 충족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

(위기2) 수출하는데 있어, 설탕가격이 중요하다고?**직접 유자 산지를 찾아가다**

사용된 제7류, 제8류 및 제12류에 해당하는 모든 과일, 견과류 및 채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유자차 (HS 제2008.30호) 원산지결정기준〉

-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에, 유자차는 당침유자에 포함된 설탕(제17류)의 가격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가 결정되므로 직접 유자 산지를 찾아가 구입한 설탕 가격에 대한 정보를 입수
- 당침유자에 포함된 설탕가격이 공장도가격의 30%가 넘지 않음을 확인하고 한국산임을 증명함

4. 극복 방안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관의 무료 제도인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 확인”을 통해 컨설팅 비용 절감 및 FTA 활용방법 이해
 - 세관차원의 원산지 판정으로 한-EU FTA 원산지증명서에 신뢰성을 높여 유럽 수출길 원활하게 확보

서울세관 「YES FTA 센터」를 통한 세관의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 확인」 컨설팅

- R사의 대표품목인 유자차에 대해 품목분류에서부터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결정기준 등 원산지 판정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안내
- 한국산 유자차 결정기준 충족을 위해 설탕가격 정보가 중요함을 알고 당침유자에 들어간 설탕가격에 대한 자료를 입수하여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확인

5. 활용 효과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으로 FTA활용 수출의 길 활짝
- 납품을 통한 수출 외에도 독자적인 생산·수출기업으로 성장
- 한-EU FTA 수출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으로 유럽으로의 수출판로 확보 및 미국, 아세안으로까지 판로 확대
- 대표품목 외에도 다양한 상품에 적용하여 수출 추진
- 정확한 원산지 판정으로 까다로운 검증을 사전에 대비

6. 시사점

-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을 통한 생산·수출기업으로 성장
 - 기술력과 생산력은 갖추고 있으나 수출에 대한 정보 및 역량이 부족하여 납품만 하던 상황에서 직접 생산 및 수출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
 - EU 뿐만 아니라 FTA를 체결한 다양한 나라로 적용 및 활용할 수 있는 판로 개척의 시발점
- 설명회, 교육 등으로 자체적인 역량 개발
 - 세관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지원 및 활용의 일환으로 실시한 각종 설명회 및 교육 참여를 통해 자체적인 역량 개발 및 검증 대비 효과

모델 03

원산지정보 이력관리 시스템 도입 모델(농산물)

01 | 개요

- 원재료의 생산부터 가공 등 모든 단계를 기록하는 이력 관리시스템을 통해 원산지 확인을 위한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여 관리함으로써 원산지증명의 신뢰 확보 모델
 - 원재료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가능해져 제품의 신뢰도 제고
 - 원산지검증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로 FTA활용의 자신감 확보

02 | 비즈니스 모델

- 대부분의 협정에서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되는 농산물은 원산지확인을 위한 방법과 절차가 어려운 상황
- 원재료의 생산부터 가공에 이르는 전단계를 일지(日誌)화하여 관리함으로써 원산지증명의 증빙자료로 활용

원산지정보 이력관리시스템 도입 모델



03 | 활용 및 확산분야

- 원재료 원산지 입증이 어려운 농수축산물 가공업
 - 국산 농수산물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여 해외 수출관로를 확대하고, 국산 원재료의 사용을 촉진하여 농가 소득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산업/협정별 특화형 | 3-1

귤껍질, FTA를 품고 한국을 알리다

1. 기업 및 제품소개

- D사는 2005년에 설립되어 대부분의 원재료를 우리나라에서 획득하여 각종 한방차를 제조하는 식품제조 중소기업으로, 우리나라 한방차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미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으로 수출을 시작한 이후 제품에 대한 호의적인 현지 반응으로 수출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끊임없는 품질개발로 지속적인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우수 기업
- 제품소개



1 제주 유기농 감귤 재배농장에 방목된 흑돼지



2 제주의 기운을 받으며 자라나고 있는 감귤



3 유기농 감귤의 수확



1 유기농 감귤의 세척과 선별



2 유기농 감귤의 껍질까기 (진피작업)



3 진피를 건조시키는 과정

2. FTA 활용전 상황

- 국내 최고, 한류를 타고 세계 최고를 바라보다
 - 한방차 특성상 투명한 유통관리가 중요하기에 D사는 클린체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자사 제품이 한국산임을 입증하여 국내 소비자들에게 그 진실성을 인정받으며 국내 한방차 1위 브랜드로 도약

* '클린체인시스템'이란 한약재 이력추적시스템으로, 원료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등 모든 과정을 기록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식

- 대장금 이후 시작된 한류(韓流)열풍으로 외국인의 우리나라 한방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에 발맞추어 D사는 세계 시장으로 눈을 돌려 글로벌 브랜드가 되기 위해 노력

3. 장애 요소

- **(위기1)** '13년부터 거래한 미국 바이어가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구하였고, 기한 내에 발급이 안되면 거래를 끊겠다고 통보
 - '클린체인시스템'은 국내에서 사용되는 유통관리 시스템으로 한-미 FTA 원산지 증명 시 그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없었음
- **(위기2)** D사는 한-미 FTA 발효 전까지 자체 상품개발에만 주력할 뿐 한-미 FTA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상태였기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요청을 받게 된 업체담당자는 곤란한 상황에 처함
- **(위기3)** 이미지 마케팅에 성공한 중국의 한방차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한-미 FTA를 적용하여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해야 했고 만약 적용하지 않는다면 경쟁에서 뒤처져 수출길이 막힐 상황
- **(위기4)** 서울세관 FTA 담당자에 유선으로 문의한 결과, FTA를 적용하려면 먼저 물품의 HS세번을 파악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확인함
 - 업체담당자는 '세번'이라는 용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였기에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업체 스스로 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발생

4. 극복 방안

- **(해결1)** 혼자 하기 힘든 품목분류, 관세평가분류원의 도움을 받다
 - '13.8.26 서울세관의 도움으로 관세평가분류원에 굴피차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 분류원으로부터 정확한 세번을 회신받음으로써 한-미 FTA 적용 시 정확한 세번에 기초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

- (해결2) FTA 상설교육에 참여하다

- D사는 FTA에 대한 지식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인식하고, 서울세관이 매주 수요일에 시행하는 원산지관리 상설 교육에 참석하여 교육을 받음으로써 FTA의 기초적인 지식 습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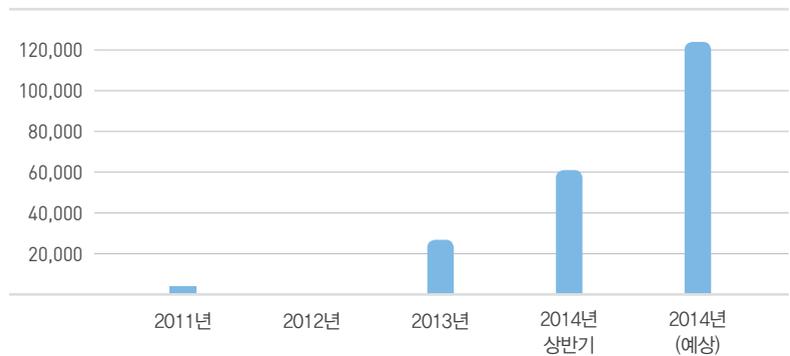
- (해결3) 만만찮은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 서울세관과 함께

- 서울세관에서 이메일로 받은 안내문을 통해, D사는 서울세관의 'YES FTA 센터'에 문을 두드렸고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제도를 이용하여 굴피차에 대한 한-싱가포르, 칠레, 페루, 인도, EFTA, 터키 FTA에 대한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 신청

5. 활용 효과

한-미 FTA 적용 후 D사의 수출금액 비약적 상승

D사 수출액 변화 그래프



- 한-미 FTA 적용을 통해 관세절감 혜택을 누리므로써 가격경쟁력 강화
- FTA 활용에 대한 자신감 상승
- 서울세관의 철저한 원산지확인서 사전 확인을 받음으로써 한-미 FTA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완벽히 차단

6. 시사점

- 물품분류 및 원산지확인서의 중요성 인식

한류를 타고 세계시장으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한방 문화가 이름을 알리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자유무역협정을 만나 서로 상생의 힘을 내게 됨

모델 04

지역특화산업 FTA 수출형 모델 (신발, 안경)

01 | 개요

- 쇠퇴하고 있는 지역특화산업이 FTA를 활용하여 재도약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모델
 - FTA의 혜택이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으며 각 지역의 경쟁력 있는 물품의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소득창출 및 고용확대 필요

02 | 비즈니스 모델

- 지역의 산업 현황분석 → 비교우위산업 추출 → 특화사업 설정 → 지방 정부와 세관의 전방위적 지원을 통한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여 FTA 체약국으로의 수출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 발전 및 소득 창출의 기반 마련
 - 지역특화물품의 수출 증가로 지역경제 발전 및 고용창출 효과 발생
 - 국내의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물품으로, 국내 업체들간의 경쟁이 필요 없는 이른바 '블루오션' 전략 가능

지역특화산업 FTA 수출형 모델



03 | 활용 및 확산분야

- 특정산업이 밀집된 지역

산업/협정별 특화형 | 4-1

한-미 FTA로 “중국산 신발 비켜~!”

1. 기업 및 제품소개

- U사는 신발을 생산하여 중국, 일본, 홍콩 등으로 수출하는 업체로서, 종업원수 11명, 수출금액 297천불('11년 기준)임
- 제품소개 : 신발(HS 제64류)
 - 수출물품인 신발은 갑피를 포함한 부분품까지 모두 국내에서 생산되며, 중국산 및 동남아시아산에 비하여 다소 고가의 물품

2. 장애 요소

- 한-미 FTA 발효 전까지 미국으로 소량 수출되고 있었으며, 미국 바이어가 동 업체의 신발에 대하여 관심은 있었으나 **중국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서(20%정도)** 계약 성사에 어려움 발생
- 중국, 베트남 등 해외 저가 신발 제조국들과의 가격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이를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한-미 FTA를 활용하여 미국시장을 개척하기로 결정

3. 극복 방안

- 정부기관, 민간전문기관의 체계적인 지원 활용
 - 한-미 FTA 발효 전부터 CEO가 큰 관심을 갖고 부산세관 “한-미 FTA 1:1 맞춤형 컨설팅”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FTA 닥터 컨설팅 사업” 등 정부기관 및 민간전문기관의 체계적인 지원 활동을 활용하여 한-미 FTA 활용 기반 마련

- 중소기업진흥공단 주관 “FTA 닥터 컨설팅” 신청(‘11년 12월)
- 부산세관 “한-미 FTA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12년 4월)
- 관세청 주관 “중소기업 컨설팅 사업” 신청(‘12년 6월)

- FTA-PASS를 활용한 효율적인 원산지관리
 - 원산지 관리시스템(FTA-PASS)을 사용하여 수출물품의 정확한 원산지를 판정하고 미국의 원산지 검증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 한-미 FTA 신발 원산지결정기준 완벽 충족
 - 신발에 사용되는 갑피가 모두 한국산(국내에서 갑피 제조)이므로 민감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 ※ 한-미 FTA에서 신발은 17개 품목이 민감품목으로 지정되어 있고, 민감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갑피가 국내에서 제조되어야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 갑피제작 및 신발 주요 생산 공정을 국내에서 모두 수행

4. 활용 효과

- 모델별로 4.3~10%의 관세철폐로 對미 수출 58% 증가
- 한-미 FTA를 활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EU FTA를 활용하여 프랑스 수출을 확대하고자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

5. 시사점

-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신발보다 20%정도 높은 가격으로 인한 미국 진출의 어려움을, 한-미 FTA의 체계적인 준비와 완벽한 원산지 증명능력으로 가격경쟁력을 높인 고품질의 제품으로 승부하여 FTA를 성공적으로 활용한 모범사례
- 한-미 FTA로 약 10%의 제세(관세 및 물품취급수수료 등) 절감혜택을 美바이어에 제시하여 신규 수출계약 체결

산업/협정별 특화형 | 4-2

한-미 FTA는 미국시장 진출의 교두보

1. 기업 및 제품소개

- R사는 이미 대형 안경업체가 장악하고 있는 내수시장보다는 넓은 해외시장을 겨냥하여 설립한 젊은 기업으로, 안경업계에서는 드물게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아시아, 유럽, 미주 등 전세계 20여개국으로 수출하고 있음
- 제품소개 : 안경테(HS 제9003호)
 - 안경테는 안경에 사용되는 장착구와 부분품과 함께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비(卑)금속제 · 귀금속제 ·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 · 플라스틱제 · 귀갑제 또는 진주모패각제의 것이 있음

2. FTA 활용전 상황

- 국내 거대 안경브랜드에 막혀 내수시장 확장 한계
- 국가브랜드 인지도 약세로 일본, 대만, 홍콩 등 동아시아에 국한된 수출

3. 장애 요소

- 안경테의 실행관세율이 낮아 안경업계 전체가 FTA에 대해 무관심
 - ※ EU : 2.2%, 미국 : 2.5%의 실행관세율
- 부분품과 완제품의 HS 4단위 동일(HS 제9003호), 원자재 가격 및 노동비 상승으로 부품 제조업체의 중국이전 등으로 원산지기준 충족 곤란
 - ※ ① 한-EU FTA : CTH 또는 MC45%,
 - ② 한-미 FTA : CTSH(HS 제9003.90호 제외) 또는 BU 35% 또는 BD 45%

4. 극복 방안

- 제품신뢰도 향상을 위한 QR코드 활용으로 브랜드의 부가가치 상승
 - ※ 원산지이력 확인이 가능하도록 안경테 BRIDGE부분에 QR코드 삽입
 - ▶ 원산지기준 충족 문제 해결(세번변경기준 대신 부가가치기준 적용)
- 중국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자체 생산공장 운영으로 원재료의 90%를 국산화
 -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문제 해결(세번변경기준)
- 대구세관 및 전문 FTA 컨설턴트를 활용한 FTA 정보 습득 및 원산지 학습

5. 활용 효과

- 한-EU FTA 발효 5개월만에 EU지역 수출국 5배 확대(1개→5개)
- 한-미FTA 발효 3개월만에 수출금액 2.5억원 증가
 - ※ 2011년 대미수출액 0원 → 2012년 FTA발효이후 3개월 2.5억원
- 내수를 넘어 세계 20개국 이상으로 수출하는 대표 안경 수출기업

6. 시사점

- ‘미국 대형업체의 국내시장 진입에 따른 안경산업 쇠퇴’라는 한-미 FTA에 대한 부정적 관점을 가진 대부분의 국내 안경업체와는 달리 ‘FTA를 활용한 적극적 마케팅’을 통해 수출시장을 확대하는 성과 도출

모델 05

순원가법 활용을 통한 FTA 활용 모델(자동차)

01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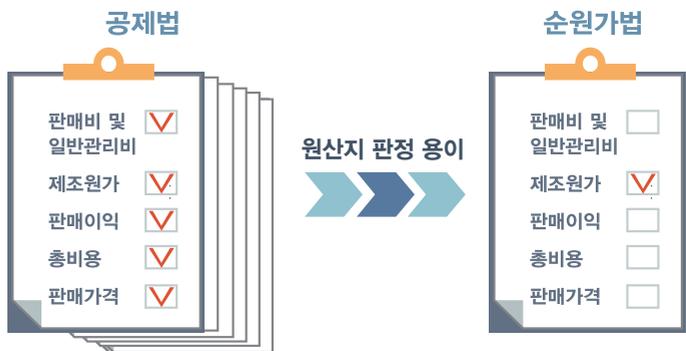
- 한-미 FTA에서 최초로 소개된 자동차의 순원가법은 NAFTA에서 도입되어 미국에서는 일반화된 원산지규정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모델
 -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생소한 규정으로 현재까지 활용하는 기업이 없음

$$* \text{순원가법 부가가치 비율} = \frac{\text{순원가} - \text{비원산지재료비}}{\text{순원가}} \times 100 > 00\%$$

02 | 비즈니스 모델

- 순원가법 적극 활용 모델
 - 순원가의 산정은 제품가격과 이윤 및 공제항목을 고려할 필요가 없이, 제조원가에서 산정이 가능하므로 실무적으로 공제법보다 간단
 - 또한 산정값의 변동 요인이 적어 정확도가 높으므로 한-미 FTA 자동차 수출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순원가법 활용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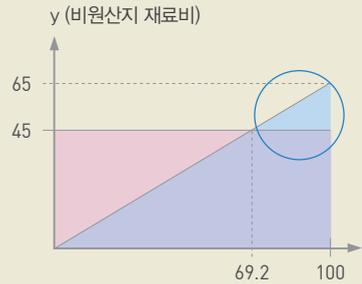
- (유의사항) 비원산지재료 사용면에서는, 제품가격대비 순원가의 비중이 69.2% 이상인 경우 순원가법이 공제법 보다 비원산지재료 허용치가 높아 유리

부가가치계산 방법과 비원산지재료비의 상관관계 분석

- 한-미 FTA
 - 공제법 55% 이상
 - 순원가법 35% 이상
 - 제품가격 : 100원 가정

〈비원산지재료 허용범위〉

- 공제법 : $(100-y)100 > 55 \rightarrow y < 45$
- 순원가법 : $(x-y)/x > 35 \rightarrow y < 0.65x$



〈공제법〉 부가가치 비율 = $\frac{\text{제품가격} - \text{비원산지재료비}}{\text{제품가격}} \times 100 > 55\%$

〈순원가법〉 부가가치 비율 = $\frac{\text{순원가} - \text{비원산지재료비}}{\text{순원가}} \times 100 > 35\%$

03 | 활용 및 확산분야

- 자동차산업 분야 및 자동차 부품 산업
 - 제품가격 산정보다 순원가 산정이 실무적으로 간편하여 FTA 활용이 용이하며, 정확도가 높아 원산지 검증 대응에도 유리

산업/협정별 특화형 | 5-1

순원가법 연구를 통한 자동차기업 경쟁력 강화

1. 연구 배경

- 한-미 FTA 발효로 순원가법 등장
 - 우리 자동차 기업의 순원가법 활용 실적 전무
 - 우리 기업의 순원가법 미활용 원인 분석 필요성 제기
- 체계적인 순원가법 연구 필요성 제기
 - 현재까지 연구는 한-미 FTA 규정을 근거로 순원가법 이론적 분석에 치중
 - 미 자동차 기업에 대한 검증으로 순원가법에 대한 실질적 정보 입수
 - 획득된 정보를 검증종결과 함께 사장시키지 않고 우리 자동차 기업의 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 필요

2. 연구과정의 장애요소

- 체계적 연구자료 부족
 - 협정문 규정에 근거한 기본적인 지식만 제공되어 있고, 순원가법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실질적인 교육 콘텐츠가 부재
- 순원가법에 대한 두려움
 - 기업의 이윤 및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이하 관관비) 전체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방대한 업무량과 영업비밀 노출에 대한 두려움 상존
 - 관관비를 협정에 규정된 공제요소로 재해석 및 정의 필요하고, 관관비 중 공통비용(예: 전기세)은 공제비용으로 처리하는 추가 작업 필요

- 순원가법 판정 역량 부족

- 대부분의 자동차 기업은 공제법 기준으로 시스템이 설계되어 현재 시스템 으로는 순원가 산정 및 원산지판정이 불가능

3. 연구 내용

1. 순원가법의 도입배경

- 1989년 미국과 캐나다간 체결된 FTA에서 제품가격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자동차기업은 부가가치비율을 산정하는데 애로 발생
- 또한 제품가격은 마케팅전략, 이전가격정책 등 여러 요인으로 수시로 변동 가능하며, 제품가격을 과대계상하면 부가가치비율이 높아질 수 있어, 자동차기업이 먼저 순원가법 도입 주장

2. 순원가법의 효용성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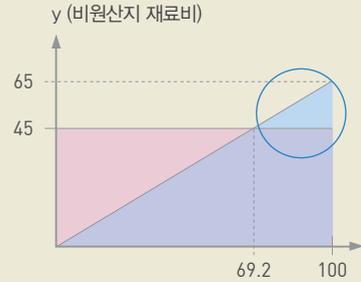
- 순원가법의 단순함과 적용 용이성
 - 순원가법의 계산 방식은 제품가격과 이윤 및 공제항목을 고려할 필요가 없이, 제조원가에서 산정이 가능하므로 이론보다 상당히 간단함
 - 또한 이윤,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내역이 검토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마케팅, 로열티 등 기업이 민감해 하는 비용이 검증과정에서 노출될 우려가 적음
- 순원가법의 객관성 및 예측가능성
 - 공제법(제품가격)은 마케팅, 이전가격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수출자가 약의적으로 가격을 조작하여 부가가치 비율을 높게 산정할 있는 반면
 - 순원가법(제조원가)은 그 구성요소가 제조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한정되는 등 조작이나 변동이 여지가 적음
- 부가가치계산 방법과 비원산지재료비의 상관관계 비교분석
 - 제품(조정)가격대비 순원가의 비중이 69.2% 이상인 기업은 비원산재료 사용 측면에서 순원가법이 공제법보다 유리하다는 사실 확인

부가가치계산 방법과 비원산지재료비의 상관관계 분석

- 한-미 FTA
 - 공제법 55% 이상
 - 순원가법 35% 이상
 - 제품가격 : 100원 가정

〈비원산지재료 허용범위〉

- 공제법 : $(100-y)100 > 55 \rightarrow y < 45$
- 순원가법 : $(x-y)/x > 35 \rightarrow y < 0.65x$



〈공제법〉 부가가치 비율 = $\frac{\text{제품가격} - \text{비원산지재료비}}{\text{제품가격}} \times 100 > 00\%$

〈순원가법〉 부가가치 비율 = $\frac{\text{순원가} - \text{비원산지재료비}}{\text{순원가}} \times 100 > 00\%$

- 포괄손익계산서를 바탕으로 우리 자동차 제조기업의 순원가(제조원가) 비중 확인결과 모두 70% 이상으로, 우리 자동차 수출기업에게는 순원가법이 공제법보다 유리할 수 있음

4. 연구결과 활용

- 자동차 업체 대상 순원가법 설명회 개최
- 관세학회 하계 학술대회 논문 발표

5. 시사점

- 완성차 기업 대상 심도 깊은 순원가법 기법 전수
 - 개별 완성차 기업에 대한 최적화된 컨설팅 실시
 - 공제법과 순원가법 비교하여 원산지판정 시뮬레이션 실시
- 미국 원산지 검증 효과적 대응 가능
 - '16년 관세 철폐 이후 미국측의 본격적인 원산지검증 예상
 - 미국 및 캐나다 세관 원산지검증 대비 순원가법 활용이 유리

모델 06

물품취급 수수료 면제 활용 모델 (한-미 FTA)

01 | 개요

- 한-미 FTA 제2.10조에 따라 기존에 징수해 왔던 비관세 행정 수수료인 물품취급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모델
 -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관세와는 별도로 물품취급수수료를 미국 세관에 납부해야 하여 추가 비용 발생

02 | 비즈니스 모델

- 원산지를 인정받게 되면 세율이 0%인 물품의 경우에도 물품취급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고, 통관시간도 단축할 수 있는 것이 이점

물품취급수수료(MPF, Merchandise Processing Fee) 미국 관세청이 관련 법규의 준수도 심사 명목으로 관세와 관계없이, 건당 25~485 USD를 징수하는 행정 수수료임. 다만, 한-미 FTA협정문 2.10조에 따라 한국산제품에 대해서는 면제

물품취급수수료 면제 활용 모델

(예시)건당 미화 140,000불 수출시 FTA활용 前後 비교



03 | 활용 및 확산분야

-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산업분야
- 특히 관세가 0%인 물품은 FTA 발효 이후에도 관세혜택이 없어 별도로 특혜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물품취급수수료 면제 혜택이 있으므로 한-미 FTA 활용할 필요성 존재

한미 FTA의 또다른 경제적 효과 : 물품취급수수료

- 한미 FTA협정문 제2.10조) ④ 어떠한 당사국도 원산지상품에 대하여 물품취급 수수료*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물품취급 수수료(Merchandise Processing Fee, MPF) : 미국 관세 및 국경보안청(The U.S. Customs Border and Protection)이 수입물품이 미국 관세법과 무역법을 준수한 것인지를 심사하는 명목으로 징수하는 비관세 행정수수료

구분	세부내용		
법적근거	통합예산총괄조정법(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1985)		
징수방법	모든 수입물품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부과(종가세)		
제외국가	①NAFTA ②이스라엘 ③미국속령의 제품 ④최빈국가의 제품 ⑤카리브연안국가		
적용요율	화물 금액(\$)	적용요율	비고
	7,217 이하	USD25	최저 수수료
	7,217~140,012 미만	0.3464%	-
	140,012 이상	USD485	최대수수료

산업/협정별 특화형 | 6-1

물품취급수수료 100억원 면제, 한-미 FTA의 숨은 혜택

1. 기업 및 제품소개

- Z사는 반도체 집적회로를 생산하여 연간 4억불 상당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미국과 반도체·메모리 분야에서 경쟁 구도에 있는 세계적인 반도체 업체
- 제품소개 : 전자집적회로(HS 제8542.31호)
 - 전자집적회로 수동소자 및 능동소자를 고밀도로 조합시킨 초소형 장치로서 프로세서 및 컨트롤러는 등이 있음

2. FTA 활용 전

- 일반적으로 반도체 집적회로는 세율이 0%인 물품으로서 한-미 FTA의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왔으나,
- 물품취급수수료의 혜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위한 준비에 착수

3. 장애 요소

- 반도체 집적회로는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PSR)이 매우 난해
 - 원산지결정기준이 '조립된 반도체 디바이스', '집적회로', '웨이퍼', '다이스' 등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단어로 규정

〈 HS 제8541호, 제8542호 반도체물품 원산지결정기준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가. ① 조립된 반도체 디바이스, ② 집적회로 또는 ③ 초소형 조립회로 : 장착되지 아니한 칩, 웨이퍼, 다이스 또는 다른 소호의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나. 기타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집적법의 경우 30%, 공제법의 경우 3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일부제품에는 세번변경도 발생하지 않아 원산지 불충족 가능성이 높음



4. 극복 방안

- **(사전 준비)** “조립된 반도체 디바이스, 장착되지 아니한 칩 등”의 ‘품명’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여, 이를 위해 FTA 협정, HS 전문가 그룹인 인천세관 Dr-F T/F팀을 구성
- **(장애 해결)** Dr-F T/F팀, 관세평가분류원, A업체 반도체 연구원이 모여 해당 수출 제품의 품명에 대한 명확한 유권 해석
- **(품명 정의)** 아래의 과정이 국내에서 모두 이루어져 “가공공정기준”을 충족함을 판정
 - ① 회로패턴이 형성된 반도체 웨이퍼를 수입
 - ② 개개의 것으로 절단(다이싱)하여 개별 칩(장착되지 아니한) 생산
 - ③ 개별 칩을 가지고 조립(와이어 본딩, 몰딩작업) 수행
 - ④ 조립된 반도체 디바이스(IC, 초소형 조립회로) 생산

5. 활용 효과

- 수출인도 조건이 DDP인 경우 연간 100억원의 물품취급수수료 절감 효과는 고스란히 수출자의 혜택이 됨

6. 시사점

- 반도체 제조업체와 같이, 관세혜택이 없다고 생각하는 수출자도 FTA를 활용하여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이 특징

모델 07

DDP (관세지급인도) 조건 활용 모델 (한-미 FTA)

01 | 개요

- DDP조건을 사용하여 수출자가 계약단가를 높임과 동시에 FTA를 활용하여 수입관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모델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 인도조건) 수출자가 수입국 지정목적지에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이는 때까지 위험비용을 부담 (수입관세까지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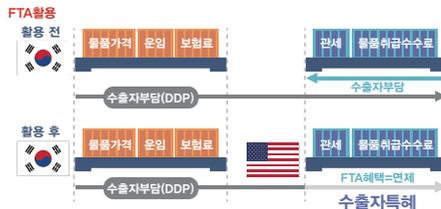
02 | 비즈니스 모델

- DDP 조건은 수출자가 운임, 보험료 뿐만 아니라 수입관세까지 모두 부담하게 되어 계약단가가 더 오르는 것이 일반적



- 무역거래조건을 CIF에서 DDP로 변경할 경우, 수출자가 관세 및 물품 취급수수료까지 모두 부담하므로 계약단가는 높아지나, FTA 특혜세율 0%를 적용하면, 수입관세 부담이 없어지므로 수출자에게는 계약단가는 높아지면서 실제적인 부담은 낮아지는 혜택이 발생하게 됨
 - 수입자는 DDP 조건으로 편리하게 수입하고, 수출자는 추가적인 수입 관세 부담없이 거래단가를 높일 수 있음

FTA DDP(관세지급인도) 조건 활용 모델



03 | 활용 및 확산분야

- 모든 산업 분야
- 특히, 미국 수출기업 중 지사가 미국에 있는 기업에 매우 유용

산업/협정별 특화형 | 7-1

DDP, 한-미 FTA 수출에 활용하세요

1. 기업 및 제품소개

- A업체는 양말의 다양화, 기능화 추세로 가는 양말 패션을 선도하고 창의적이고 다양한 디자인 개발 및 차별화된 서비스를 무기로 미국, 유럽등지에 양말을 전문적으로 제조·수출하는 회사
- 제품소개 : 여자 및 남자용의 타이즈, 스타킹, 양말(HS 제6115호)

2. FTA활용 전

- 한국은 20년 전 만해도 아시아 양말생산 NO.1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양말의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양말생산국이었음
- 하지만 중국과 동남아산으로 인한 수출부진과 불경기로 내수시장이 무너지고 의류 대리점의 사은품으로 전락하여 행사위주, 매대판매, 사은품 양말방식의 제조가 지속

3. 장애 요소

- 양말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원사가 한국산이라는 증빙 서류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유통단계가 많아 여러 단계에 걸쳐 원산지(포괄)확인서를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
- FTA 업무에 대해 지식 및 정보가 전무한 상황에서 FTA 활용을 위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

4. 극복 방안

- **(DDP 활용)** 미국바이어와 수출계약시 DDP 조건으로 계약체결을 하였고, 수출시 한-미 FTA활용을 통해 물품 공급단가를 낮추게 되어, 미국업체로부터 주문이 증가하게 됨
- **(전담자 교육)** 사원급이 아닌 차장급에서 숭선하여 전담자 교육을 받고 인증 진행 및 원산지관리를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활용 가능
- **(인증 컨설팅)** 세관의 인증컨설팅을 활용하고 바이어가 원하는 시기에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번호 획득 및 원산지증명서를 제공하여 바이어의 신뢰도 향상

5. FTA 활용효과

1. FTA 활용효과

- '11년 1분기 대비 '12년 1분기는 유럽의 금융위기로 전체 수출금액은 줄었으나 한-미 FTA 활용으로 미국 수출금액은 증가
 - 한-미FTA 발효 1개월 전후 대비 수출금액 14.2% 증가
-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여(13.5% ⇒ 0%, 즉시철폐) 발효 1개월동안 미국측 수입관세 8천8백만원 및 물품취급수수료 136만원 절감.

6. 시사점

- 한국의 양말산업은 중국에 비해 다품종 소량생산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자동화된 생산방식을 갖춘 산업으로서, 인건비 비중이 낮음
 - 이러한 양말산업에 FTA를 활용으로 가격을 인하한다면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임
- 한국산이라는 브랜드 강점과 DDP 조건을 활용한 가격경쟁력을 가지는 물품이라면 중국 및 동남아 제품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임

산업/협정별 특화형 | 7-2

DDP 활용으로 FTA혜택 내 주머니로, 썩!

1. 기업 및 제품소개

- B사는 자동차 엔진부품과 조향장치 부품품(Inner Tie Rod)을 생산하는 업체
 - 국내 자동차 3사에 공급하고 세계 3대 부품공급업체인 델파이, TRW 등에 부품공급을 시작하여 매년 수출량이 증가 (미국수출 88%를 차지)
- 제품소개 : 이너타이로드 (INNER TIE ROD, HS 제8708.99호)
 - 차량의 조향 시스템에서 피니언(Pinion) 기어의 회전 운동이 랙(Rack) 기어의 직선운동으로 바뀐 힘을 타이로드 엔드 (Tie Rod End)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노면에 의한 충격과 압축력이나 인장력을 견디도록 설계된 철강제의 물품



2. FTA활용 전

- 내가 알고 있는 FTA 활용혜택은 무엇?

작년에 한-EU 인증 받을 때 관세는 수입국에서 인하된 세율을 적용받아서 혜택이 있다고 했는데, 원산지증명서 발행해줬다고 우리에게 무슨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귀찮기만 해...

- 수출자에게 직접 혜택이 없어 원산지증명서 발행 지연

바이어가 혜택이 있는 건데 우리가 굳이 안 해줘도 되겠지. 아직 발효 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해야지.

3. 장애 요소

- 제품명 : INNER TIE ROD(2006DR L/D)



원재료명	세번
Tie Rod	①8708,94
Socket	②8708,94
Bearing	③8708,94
Grease	2710,19
도료	3208,90

- ▶ 세번변경 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3가지 원재료(①~③)에 대한 4단위 동일 원재료의 국내산 원산지(포괄)확인서 구비 필요

4. 극복 방안

국내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원재료 공급처를 설득

- ◆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인증수출자 지정에 필수적임
- ◆ 원산지(포괄)확인서 구비 후 인증수출자 신청 → 인증

- (적용) 미국 수출시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발급만 하면 FTA 활용 가능
 - '12,5월 미국 바이어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
 - 한-미 FTA 협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5. 활용 효과

- 자율증명 원산지증명서발급을 통한 관세 등 절감 혜택
 - 연간 수출금액 기준 5.8억(관세)+0.8억(물품취급수수료) 절감
 - ※ 이 중 DDP조건 활용으로 수출자 직접 절감 혜택(2억원)

DDP



6. 시사점

- **(先제안)** 미국 수출시 무역거래조건을 DDP조건을 선제시하여 활용
 - FTA 직접 혜택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기업도 FTA 활용
 - 향후 발효되는 타 협정국과의 수출계약시 DDP조건 활용 유리
- **(전제조건)** 무역거래에 있어 DDP조건은 수출자의 최대의무조건으로 미국에서 통관을 수행할 수 있는 믿음만한 운송업체와의 파트너십이 필수적
 - 업체의 자체 원산지관리 능력 확보가 FTA활용에 중요한 KEY로 작용

구분	상세내역
업종(품목)	자동차 부품(엔진, 조향장치 - Inner Tie Rod)
적용협정	한-미 FTA
추천업체	자동차부품 생산, 美國내 통관 수행 능력이 있는 업체

모델 08

원산지 검증 적극대응 모델 (한-미 F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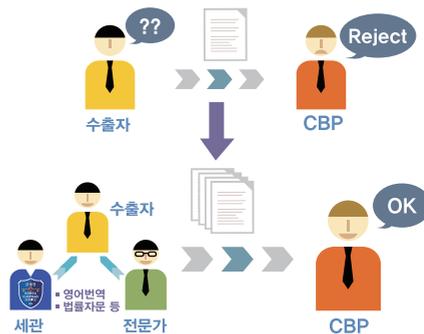
01 | 개요

-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직접검증에 적극 대처하여 수출물품의 원산지 충족과, 향후 원산지검증대상 선정위험을 낮추는 검증대응 모델
 - ※ 미국 CBP에게 수출자의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원산지 검증 선정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02 | 비즈니스 모델

- 미국 관세당국의 검증요구에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
 - 미국 CBP의 원산지검증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원산지 불충족으로 인한 피해와 더불어 수출자의 신뢰도 하락에도 영향을 미침
 - 검증대응 초기부터 우리 세관 및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검증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서류의 제공이나 소명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중요

원산지 검증 적극대응 모델



03 | 활용 및 확산분야

- 직접검증 FTA 체약국으로 수출품목
- 특히 한-미 FTA 피 검증 업체

산업/협정별 특화형 | 8-1

세관의 검증지원으로 미국세관 배제결정도 ‘충족’으로

1. 기업 및 제품소개

- B사는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하고 있는 양말·내의편조 등 편직 제조 회사로 2013년 기준 수출금액 7,706천불에 달함
- 제품소개

주요생산품목	양말(연간 생산량 : 720만 DOZ)
생산방법 (KNITTING)	75% 자체 생산, 25% 외주 생산
생산설비	편직기 67대
수출비중 (미국수출비중)	90%(미국 수출비중 90% 해당)



2. 모델활용 전

1. 업체 FTA 활용 문제점 및 미국세관 검증 결정



- 업체는 세관으로부터 FTA 활용을 위한 모든 정보와 시스템을 지원 받았지만, 업체 스스로 준비·대응해야 하는 ‘대장관리 및 서류보관’에 미숙

- 서투른 원산지관리에도 거래상대방에게 언제나 ‘원산지 No Problem’ 일관
- ▶ 그러나, 상대국 검증이 있을 때마다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원산지 신뢰 불씨 제공, '12년 후반부터 對미 수출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



- 자료 제공에 장시간(4시간)이 소요되었음에도 생산기록 입증자료 제출 불가로 CBP의 “제3국산 원사 반입, 제3국산 우회수출” 의심을 키움
 - 결국, 미국 CBP는 특혜관세 혜택을 배제하고 기타 제품에도 추가적으로 특혜관세를 배제하기로 하는 등 부정적 결정을 전달

3. 극복 방안

1. 특혜관세 배제결정 해결 과정

- <1단계> △△세관 수출 · 생산업체 진술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원산지 재검증 실시
- <2단계> △△세관에서 검증완료한 상기 결과와 함께 CBP가 요청한 생산일지(production records) 및 원산지확인서 등 생산자료를 미국 CBP에 이메일로 제출
- 미국 CBP, △△세관 원산지검증 결과에 동의, 이견 없음을 통보!
 - 미국 CBP, 현지검증 당일의 특혜관세 배제 결정을 ‘반복’하고, ‘충족*’ 재결정

*서울세관의 검증 결과인 업체의 '①원산지 규정 위반사항 없음, ②제외 대상 세번에 해당하지 않는 재료로부터 원사 사용, ③생산기록 일치, ④원산지 충족, ⑤기록관리 적정 판정에 모두 동의

4. 활용 효과

- 당해 검증 건 뿐만이 아닌, 한-미 FTA 발효 이후 업체가 원산지 증명서(C/O)를 발행한 165억원 상당의 수출물품에 대해 추가 검증없이 26억 상당의 특혜관세 유지로 수출가격 경쟁력 확보
- 다소 늦었지만 미국 CBP 원산지 검증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미국 내 '원산지관리 부실' 수출기업에서의 이미지 쇄신
 - ▶ 향후 수입자를 포함한 對미 양말수출 거래 유지
- 직접 원산지검증에 대응함으로써 '기업 스스로의'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향후 원산지 재검증에 대한 부담 완화로 FTA활용 재도약

5. 시사점

1. 원산지관리의 중요성 확인

- 업체는 세관의 YES FTA 활용지원 프로그램을 모두 지원받고 있었으나, 정작 업체 스스로 관리해야 하는 부분에 미흡하였음을 깊이 반성
 - ▶ 철저한 원산지 관리* 능력이 FTA활용과 연결됨을 인식하여 본격적인 원산지관리 전산 준비에 돌입

* 미국 섬유검증은 특정 생산과정만 검증하는 것이 아닌, 제출된 원산지 증빙 자료의 전체적인 상호 연계 및 기록·관리의 일관성 중시

2. 민·관협력 적극적인 검증 대응

- 직접검증 당일 미국세관의 '원산지 불충족' 예비판정이 결정된 후 수출자·생산자와 세관이 함께 협력하여 '충족'으로 검증결과 번복
- 포기하지 않고 서울세관에 자문을 요청하고, 적절하게 대응방법을 지원 받음으로써 FTA 원산지검증 피해를 방지한 모델

모델 09

수리(개조) 물품 관세면제 활용 모델 (한-미 FTA)

01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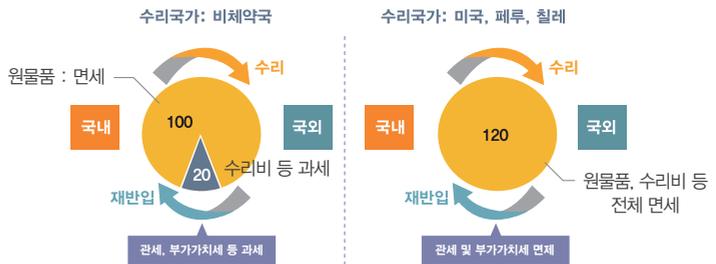
- 수리(개조)물품의 가치증가분에 대해 관세 등이 부과되는 FTA 비체약상대국에서 수행되던 수리(개조)를 이들 조세가 면제되는 체약상대국으로 이전하여 수행함으로써 조세 절감효과 향유 모델

02 | 비즈니스 모델

- 수리 또는 개조를 거쳐 수입되는 물품의 가치증가분에 대해 부과되는 관세 등을 해당 조세가 면제되는 FTA 협정을 활용하여 수리 또는 개조를 진행한 후 무세로 재수입함으로써 조세 절감효과 발생

한-미 FTA, 한-페루 FTA, 한-칠레 FTA에서는 체약상대국에서 수리 또는 개조를 거쳐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 물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가치증가분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 (FTA관세특례법 제8조제1항제2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2호, 제15호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56조제16호)

수리(개조) 물품 관세면제 활용 모델



03 | 활용 및 확산분야

- 수리·개조 후 재수입하는 물품
- (협정) 한-미 FTA, 한-페루 FTA, 한-칠레 FTA

산업/협정별 특화형 | 9-1

수리(개조) 후 재수입물품 면세 근거

1. 관세 면세 근거

1. FTA관세특례법

- **제8조** (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①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원산지에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2. 수리 또는 개조 등을 할 목적으로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2. FTA관세특례법시행령

- **제11조** (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 등) ④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칠레와의 협정, 페루와의 협정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해당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으로 한다.**
 - ⑤ 제1항제6호 및 제4항에서 “수리 또는 개조”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물품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물품을 생산하는 작업이나 과정
 2. 미완성 상태의 물품을 완성품으로 생산 또는 조립하는 작업이나 과정

2. 부가가치세 면세 근거

1. 부가가치세법

-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輕減)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12호 본문에 따른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로 한다.

- **제56조**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27조 제15호에 따른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16. 「관세법」외의 법령(「조세특례제한법」은 제외한다)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모델 10

원산지 인증수출자 관리 모델 (한-EU F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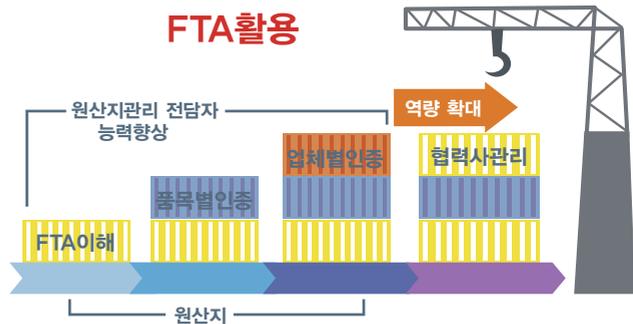
01 | 개요

- 생산자부터 수출자까지 원산지관리에 대한 '학습전략'을 수립하고 원산지관리전담자의 관리능력을 단계적으로 향상시켜 FTA 활용 기업으로 성장하는 모델

02 | 비즈니스 모델

- 'FTA에 대한 이해 → 품목별 인증수출자 → 업체별 인증수출자 → 원산지 관리 역량 협력사 확산'으로 이어지는 원산지관리 학습모델
 - 수출자 뿐만 아니라 구매 · 생산업체를 포함하여 모든 단계에 걸친 원산지관리 역량을 강화
 - 원산지검증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향후 신규협정 발효와 동시에 FTA특혜를 활용

원산지 인증수출자 관리 모델



03 | 활용 및 확산분야

- 협력사가 많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 특히 한-EU FTA를 활용시에는 필수

산업/협정별 특화형 | 10-1

생체분해성 합성봉합원사로 원산지 인증수출자 획득

1. 기업 및 제품소개

- D사는 치과용, 정형외과용 의료기기를 개발, 제조하여 세계 80여개 국가에 수출하는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

설립년월	매출액('13)	수출액('13)	종업원수	주요 생산물품
1999.03	337억원	315억원	약 200여명	치과용 충전재 수술용 봉합원사

- 제품소개 : 생체분해성(흡수성) 합성 봉합원사 (HS 제3006.10호)
 - 수술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인체에 무해하게 체내에서 분해되는 수술용 실
 - 국내시장규모 약 330억원, 세계시장규모 22,606억원에 달하는 생체 분해성 합성 봉합원사는 제품화가 어렵고 개발 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세계 7개 기업만이 생산·판매가 가능하고, 주로 EU, 인도 등으로 수출함

기준 : '13년, 단위 : 억원

국가별 수출현황

수출국가	EU	중국	미국	인도	터키	기타	계
수출금액 (비중 %)	52 (17)	47 (15)	34 (11)	24 (7)	13 (4)	145 (46)	315 (100)

2. FTA 활용전 상황

- (활용계기) 첫걸음이 중요하다! 시작이 반이다!

FTA설명회, 인증수출자 교육 등 각종 FTA교육 기회가 주어지다

(M사) 우리회사 누구도 관심없는 FTA, 인도 바이어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데요,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세관) 봉합사는 수출시 상대국에서 관세율 혜택 가능합니다. 한-미 FTA 활용시에는 물품취급수수료도 면제되는데요.

(M사) FTA 꽤 괜찮은데? 한번해보자! 우선, 세관 설명회부터 참석해볼까? ('11. 3)

3. 장애 요소

- 총체적 난국을 접하다

환경분석	세부 분석내용
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체결국 수출 증가, 해외 바이어의 원산지증명 요구, 중국 경쟁업체 진출로 인한 기업경쟁력 강화 필요 등 FTA활용이 절실 ⇒ 그러나, 의약품의 관세율이 0%로 FTA에 미온적 대응
누가, 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3역(개발, 생산, 마케팅) 중소기업으로 원산지관리 전문가 부재 ● 수출은 계속 되는데 언제 해야 하는건지?
무엇을 어떻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무엇부터 해야하는지, 원산지관리시스템이 꼭 필요한지, 혜택을 받으려면? ⇒ 해외영업팀장(C팀장)의 걱정과 한숨만 증가

4. 극복 방안

1. (극복과정) 원산지관리 능력에 따라 순차적으로 FTA적응하기

- STEP1. (초급) 나는 대한민국 '품목별 인증수출자'다!
 - 관세청의 중소기업 대상 'FTA활용지원 컨설팅 사업'에 참여하여 한-EU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 지정(11.04)
- STEP2. (중급) 나는 대한민국 '업체별 인증수출자'다!
- STEP3. (중급) FTA 알수록 알차다! 원산지관리전담자가 되다!
 - 부서장급 직원이 출선수범하여 어렵고 복잡한 원산지기준, 인증수출자 제도 등 각종 교육과 설명회에 참가하여 전문지식 습득
- STEP4. (고급) 원산지검증도 두렵지 않다
 - FTA-PASS를 이용한 원자재코드생성 등 정확한 원산지 관리및 원산지 검증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로 검증에 대한 두려움 해소
 - ▶ 지속적인 FTA교육, 원산지검증 대비 컨설팅 실시, 부서간 협업 시스템 구축

- STEP5. (고급) 이제는 새로운 FTA발효가 기다려진다
 - 멕시코, 중국과 FTA 체결 즉시 FTA를 활용할 수 있는 토대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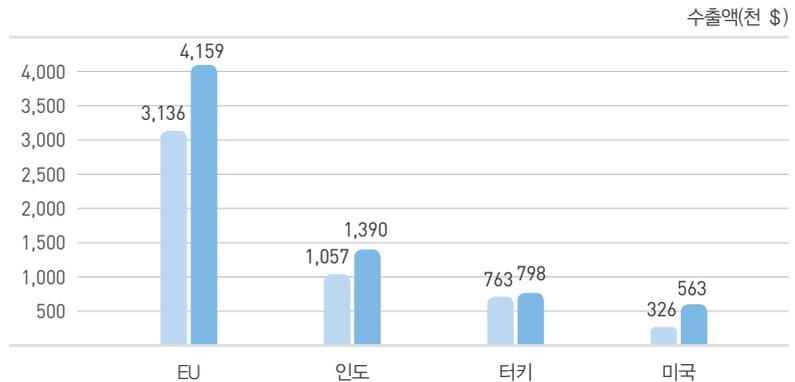
5. 활용 효과

- (FTA-PASS 활용) FTA-PASS를 ERP 대응으로 활용, 체계적인 제품 관리 기반 마련 및 부서별 BOM 통일로 정확한 원산지 관리 가능

* 향후 ERP 도입 시 FTA-PASS와의 연동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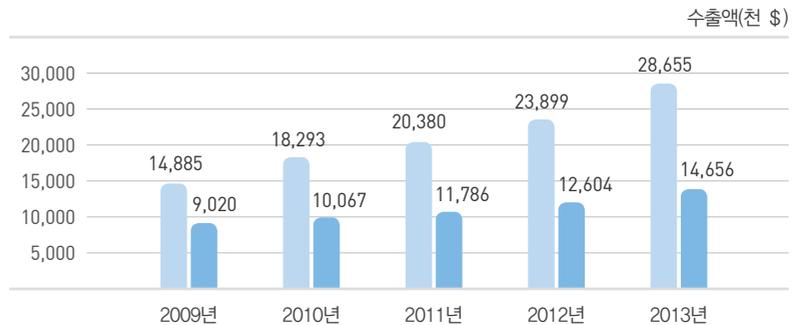
- (수출증대) FTA 활용으로 봉합원사에 4~8%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여 국가별 수출실적이 FTA활용 전 대비 32~73% 증가

국가별 수출증가 현황(봉합원사)



* EU : 32%, 인도 : 31%, 터키 : 4%, 미국 : 73%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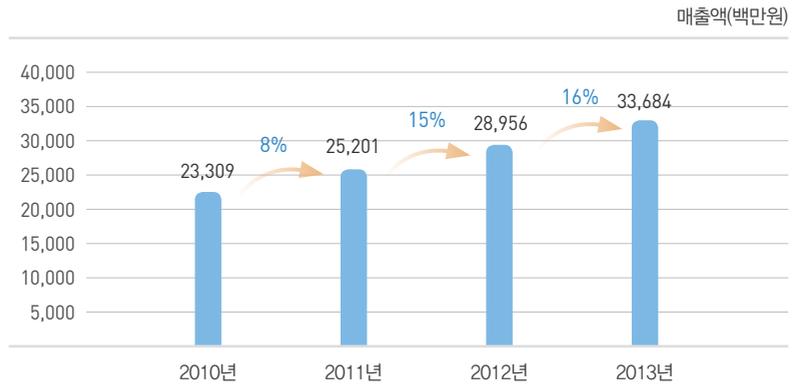
전체 및 봉합원사 수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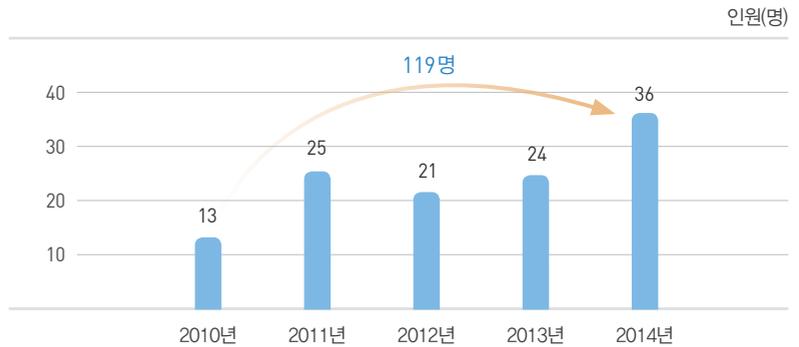
* 연평균 전체 수출 14%, 봉합원사 수출 10% 증가

- **(고용창출)** 수출의 호조는 기업 매출액 증가, 인력채용으로 이어져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총 119명을 신규 채용하는 등 現정부 최우선 정책과제 중 하나인 고용창출에 기여

M사 매출현황



연도별 신규 채용 인원



6. 시사점

인증수출자 인증기회는 원산지 관리에 대한 자신감 획득 가능

- **(업체별 인증수출자로 전환)** FTA 체결국 확대 및 생산물품 다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품목별 인증수출자에서 업체별 인증수출자로의 선제적 전환
- **(관리자주도의 FTA활용)** 부장급 관리자들을 원산지 관리전담자로 지정하여 FTA교육 수료, 원산지 사후관리 등 원산지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하여 사내 전체의 FTA 활용에 대한 관심제고

* 향후 일반 직원들을 대상으로 원산지관리사 자격 취득시험 지원 예정

산업/협정별 특화형 | 10-2

중견기업의 롤 모델, 원산지 인증수출자

1. 기업 및 제품소개

- E사는 다이아몬드공구만을 38년간 전문 연구제조하여 80여개국으로 수출하는 중견기업으로서 적극적인 FTA활용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공구 전문기업으로 지속 성장

* 특허 : 242건(해외 : 123건), 신규 등록중 : 103건

- 제품소개 : 다이아몬드 공구 (제6804.21호)

- 반도체, 태양광, 자동차, 전기, 항공기, 건설 산업 등 피삭재 가공에 필수적인 공구

다이아몬드공구 사용분야

CUTTING		▶▶▶	
	톱		건설 : 도로
GRINDING		▶▶▶	
	사포		반도체 : 실리콘웨이퍼
DRILLING		▶▶▶	
	드릴		자동차 : 엔진(금속)

2. 장애 요소

- (가격경쟁력 약화) 다이아몬드공구는 과거 우리나라의 성장전략 품목이었으나, 2000년대 중반 들어 저가의 중국제품이 EU 등 주요시장에서 밀려들면서 가격경쟁이 격화되는 현상

- **(한-EFTA 검증)** 한-EFTA 검증완료 후 본격적으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위한 FTA협정문 및 인증수출자 규정 학습

3. 극복 방안

- ① 한-EU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획득
 - 한-EU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획득
 - 자체적인 FTA관리시스템 개발 완료후,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획득
- ② 협력업체까지 관리하는 SYSTEM化 완료
 - FTA전담관리자 운용으로 사내 및 협력사 등과 업무협조
 생산, 영업 외 전문 관리부서를 두는 것이 어려운 중견기업의 형편이나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15년 이상 수출입통관실무를 담당한 사내 경력직원을 FTA전담관리자로 지정하여 사내 및 협력사 관리

4. 활용 효과



5. 시사점

- 일반적인 회사와 달리 수출입통관 경력이 오랜 직원을 FTA 전담 관리자로 지정하여 전문가로 육성 → 효과적인 사내 및 협력사 FTA 전문가로 활동
- 협력사에 원산지관리업무 지원 및 FTA 교육 실시 등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열악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중견기업으로서의 모범사례임

모델 11

합리적 의심 사전차단 원산지검증 회피 모델 (한-EU F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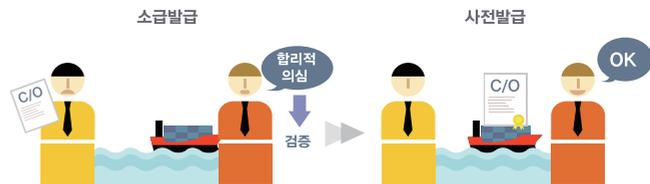
01 | 개요

- 원산지 증명서의 높은 사후발급률은 원산지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원산지 증명서를 사전발급하여 원산지 검증을 회피하는 모델
 - ※ 원산지 증명서는 사전 발급이 원칙적이며 예외적으로 사후 발급 허용

02 | 비즈니스 모델

-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이란 물품의 생산과 함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지 않고, 수출 이후 일정 기간 내 작성하여 발급하는 것을 말함
 - 소급발급된 원산지증명서도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으나,
 - 이미 제조·수출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증명하는 것이므로, 수입국 관세당국은 원산지 소명이 적절히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reasonable doubts)'을 제기할 수 있음
- 그러므로,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보다 사전발급을 활용하여, 원산지 검증 리스크를 낮추는 것이 핵심
 - ※ 특히 한-EU FTA는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에 합리적 의심 경향 강함

합리적 의심 사전차단 모델



03 | 활용 및 확산분야

- 모든 산업분야
- 한-아세안, 한-인도 및 한-EU FTA에 유용

협정별 특화형 | 11-1

사전발급으로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다

1. 기업 및 제품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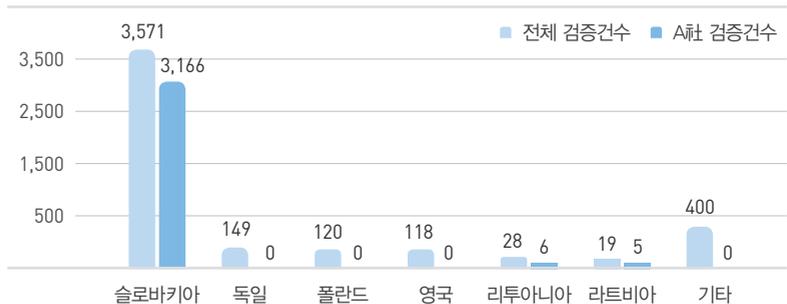
- A사는 주로 TV 모니터의 프레임, 지지대를 수출하는 업체
 - EU 수출금액 14억불(2013)에 달하며, 주요 수출국가는 슬로바키아 (51%이상), 협정관세 대상물품 수출금액은 1.8억불 수준
- 제품소개 : TV의 측면커버 사이드프레임(COVER SIDE FRAME)과 지지대



2. 장애 요소

1. FTA 특혜적용 수출물품의 특정국가(슬로바키아) 검증요청 과다

- A사의 對 슬로바키아 수출물품에 대한 검증요청 건수는 총 78회, 3,166건('12~'14.6월)으로서 EU국가 전체 검증요청건의 89%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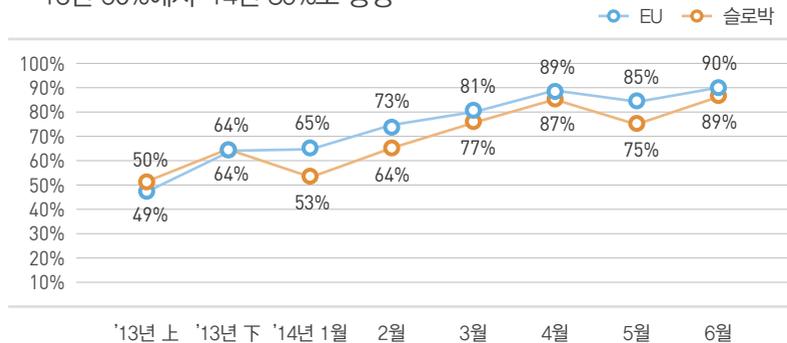
3. 극복 방안

- 수출물품에 대한 협력업체의 원산지확인 지연으로 슬로바키아 통관 후에 FTA 협정관세를 사후신청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원인
 - ① A社가 수출하는 협정적용 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신고서(C/O) 사전 발급율을 향상 도모
 - ② 슬로바키아 세관의 검증요청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부 차원 대응 실시

4. 활용 효과

1. 원산지 신고서 사전발급율 향상

- 對 슬로바키아 협정적용 대상 수출물품의 원산지 신고서 사전발급율이 '13년 50%에서 '14년 89%로 향상



2. 슬로바키아 세관의 검증요청 감소

- 슬로바키아 세관이 A社의 협정관세 사후신청건 수품목에 대한 무차별 검증에서 신규품목에 대한 검증 요청으로 개선
 - '13년도 2,225건 ▶ '14.8월 현재 854건으로 58%로 검증요청건 감소

5. 시사점

- 원산지증명서 사전 발급의 중요성 인식 계기
- 원산지 검증 소요시간과 비용 절감으로 생산활동에 전념하여 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됨

모델 12

국내가공 FTA특혜 활용 모델 (한-중 FTA)

01 | 개요

- 비원산지 기초농축산물을 FTA 체결국으로부터 저렴하게 수입하여, 우리의 기술력으로 국내에서 가공식품을 생산 후 한-중 FTA 특혜 적용받아 중국으로 수출하는 모델

02 | 비즈니스 모델

- 한중 FTA에서 신선농수산물은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되지만, 가공식품 원재료에 상관없이 생산공정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면 국내산으로 인정 가능
 - FTA 체결국으로부터 우수한 품질의 기초농산물을 저렴하게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함으로써 원재료비 절감, 고품질 유지 및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산'이라는 이점을 활용하여 수출 경쟁력 향상 가능

한-중 FTA의 가공식품 원산지결정기준(PSR)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CC)이므로, 역외산 원재료를 사용하여도 생산공정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면 FTA특혜 활용가능

※ (적용가능품목) 김치, 조제 분유, 라면, 소시지, 햄, 참치캔, 소주, 베이커리 제품, 믹스커피, 잼 등

국내가공 FTA특혜 활용 모델



03 | 활용 및 확산분야

- 원재료를 수입하여 가공 후 수출하는 식품가공업 등
- 한-중 FTA

산업/협정별 특화형 | 12-1

가공식품 한·중 FTA 특혜활용

한·중 FTA 물품별 원산지 기준

'해외원료로 만든 라면·커피믹스 한국산 인정' 화장품도 국내서 생산 마치면 관세 혜택 <2014. 11. 12. 매일경제 김기철 기자>

신선 농산물	재배부터 수확까지 국가 안에서 이루어져야 인정
소시지, 라면, 베이커리 등	생산공정이 국가에서 이루어지면 인정
섬유직류	원사 직물 직류 중 두 단계 이상이 국가에서 이루어져야 인정
기계, 전자제품	조립 등 완공 단계만 한 국가에서 이루어지면 인정(일부 민감 품목은 제외)
자동차	결합기준(총부가가치의 60% 이상이 국내에서 이루어져야 인정)
자동차 부품	결합기준(총부가가치의 40% 혹은 50% 이상이 국내에서 이루어져야 인정)

1. 한·중 FTA 원산지 규정 어떻게 적용되나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핵심 쟁점이었던 원산지 기준(PSR)에 대한 대체적인 윤곽이 나왔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중국이 농산물에서 양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원산지 기준을 갖고 공산품 시장을 방어하려다 보니 의견차가 컸다”고 말했다. 가공무역 비율이 큰 한국을 원산지 기준을 활용해서 견제하려고 한 것이다.
- 중국은 완성품 생산지를 따지는 세번변경 기준과 부가가치 비율을 따지는 부가가치 기준을 동시에 고려하는 결합기준 품목 수로 처음에는 1,010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협상을 통해 이 품목 수가 전체의 0.9% 수준인 47개로 줄었다. 한국의 역대 FTA 중 가장 적은 수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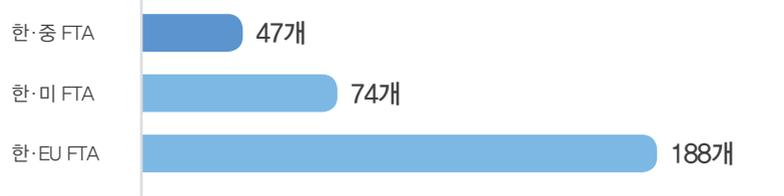
2. 라면은 모두 국산품 인정

- 농수산물 원산지를 규정하는 기준은 두 가지다. 하나는 신선농수산물에 대한 기준이고 하나는 가공식품에 대한 기준이다. 한·중 FTA에서 신선농수산물은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재배하거나 수확한 제품만 국내산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해외에서 키운 소를 들여와 국내에서 도축한다고 이를 국내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 가공식품은 원재료에 상관없이 생산공정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면 국내산으로 인정된다. 해외에서 원재료를 가져와 생산하는 커피믹스나 해외에서 생산된 고기를 들여와 만드는 소시지 모두 국내산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라면도 제조공정이 국내에서만 이루어지면 모두 국내산으로 인정된다.
- 한·미 FTA에서는 양념에 한국산 쇠고기가 들어가면 이를 국내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우는 구제역이 있다고 봐서 미국은 한우를 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는 호주산 쇠고기를 넣은 라면을 수출하고 있다.
- 하지만 한·중 FTA는 이런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생산공정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만 따지기로 했다. 따라서 라면 등 가공식품이 관세 인하 효과를 크게 입을 것으로 보인다.

3. 의류·직물은 두 단계 이상

- 의류 중 일반 섬유직물은 여러 공정 중 두 단계 이상이 국내에서 이뤄져야 국내산으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호주산 양모를 들여와 우리가 실로 만들고 또 이어 원단으로 만들면 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 의류업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하지만 국내 업체들이 비용 등의 문제로 하부 공정은 모두 해외에서 하고 최종 공정만 국내에서 하는 사례가 많아 이런 업체들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특히 중국에서는 한류 열풍으로 한국에서 생산된 의류에 대한 관심과 매출이 늘어가고 있는데 최종 생산 기준이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하게 함으로써 FTA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없게 한 것이다.

결합기준 적용 품목 수



결합기준 = 국내산국외산을 판단하기 위해 재료 원산지와 제조 원산지, 실제 판매지, 부가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준.

4. 한국산 화장품 날개 달 듯

- 석유화학 제품 중 석유제품과 화장품, 플라스틱 등은 우리 측 주장대로 세번변경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재료가 어디에서 오든 최종 공정만 국내에서 이루어지면 국내산으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
- 산업부관계자는 “중국 측에서 첨단화학제품 등은 민감하게 생각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우리 측 의견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런 기준 덕분에 국내산 화장품 주가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화장품을 생산하는 한국콜마 등도 한·중 FTA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5. 전자제품은 결론 못 내

- 해외에서 부품이나 중간재를 들여와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전자업계도 한숨을 놓게 됐다. 기계·전자제품 원산지 기준을 세번변경 기준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민감 품목에 포함되는 전자제품은 향후 논의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 논란이 된 자동차는 결합기준을 적용하되 완성차는 부가가치 기준을 60%로 하고 부품은 부가가치 기준을 제품에 따라 40%와 50%로 나눠서 하기로 했다.

모델 13

동반성장 모델

01 | 개요

- 수출기업(대기업)의 FTA특혜 활용을 위해서는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중소기업)의 협조*가 필수적, 이를 위해 대·중소기업 간의 협력과 상생방안을 제시하는 모델

* 공급(납품)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 제공

02 | 비즈니스 모델

- 수출기업(대기업)의 원부자재 공급업체(중소기업)에 대한 FTA활용 지원을 통해 협력업체의 수출업체에 대한 원산지확인서 제공 등 FTA활용 지원이 원활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FTA활용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대·중소기업이 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 동반 성장을 견인
 - FTA활용효과 거양을 통한 내수기업과 수출기업 공생발전 가능
 - FTA활용능력 개선을 통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 전환 가능성 증대
 - 국내 거래단계에서 철저한 원산지관리가 가능해져 사후검증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원산지위험 예방 가능

동반성장 모델



03 | 활용 및 확산분야

- 원재료를 공급하는 협력업체가 많은 품목

규모별 특화형 | 13-1

FTA 적극 활용하니, 동반성장 따라 오네~

1. 기업 및 제품소개

- A사는 공작기계 완성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미국, 유럽 지역으로 2013년 약 3,870대를 판매하여 4,730억원의 매출(미국 약 1,860대 2,050억원, 유럽 약 2,010대 2,680억)을 기록하고 있는 수출중심기업
- 제품소개 : 공작기계(HS Code : 제8457.10호, 제8458.11호 등)

2. FTA 활용전 상황

- FTA 발효전 A사는 EU 수출 시 2.7%, 미국 수출 시 4.2%의 관세를 지불하여 가격경쟁력 저하
 - 대당 평균 1억을 상회하는 제품가격으로 공작기계 1대당 EU는 약 270만원, 미국은 약 420만원의 관세가 부담으로 작용함으로써 기술력이 우수한 일본기업과 경쟁하여야 하는 A사에게 있어 FTA 혜택은 원가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훌륭한 무기

3. 장애 요소

- A사의 가장 큰 걸림돌은 원산지관리 부담
 - 원산지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내 400여개 협력사로부터 원산지 확인서를 제출받다보니 협력사 입장에서 사후검증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발생하여 업무진행에 차질이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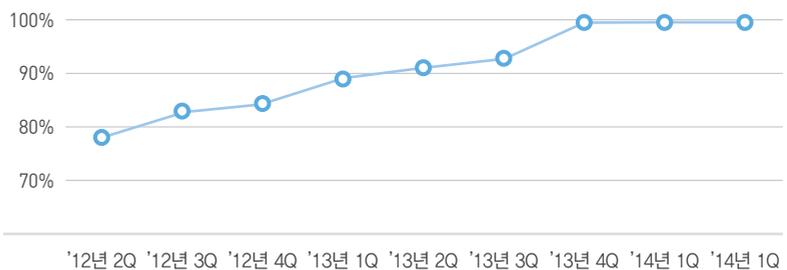
4. 극복 방법

- 실무자의 원산지관리 능력향상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사내 원산지 관리 전담인력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취득(4명)
- 400여개에 이르는 협력사의 경영진 및 담당자에 FTA에 대한 홍보를 위해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집합교육(년 8~10회 실시, 누적 35회)을 실시하고 240여개 주요 협력사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지도 실시

5. 활용 효과

- 원산지 비율이 낮아 한국산 판정을 받기 어려운 기종의 주요 수입산 부품 국산화에 성공하여 국내 협력사의 매출 신장에 기여
 - 주요부품 중 대만산 ATC(자동공구교환장치)는 2013년 국산화에 성공하여 협력사 D사의 경우 현재까지 17.4억 매출 달성
 - 또한 중국산이던 주물품을 국내산으로 전환한 후 현재 6개 협력사에서 23.8억의 매출 발생
- 발효초 80% 이하이던 FTA협정 적용 물품수가 99%수준으로 향상

A사 수출제품
한-미 FTA 적용 비율



6. 시사점

- FTA활용을 위한 협력사 지원을 통해 FTA활용 성공과 동시에 부품 국산화 개발에 참여한 협력사의 매출 신장에 기여

모델 14

글로벌 강소기업 성공 전략 모델

01 | 개요

-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강소기업의 FTA 활용능력배양을 전략적으로 지원하여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모델
 - 강소기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여 세계시장으로 꾸준히 수출하고 있으나, 세계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수출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모델
 - * 강소(強小)기업이란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한국형 중소기업

02 | 비즈니스 모델

- FTA 활용을 위해서는 우선 CEO를 비롯한 내부직원의 FTA 인식 확산, 원산지관리 전담팀 운영, 체계적인 원산지관리시스템 등이 필수

글로벌 강소기업 성공 전략 모델



03 | 활용 및 확산분야

- 특정업종에 비교우위를 가진 중소기업

규모별 특화형 | 14-1

FTA로 세계를 낚은 1g의 작은 보물

1. 기업 및 제품소개

- S사는 1979년 6월에 설립되어 전 세계 40여개 국가에 낚시바늘 (레저용)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고급 낚시바늘 제조 전문 기업’
- 제품소개 : 낚시바늘(HS 제9507.20호)
 - 우리나라 낚시바늘 제조업체 수는 총 23개 업체 (13년 기준)이며, 종업원 수는 대부분 20인 이하의 영세업체임

2. FTA 활용전 상황

- 내수 침체로 국내 굴지의 낚시용품 생산업체인 a사가 도산하는 등 낚시산업 전체가 위기에 빠지고 S사 역시 15억 원 정도의 부도를 맞고 회생이 불투명

3. 장애 요소

- FTA 활용지식의 부족, 협력업체들의 공감대 부족, 생산 공장 분산 및 원산지관리 전담 직원의 갑작스런 퇴사 등으로 FTA 활용에 어려움

4. 극복 방안

- 한-아세안 FTA 활용과 세계적 기술력 확보
 - [가격경쟁력 확보] 한-아세안 FTA 활용 시 1.5~15%의 수입국 관세인하 효과가 있어 아세안 시장을 발판으로 수출하기로 결정

- [고품질의 제품생산]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한 결과 발명특허 3건, 실용신안 12건 등 획득으로 일본과 대등한 세계적 수준의 낚시바늘 생산 가능
- 원산지관리 전담조직 재정비 및 세관 FTA 지원 등
 - [원산지관리 전담팀 구축] 사장님을 중심으로 원산지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효율적인 원산지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FTA 전담조직 재정비
 - [FTA 인식 제고] 세관 FTA 전문가를 초빙, 전직원 교육 및 협력업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여 대내외적으로 FTA 활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긍정적 인식으로 전환
 - [세관의 FTA 지원] FTA 활용 실무에 있어 정확성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1:1 맞춤형 컨설팅, 원산지 사전진단, 인증수출자 인증* 등을 진행하였고, 낚시업계를 대표하여 FTA 활용지원 CEO간담회에 참석하여 애로사항을 건의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삼아 FTA 활용 기반을 마련”
 - * 한-미, 한-EU, 한-아세안 FTA에 대해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지정
 - [박람회 참가] 또한, 신규 바이어를 발굴하기 위하여 해외 낚시 박람회에 꾸준히 참가하고 있으며, 수도권에서만 개최하던 국제낚시 박람회를 부산에 최초로 유치하여 부산세관과 합동으로 참가업체에 FTA 활용정보 제공

5. 활용 효과

- 뛰어난 기술력과 FTA로 국내 5위 기업에서 세계 5위 기업으로 성장
- 한-EU 와 한-미 FTA 발효에 대비해 유럽(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등) 및 미국에서 개최되는 국제 낚시 박람회에 참가하여 신규 바이어 발굴
 - 미국, 프랑스, 폴란드 등 신규바이어 발굴('11년)로 약 89만불 신규계약
- 수출증가와 FTA C/O발급 100%로 회사 고속성장 견인
 - (한-EU FTA) 유럽은 수출비중이 높은 편이며, 한-EU FTA가 발효('11.7월) 이후 수출 증가하여 전년대비 수출량이 150%이상 증가

- (한-미 FTA) 미국의 수출비중은 낮은 편이지만, 한-미 FTA가 발효된 '12년에 수출 급증, '12년 말에는 전년대비 수출량이 350% 이상 증가
- FTA 활용률 100%
 - 한-아세안, 한-EU, 한-미 FTA 발효시기 이후 현재까지 원산지 증명서 발급율 100% 달성
- (생산시설 확충) 한-아세안 FTA 발효로 인한 수출량을 맞추기 위해 '06년에 제2공장을 증설한 데 이어 '11년에는 한-EU 발효에 대비하여 제3공장을 증설하여 FTA활용을 위해 2개 공장 증설
 - 3공장까지 증설하였으나 장소가 협소하고 한-미 FTA 활용에 대비하기 위해 1공장 옆에 있는 대규모 부지를 구매하여 증설할 계획
- (고용창출) 늘어나는 수출량에 대비하여 '06년에 직원 15명, '11년에는 17명, 도합 32명 생산인력 증원, 낚시바늘 포장 인력 40명 증원(40명→80명)

6. 시사점

1. 세계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FTA를 준비

- FTA 시대를 대비하여 내수시장에만 의존하지 않고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FTA를 제대로 활용하여 세계시장으로 진출한 대표적 사례
 -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FTA 활용 실무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세계 수준의 기술력이 담보되어야만 함
- 아울러 전 직원과 협력업체의 FTA 활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전환이 있어야만 FTA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규모별 특화형 | 14-2

강소기업, FTA로 세계를 사로 잡다

1. 기업 및 제품소개

- T사는 PET병, 페인트, 코팅제 등의 첨가제로 사용되는 PIA(석유 화학제품) 수출업체(세계1위 수출, 20만톤)
 - 세계적인 수준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수십년간 축적된 우수한 기술력과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전세계 79개국에 2조 1천억원의 수출 달성
 - * PX 국내 3위(75만톤), PTA 세계 7위(200만톤), PIA 세계 1위(20만톤), PET 세계7위(67만톤)
- 제품소개 : PIA(Purified Isophthalic Acid, 고순도 이소프탈산, 제2917.39호)
 - PET병 · 페인트(자동차 · 선박용 도료) · 접착제 · 코팅제 원료, 전세계에서 미국 · 일본 · 스페인 · 싱가포르 · 한국 등 7개국 7개사에서만 생산되는 고부가가치 기술집약 제품

2. 장애 요소

- 한-EU FTA 발효 초기에는 사내 직원들의 체계적인 FTA지식 부족으로 회사 전체적으로 FTA활용 효과에 대한 관심 저조
- 유럽경기 불황으로 수출감소, 유럽시장을 공략하는 값싼 중국제품과의 가격 경쟁이 날로 치열

3. 극복 방안

- FTA 활용을 위한 FIVE-STEP 전략

Step ① FTA 기업체질 개선	서울 세관, 구로세관 FTA 컨설팅 요청
Step ② 한-EU FTA 활용 자격 취득	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11.5월)
Step ③ 해외 바이어 설득	C/O발급과 더불어 한-EU FTA 가격인하 효과를 해외 바이어에 설명
Step ④ FTA교육 이수 의무화	사내 해외·영업팀 전체를 FTA전담팀으로 구성 부서 전직원 모두 FTA교육 의무 이수화
Step ⑤ 원재료 수입비용 절감	기초원료 구매처를 중국에서 유럽, 미국으로 변경 원재료 수입 관세 3%절감(연 240억)

- 해외영업팀·구매 및 생산부서를 한데모아 전담팀으로 구성
 - FTA혜택을 받기 위하여 원산지규정의 충족여부를 입증하고자, 원재료부터 원산지관리가 되어야 하고, 생산공정과 BOM작성, 마지막 원산지증명서 발급까지 모두에게 연관됨을 강조
- 관련부서 부서장부터 신참대리까지 모두 FTA교육이수 의무화
 - 원산지규정이 복잡하고, 사후 검증은 EU의 경우 연간 3,000건 정도 발생하는 것에 대비하여 기초부터 차근차근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
- FTA를 잘 알지못하는 유럽측 바이어에게 FTA 활용 과정 설명

4. 활용 효과

- 한-EU FTA 활용효과(정량적)
 - 한-EU FTA 발효전 9억달러에서 발효 후 9억1천7백만 달러로 총 1천7백만 달러(약8.8%) 증가
- FTA 활용효과(정성적 성과)
 - 철용성 중국을 물리치고 EU시장 선점
 - 그리스 재정 위기 등 유럽의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인하여 수출량 감소와 값싼 중국제품의 가격 공격에 매출확대가 어려워지는 악조건 속에서도, 한-EU FTA덕분에 EU시장 진출 확대
 - 특히 중국과의 경쟁에서 가격 경쟁력에서 열세였던 PET제품의 수출에 있어서는 대폭적인 수출 증가 기대

5. 시사점

- 전직원 FTA교육이수 의무화

- 한-EU, 한-미 FTA를 기업성장의 Key-factor로 인식하고 부서 직원들의 FTA인식 확대와 활용역량강화를 위하여 담당부서 전직원의 FTA 체계적인 교육 이수 의무화를 통하여 FTA활용역량 강화

- 수출만 활용인가 센스있게 원재료 수입에서도 FTA 더블활용

- 원가 절감을 위한 원재료 수입시 적극적으로 FTA활용 기초원료인 MX(Mixed Xylene)의 구매처를 일본, 대만, 파키스탄에서 미국으로 변경하여 한-미 FTA활용원재료 수입시 관세 3% 절감(연240억원)으로 원가절감에 상당한 성공, 중국과의 가격 경쟁력에 있어 비교 우위 확보

- 드디어 더블경쟁력 확보!

- 값싼 중국제품과 유럽 시장 선점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속에서, 품질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는 열세조건을 극복하고 FTA활용은 품질과 가격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게 되어 EU, 미국 시장에서 수출 경쟁력을 확보

모델 15

FTA를 활용한 영세기업 성장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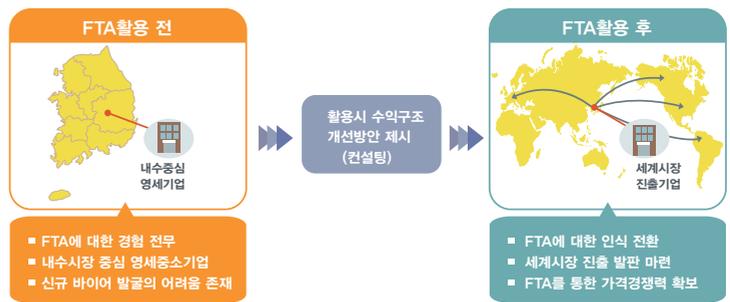
01 | 개요

- 정부의 영세기업의 FTA 원산지관리체계 구축 지원과 기업의 관심으로, 산업하부 구조에서부터 국가 전체적인 FTA 활용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모델
 - 다수의 영세 중소기업들이 제품에 대한 기술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수출에 대한 경험 및 원산지 전담인력 등이 부족하여 FTA 미활용 사례 발생

02 | 비즈니스 모델

- 영세기업은 제조방법, 원재료 등이 비교적 간단하여 작은 노력으로도 원산지판정 가능
 - 영세기업의 수익구조 개선으로 영세성을 극복할 수 있으며, 국가 전체적인 FTA 활용체계 구축을 통해 다른 상위 기업들의 FTA 활용도 용이해짐

영세기업 성장 모델



03 | 활용 및 확산분야

- 모든 산업분야 및 모든 FTA
 - 특히 종업원 10인 이하의 영세기업에 적극활용

규모별 특화형 | 15-1

영세기업도 한-미 FTA 활용할 수 있다!

1. 기업 및 제품소개

- U사는 종업원 10여명으로 비닐봉투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영세중소기업

단위 : 건, 천불

설립일자	업종	종업원수	수출건수	수출금액
1989년 4월	제조	10	57	2,138

- 제품소개 : 플라스틱제의 포장용기(제3923.21호)
 - 플라스틱제의 포장용기는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플라스틱 제품으로서 상자·케이스·바구니·색과 백·통·캔·카보이병·병 및 플라스크 등의 용기

2. FTA 활용전 상황

- 동사는 미국으로 비닐봉투를 수출은 하고 있었으나, 한-미 FTA에 대한 정보가 없고 이를 전담할 인력이 부족하여 한-미 FTA를 활용에 어려움이 있어 세관에 FTA 컨설팅 요청

3. 극복 방안

- 세관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을 통한 FTA 활용
 - 주요 수출물품(HS 제3923.21호)에 대한 원재료 소요내역 및 가공 공정을 확인하여 해당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안내
 -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 작성에 필요한 필수 기재사항 8가지 항목 안내 및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 권고서식 제공

- 미국 원산지 검증 대비 서류보관의무 사항 안내 및 원산지 서명카드, 원산지 작성대장 비치 안내

4. 활용 효과

●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 수출의 전체가 미국으로만 수출되어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시 연도별 0.3%씩 향후 10년 균등인하로 연간 6백~7백만 원의 관세혜택

HS 품명	기본	협정	혜택금액
3923-21.0000 플라스틱제의 포장용기	3%	2.7%*	6.4

* 2012(2.7%) → 2013(2.4%) → (매년0.3%씩 2021년까지 단계적 철폐) → 2021(0%)

- 한-미 FTA에 대한 정보가 없어 한-미 FTA를 통한 관세혜택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나, 세관의 1:1 FTA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한-미 FTA를 활용이 가능하게 되어 향후 바이어와의 가격 협상시 협상카드로 제시
- 대미 수출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0%정도 증가하였으며, 계속 주문량이 늘어나고 있어 향후 인력과 설비를 늘려나갈 계획

5. 시사점

- FTA에 대해 전혀 모르던 영세기업도 FTA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잘 활용한다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

규모별 특화형 | 15-2

영세 중소기업 제품, FTA로 북미시장을 날다

1. 기업 및 제품소개

- V사는 반도체 기술을 축적하여 한국신기술(NT) 인증, 신기술인정서(KT)를 획득한 업체로서 초정밀 가스감지기를 북미시장으로 수출
- 제품소개 : 초정밀 가스감지기 (제9027.10호)
 - 가연성 가스 또는 코크스로 가스발생로, 용광로 등의 연소가스 또는 연소부산물(연소된 가스)의 분석에 사용. 특히, 탄산가스, 일산화탄소, 산소, 수소, 질소 또는 탄화수소의 함유량을 측정용에 사용됨.

2. 장애 요소

기술자에게는 FTA가 너무나도 먼 길!

- V사는 CEO를 포함하여 엔지니어링 3명, 자재관리 1명, 경리직원 1명으로 이루어져 있어 FTA 관련 업무를 담당할 직원 부재.
- FTA 활용하고자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청 등에서 실시하는 FTA 교육을 참석하였지만, 원산지소명서, BOM 등 관련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느껴 FTA C/O발급 포기

3. 극복 방안

-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FTA 집중 컨설팅
 - 관할세관은 V사가 작성한 BOM을 1차 분석 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사후검증 대비 등 종합적인 현장 컨설팅 실시

- 또한, 한-미 FTA C/O, 원산지확인서, 소명서, BOM, 공정도 등 관련 서류작성 추가 지원
- FTA 인식 전환이 FTA 혜택으로 직결
 - V사는 FTA 혜택이 수출자에게 직접 돌아오기 보다는 수입자에게만 수혜를 받는다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어 FTA 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 관할세관은 V사의 CEO, 직원과 3차례의 상담을 통해 한-미 FTA의 간접적인 관세특혜 수혜로 인한 가격경쟁력 확보로 미국, 캐나다 등 북미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줌

4. 활용 효과

중소기업의 새로운 역사를 쓰다



- 미국 바이어는 '11년에 단발적으로 500~700개의 소량으로 구매해 오던 가스감지기를 '12.3월 한-미 FTA 발효 후 관세 1.5% 감소, 현지 화물핸들링비용 1.2% 절약 등 가격 인하로 35,000개 계약
- V사는 미국을 거점으로 캐나다 등 북미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며, 한-미 FTA 활용을 통해 얻은 자신감으로 하반기에는 한-칠레 FTA를 활용하여 남미시장의 교두보 확보에 주력 예정

5. 시사점

- 인원이 소수인 영세기업체는 FTA 담당자 및 전문지식 보유자의 부재로 FTA 활용을 미리 포기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
- 그러나 세관 및 국내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참석 및 영세기업 대상으로 하는 집중 컨설팅에 참여함으로써 FTA 활용 기회를 획득

모델 16

완제품 생산자와 수출기업 협력형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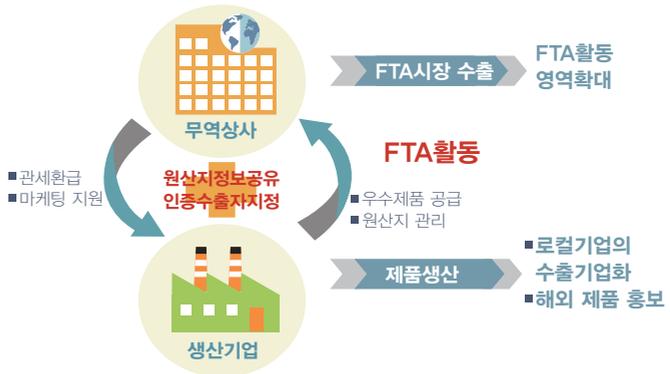
01 | 개요

- 생산기업(완제품생산자)과 무역상사(수출업체)간의 기업별 특화 분야에 대한 상호 협력, 관세환급 지원, 원산지관리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통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모델

02 | 비즈니스 모델

-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생산능력은 있으나 해외시장 개척능력이 미비한 생산기업과 FTA활용능력 및 수출시장 확대능력은 갖추고 있으나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한 무역상사가 다수 존재
- 무역특화기업은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FTA특혜세율로 저가에 수출할 수 있어 수출 경쟁력 향상
- 생산특화기업은 무임으로 해외에 자사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으며, FTA 활용능력 배양으로 수출기업화 가능

완제품 생산자와 수출기업 협력형 모델



03 | 활용 및 확산분야

- 무역상사 등 수출입을 업으로 하는 기업

규모별 특화형 | 16-1

협력사와 상생(相生) FTA로 글로벌 동반성장 이끈다

1. 기업 및 제품소개

- W사는 클리닝 유닛 등 소모성 자재를 국내 완제품 생산업체로부터 납품 받아 EU, 아세안 등 협정 체결국으로 원상태 수출
- 제품소개
 - 클리닝 유닛 (CLEANING UNIT, 제8424.89호) : 분사·살포 또는 분무의 형태로 증기·액체 또는 고체의 물질을 분사하거나 살포 또는 분무하는 기기
 - 다이버터 컨베이어 (DIVERter COVEYOR, 제8428.33호) : 물품을 이동시키면서 여러 레인(lane)으로 구분되도록 분류해주는 시스템

2. FTA 활용전 상황

- W사는 제조하지 않고 국내 완제품 생산업체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수출만 하기 때문에, 원산지판정을 위한 BOM, 제조원가 등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기 어려움

3. 장애 요소

- 산업자재 유통서비스(구매대행사)의 업무특성
 - 실질적으로 제조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국내제조사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수출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BOM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지 않음
 - 원산지 판정시 제조사로부터 BOM을 획득하기가 어려움(단가 등 공개 꺼림)

- **협력사의 기업정보 접근성 제약**
 - 실질적으로 원산지의 정확한 판정을 위하여는 제조원가, 중간재등의 산정, 및 관세평가와 관련된 기본사항들을 정확히 알아야하는 바, 이에 대한 협조를 얻기 어려움
- **다수의 협력사 관리**
 - 대다수 업체가 영세하고, 제조사라 하더라도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아 수많은 제조사들을 하나하나 관리하는 어려움 존재

4. 극복 방안

- **마중물* 프로젝트**
 - 협력사와 함께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중소기업 FTA체결 국가의 수출의 물꼬를 열어주는 역할 수행
 - * 마중물 활용 : 펌프에서 고인물(협력사인 중소기업의 FTA 미활용)이 잘 나오지 않을 때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붓는 물(마중물)로써 社가 마중물 역할을 하여 협력사와 함께 FTA 활용을 높이도록 지원
- **품목분류 확인**
 - 수출하는 물품이 신규 아이템인 경우, 관세청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활용
 - 기존 아이템은 관세사의 DB 공유, 관세사 자문 활용
- **협력업체의 원산지 관리**
 - 수출품목에 대한 기본 교육, 고객사 ERP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연동
- **전사적 원산지 관리**
 - 프로그램을 웹으로 구현함에 따라 다수의 영세업체가 인터넷에 접속하여 원산지 포괄확인서 제출가능
-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지정**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2011.10.20)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2012.02.08)

5. 활용 효과

- 중소기업의 FTA활용 및 관세환급기회 제공
 - W사를 통하여 FTA체결국으로 수출경쟁력을 얻은 중소기업에게 제공되는 또 하나의 혜택은 바로 관세환급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
 -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수출을 하게 되는 경우, 구매대행업체가 수출자로 지정되어있고, 환급 또한 수출자로 지정하여 실제로 물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이 원재료 등을 구매할 때 납부하였던 관세는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였으나, W사의 '중소기업 상생' 실천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관세환급 기회를 제공
- 마케팅기회제공
 -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신하여 기존의 W사의 Global Infra를 이용한 중소기업 제품의 꾸준한 홍보(FTA 발효국의 경우 가격경쟁력 홍보) 및 각종 해외 전시회 참가로 인하여 중소기업 제품을 알리며, W사가 보증함으로써 초기 시장개척을 위한 막대한 마케팅 비용의 절감혜택을 향유
- 영업판로 확장을 통한 수출증대
 - 기존의 W사의 구매관리 서비스를 이용하여, Global 고객의 needs를 파악, 수출을 진행할 여력이 없는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을 홍보하며, 획기적인 중소기업 신제품을 연구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해외 구매자를 개척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다각화를 위하여 노력

6. 시사점

- **(협력사 해외진출 지원)** 협력업체들과의 상생경영을 위해 노력해온 W사는 FTA를 통하여 협력 중소기업들이 보다 수월하게 해외에 진출·우수 중소기업 제품 발굴 및 수출지원
- **(협력사 '성장발판' 마련)** 협력사의 품질확보 및 FTA 원산지관리 지원, 상생협력프로그램을 지속 강화함으로써 동반성장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 W사를 통하여 수출하는 것만으로도, FTA 발효국 바이어와의 가격협상력 제고로 간접 '성장발판' 마련(매출확대 ▲)

규모별 특화형 | 16-2

생산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FTA활용 극대화

1. 기업 및 제품소개

- X사는 수용도료(페인트)용 첨가제인 폴리아크릴아미드를 수출
- 제품소개 : 폴리아크릴아미드(HS 제3906.90호)
 - 유기산과 아민이 반응하여 생기는 아미드 결합을 가지는 중합체. 일반적으로 강도, 염색성이 우수하여 대부분 섬유로 사용되며, 내마모성이 뛰어나서 기계부품으로도 사용됨

2. 활용 과정

1. FTA 활용 어려움과 극복과정

1) FTA 활용상의 어려움

- 원산지기준이 세번변경기준으로 원재료에 대한 품목분류가 매우 중요하나, 세번분류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어 화학원재료에 대한 세번분류가 곤란
- 최종수출업체로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와 원재료 내역에 대한 HS분류 등은 직접적인 물품의 관리가 아닌 서류(원산지확인서)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여 공급업체도 인증을 받음으로써 이에 대한 불안감 해소 가능

2) FTA활용을 위한 경영방법 변화

- 최종 수출물품을 공급하는 업체와 FTA 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공동 인식하고 상호협력을 강화하여 수출물품에 대한 정보 공유
- 두 업체 모두 한-EU FTA 인증수출자를 취득함으로써,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원산지 증명서류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FTA 활용혜택 극대화

3. 활용 효과

- FTA 활용에 따른 (예상)경제효과 : 연간 1.6억 관세절감효과 발생

수출국	연간 수출액(\$)	관세율		관세 절감액 (천원)
		현행	FTA	
미국	1,040,000	6.5%	0%	75,712
유럽	838,000	6.5%	0%	61,006
칠레	353,000	6%	0%	23,722
아세안	190,000	6.5%	5%	2,128
계	2,421,000	-	-	162,568

- 수출실적

- FTA국가로의 수출은 증가 추세로서 미국은 약 7억3천만 달러, EU로는 1억5천만 달러 수출증가를 기록함

- 한-EU FTA 활용을 위하여 인증받은 품목 이외 추가로 수출하는 품목에 대하여 추가로 인증을 신청하고 이를 통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수출물품에 대한 FTA활용 효과 향유
- 자율증명방식을 통한 원산지증명서 발행을 통하여 FTA활용이익을 극대화하고 원산지 사후 검증에 대비하여 원산지증빙서류 보관 의무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

4. 시사점

- FTA활용의 극대화 및 정착을 위해서는 수출물품의 수출자와 원제품 공급자, 원재료 공급자 등 모든 연관 기업에서 FTA활용의 중요성을 인식

모델 17

체약상대국 FTA를 활용한 생산·물류거점 활용 모델

01 | 개요

- 수많은 지역무역협정 중에서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뿐만 아니라, 체약상대국이 체결한 FTA까지 활용하여 2중의 관세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모델

※ FTA 체결흐름으로 전 세계 지역무역협정 (RTAs)은 총 585개 체결되었고 그 중 379개 발효됨(2014년 6월 15일 현재 WTO에 접수된 건수 기준)

02 | 비즈니스 모델

- 원료 및 반제품을 체약상대국에 수출하고, 체약국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제3국으로 무관세 수출
 - 우리나라-체약상대국 FTA와 체약상대국-제3국 FTA의 연속 활용을 통한 2중 관세절감 효과
 -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 생산시설을 설립하여 물류 비용을 절감하고 제3국간의 FTA도 활용할 수 있음

체약상대국 FTA를 활용한 생산·물류거점 활용 모델



03 | 활용 및 확산분야

- FTA 체약상대국에 현지공장 또는 협력공장이 있는 기업

규모별 특화형 | 17-1

해외 생산시설 설립으로 FTA 2배 활용!

1. 기업 및 제품소개

- Y사는 미국 자동차부품회사 E사의 아시아 지역 납품 총괄하고, 국내 생산기지 역할 수행 및 물류관리를 대행하는 자동차부품 생산 업체로 매년 생산량의 90% 이상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음
- 제품소개 : 자동차부품(HS 제8708.99호)



2. FTA 활용전 상황

- 생산제품의 90% 이상을 주문하는 미국 바이어로부터 한-미 FTA발효 이전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요청 쇄도
- 對미 수출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해 자체 원산지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FTA를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

3. 장애 요소

- FTA의 활용으로 바이어의 주문이 증가하여 매년 수출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원유 값 상승이 장기화됨에 따라 매년 물류비용도 함께 증가하여 이익의 증가폭이 크지 않음

4. 극복 방안

- 對미 수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에 1,500평 규모의 생산 기지 확충을 계획
 - 원부자재를 FTA를 활용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고 미국현지에서 완제품을 생산함으로써 물류비를 절감하고 NAFTA 등 미국이 제3국과 체결한 FTA를 연속적으로 활용할 예정

5. 활용 효과

- **(수출 증가)** 한-미 FTA 발효 전 철저한 사전 준비에 의한 FTA활용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수출액이 100% 증가
- **(물류 거점)** Y사는 생산물품의 원산지 지위를 확보하여 현지의 생산 시설을 확충하고 및 생산량을 증가시켜 미주 지역 납품 총괄책임이자 물류거점으로서의 위상을 제고

6. 시사점

- 對미 수출량 증가 및 캐나다, 멕시코의 신규 수요에 대비하고 NAFTA 등 미국이 제3국과 체결한 FTA를 연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장이전을 통한 생산설비 확대를 결정



제2장

원산지관리 효율화형

▶ 구매선 및 생산시설 전환

모델 18	역외산 재료의 국내산 전환 모델	100
모델 19	비체약국에서 체약국으로 구매선 전환 모델	105
모델 20	비체약국에서 체약국으로 임가공 전환 모델	112
모델 21	FTA활용을 위한 생산시설 국내유턴 모델	115
모델 22	FTA를 통한 해외투자 유치형 모델	123

▶ 원산지관리 역량 강화

모델 23	트레이스(Trace) 방식 원산지관리 모델	128
모델 24	다단계거래 단순화 모델	134
모델 25	원산지 검증을 활용한 FTA학습 모델	139

▶ 비용절감

모델 26	수출입 쌍방향 FTA 활용 모델	144
모델 27	FTA로 인한 가격인하 활용 모델	149
모델 28	관세환급과 FTA특혜 동시 활용 모델	154
모델 29	기술력과 FTA인하효과 활용 모델	160
모델 30	고용효과 창출형 FTA 활용 모델	170



모델 18

역외산 재료의 국내산 전환 모델

01 | 개요

- 기존에 역외산에 의존하던 주요 부품을 국내조달(원산지확인서 징구) 하거나 직접 생산하여 역내산 재료로 전환하는 모델
 - 원재료의 국산화를 통해 국내 부가가치 창출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

02 | 비즈니스 모델

- 완성품을 구성하는 주요 원재료가 역외산 재료인 경우 원산지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

〈예시〉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완성품의 HS코드와 동일한 역외산 재료 사용

(부가가치기준인 경우) 완성품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역외산 재료 사용

역외산 재료의 국내산 전환 모델



- (유의사항) 수출시 관세인하 혜택이 국내조달에 따른 생산비 상승보다 더 큰지 확인하고, 부품 구매선 전환 효과에 따른 분석이 필요함

03 | 활용 및 확산분야

- 협력사에게 원산지 확인서류 수취가 곤란한 기업

원산지관리 효율화형 | 18-1

원산지확인서 수령으로 FTA특혜세율 적용

1. 기업 및 제품소개

- 사는 경기도 김포시에 소재한 업체로 무산소 동판, 관, 봉 등을 제조하는 업체임
- 주요 수출 품목 : 무산소 동판, 관, 봉(HS 제7409호, 제7411호 등)

2. FTA 활용전 상황

- 국내거래업체로부터 Brass Tube, Brass Rod 등을 공급받아 필요한 형태, 크기로 가공하여 수출
- 공급받는 원재료와 완제품의 세번이 같아 C/O를 발급하지 못하고 있어 FTA 혜택 없음

3. 장애 요인

- 공급받는 원재료와 완제품의 세번이 변경되지 않아 원산지 불충족
- 국내 납품업체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발급받음으로써 FTA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납품업체의 무지 및 비협조로 어려움

4. 극복 방법

- 세관의 컨설팅을 통해 원산지결정기준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지만 국내 업체로부터 한국산 원재료를 공급받고 있으므로 원산지기준 충족 가능하다는 사실 확인
 - 해당 제품의 원재료 공급업체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제공받을 수 있다면 FTA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납품업체의 원산지증빙서류 확보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므로 세관 컨설팅을 토대로 원산지확인방법, 원산지결정기준 등을 교육하고 설득함으로써 증빙서류 확보

5. FTA활용 효과

- 한·미 FTA 적용시 약 1.4~3% 관세 혜택 및 물품취급수수료 절감 가능 (발효 전 75천불 → 89천불로 14% 증가)
- FTA 관세 혜택시 원가 절감으로 미국으로의 수출물량 증가 예상

6. 시사점

- 원산지기준 충족을 위한 국내산원재료 사용을 촉진하고 원산지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확인서 등의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수출업체가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

원산지관리 효율화형 | 18-2

무한경쟁시대에 FTA 신형엔진 장착

1. 기업 및 제품소개

- J사는 세계 4위의 방송용 HD 모니터 제조업체로 뛰어난 품질의 제품을 KBS, MBC, SBS 등 국내지상파는 물론 BBC, NBC, HBO 등 굴지의 해외방송국에도 공급하고 있음

2. FTA 활용전 상황

- '08년부터 지속된 세계 경기의 동반침체는 방송국의 광고수입 감소에 따른 투자 축소로 이어져 미주 및 유럽시장을 중심으로 방송장비의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는 상황

3. 장애 요인

- 주요 원재료가 수입 물품으로 부가가치기준 충족이 불가능
- 동 업체는 원산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실무자가 없고, 관련 담당자조차도 FTA 관련 정보를 얻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4. 극복 방법

1. 주요 원재료 국내산으로 대체

- 방송용 모니터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LCD 패널이 한국산이어야 하므로, 기존에 일본, 대만 등지에서 수입하던 구매선을 국내로 전환

원재료명	비고
LCD 패널	모니터의 영상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부품
전자부품	IC 종류 포함
기구자재	각종 부품을 고정하고 모양을 갖추게 함

5. FTA활용 효과

〈정량적 효과〉

- **(미국 수출증가)** FTA 체결국 중 미국 수출금액이 발효 전 4,443천 달러에서 4,962천달러로 11% 증가됨에 따라 세관의 1:1 맞춤 컨설팅, 전화상담 등의 FTA 활용지원 대책이 결실을 거두는 것으로 분석
- **(EU 수출증가)** EU 수출금액 또한 발효 전 8,629천불에서 11,162천불로 무려 29% 증가하였으며, 이는 EU 시장이 경기침체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상황을 고려해보면 상당히 고무적인 성과인 것으로 판단

기간	EU 수출금액(천불)	미국 수출금액(천불)
발효 전	4,443	8,629
발효 후	4,962	11,162

- **(가격 경쟁력 확보)** 세계 방송용 모니터 시장은 SONY, JVC, Panasonic 등 메이저급 외에도 동사를 포함한 중소기업인 Mashall(미국), HD2Line(독일), Vutrix(영국) 등 20여개사가 제품을 생산, 공급하는 완전 경쟁형태의 시장
- '08년부터 '12년까지 세계 디지털 방송용 모니터 시장은 연평균 약 9.1%의 성장률을 보인 반면, 동사의 최근 5년간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연간 약 15%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향후 한·EU 및 한·미 FTA 활용으로 지금까지보다 더 높은 성장이 기대되고 있음

6. 시사점

- 원산지기준 충족을 위한 국내산원재료 사용을 촉진하고 원산지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확인서 등의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수출업체가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

모델 19

비체약국에서 체약국으로 구매선 전환 모델

01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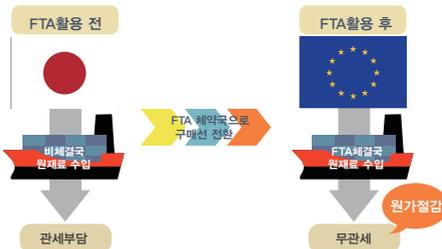
- 국내에 대체 원재료가 없거나 생산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수입 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수입 시 부담해야하는 관세를 절감할 수 있는 모델

02 | 비즈니스 모델

- 비체약국에서 수입하던 원재료(관세有)를 FTA 체결국 재료(관세無)로 구매선을 전환
 - FTA 체결국에서 수입할 경우, 협정세율 적용으로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하고 이는 곧 판매가격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음
 - 또한 FTA 체결국산 원재료를 사용할 경우 한국산 재료로 간주하는 누적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이 보다 용이해짐



비체약국에서 체약국으로 구매선 전환 모델



03 | 활용 및 확산분야

- 모든 산업분야 및 FTA
 - ※ (유의사항) 원재료를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할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면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이에 따른 비용(운송비 등)과 협정관세 혜택과 비교하여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

원산지관리 효율화형 | 19-1

FTA 활용, Step by Step

1. 기업 및 제품소개

- K사는 터치패널과 차단기,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같은 산업용 자동 제어장치와 인버터, 서보드라이브, 모션 컨트롤러, 로봇으로 이루어진 산업용 모터 구동장치를 개발·생산하는 기업
- 제품소개

SERVO	INVERTER
 <p>시간과 거리가 변화 또는 정밀하게 회전수 등을 제어하는 기능을 가지며 주로 공장 자동화 장비에 사용</p>	 <p>직류전력을 교류전력으로 변환하는 장치 (역변환장치)</p>

2. FTA 활용전 상황

- 동사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미국으로 對美 수출금액은 전체 수출금액의 약 70% 수준이며, 수출물품의 실행세율은 2.7%이나 한·미 FTA 발효 후 협정세율 0%가 적용되어 상대국 수입자의 관세절감 효과가 연간 426백만원('11년 기준) 상당으로 FTA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

3. 장애 요인

1. 어느 부서에서 누가 맡을 것인가?

- 각 부서에서는 인원 충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FTA와 관련 있는 부서인 구매, 총무, 영업 중 어느 부서에서 책임지고 업무를 진행할 것인가?라는 현실적 문제에 부딪힘

2. FTA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다?

- FTA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음. 예를 들어, 원산지관리는 무엇이며, 'MADE IN KOREA'는 한국산이지, 역내는 무엇이고, 역외는 무엇인지?

3. FTA 굳이 왜 해야 하는가...?

- 다른 중소기업에서는 FTA 단어의 뜻도 모르는 곳이 많은데 서둘러 할 필요가 있겠는가? 차후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정부에서도 어떤 대책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때 움직이지 지금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분위기가 회사 내에 지배적임

4. 사후에 검증 등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4. 극복 방법

- 세관의 컨설팅으로 원산지관리에 대한 이해 증진
- 원산지관리시스템 『FTA-PASS』 활용
-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취득
- 수출검증에 대비하여 평택세관을 통한 사후관리 컨설팅 완료
- 비체약국 수입원재료에서 체약국 원재료로 변경 검토

5. FTA활용 효과

- 수출증대 및 관세절감 효과

수출증대 및 관세절감 예상액

년도	수출(예상)금액	실행세율	협정세율	관세절감예상액
2011년도	208억원		협정 미 발효	
2012년도	297억원	2.7%	0%	8억원
2013년도	425억원	"	"	11.5억원
2014년도	608억원	"	"	16.5억원

※ 한·미 FTA를 적극 활용할 경우 '12년부터 3년간 총 1,330억원 상당의 對美수출이 예상되며,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율이 2.7%에서 협정세율 0%로 적용되어 3년간 약 36억원의 상대국 수입관세 절감 효과 기대(수출예상금액은 '10년 대비 '11년 對美 수출 증가률인 143% 적용)

6. 시사점

- 원자재의 비체약국에서 체약국으로 구매선 전환을 통해 FTA 협정관세 적용시 매년 1억원 정도의 수입관세 절감 효과 기대
 - 관세철폐 및 원가절감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원산지관리 효율화형 | 19-2

FTA 활용과 변화

1. 기업 및 제품소개

- L사는 1956년 국내 최초 자동차용 타이어를 생산한 이래 70여년간 축적된 노하우로 양질의 제품을 생산, 현재보다 내일을 준비하는 기업
- 제품소개
 - 승용차용 타이어(HS 제4011.10호), 버스용 및 화물차용 타이어(HS 제4011.20호)

'11년~현재, 단위 : 건, 백만불

FTA별 수출개요

FTA	건수	금액		비고
		금액	비중(%)	
한·미	7,469	488	47.3	최대 수출시장
한·EU	2,389	178	17.2	영국(743), 독일(599), 벨기에(214) 등
한·아세안	685	26	2.5	태국(235), 싱가포르(173), 말레이시아(144) 등
한·인도	40	1	0.09	-
한·EFTA	96	9	0.87	스위스(63), 노르웨이(33)
기타	3,586	326	31.6	호주(695), UAE(445), 일본(226) 등

2. FTA 활용전 상황

- 거대수출시장인 미국과 EU FTA 발효 전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음
 - 미국 수출이 수출물량의 약 47%를 점하고 있어 한·미 FTA발효로 상당한 혜택(한·미 FTA 발효로 관세율이 4%→ 3.2%→ (5년 후) 0%로 철폐되는데 발효 후 첫해에만 3천9백만불 상당의 관세혜택이 예상)을 볼 수 있으나 자율증명 원산지증명방식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부족
 - EU 수출이 수출물량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는데 한·EU FTA 발효로 상대국 바이어가 관세 혜택(한·EU FTA 발효로 관세율이

4.5%→3.3%→0%(3년 후)로 철폐되는데 발효 후 첫해에만 2백1십만불 상당의 관세혜택이 예상)을 보기 위해서는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이 필수

- FTA를 활용하기 위한 원산지 관리 전담자가 없고, 업체 내 FTA 활용 분위기 또한 조성되어 있지 않음

3. 극복 방법

- 세관 맞춤형 컨설팅 제공을 통한 FTA 활용

- 주요 수출물품(HS 제4011호)에 대한 원재료 소요내역 및 가공공정을 확인하여 해당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안내
- 품목별인증을 받을 타이어의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CTH)에 해당되어, 완성품에 들어가는 원재료 세번의 4단위가 바뀌지 않을 경우 국내산을 증명하기위해 원산지(포괄)확인서(실무상 거래명세서 징구)를 구비할 필요가 있음을 주지
- 전산시스템을 통해 원산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FTA-PASS 안내

-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

- 한·EU FTA 발효에 대비하여 2010년 초반부터 인증수출자격 취득을 위한 BOM 정비 및 수입원재료의 품목분류 및 원산지정보의 확인을 위한 추가 시스템 구축으로 보다 정확한 DATA 체계 완비

- ▶ 2010년 11월 3개 협정(한·EU, 한·아세안, 한·EFTA) 2개 품목(HS 제4011.10호, 제4011.20호)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취득

4. 활용 효과

- (정량적 성과) 한·EU 및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실질적인 매출액 증가(FTA 발효 직후부터 100% 활용)

단위 : 천불

한·EU FTA		기간	전체 매출액	유럽	매출액 대비 비중
발효 전	'11년 1월	55,092	10,494	19%	
	'11년 2월	43,445	7,847	18%	
	'11년 3월	57,612	10,079	17%	
	'11년 4월	58,960	10,543	18%	
	'11년 5월	53,205	11,112	21%	
	'11년 6월	59,920	13,940	23%	
발효 후	'11년 7월	47,629	14,547	31%	
	'11년 8월	59,106	17,996	30%	
	'11년 9월	53,486	13,373	25%	
	'11년 10월	59,849	12,507	21%	
	'11년 11월	64,558	15,282	24%	
	'11년 12월	60,073	10,763	18%	

단위 : 천불

한·미 FTA		기간	전체 매출액	미국	매출액 대비 비중
발효 전	'11년 12월	60,073	26,674	44%	
	'12년 1월	58,858	27,872	47%	
	'12년 2월	64,196	32,636	51%	
발효 후	'12년 3월	66,625	32,902	49%	
	'12년 4월	66,900	36,774	55%	
	'12년 5월	76,363	39,656	52%	

- **(정성적 성과)** FTA로 인한 수출물량 증대에 따른 국내 제2공장 준공 및 운영 ▶ **타이어 A공장(2년간 5,500억원을 투자하여 '12.03. 시험가동 시작. 자동차/부품/타이어를 통틀어 국내에서 가장 진보적인 자동화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글로벌 타이어 업계에서도 가장 우수한 생산 공장 중 하나)

5. 시사점

(모델화 의견) 비체약국에서 체약국으로 구매선 전환

- **(수입)** 설비 및 기자재를 수입할 경우 EU 및 미국보다 5~10% 가량 저렴한 FTA 미체결국인 일본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FTA 체결로 인하여 수입관세분 8%가 상쇄**되어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
- **(수출)** 가격 경쟁력 강화 : FTA협정세율을 적용으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로 생산비용 절감은 곧바로 판매가격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미국, 유럽 및 **여러 FTA 체결국에서의 매출증대**와 함께 향후 중국과의 FTA 협정체결을 대비한 중국 공장제품과 한국산 제품의 **상호 원가 절감**을 통한 수익증가, 매출증가를 기대하고 있음

모델 20

비체약국에서 체약국으로 임가공 전환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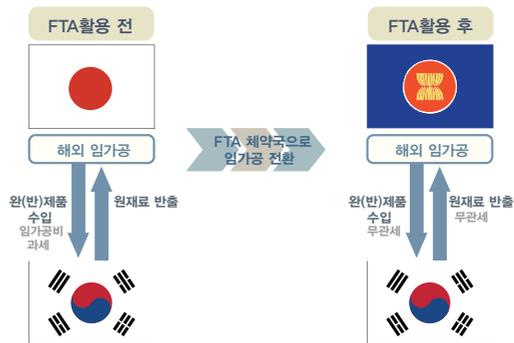
01 | 개요

- 비체약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임가공을 FTA체약국으로 이전하여 원재료 수출시, 완(반)제품 수입시 모두 FTA 활용 모델
 - * 해외에 임가공 공장을 설립하거나, 파트너십을 통해 임가공을 수행하고 있는 아국기업 상당수가 최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02 | 비즈니스 모델

- 인건비 등으로 해외에서 임가공 후 완(반)제품을 수입하는 업체의 경우 FTA를 활용하게 되면 원재료뿐만 아니라 완(반)제품 전체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
 - * 관세법 101조에 의한 해외임가공 감면 시에는 원부자재에 대해서만 면세
 - 원부자재 뿐만 아니라 왕복운임 및 임가공비를 포함한 당해 수입물품 전체에 대한 협정관세가 적용되므로 원가절감이 가능
 - 원부자재 수출시, 완(반)제품 수입시 양방향 FTA활용 가능

비체약국에서 체약국으로 임가공 전환 모델



03 | 활용 및 확산분야

- 종전 임가공국과 수출 대상 임가공국의 임금 등 여건이 유사한 경우 활용 유리

원산지관리 효율화형 | 20-1

한-아세안 FTA, 해외임가공에도 도움이 되요

1. 기업 및 제품소개

- M사는 산업용 안전화(HS 제6403.40호)의 국산 부자재(갑피 등)를 해외임가공을 거쳐 완성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업체

2. FTA 활용전 상황

- 국내산 원부자재를 중국 청도 등 임가공을 통한 신발 갑피(HS 제6406.10호)를 제조한 후 국내에 반입하여 안창·밑창 및 법랑 코팅처리한 스틸TOE를 삽입 안전화 완제품(제6403.40호)을 제조·생산 후 국내 납품 및 일부 수출
- FTA는 수출 완제품에 대해서만 활용

3. 장애 요인

- 중국 임가공시 매년 인건비 상승, 임가공비 30%이상 인상 및 관세부담
- 국산 원부자재 공급업체의 품목분류 등 원산지 관리능력 열악

4. 극복 방법

- 세관에 통관애로 신청
 - 국내 소규모 영세 원부자재 생산 납품업체 15개사의 24여종 상품
- 세관 지원팀 기업현장 방문 1차 FTA 활용 지원
 - 수출자 및 15개 납품업체(24개품목)가 원활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 지원을 위해 기업현장 방문 합동 컨설팅 실시
- ▶ 가죽, 원단, 실 등 일부품목에 대한 품목분류 재검토

- 원산지결정을 위한 제2차 품목분류 지원
 - 세관, 분석실 및 수출자 합동 개별원부자재 품목분류 최종 확정
- 既 수출건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원 완료
 - 원부자재 납품업체의 원산지확인서 발급으로 기 선적건 원산지 증명서 발급
- 원활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품목별 인증수출자 지정 완료(11개 업체)

5. FTA활용 효과

- 동사는 사양산업인 신발(안전화)을 제조하면서 자체 기술개발 및 중국 해외임가공을 통한 인건비 등 원가절감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나,
 - 중국 인건비(인건비 상승 연 20%) 및 관세부담 등으로 해외임가공을 FTA체결국인 인도네시아로 이전함으로써 연 20%이상 원가절감 효과 시현
- 정량적 성과 : 전체 수출금액 20%이상 증가
 - 아세안 국가로의 수출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300%증가('12년 상반기)
 - * '12년 하반기부터 중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전면 철수시 수출실적 추가 증가

6. 시사점

- **(특징)** 국산 원부자재를 사용 해외임가공을 거쳐 신발(안전화) 완성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기존 해외임가공을 중국에서 FTA체결국(인도네시아)으로 이전하여 인건비 및 관세특혜로 원가절감 등을 통한 수출 및 이윤 증대
 - 국내 영세 원부자재 생산업체(15개업체) 고용 창출 등으로 이어짐으로써 수출입 동시에 한-아세안 FTA활용을 극대화
- **(시사점)** 수출업체의 매출증가는 국내 영세 원부자재 납품업체의 매출증가 및 고용창출로 이어져 1+15로 동반성장할 수 있는 모델로 해외 임가공 비중이 높은 기업에 확산 가능

모델 21

FTA활용을 위한 생산시설 국내유턴 모델

01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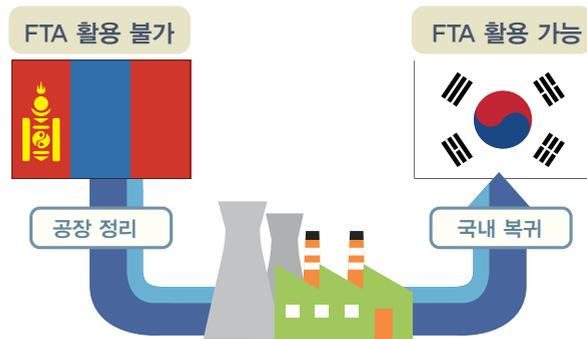
- FTA 비체결국에 진출해 있는 국내기업이 한국에 유턴(U-turn)하여 미국, EU 등 우리나라와 체결된 FTA 국가에 직접 수출 모델

02 | 비즈니스 모델

- 한국이 미국, EU 등 다수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여 FTA허브국가가 됨으로써, 생산비 감축 등의 이유로 해외로 이전했던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게 될 경우 FTA활용을 통한 가격경쟁력 강화효과 향유 가능*

* 최근 해외에서 외자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인건비 및 생산비 상승 등에 따라 국내로 유턴(U-turn)을 고려하는 기업들이 증가

생산시설 국내 유턴 모델



03 | 활용 및 확산분야

- 모든 산업분야 및 FTA

※ (참고사항) 의류산업의 경우 對미 수출시 6~32%의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국내 회귀를 통한 對미 수출 전략 수립 가능

원산지관리 효율화형 | 21-1

국내 유턴을 통해 옛 영광을 재현하다

1. 기업 및 제품소개

- N사는 국내 제품 생산은 물론 베트남에 소재하는 자체 공장이 있으며, 일부 품목은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등지의 협력공장에서 하청 생산하는 등 연간 약 400만 켤레 이상 신발을 생산·수출하는 글로벌 신발 업체



스포츠화



등산화

2. FTA 활용전 상황

- 국내경기 침체로 인해 내수판매 중심에서 벗어나, 거대 경제권인 EU, 미국 등으로 시장 진출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
- 최근 발효된 한-EU·한-미 FTA로 낮아진 관세 혜택 효과를 누리기 위한 FTA 활용과 중국 인건비 상승, 원부자재 상승 등으로 중국 공장의 국내 유턴을 통한 국내 첨단생산시설 확충이 현안과제

3. 장애 요인

- 신발산업에서 'Made in Korea'의 브랜드 가치가 중국산보다 훨씬 높는데다 최근 FTA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갖추면서 한국을 떠났던 글로벌 신발업체들이 기술력과 관세혜택을 가진 한국으로 점차 눈을 돌리고 있음

- 그러나, 그동안 싼 인건비 등으로 생산기반이 중국이나 동남아로 많이 넘어가 국내 제조기반이 열악해져 있어 주문을 소화해내기 어렵고, 국내로 돌아오고 싶어도 부지가 없어 돌아오기 힘든 상황

4. 극복 방법

- ‘신발 집적화단지’ 유치를 통한 국내 유티 기반 조성
 - 한국신발산업협회를 중심으로 1년간에 걸쳐 관계기관인 부산시, 산업통상자원부, 부산·진해 경제자유 구역청, 도시공사 등에 신발 산업의 환경 무해성을 입증·주장하여, 산업변경단지 계획 변경 승인
 - U턴 기업의 경우 입주를 위한 부지 및 인력 확보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데 최근, 부산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에 10만㎡ 규모의 새로운 신발산업 집적화단지 조성이 확정
- ▶ 신발산업 집적화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학산은 중국으로 진출한 주문자 상표부착 제품을 생산하는 중국 공장을 정리하고 이 단지로 이전

5. FTA활용 효과

- 제품 경쟁력 및 국내 생산량 증가
 -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향후 5년간 예상 재무제표와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연 16% 지속 성장을 예상 (순이익 6억원▶18억원으로 3배 증가)
 - 국내에 신규 생산라인 증설시 현재 月25,000족의 국내 생산규모가 月75,000족으로 확장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한 공장운영의 효율성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
- 국내 고용창출 효과
 - 국내 U턴(생산라인 2개 증설)으로 인해 기존 국내 직원 97명의 3배에 해당하는 235명의 인원이 추가로 필요

6. 시사점

- 생산공장을 국내로 이전하여 FTA를 활용하여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지역내 고용활성화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

원산지관리 효율화형 | 21-2

FTA... “생산물량을 국내로 U턴 시키다”

1. 기업 및 제품소개

- O사는 국내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드레스와 바지 등의 여성용 니트 의류를 만들어 90% 가량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DKNY, 빅토리아 시크릿 등 유명 패션 브랜드가 주요 고객임
- 제품소개

물품	사진	주요수출국	기본세율	협정세율	세제혜택
PULLOVER (제6110.30호)		미국 97.55%	최저 6% ~ 최고 32%	즉시철폐	최고 32%
DRESS (제6104.44호)		미국 94.11%	14.9%	즉시철폐	14.9%

2. FTA 활용전 상황

- 국내 생산라인 부족으로 한-미 FTA효과 미비
 - '07년 가격채산성 문제로 해외공장으로 이전. 미국으로 직수출

생산국가	생산라인	생산비율	공장
Vietnam	85 lines	68%	○○ 외 2곳
Indonesia	26 lines	20%	△△ 외 1곳
Phipippines	10 lines	8%	▲▲, ○○
Korea	4 lines	3%	A사, B사, C사

- 국내 생산비율은 총 생산의 3%로 FTA 효과 미미
- 밀려드는 미국 Buyer
 - 높은 세제혜택으로 인한 미국 바이어의 문의 쇄도
 - 관세혜택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극복 가능

3. 활용과정

- 국내공장으로 생산물량 U턴 결정
 - 베트남, 인도네시아 현지공장 생산 고급 의류제품 일부 국내 생산 결정
 - 국내 생산량 증가 계획 수립('13년까지 '11년 물량의 5배 생산)

▶ 협력업체 생산라인 증가

국내생산물량 증가 계획

년도	국내생산금액	증가율
2011	800만 달러	-
2012	2,000만 달러	250%
2013	4,000만 달러 (*'11년 매출의 1/3)	500%

국내협력업체 생산라인 증가
예) ○○섬유

- 한-미 FTA맞춤형 제품 개발 박차
 - 제품과 원단별로 관세혜택이 큰 품목을 조합해 BUYER에게 제안
 - 높은 관세로 시도하지 않은 울, 레이온 등의 다양한 소재개발 진행

4. FTA활용 효과

- 높은 관세혜택으로 수출가격 경쟁력 향상 및 인건비 부담완화
 - * 제6104.43호 (원피스) - '12년도 2,279천불 × 14.9% = 339천불 절감
- FTA 활용으로 수출자 및 수입자 동반 혜택(win-win)
- 해외 생산물량의 국내이전으로 국내 의류산업 활성화에 기여
 - 생산라인 증설 및 고용확대로 침체된 국내 의류업체에 활력

5. 시사점

- 국내 인건비 부담으로 동남아시아 등 해외공장으로 생산을 돌렸던 의류산업이 한-미 FTA 발효로 인건비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됨
- 국내 생산공장으로 생산라인을 전환함으로써 수입자-수출자-생산자 모두가 FTA 열매를 향유
- 가격경쟁력이 높은 원사 및 직물을 개발하여 의류 산업 전체의 활성화

원산지관리 효율화형 | 21-3

FTA로 주얼리 연합의 새로운 꿈을 꾀다!

1. 기업 및 제품소개

- P사는 반지, 목걸이, 귀걸이 등 신변장식용품을 제조 수출하는 업체로서 북미시장을 중심으로 유럽, 호주, 아시아 등 전세계를 대상으로 최고 품질의 국산 주얼리를 제조·수출하고 있는 업체
- 주얼리 산업현황

시기	산업현황
~ '90.중	(호황) '70(미국), '80(일본), '90(한국)시장 활성화
~ '00.초	(공장이전) 한국업체들의 본격적인 중국으로 생산기지 이전
~ '05	(마지막 호황) '05년까지 수출 호조
'06~현재	(불황) 미국 불경기('06), 유럽발 경기침체('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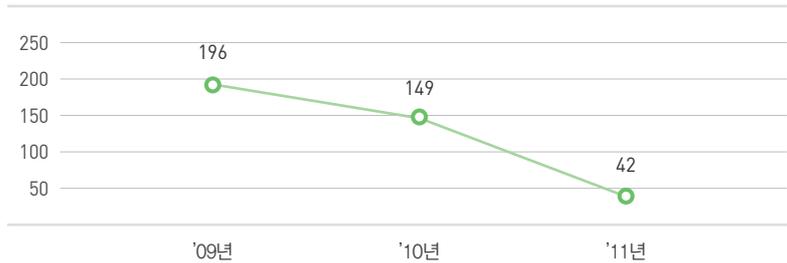
2. FTA 활용전 상황

- 정직한 기업의 꿈! 실패를 맞보다!
 - 정직한 기업의 건설을 꿈꾸며 진출한 중국에서 인건비 급상승, 전문인력 부재, 낮은 생산성, 생산비용 급증, 중국의 디자인 도용, 외국인투자자 차별 등 경영환경 악화
 -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경기 침체로 인한 미국 수출 급감
 - 누적되는 경영적자로 중국 공장 매각을 결정하고 한국으로 철수
- 주얼리 사업의 꿈을 다시 키우다
 -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협력업체 발굴
 - 타 제품과의 차별화된 디자인 개발
 - 뛰어난 품질로 저가의 중국산 제품과의 차별성
 - 중국 노동자에 비해 3배 높은 생산성
 -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주문생산을 통하여 재기의 발판을 마련

-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다

- 미국과 EU를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정하고 공격적인 마케팅 실시
- 유로존 경제악화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품질로 매출 증가
- 의욕적으로 진출한 미국시장에서 중국산 저가 제품에 밀려 매출급감

'09년~'11년 미국 수출실적



3. 장애 요인

- 한-미 FTA를 준비하다

- 한-미 FTA활용시 관세 3.9%~13.5%가 즉시철폐
- FTA 특혜관세로 중국산 제품의 장점인 가격경쟁력 무력화 기회

- 한-미 FTA 난관에 봉착하다!

- FTA활용 경험 부족, 복잡한 원산지 규정, 영세 협력업체의 비협조
- 정보의 부족으로 의지만 앞설 뿐 모든 것이 부족한 현실

4. 극복 방법

- 서울세관 FTA 컨설팅을 신청하다

- 기술력을 갖춘 국내기업에서 제작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수출물품을 제작
- 원재료 생산과정을 확인하여 원산지결정기준 CTH 충족 확인

- 협력업체의 관심을 유도하다

- FTA 활용의 기본인 원산지증빙서류의 확보 및 보관
- 협력업체 CEO를 설득하고 서울세관의 협력업체 교육지원 등 원산지관리능력을 향상

- 꿈을 향한 작지만 커다란 주얼리 연합을 결성하다
 - 개별 업체로서는 중국 기업과의 가격경쟁력을 추월하기 어려움
 - 영세 기업으로 국내에 공장 증설, 새로운 사업의 확대는 불가능
 - 포스테크노 126개 업체 연합회 대표로 당선된 것을 기회로 상인 연합의 단결을 통한 주얼리 연합의 꿈을 키우다
 - “MADE IN KOREA” Center 육성 Project 가동
 -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뛰어난 품질, 높은 생산성, 정확한 납품, FTA 특혜관세로 가격경쟁력을 확보 제2의 주얼리 전성기를 구가

5. FTA활용 효과

- 중국 제품의 저가 공세로 빼앗겼던 미국 수출이 빠른 속도로 회복
- 한-미 FTA활용으로 '12년 5월까지 수출실적이 '11년 전체 수출실적을 추월 하였으며, 지속적인 매출증가로 연말 '11년 대비 350% 매출 달성
- 주요 수출국인 캐나다와의 FTA를 준비할 수 있는 경험을 축적하였고, 한-캐나다 FTA 체결 · 발효시 수출증가에 큰 효과 발생 예상

6. 시사점

- FTA를 활용하기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들이 국내로의 회귀를 통해 FTA를 활용함으로써 재도약한 사례
- 아울러 영세중소기업들이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합을 결성하고 제품개발, 원산지, 증빙서류관리의 효율성 확보

모델 22

FTA를 통한 해외투자 유치형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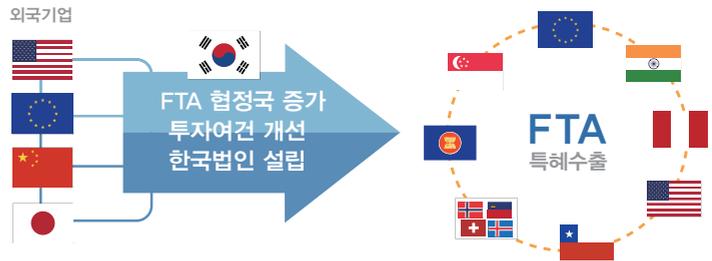
01 | 개요

- 외국기업들이 한국 투자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한국이 FTA 체결한 미국, EU 등 선진경제시장 뿐만 아니라 아세안, 인도 등 신흥경제 시장으로의 FTA 활용 수출을 가능하게 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투자 비용으로 FTA 특혜 수출 활용 모델

02 | 비즈니스 모델

- 한-미, 한-EU FTA 발효 이후 글로벌 기업들의 對한국 투자 활성화 전망
 - 한국이 체결한 FTA를 활용하여 수출활성화를 도모하려는 해외 기업들의 투자 증대 효과와 더불어 국내기업도 해외 자금 유치를 통한 FTA 효과 공동 향유 가능
 - ※ 관세인하 등 FTA 효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글로벌 기업의 생산 기지를 한국에 유치함으로써 고용창출 및 국내산업의 체질 개선 효과 발생

FTA를 통한 해외투자 유치형 모델



03 | 활용 및 확산분야

- 국가브랜드(Made in Korea)가 상품의 가치보다 큰 상품의 경우 국내 유치 유리

원산지관리 효율화형 | 22-1

외국투자기업이 한국의 FTA체결 효과 “톡톡”

1. 기업 소개

- O사는 자유무역지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자동차·선박·항공기 등 수송기용 컨트롤 케이블을 생산하여 세계 여러 지역으로 수출하는 업체

2. FTA 활용과정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
 - 한-EU FTA 발효에 대비하여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 준비('11.4)
 - 아울러 한-아세안 FTA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한-아세안 FTA에 대한 인증수출자 지정도 동시에 준비
 - ▶ 2개 협정, 각 8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
 - 미국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
 - 세관 “한-미 FTA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12.5.19)
- 주요 수출물품에 대한 원재료 내역 및 가공공정을 확인하여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안내
 -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에 필요한 필수 기재사항 8가지 항목 안내 및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 제공
 - 미국 원산지검증 대비 서류보관의무 사항 안내 및 원산지 서명카드,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 안내
- ▶ 세관 컨설팅을 통해 한-미 FTA 활용 발판 마련 및 원산지증명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3. 활용 효과

- FTA 활용 효과

- (한-EU) '12년도 전년대비 수출금액 28.3% 증가

- * 對EU 수출시 약 3.5% 관세 절감 → 한-EU FTA 발효 이후 약 \$12,187 관세 혜택

- (한-미) 발효 이후 3개월 간 전년동기대비 수출금액 87% 증가 (124천불 혜택)

4. 시사점

- FTA 활용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여 주문량이 증가하였고 본격적인 수출확대를 위한 생산시설 확충(자체공장 및 협력업체 생산공장 확장)에 따라 신규 인력을 고용(30명)하였고 생산량 및 수출량 증가함에 따라 FTA 활용 지속적 강화

- 해외투자유치형 비즈니스 모델 창출

- 외국 직접투자기업이 우리나라와 FTA 체결한 47개국과 FTA 활용 효과를 직접 향유 ▶ “외국기업 직접투자 활성화 기대”

원산지관리 효율화형 | 22-2

FTA로 외국인 투자자가 돌아온다

1. 기업 소개

- P사는 유명 어린이 만화 캐릭터가 인쇄된 원단에 대하여 라이선스를 가진 업체로 일본 유명 기업의 국내지사임

2. FTA 활용전 상황

- 한-EU FTA 활용 등을 목적으로 '11. 5월 국내지사를 설립하였으며, 중국산 원단 등에 날염, 프린팅 등의 가공공정을 수행하는 경우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것에 착안하여 유럽시장 진출 확대를 목적으로 설립

3. 장애 요소

- 섬유류 무역업체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제조업체의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등의 확보가 중요하나, 영세 제조업체에서 원산지증빙관련 협조를 얻는데 어려움 발생

4. 극복 방안

- 서울세관에서 제공하는 FTA 컨설팅 사업에 참여하여 FTA-PASS를 원산지관리업무에 도입하게 되어, 원산지판정에서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원산지관련 업무체계를 구축하여 원산지확인서 유효성 확보 및 원산지관리능력 제고

5. 활용 효과

- 현재는 일본, 중국 등 FTA 비체약국에 소량의 물품을 수출하고 있으나, 추후 중국산 면원단에 날염 등의 가공공정을 거친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EU 등에 수출 예정

6. 시사점

- 기존에 중국이나 일본에서 생산하여 EU에 수출하던 거래형태가 한국으로 그 생산함으로서 생산시설 이전효과 발생
- 원가절감을 위한 대량생산 체제하에서는 한 품목당 한 국가에 생산 기지를 두게 되는데, EU에 수출하는 품목의 경우 생산기지를 중국이나 일본 등에서 한국으로 이전할 경우, 이를 통해 EU 뿐만 아니라 FTA 미체약국에도 동일 품목을 한국에서 생산하여 수출하게 되어 1석 2조의 FTA 활용 효과가 기대됨

모델 23

트레이스(trace) 방식 원산지 관리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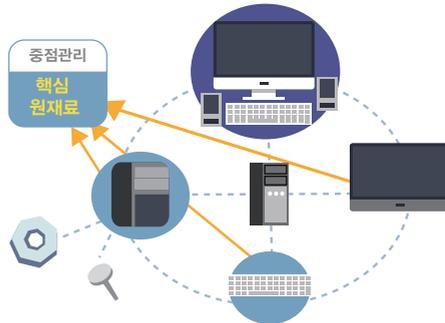
01 | 개요

- 원산지 결정에 중요한 핵심 원재료에 대해서만 집중관리를 하는 모델
 - 원부자재의 중요도 등을 중심으로 계층화하여 최소의 핵심 원자재 위주로 원산지를 관리. 일명 트레이스(Trace)* 관리 방식이라고 함

* Trace Method : NAFTA에서 자동차의 부가가치 산정시 사용되는 방식으로 모든 역내부가가치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선정된 Tracing List에 포함된 원부자재만을 대상으로 원산지 여부를 확인하여 최종제품의 원산지를 판단하는 방식

02 | 비즈니스 모델

- 트레이스 방식 원산지관리로 원자재 관리 비용 및 시간 최소화
 - 전체 원부자재의 수가 많은 수출(생산)업체의 경우 원산지 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의 이유로 원산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 또한 원재료가 국내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산지확인서 구비가 필수적이거나, 모든 협력업체에서 원산지확인서를 받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름



03 | 활용 및 확산분야

- 주요부품(재료)의 구성비가 큰 상품에 적용 유리

원산지관리 효율화형 | 23-1

FTA는 사돈의 팔촌? 알고보니 일촌지간!

1. 기업 및 제품소개

- Q사는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체로 주력 품목은 전자부품·TV부품 등이며 동종업계에서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중견기업

설립일자	업종	매출액('11년)	종업원수	주요 생산물품
1979년 7월	전자부품	578억	150명	금형설계, 개발 및 TV부품 (Cover-rear, Ass'y Bracket, Heat Sink등)

2. FTA 활용전 상황

- FTA는 우리 회사와는 상관없는 일로 인식하여 무관심으로 일관
 - 동사는 수출이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나 주거래선이 멕시코 등 FTA비체결국으로 FTA에 대해 무관심
 - 그러나 '11년 EU 국가인 헝가리 M사와 신규 직수출계약 체결 및 같은 시기 국내의 S전자가 원산지확인서 발급 요청으로 FTA 활용 검토

3. 장애 요인

- FTA활용 경험이 전무한 상태로 원산지관리 역량 부족
 - 원산지증명 대상 물품별 HS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할 업무능력 한계점 발견
 - FTA에 대한 사전 준비가 전무한 상태여서 동사와 동사의 협력업체 역시 원산지증명 불가능

4. 극복 방법

- 세관과 거래처의 FTA 합동컨설팅으로 최적의 원산지관리방법 고안
 - 수출(납품)물품의 주 원재료 1~2종류를 역내산 재료로 입증할 경우 여타 원재료가 역외산으로 계상되더라도 원산지기준 충족(MC 50% 이내)
 - ▶ 가격비중 높은 일부 원재료 집중 관리로 원산지관리 비용 절감
- 체계적인 품목분류 오류 정정 및 원산지관리 능력 배양
 - (품목분류) 수출물품과 국내 거래물품 및 소요원재료의 품목분류 재검토(통관대행 관세사)
 - ▶ 일부 오류 정정(원재료 · 생산물품 HS정비 완료)
 - (원산지관리) 사내 원산지관리전문가 양성(원산지관리교육 등 참여 3명)
 - (인증수출자) 인증 과정시 최소비용으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트레이스 방식*의 원산지관리 사용(협력업체 교육) ▶ 인증(12.5)
 - FTA포탈사이트를 통해 협정별 자료와 실무가이드 및 FAQ사례 수집

5. FTA활용 효과

- 거대시장 EU지역 수출 증대 예상
 - '11.12월부터 수출거래를 시작한 헝가리 M사의 바이어 측에 즉시 원산지증명서 발행, 헝가리 거래선 확보를 계기로 '12. 6월 이후 수출 증가
 - 한-EU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을 통해 영업 경쟁력 확보 및 EU지역 관세 3%절감에 따른 수출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EU지역의 새로운 거래선 확보 기대
 -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국내 판매도 매출처 요구인 원산지 확인서 발행으로 향후 국내 매출 주문량 안정적 확보

6. 시사점

- 트레이스 방식을 활용하여 해당 원재료 중 가격비중이 높은 일부 품목에 대한 집중관리로 원산지관리 소요비용 및 시간의 획기적 절감 가능

원산지관리 효율화형 | 23-2

공작기계 강소업체의 FTA성장기반 조성

1. 기업 및 제품소개

- R사는 공작기계 부품인 심압대(내수용, 수출용)와 대형 단동척 및 연동척(내수용) 등을 제조하는 회사
- 제품소개

용어	기능 및 용도
CHUCK	공구나 가공물을 끼울 수 있는 회전바이스의 일종
단동척	선반에서 공작물을 고정하는 4개의 장치가 각각 단독적으로 움직이는 CHUCK
연동척	한 개의 핸들을 돌리면 3개의 Jaw가 모두 동시에 같은 거리를 움직여 규칙적인 모양의 공작물을 고정하는 CHUCK
심압대	선반 등의 공작기계에서 주축대와 마주 놓여 움직이면서 공작물의 오른쪽 끝을 지지하는 대



단동척



심압대

2. FTA 활용전 상황

- 동 업체는 원산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실무자가 없이 생산담당 임원이 직접 기존 업무 외에 원산지 판정·관리업무를 맡고 있으며, 원산지 실무에 대한 일회성 교육을 받은 수준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
- 한·미 FTA 발효 직후 1차 컨설팅('12.3.21.)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원가자료와 구매내역 등 원산지증명 필수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밀착형 컨설팅이 필요

3. 장애 요소

- 미국 수출품은 ‘심압대’ 1가지 품목으로 한·미 FTA 발효 즉시 관세철폐 대상이므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절대적으로 필요

HS	품명	기준세율	협정세율	원산지기준
8466.93	parts for machine	4.3%	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4. 극복 방안

- **(1차 컨설팅)** 수출 주력품인 ‘심압대’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 원산지 증명서 작성시 빈번히 발생될 수 있는 오류내용 및 작성방법 등에 대한 원산지관련 실무지식 함양에 주력(‘12. 3. 21.)

(부가가치기준 적용시) 심압대 구성부품 가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TAIL STOCK’ (약 85%)이 한국산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역내부가가치(공제법) 45% 이상이 가능

- ▶ TAIL STOCK을 공급하는 OO정밀(주)의 원산지확인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동 확인서를 반드시 징구토록 안내

- **(2차 컨설팅)** 既발급한 원산지증명서 오류내역 점검,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 관리 및 사후검증 대비 원산지증빙자료 보관상태 확인과정을 통해 오류 ZERO화에 주력(‘12. 6. 21.)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입증자료를 함께 보관하여야 하나, 2차 컨설팅시 보관 실태를 확인한 결과 원산지소명서와 수출신고필증 등의 필수서류 보관 없이 원산지증명서를 임의적으로 발급하고 있는 것을 확인

- ▶ 원산지 입증자료에 대한 보관기간, 보관방법, 미보관시 제재유형 등 전반적인 항목에 대한 REVIEW 및 대응방안 제시

- **(사후 모니터링)** 원산지관리업무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유선, 세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애로사항 수시 청취 및 해결(3회)

5. 활용 효과

- **(원산지증명서 발급율 증가)** FTA 활용 극대화 지원 결과 ‘심압대’ 원산지증명서 발급율 100% 달성
- **(對美 수출증가)** FTA 협정세율의 적극적 수혜 공약으로 한·미 FTA 발효 전과 비교하여 수출금액 기준 63% 증가
- **(타 주력 품목의 수출 전환)** 내수용인 단동척과 연동척의 미국시장 판로개척을 위해 FTA 이점을 이용한 가격 경쟁력 분석의 모티브 제공
- **(원산지 검증에 대한 자신감 부여)** 미국 세관의 고강도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입증요령 coaching으로 원산지검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해소

6. 시사점

- 수출물품의 원재료 원산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중 가장 큰 비중(85%)을 차지하는 ‘TAIL STOCK’ 공급업체에 원산지확인서 발급 유도
- 주력 수출품목인 ‘심압대’에 대한 원산지결정방법과 발급절차에 대한 학습효과와 자신감을 통해 내수시장에 공급되는 타 주력품에 대해서도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낙수(Trickle-down) 효과 발생

모델 24

다단계 거래 단순화 모델

01 | 개요

- 유통단계가 복잡한 물품의 수출시 최종 수출자와 수출물품 생산자간 직접 증명·거래를 통해 원산지관리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절감 모델

02 | 비즈니스 모델

- 최종 수출자와 생산자 사이에 여러단계의 중간 유통과정이 있는 경우 최종 수출자와 중간 유통단계에서의 원산지관리에 많은 시간과 비용 발생
- 다단계 거래의 원산지관리 및 증명절차를 단순화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여 수출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FTA활용 편의 제공
 - 다단계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는 원산지증명절차가 단순화되어 원산지관리에 따른 시간과 비용 절감 가능
 - 원산지정보의 정확하고 쉬운 전달로 원산지관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이 감소되어 원산지검증 등에 따른 위험부담 경감

다단계 거래 단순화 FTA활용 모델



03 | 활용 및 확산분야

- 한-미 FTA의 섬유제품 또는 농수산물 등
- 특정공정 또는 생산단계만 입증하면 원산지관리가 용이한 상품

원산지관리 효율화형 | 24-1

FTA, 절차의 복잡함을 SIMPLE하게 활용하라

1. 기업 및 제품소개

- P사는 국내 장비업계의 선도기업으로 대기업은 물론 해외 바이어로부터 주문을 통해 필름코팅설비, 슬리팅기 등을 제작하는 업체

2. FTA 활용전 상황



스페인 바이어 측에서 원산지증명서를 S무역에 요청하였으며, S무역은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일체의 정보가 없어,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당사에 요청

- P사는 B상사로부터 주문을 받아 진공챔버를 제작/납품, 최종 수입자인 스페인 바이어는 S무역(수출자)을 통해 원산지증명서 요청

3. 장애 요소

- FTA활용에 대한 이해 부족, 원산지증명절차의 복잡성 및 수출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사전지식 전무
- 거래관계자 다수 및 다단계거래로 원산지증명애로 발생

4. 극복 방법

-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활용하여 HS Code 확정
- 구미세관의 컨설팅 도움으로 원산지관리가 가능해져 원산지확인서 및 원산지소명서 등을 S무역(최종수출자)에 직접 전달하여 고객사 지원
- S무역의 인증수출자 인증 지원을 통한 원산지증명서 문제 해결

5. 활용 효과

- FTA 활용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HS 품목분류 및 인증수출자 제도 등 내수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FTA 영업전략 마련
- 협정국 수출시 관세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을 확보로 지속적인 수출 증가

6.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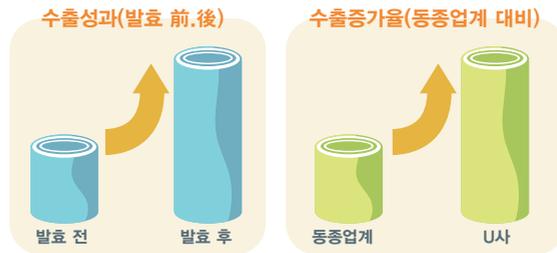
- 원산지증명절차 및 과정의 정확한 이해로 명확한 원산지증명이 가능하였고, FTA 활용 가능성 증대와 원산지검증에 대한 사전 준비 완료

- 다단계가공·유통에 따른 복잡한 원산지 확인 단계를 3단계로 단순화



4. 활용 효과

- 해외바이어 5개사 추가 확보로 지속적 수출 성장 가능
 - ① 수출물품의 가격경쟁력 확보 ⇒ 중국제품과 경쟁우위 선점
 - ② 발효前 22만불 ⇒ 발효後 65만불로 증가, 추가주문량 \$950,000 확보
 - ③ 동종업계 수출증가율(19.2%) 대비 큰폭으로 증가(290%)
- 원산지 증명절차 간소화 및 검증 리스크 최소화



5. 시사점

- 원산지증명절차 및 과정이 단순해져 명확한 원산지증명이 가능해지게 되어 FTA 활용 가능성 증대와 원산지검증에 대한 사전 준비 완료

모델 25

원산지 검증을 활용한 FTA 학습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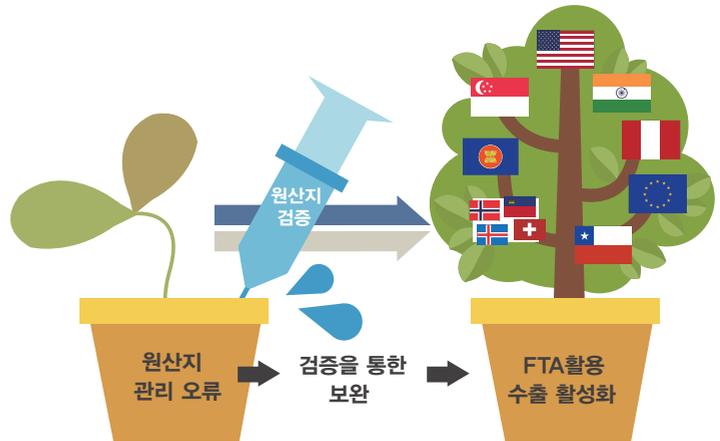
01 | 개요

- 수출물품의 원산지 검증을 통해 원산지관리에 오류가 발견된 업체가 지속적인 FTA수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모델

02 | 비즈니스 모델

- FTA활용 전 사전검증을 활용하여 정확한 원산지 판정 및 관리 진단으로 FTA 적용오류 최소화
- 사후검증에 따른 원산지관리 오류를 보완하고 학습의 기회로 활용

원산지 검증을 활용한 FTA학습 모델



03 | 활용 및 확산분야

- 모든 산업분야 및 FTA
- 특히 피 검증 업체는 적극 활용 필요

원산지관리 효율화형 | 2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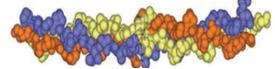
원산지 검증을 통한 원산지관리의 인식 전환

1. 기업 및 제품소개

- Y사는 1998년에 설립한 기업으로 젤라틴 및 콜라겐을 전문으로 생산하여 수출하는 업체로서 유럽으로부터 품질인증을 획득하고 연간 1,000만불대 수출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

콜라겐

동물의 피부, 뼈, 힘줄에 존재하는 섬유성 단백질



2. 활용 전 상황

- 유럽, 미국, 태국 등에 연 1,000만불 규모의 수출을 하면서도 수출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품목분류, 원산지증명서 발급 유의사항 등은 무시
- 원산지관리 인력 부족으로 품질인증 및 기술개발에만 역량을 집중

3. 장애 요인

- 원산지증명서 상의 수출물품 콜라겐의 품목분류의 정확성에 대하여 태국 관세당국과 바이어 측이 문제제기
- 서울세관의 원산지 검증으로 원산지증명서 상의 수출물품 콜라겐의 품목분류를 기업 임의대로 결정한 사실 확인

4. 극복 방법

- 세관의 원산지검증이 진행되는 동안 회사 전체 수출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적정성, 생산공정, FTA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종합점검

- 검증과정에서 FTA활용 유의사항과 다른 협정들에 대한 검증 대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컨설팅 병행
- 검증과정에서 준비된 원산지증빙서류와 세관의 도움을 받아 수출물품 HS확정까지 해결된 점을 100%활용하여 한-EU FTA 인증수출자 취득을 한방에 해결

5. 활용 효과

- EU, 미국 수출시 품목분류 오류를 사전 방지하고 한-아세안 검증대응이 미국, EU 원산지 검증대응력도 동시에 향상시키는 효과 발생
-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도 자신 있게 발급하게 되어 對미 수출증대

6. 시사점

- 한번의 검증으로 수출업체 전체의 FTA 활용컨설팅 병행
- 품목분류의 중요성과 FTA원산지에 대한 기업의 인식전환

원산지관리 효율화형 | 25-2

원산지 사전 검증을 통한 FTA활용 리스크 제거

1. 기업 및 제품소개

- Z사는 산업용 안전장갑을 제조하여 EU 등으로 수출하는 기업으로 1천만불 수출유공으로 산업훈장을 수상한 우수 수출기업

2. 활용 전 상황

- 對EU 수출업체의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지원을 위해 세관주도하에 HS 6단위기준 가인증수출자번호를 부여받았으나 원산지관리 전문인력 부재 및 빈번 교체 등 체계적 관리 소홀

3. 장애 요인

- 산업용 안전장갑 제조과정상 편직기를 통해 일시편성(니팅)되는 것으로 절단공정이 수행될 여지가 없음에도 국내 편성수행만으로도 ②요건 충족하는 것으로 오인

* 한-EU FTA 산업용 안전장갑(HS 제6116.10호, 제6116.93호)은 선택기준으로 ①방직(방사) + 편성(니팅)공정 OR ②편성 및 절단 포함 공정 충족 필요

- 인증받은 협정의 HS 6단위 모든 품목에 대해 인증수출자 자격이 있는 것으로 오인

4. 극복 방법

- FTA 활용 설명회, 교육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인증수출자번호를 부여받은 HS 6단위라 하더라도 소요원재료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개연성 인지 후 세관에 사전검증을 요청
 - (원산지기준) 低단가품목은 국내방사 및 편성공정 수행, 高단가 품목은 비원산지사를 이용하여 편성하는 등 원산지기준 불충족
 - (원산지신고서) 비원산지 물품임에도 원산지·비원산지 구분 없이 하나의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서 작성 ▶ 부적정 발급
 - (원산지증빙서류보관) 담당자 부재·이직시 원산지업무 처리 미흡 ▶ 업무매뉴얼 마련 및 원산지관리팀 구성으로 체계적 관리
- 既발급한 원산지신고서 오류사항 정정발급 및 사전검증 외 품목에 대해서도 자체 자율점검 실시
- 해외 바이어와 지속적 의견 교환으로 비원산지 원재료 대신 역내산 원재료로 소요원재료 리셋팅

5. 활용 효과

- 무료 사전검증으로 체계적이고 신뢰할 만한 FTA환경 안전 확보
- 2013년 동기 대비 수출실적 77% 증가하였고, 지속적 제품개발 및 디자인 혁신을 통한 국제시장 신뢰 회복으로 거래처 추가 확보
- 수출물량 적기 공급을 위해 생산인력 충원 및 노후 장비 교체 등 공장 시설 개선

6. 시사점

- FTA활용 업체에서 스스로 문제점을 인지한 후 사전검증을 통해 이를 수정하여 FTA활용도 증가 및 사후검증 리스크 제거

모델 26

수출입 쌍방향 FTA 활용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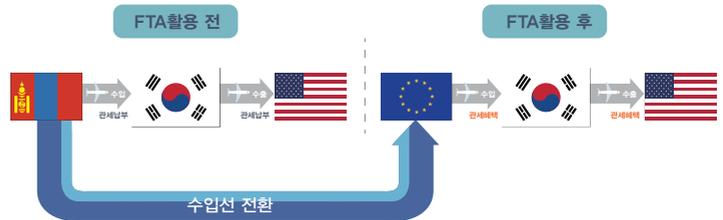
01 | 개요

-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여 생산하는 수출기업 중 원자재 수입 및 제품 수출선 전환이 용이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모델

02 | 비즈니스 모델

- FTA 비체약국으로부터 수입하던 원자재를 FTA체약국으로 전환하여 수입시 관세혜택 적용 ▶ 원가절감 ▶ 제품 가격경쟁력 상승
-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FTA 비체약국으로만 수출하던 제품을 FTA 체약국으로 다변화 · 집중하여 수출시 관세혜택 적용
- 모든 산업 및 FTA
 - 원자재 품질 저하 및 기업의 이익 손실 없이 원가절감 가능
 - 원가절감에 따른 가격경쟁력 상승으로 수출증대 및 수출 다변화 가능
 - 수출입 쌍방향 관세혜택으로 최소한의 비용과 최대한의 이익 창출 가능

수출입 쌍방향 FTA 활용 모델



03 | 활용 및 확산분야

- 모든 산업분야 및 FTA

원산지관리 효율화형 | 26-1

FTA를 통해 수출입 쌍방향 관세혜택을 얻다

1. 기업 및 제품소개

- D사는 국내 동 특수합금업계의 선도기업으로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각종 동 특수합금 소재를 생산·수출
- 제품소개

주요 수출품	HS CODE	제품사진
Round bar of refined copper	7407.10	

2. 활용 전 상황

- 동제품의 가공을 위해 원재료를 영국, 벨기에 등 EU 지역에서 수입하고, 동제품 가공품을 EU 및 미국 등으로 수출
- EU 지역에서 수입하는 크롬 동은 관세 5%를 수입 당시 부담하여야 하며, 수출물품에 대하여 관세 환급이 가능하나 이를 위한 추가 비용 및 수출입관련 시간 등 소요

3. 장애 요인

- 한·EU MC 50% 충족을 위해서는 주 원재인 전기동 국산 사용이 필요
- MC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국내거래 공급자의 원산지확인서 발급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관련 제도 및 요건구비를 위한 설득 필요

4. 극복 방법

- 수출물품 HS(제7407.10호)의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인 세번변경 기준(CTH)과 부가가치기준(MC 50%) 동시충족을 위한 방문 컨설팅 실시
- 서울세관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FTA 활용 지원으로 동사를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지정('11.06.07.)
- 한·EU FTA 인증수출자 지정시 확인한 수출물품 원재료의 HS 4단위 변경 및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한·미 FTA 활용

HS CODE	협정	기준세율	협정세율	원산지결정기준
7407.10	한·미 FTA	3%	0%	CTH(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5. 활용 효과

- 영국, 벨기에로부터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아 원재료를 수입하여 원가를 절감하고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받아 수출량 증가
 - * 수출액 \$764,436('11.1/4분기) ▶ \$1,398,708('12년1/4분기) 83% 증가
- 한·미 FTA 발효 즉시 자율증명서발급으로 협정세율 혜택
 - * 발효 후 1달 관세효과 인하액 : 892천불(8억9천만원) × 3% = 2,700만원
 - * 연간 관세효과 예상액 2,700만원 × 12 = 3억2,400만원
- 한·EU FTA 활용으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미 FTA 체결 직후 즉시 자율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한·미 FTA 협정세율을 적용 받음으로서 전년 동기대비 83% 수출실적 증가

6. 시사점

- FTA 발효시기에 맞춰 활용방법을 사전에 미리 확인하여, 원자재 수입 및 제품 수출에 FTA 활용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

원산지관리 효율화형 | 26-2

사전 준비를 통한 수출입 쌍방향 FTA 활용

1. 기업 및 제품소개

- E사는 1952년 설립된 이래 60여년간 머시닝센터, 선반 등 금형 공작 기계에만 집중, 세계 최고 기술력을 자랑하는 기업



2. 활용 전 상황

- 국내 3대 제조회사로 꼽히는 우수 중소기업으로 전세계 30여개국 수출, 매출의 20% 이상을 해외시장에서 벌어들이고 있음
- 한·EU FTA가 발효되면 EU측 현행 관세율 2.7%가 즉시 철폐되어 FTA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에 대비하여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적용을 위해 부분품의 HS코드 분류 작업을 시작

3. 장애 요인

- FTA 활용을 위해서는 재료를 HS코드별로 관리하는 새로운 재료 명세서가 필요했으며, 6백여개의 부품 HS코드를 일일이 분류하는 준비 과정이 FTA 활용에 있어 가장 어려운 작업

4. 극복 방법

- 20여개 부품 공급사와 협력하여 세관 교육도 함께 받고 부품의 HS코드도 차근차근 준비하여 머시닝센터, NC선반 등 2개 주력 수출품목에 대하여 품목별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 한·EU FTA 협정 혜택을 받음
- 한·EU FTA 발효 후 독일에서 40만불 상당의 부품을 수입하면서 협정세율이 아닌 실행세율로 통관한 사실을 알게 되어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소급 요청
- 한·미 FTA의 높은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소액의 부품들도 원산지, 공급단가 등을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공급업체 담당자 교육 및 ERP시스템과 원산지확인서 연계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

5. 활용 효과

- 원자재 수입의 한·EU FTA협정 적용으로 관세 4천여만원 절감
- 한·EU FTA 발효 후 1년 동안 EU 수출시 약 6억원 상당의 원가절감으로 수출경쟁력이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수출물량도 발효 전 1년과 비교하여 70% 증가하는 FTA 효과 발생
- 한-미 FTA 발효 초기부터 4.4%의 관세철폐 혜택과 물품취급수수료 면제의 혜택으로 對미 수출액이 205%나 증가하는 효과를 보고 있어 한 해 약 10억원 상당의 원가를 절감

6. 시사점

- FTA 발효시기에 맞춰 활용방법을 사전에 미리 확인하여, 원자재 수입 및 제품 수출에 FTA 활용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

모델 27

FTA로 인한 가격인하 활용 모델

01 | 개요

- 중국 및 동남아산 제품에 비해 높은 제조경비와 인건비로 가격 경쟁력이 낮아 시장 확보(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자가 활용할 수 있는 모델

02 | 비즈니스 모델

- FTA 특혜관세 혜택은 바이어에게 즉각적인 가격인하 효과로 작용하여 가격경쟁력 강화요인으로 활용될 수 있어 거래유지는 물론 신규 거래 창출 가능
 - 저렴한 단가가 핵심경쟁력인 중소기업에 있어 FTA 활용은 가격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되어 거래유지 및 신규거래 창출 효과 발생
 - 바이어의 가격인하 압박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

FTA로 인한 가격인하 활용 모델



※ 바이어의 가격인하 압박에 대해 FTA 활용시 관세상 혜택을 협상카드로 제시

03 | 활용 및 확산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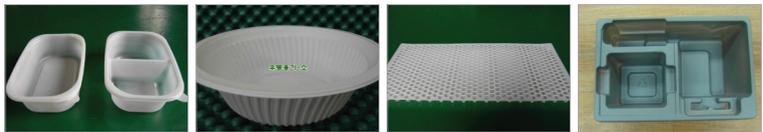
- 모든 산업분야 및 FTA
- 특히 기술개발을 통한 가격인하가 어려운 중소기업 적극 활용

원산지관리 효율화형 | 27-1

가격인하 압박, FTA로 가뭄하게 날려 버리다

1. 기업 및 제품소개

- F사는 1997년 설립 이후 가정용 플라스틱 성형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기업에서 신규 제품라인을 구축하여 북미 시장에 진출한 플라스틱 사출성형 전문기업
- 제품소개(HS 제3924.90호)



2. FTA 활용전 상황

- 가정용 플라스틱 성형제품을 주로 생산해 오던 중 북미 최대의 도어제품 생산업체인 m사에 도어 프레임 부분품을 수출하게 되면서 전환기를 맞음
- 북미 지역 도어제품 생산기업인 m사에 도어프레임 부분품을 수출하게 되면서 새로운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북미 지역으로 진출하였으나, 바이어의 가격인하 요구에 직면

3. 장애 요소

- 가격인하 압박으로 한-미 FTA에 눈을 돌리다
 - 세계적 경제 불황과 미국 주택 경기 침체로 바이어로부터 수출가격 10% 인하 압박을 받음

- 회사존립의 돌파구로 한-미 FTA 특혜관세 활용이 필수적인 절박한 상황에 직면하였으나, F사와 같은 중소기업의 여건상 생산직을 제외한 사원은 단 한 명뿐인 어려운 여건

4. 극복 방법

- 세관의 1:1 맞춤형 컨설팅을 활용하여 한-미 FTA 발효 즉시 특혜 활용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바이어에게 협정 활용을 위한 수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가격협상에 유리한 고지 점령

5. 활용 효과

- 한-미 FTA 가시적 성과는 미흡하나, 향후 전망은 밝음
 - 현재까지 F사의 FTA 활용효과는 거래유지에 집중되어 있어 수출 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으나, 향후 신규거래선 창출 등의 효과가 예상되어 수출금액 수직 상승 기대

6. 시사점

- 기술개발 등을 통한 가격인하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FTA 특혜관세 혜택을 협상카드로 선택하여 위기 극복 가능
 - 미국 바이어의 10%대의 가격인하 압박에 대해 FTA 활용시 관세상 혜택을 협상카드로 제시하는 슬기로운 대처로, 가격인하 없이 협상을 성공시키는 상생(win-win)기반 마련

원산지관리 효율화형 | 27-2

FTA 특혜관세, 가격경쟁력 확보의 기본!

1. 기업 및 제품소개

- G사는 자동차용 영상기기 전문기업으로 차량용DVD, 내비게이션, 차량용 디지털 시스템 등을 개발하여 전 세계 20여 개국으로 수출하는 기업
- 주요 수출제품인 천장형 모니터는 차량 운행 시, 동승자에게 즐거움을 전달하는 차량용 엔터테인먼트 제품



2. FTA 활용전 상황

-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차량용 엔터테인먼트 제품은 큰 인기를 유지해 오고 있었지만, 세계적 경기 침체로 소비심리가 위축됨으로써 시장 규모가 축소되는 가운데 저가제품과의 경쟁도 치열해 지는 상황
- 저가 제품과의 경쟁이 치열해 지는 가운데 자재비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기본 제조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FTA활용을 통한 특혜관세 적용으로 가격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 필수

3. 장애 요소

- FTA 활용방법이나 과정에 대한 기본지식 부족으로 20여 개국에 이르는 다양한 수출시장에 대한 개별 국가별 FTA 활용전략 수립에 어려움이 발생

4. 극복 방법

- 컨설팅(FTA 설명회) 참가 및 FTA 포털(<http://fta.customs.go.kr>) 등을 활용한 FTA 활용 방법 학습을 통해 주력 수출시장을 파악하고 철저한 활용전략 수립
-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및 세관 및 관세사와의 지속적인 정보 공유

5. 활용 효과

- 관세인하 폭이 큰 한-아세안 FTA 비즈니스 초기 단계부터 FTA 특혜 관세 적용으로 20%의 가격인하효과가 발생함으로써 수출실적(11%▲) 지속 증가

구분	한-아세안	한-EU	한-미
MFN 세율	20%	14%	0%
FTA 세율	0%	11.6%	0%

6. 시사점

- FTA 특혜활용은 지속적 원가 상승 속에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며, 세율차가 클수록 가격경쟁력 확보 효과도 UP!!

모델 28

관세환급과 FTA특혜 동시 활용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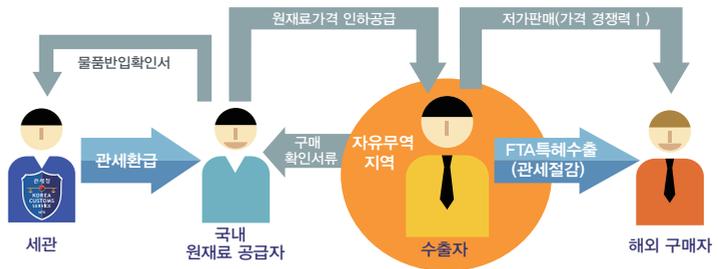
01 | 개요

- 외국인투자지역 및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들이 당해 지역에 제공되는 다양한 세제혜택과 함께 FTA특혜와 관세환급을 추가적으로 활용할 경우 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모델
 - ※ 자유무역지역 반입 국내산원재료가 환급받을 수 있는 모델 제시
 - ： 환급가능한 국내산 원재료는 단가인하 협상이 가능

02 | 비즈니스 모델

- FTA 활용이 가능하고 수입원재료 국내 구매시 관세환급도 가능한 점을 활용하여 가격경쟁력 강화와 관세환급으로 인한 원가 절감으로 수출경쟁력 증대
 - 구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생산된 제품을 FTA를 활용하여 수출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강화하여 'FTA특혜관세혜택(외국수입자)+관세환급 혜택(국내원재료공급자)' 동시 수혜
 - ※ 국내업체로부터 공급받는 외국산원재료는 직접수입하는 방안으로 전환도 가능

관세환급+FTA특혜 동시 활용 모델



03 | 활용 및 확산분야

- 모든 산업분야 및 FTA
- 특히 자유무역 지역에 입주하여 제조공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

원산지관리 효율화형 | 28-1

원재료는 관세환급, 제품은 FTA특혜로 경쟁력 UP!

1. 기업 소개

- H사는 마산자유무역지역에 위치한 일본계 투자기업으로 LED조명기구를 생산하여 EU지역으로 수출하는 회사로 국내 조명기구의 對체코 전체 수출액 중 약 80%를 차지

2. FTA 활용전 상황

- 경쟁심화 · 생산비효율 · 발주량 급감으로 국내 공장철수 위기
 - 누적적자 지속 및 생산비효율을 이유로 일본 본사가 한국지사 철수 압박
 - 체코 조명기구 시장에 국내 업체들이 신규 진출하면서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체코 구매자의 지속적인 제품가격 인하 요구로 공급처 상실 우려

3. 장애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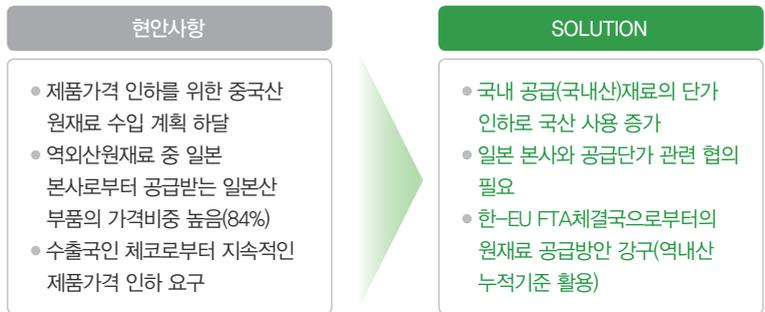
- 위기에서 부각된 FTA, 그러나 난항
 - (장애발생 1) 한-EU FTA 체결 이후 FTA활용을 위해 부서간 협업체제 구축을 위해 혁신추진팀을 구성하였으나, ①FTA이해부족, ②사내직원의 무관심, ③협력업체의 무지와 무관심, ④업무과중(인력부족), ⑤FTA협정위반 두려움 등으로 착수단계에서 어려움 봉착
 - (장애발생 2) 생산비 절감을 위해 기존 국내업체로부터 공급받던 주요 부품(Jumpwire, HeatSink, Diode)을 중국산으로 대체한다는 본사 입장 확인

▶ 품질저하 및 원산지결정기준(MC 50%)을 불충족하게 되는 부작용 발생

4. 극복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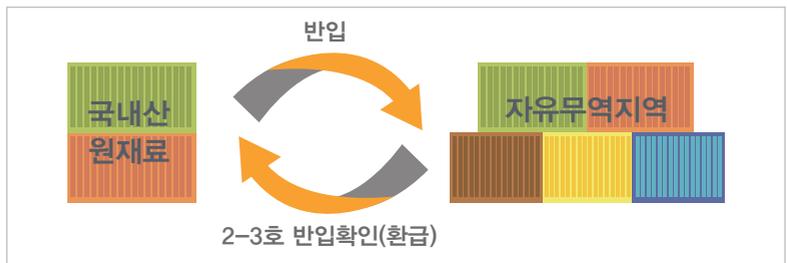
- FTA 민·관 합동 솔루션팀의 해결방안 제시
- 생산비용 절감 대신, FTA를 활용한 수출 증가로 영업이익 증대 방안 모색을 위해 AA사의 한-EU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 내역(BOM, 원재료 등), 원산지결정기준인 MC 50%에서 **비원산지재료의 구성비율 등 세부내역 검토**

- 한-EU FTA활용 지원 회의에 도출된 현실적 해결 방안 마련



- 非원산지재료 비율 증가 시 한-EU FTA PSR인 MC 50%를 불충족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수출품의 원재료 변화 계획에 대해 관계자와 정보공유
- ▶ 시간·공간적 한계를 벗어난 의견교류시스템(Band) 신설

-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의 지위를 활용한 新모델 개발
 - 국내산 원재료를 값싼 외국산 원재료로 대체
 - 자유무역지역 반입 국내산 원재료가 환급받을 수 있는 모델 제시하여 환급가능한 국내산 원재료는 단가인하 협상이 가능함을 안내



- 국내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외국산 원재료는 직접 수입하는 방안 제시
- 물류 단계 축소로 외국산 원재료의 단가 인하 가능성, 과세보류 활용

5. 활용효과

- 수출경쟁력 확보 및 해외바이어 관세절감
 - FTA 활용 후 최근 1년간 USD 16.7만불* 관세절감 효과로 수출 경쟁력 향상
 - * '13년 8월 ~ '14년 7월, 對EU 수출액 USD 2,844,713 × 4.5%(체코 기준세율) = USD 166,656
 - 한국산 조명기구의 체코시장 점유율 획기적 상승(70.9% → 80.4%)
- EU지역 수출실적의 획기적 향상
 - 체코시장 수출액 51%증가와 더불어 체코 외 EU국가 신규시장 진출(미화 86만불, 전년 동기대비 104배 성장)로 숲 EU지역 95% 급증
- 제2의 전성기를 위한 재도약 발판 마련
 - 수출증대로 영업이익 적자폭 축소, 기업경쟁력 강화
 - 국내공장 존속가치 확보 및 종업원 117명의 일자리 유지

6. 시사점

- 외국인투자기업 및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라는 경영·입지환경을 고려하여 활용 가능한 다양한 지원 모델 제시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및 해외신규시장 개척
- FTA 활용 지원방안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업체의 특수성을 감안한 다양한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상시 피드백을 통해 FTA 혜택 향유 지원

원산지관리 효율화형 | 28-2

FTA로 “관세환급+FTA특혜” 두 마리 토끼를 잡다

1. 기업 및 제품소개

- A사는 방역관련제품 18가지 종류(HS CODE 6단위기준)를 국내에서 조달하여 70여개 국가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 제품소개(방역용 연무기, HS 제8424.89호)

구분	MFN세율	FTA세율	원산지결정기준
한-아세안 FTA(태국)	20.0%	0%	CTH or RVC 40
한-EU FTA	1.7%	0%	CTH or MC 50
한-인도 CEPA	7.5%	0%	CTSH and RVC 35

2. FTA 활용전 상황

- A업체는 국내 12개 제조사의 물품을 납품받아 수출하고 있는 수출 주력형 기업으로 수출은 회사의 존폐가 걸린 중요한 사항이었으나 세계적 경기침체로 수출실적이 급감하는 등 어려움 발생

3. 장애 요소

- FTA가 회사의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원산지증빙자료 제공 등 협력사(제조사)의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완제품에 대한 대외비 정보(투입원재료 리스트 및 재료비 등) 공개에 대한 협력사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어려움 발생

4. 극복 방법

- 중소기업 지원 FTA컨설팅을 통해 제조사 설득방법 강구
 - 수출비중이 높고 FTA활용 실익이 있는 물품을 선정하여 해당 물품 제조사 설득
 - ▶ 아세안(태국) 및 EU협정 활용에 실익이 있고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방역용 연무기제품(HS 제8424.89호)을 대상 물품으로 선정하고 해당물품 제조사를 설득하기로 결정
 - 방역용 연무기제품(HS 제8424.89호)은 아세안과 EU협정에 공통적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이 적용되고 있어, 제조사에 BOM내역 중 원재료 가격을 제외한 투입원재료 정보를 요청하여 원재료에 대한 품목분류 진행
 - ▶ 4단위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가격비중이 낮은 원재료에 대해서는 협력사에 원산지확인서를 요청하지 않고 최소(미소)기준* 적용
 - * 제조사에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2개 원재료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요청하여 검토한 결과 수출가격(FOB, EXW)의 10% 미만임을 확인

5. 활용 효과

- 아세안(태국)은 20%, EU는 1.7%의 관세절감 효과가 발생하였고, 향후 베트남(2% 실익) 및 인도(7.5% 실익) 수출에 대해서도 바이어에게 FTA특혜관세혜택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여 신규거래 확장
- 수출자와 제조사간 쌓인 업무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그간 발행되지 않았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행을 통한 관세환급 가능

6. 시사점

- FTA 원산지관리 업무를 통해 수출자와 제조사간 업무 협력이 긴밀해짐에 따라 그동안 받지 못했던 수출에 따른 관세환급이 가능해지게 되어 수출자와 제조사 모두에게 이익 발생

모델 29

기술력과 FTA 가격인하 효과 활용 모델

01 | 개요

- 제품 개발능력 등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FTA시장별 소비자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여 시장을 공략할 경우 FTA활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모델

* [예시] 주류의 경우 각 국가별 소비자가 선호하는 알콜 도수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소비자 공략형 제품 개발이 선행될 경우 수출가능성 업그레이드

02 | 비즈니스 모델

- 기업의 기술력을 활용하여 대륙권별 · 국가별 소비자 특성과 니즈(needs)에 적합한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고 FTA 특혜를 활용하여 시장을 공략할 경우 시너지 효과 발생
 -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원산지관리 체계를 갖추고 FTA를 적극 활용할 때 수익창출을 통해 영세성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 마련

기술력과 FTA 가격인하 효과 활용 모델



03 | 활용 및 확산분야

- 모든 산업 분야 및 FTA
- 특히 기술력 보유업체에 강점

원산지관리 효율화형 | 2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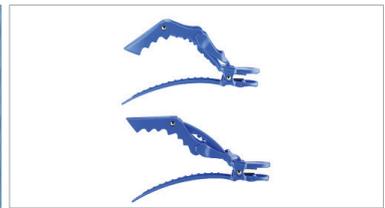
짜통과의 전쟁, 승리의 FTA

1. 기업 및 제품소개

- J사는 대표자의 적극적인 실험정신과 25년 미용학원 운영 노하우를 결집시킨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하여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는 미용전문 회사
- 주력 수출품목은 여성용 헤어 뷰티 제품인 헤어핀으로 일반 헤어핀의 작용면은 평행하게 작동하는 반면, 동 업체의 헤어핀은 머리카락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작용면이 곡선인 형태
 - 사업주가 개발한 아이디어 상품을 국내외에 「특허등록」하여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후 타제품과 경쟁



J사 머리핀



일반 머리핀

2. FTA 활용전 상황

- 중국산 짜통의 맹렬한 도전
 - 중국산 헤어핀은 저가 판매 공세로 한국산과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한국산을 위협하는 최대의 경쟁자이면서, 국내 헤어 잡지나 해외 전시회 등에 실린 제품들을 중국의 중소 제조업자들이 카피하여 판매함으로써 위협이 되는 상황

- 한국산의 우수성

- “한국산”의 품질 우수성은 해외시장에 이미 알려져 30% 정도 비싸더라도 해외 바이어들이 구매하는 상황으로 헤어핀 제품도 품질적인 면과 함께 최첨단 소재를 원료로 신제품 생산에 주력할 필요성 절감

3. 장애 요소

- 원산지관리를 전담할 직원이 없는데……

- 사업주 1명, 경리직원 1명, 생산반장 1명이 회사 구성원 전부로 새롭고 복잡한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작성과 검증 대비 관련 자료의 생산·보관 업무는 사실상 불가능

- 미국 바이어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

-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 바이어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
- 바이어의 요구대로 제공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과 적정성에 대한 심각한 걱정과 의문

4. 극복 방법

- 세관의 타겟팅 컨설팅

- 세관직원의 방문 컨설팅을 통해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충족여부	플라스틱수지로 몸체를 사출하고 스프링과 조립하여 생산하므로 원재료와 제품의 HS번호가 변경되므로 충족
주요원재료	ABS(플라스틱 수지), 스프링
주요공정	사출 ▶ 조립 ▶ 검사 ▶ 포장

- 기술력과 FTA로 시너지효과 창출

- 기업의 기술개발 상품 선제적 미국시장 “특허등록”
- 기업주의 미용학원 경험과 실험정신을 바탕으로 개발한 신제품을 한·미 FTA 협상 단계에서 특허등록을 완료하고 추가 등록 추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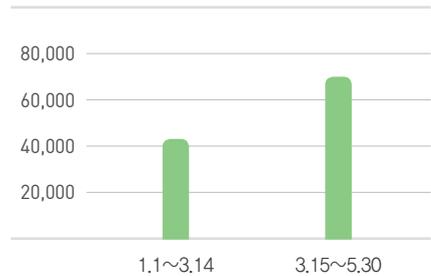
- 한·미 FTA 발효는 해당 제품의 짝통과의 치열한 생존경쟁의 난관을 넘어 미국시장의 “절대 강자” 입지 구축 절호의 기회

5. 활용 효과

- “30원” 가격경쟁력! 한국산이 시장점령

- 단가가 260원(0.3\$)인 헤어핀에 있어 FTA 효과로 생긴 “30원”의 가격 경쟁력은 해당 제품의 거래 특성상 미국시장에서 큰 가격경쟁력을 발휘하게 되어 對미 수출실적 전년 동기대비 206% 증가

한-미 FTA수출실적	
1.1 ~3.15	3.16 ~ 5.30
-	-
USD47,008	USD34,448
USD45,113	USD70,986
△4%	206%



6. 시사점

- 수출 판매 단가의 재협상으로 “수익 재창출” 기대

- 수출자의 C/O 발급에 따른 바이어의 관세절감 혜택은 조정의 여지가 없던 수출 판매가격의 재조정을 위한 협상의 창구가 되어 수출 증대 기대 외에 추가적 수익 창출 효과 발생

원산지관리 효율화형 | 29-2

탄산와인, 국내 최초 해외수출에서 대박 터뜨리다

1. 기업 및 제품소개

- A사는 탁주(전통 막걸리) 주력회사인 '(주)조OO'에서 세계화된 신세대의 입맛을 겨냥하여 '13년에 독자적으로 설립한 탄산와인 전문 제조업체
- 탄산와인은 포도원액으로 제조한 와인의 고유한 맛과 향이 탄산과 어우러져 자아내는 특유의 스파클링(탄산) 와인으로 젊은 층과 여성들을 위한 저알콜 리큐르(과실주)로서,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응용 가능

제품명 · 규격 · 품목분류	제품사진	제품 우수성
쏘아 (레몬·포도·자몽·망고맛) (SSOA Lemon) 355ml(캔) HS 제2208.70호 (또는, HS 제2208.90호)		- 우수한 국내산 포천 포도를 와인으로 제조 - 동시에 탄산의 톡 쏘는 시원함을 느낄 수 있고 저알콜로 목 넘김이 좋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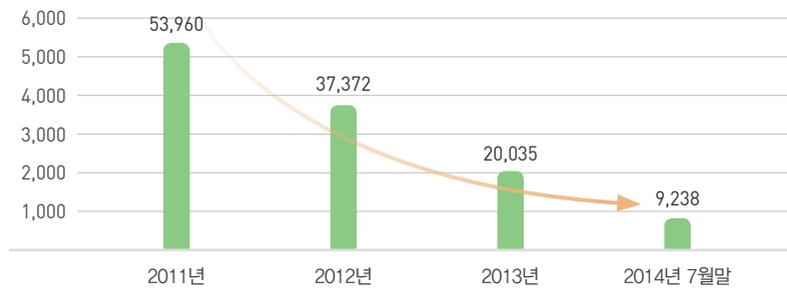
2. FTA 활용전 상황

- **(외부환경)** 막걸리는 이제 수출 내리막길,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
 - 한동안 수출효자 노릇을 했던 '전통막걸리'의 수출둔화세로 반전
- ▶ 업계내 수출도약을 위해 새로운 맛과 향을 덧입은 세계의 술로 거듭
 나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

전통막걸리(HS 제2206.00호-제2030호) 수출 추이

품명 : 탁주(HS 제2206.00호-제2030호)

연도	수출금액(천불)
2011년	53,960
2012년	37,372
2013년	20,035
2014년 7월말	9,2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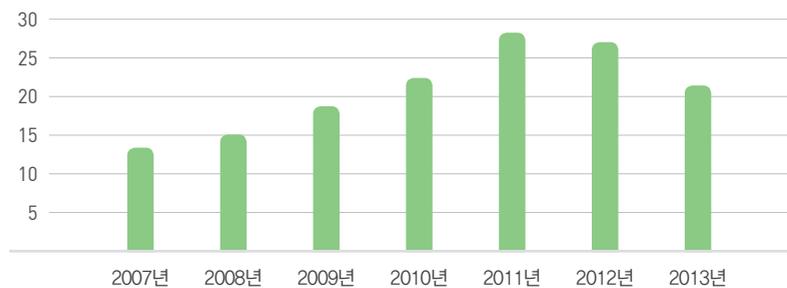


● (내부환경) '(주)조OO'의 전통 막걸리 또한 국·내외 매출 하향화 스타트

'(주)조OO'의 전통주 국내외 매출 추이

품명 : 탁주(HS 제2206.00호-제2030호)

연도	매출금액(억원)
2007년	13.8
2008년	15.2
2009년	18.8
2010년	22.6
2011년	27.4
2012년	26.6
2013년	21.4



- 업체는 매출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한때 일본인 대상 ‘막걸리 제조시설’ 투여 상품화까지 도입하였으나, 제조업체는 공장을 가동하여야 한다는 각성에 업체 갱생을 위한 ‘세계인과 시대가 원하는 제품 개발’에 돌입

- ▶ 포천시와 대진대학교의 공동연구 개발(24개월)로 신세대 입맛에 맞는 저알콜 리큐르 ‘쏘오~아(SSOA)’ 개발에 성공, 신세대에게 어필할 수 있는 ‘A(주)’ 회사 설립

* 쏘오~아(SSOA) : ‘한턱 쏘아~’에서 착안한 상품명으로 신세대 여성의 애교스러움을 표현한 ‘AN*’과 더불어 상담 때마다 바이어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며, 본 상표에 대한 ‘독점공급계약 및 브랜드 사용계약’ 완료

3. 장애 요소

- **[FTA지식 전무]** 對일본 소액수출 이외 수출실적이 없어 FTA 동향 및 활용에 필요한 FTA기초 지식이 전무한 상태로 바이어가 제시하는 가격협상에 실패 ⇒ 수출판로 개척에 발목 잡히다
- **[품목분류 난해]** 주류는 제조방법 및 배합 원재료에 따라 세번이상이함에도 주류세 신고 시 세무서에서 통보했던 ‘발포성 포도주(2204호)’로 분류 ⇒ 바이어 상담 및 원산지증명서 초안 기재 오류 발생으로 바이어 혼란 초래
- 국산 원재료 사용 필요 및 원재료 공급자의 원산지확인서 개념 부재
 - 對미 FTA 활용수출을 위해 일부 원재료가 필히 ‘한국산’이어야 하나, 업체는 원재료 공급자의 포장박스에 표기된 ‘MADE IN KOREA’로 한국산 원재료로 판단·관리하여 미국 바이어의 불신을 초래함으로써 공장시설 점검 결정

4. 극복 방법

- **[FTA 컨설팅 활용]:**현장을 찾아가는 YES FTA 센터!⇒적극적 애로 발굴
 - 서울세관 ‘aT 센터 Buy Korean Food’ FTA 활용 컨설팅 시 동행사에 참여한 업체가 FTA활용애로 컨설팅을 받고, 현장에 참여한 미국·아세안 바이어 상담 시 업체의 FTA 활용계획을 설명하면서 유리한 가격에 협상 가능 의사를 전달

● **[FTA 활용교육 참여]** : 서울세관 FTA 상설교육으로 FTA기초 입문!

- 원거리(경기 포천)임에도 불구하고, FTA활용에 대한 의지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기로 한 바이어와의 약속 이행을 위해 매주 서울세관 상설교육에 참석



aT 센터 'Buy Korean Food' FTA 활용 컨설팅 사진

● **[FTA 행정지원 활용]** :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제 · 품목분류 지원

-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확인제도를 신청함과 동시에 품목분류 담당 부서와의 '맞춤형 FTA비즈니스 지원단 운영'을 통한 신청업체 세번분류 지원

FTA1과-분석실 간 「맞춤형 TA비즈니스지원단」	분석의견 회보
<p>1. 추진배경</p> <p>□ 기존에 FTA활용 활성화를 위해 원산지확인서 발급한 데다 수출이 필요하고, 적절한 원산지확인서 발급은 강력한 HS용적분류가 관세 □ 중소기업에 불복응답 처리 및 원산지관할 능력이 소극적 운영 소위 세관 전문부서, 품질을 통한 HS용적 FTA활용지원 필요</p> <p>2. 주요내용</p> <p>□ FTA와 연계된 원산지제 구축을 통한 품목분류와 원산지확인 업무의 세관에서 원산지 관리하여 중소기업 FTA 역량 강화 지원</p> <p>이 단(단) 144.03 ~ 144.030</p> <p>○ (대상품목) 중소기업(소기업)이 우선 대상(별첨)</p> <p>○ (운영유형) 원산지확인서 및 세관장확인서 해당 관세용 및 세관도</p> <p>○ (협력유형) FTA 1과 25세 원산지확인서 심사팀, 세관장 전문부서</p> <p>3. 추진방안</p> <p>□ (내국기업) 추진단(FTA) 구성하여 유관-세관-유지</p> <p>□ (FTA) 원산지확인서 발송-통관, 심사 및 사용관리</p> <p>(주)사노 141(1)나 141(1)나 141(1)나 141(1)나 141(1)나 141(1)나 141(1)나 141(1)나 141(1)나 141(1)나</p>	<p>- 관세율표 및 대한민국 주류 분류를 검토한 결과, HS 제2208.70호에 분류함이 적절</p> <p>- 다만, 주류는 각 국가별로 정의와 범위가 다양하므로, 해당 수입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를 활용할 것을 권장</p> <p>- 동 제품은 'HS 제2208.70호' 이외 'HS 제2208.90호'에도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p> <p>▶ 서울세관 YES FTA 센터, 수출자에게 품목분류 사전 심사제 안내</p>

● **[FTA 전문인재 채용]** : '14 고졸취업박람회'에 참가신청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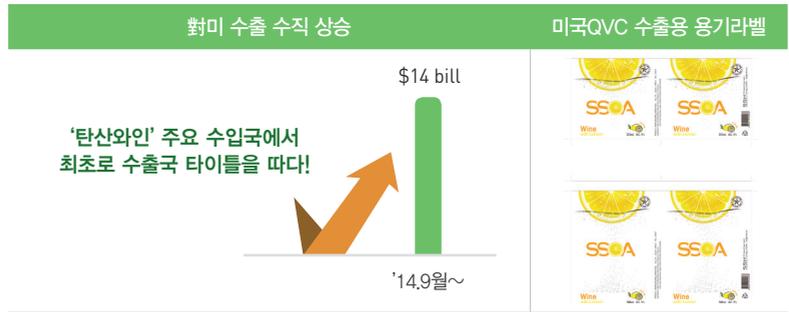
- 업체내 FTA · 원산지 관리를 위한 FTA 전문인재 발굴 필요성으로 FTA 전문인력 구인 · 구직 행사에 참석하여 인재 채용

● **[인증수출자 인증 취득]** : 對EU FTA수출 대비한 '인증수출자' 획득 진행 중

-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도를 바탕으로 '인증수출자' 자격획득을 위한 서류 준비 착수

5. 활용 효과

- **[대한민국 수출 제1호점]** 서울세관의 FTA 활용지원 및 차질 없는 컨설팅을 통해 미국 최대쇼핑몰인 QVC와 **최소 월 300만캔(355ml) 수출 계약, 연간 1,485만 달러 매출** 창출 예상(*355ml 1캔당 FOB 0.4125\$에 계약 완료)



* 對미 FTA 수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 효과

대상	항목	경제적 효과 수치
수출업체	- QVC 수출로 매출이익 창출 - H사(한 캔당 0.45\$)	- QVC수출 148억원 매출이익 - 수출량에 대한 계약 협상 중
수입업체	- 관세 절감 - 물품취급수수료 절감	- 미국CBP HS 제2208.90호로 결정시 연간 25,446천불 절감 - 수출 건당 25~485달러 ▶ 연간 3~4천만원 절감

- **[한-아세안 FTA 등 수출의뢰 쇄도]** 말레이시아 · 중국 · 일본 등지에서 수출 계약 콜 쇄도~!
 - ① 말레이시아 O사와 수출계약 협상 중으로 분석실 분석회보 결과 상대측에 전달 및 7월 20 BOX 샘플 수출
 - ② 일본 M사에 성분분석표 전달, 홍콩 · 중국 대리점 시장조사 돌입 및 샘플 요청 쇄도
- **[추가 제품 출시]** 저장성 및 이동성을 위한 '병' 제품(750ml)을 추가로 출시하고 기존 4가지 맛 이외 '라임' 맛을 추가하여 생산 중
- **[수입대체효과]** 저알콜 탄산와인 수입종주국 이미지 탈피
 - ▶ 적정가 한국산 탄산와인으로 다세금 고가 제품 수입대체 효과 발생 및 외화 유출 차단

- **[지역경제 활성화]** 막걸리를 대신할 탄산와인 제품 개발에 따른 수출 판로 개척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 수출품 주문 쇄도 시 공장시설 확충 및 아웃소싱 제조업체에 의뢰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관리할 FTA 원산지관리 인재 및 생산직원 채용 등 고용창출효과 발생
- **[유리한 가격협상]** 그동안 바이어 측의 판매가격 인하 압력을 FTA활용 시의 혜택(금)*으로 협상 타결 유도
 - * 미국 QVC 계약 시, 호주 업체와 가격 차이가 매우 근소하였으나 미국 바이어에게 FTA 활용 효과 제시로 계약 성사
- **[창조적 이름에 창조적 FTA 활용]** 업체 SSOA 제품 브랜드 독점 공급계약 체결 등 브랜드 사용 상표권 등록으로 고급 이미지 향유

6. 시사점

- 『지역특화산업+FTA 활용』 모델로 부처간 역할 분담 및 협력개발 가능
- FTA협정 체결시 보다 수출 둔화된 FTA산업에 상품개발 유도 모델

모델 30

고용효과 창출형 FTA 활용 모델

01 | 개요

- 한계점에 도달한 인건비와 재료비 절감노력보다는 절감 폭이 상대적으로 큰 FTA 특혜세율의 수혜효과를 최우선적으로 활용하여 고용 창출 등 기업 외형성장 유도 모델

02 | 비즈니스 모델

- 상대적으로 절감이 어려운 재료비 등의 관리를 통한 원가절감 노력을 즉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FTA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FTA경영체제 전환으로 원가경쟁력을 확보하여 '수출량 증대 ▶ 생산시설 확충 ▶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정착
 - 제품의 가격경쟁력 확보에 따른 해외시장 선점은 곧바로 주문량 증가로 직결되며 이는 생산라인 증설과 직원고용이라는 선순환 효과 거양
 - 원청기업의 주문량 파이(pie) 확대는 곧 협력업체에 대한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로 직결되어 원청기업과 동일한 고용 효과 기대

고용효과 창출형 FTA 활용 모델



03 | 활용 및 확산분야

-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자 하는 기업
- 인건비와 재료비 절감노력이 한계점에 도달한 기업

원산지관리 효율화형 | 30-1

우물안 개구리, 글로벌 하늘을 향해 힘찬 점핑!

1. 기업 소개

- K사는 17년전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지폐계수기를 각고의 기술혁신을 통해 국내 최초로 상용화하여 국내시장 석권 (국내시장 점유율 1위)
- 동사의 지폐계수기는 원화, 외화의 위폐감별기능 외에 외화계수 등의 모든 업무를 일괄처리할 수 있는 고성능제품으로 『국산신기술 인정서』 획득

2. FTA 활용전 상황

-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유럽시장(약 30%)이 재정위기 여파로 '11년 초부터 급속도로 냉각되어 주문량이 감소함에 따라 1달간 공장가동을 정지하는 등 총체적 위기타개를 위한 비상경영체제 돌입
- 글로벌 경제 불황 속에 한-EU FTA, 한-미 FTA 발효 등의 낭보가 들려왔지만 실효관세율 2.2% 철폐는 가격경쟁력에 미미하다고 판단하여 CEO 등 관리자는 FTA에 대해 무반응으로 일관
- 수출입실적이 전혀 없는 내수 위주 150여 개 영세협력업체의 CEO 또한 종전 거래관행 선호 및 FTA 무관심 등으로 전형적으로 FTA 사각지대에 놓인 실정

3. 장애 요소

- '11.7.1. 한-EU FTA 발효 이후 유럽 바이어들은 K전자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수입가격을 낮추기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게 되자 CEO 등은 FTA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됨

- 그러나 FTA 활용을 위해 인증수출자 인증이 필수적이거나, 처음 접하는 인증제도에 대한 정보부족과 준비소홀 및 수많은 부품공급 협력업체의 관리시스템 부재로 FTA 준비는 거의 제로(0) 수준

4. 극복 방법

- **(정부지원 적극 활용)** 우선, 세관과 무역협회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FTA설명회와 컨설팅 등에 실무자를 의무적으로 참석*하게 하여 FTA 실무능력 배양에 주력
 - * 초기에는 FTA 업무에 대한 추가부담과 책임으로 직원들이 기피하였으나, 참석자에게는 별도 수당 지급 등 인센티브 부여로 교육 참여 분위기 확산
- **(문제해결팀 구성)** 그간 배운 FTA지식을 토대로 사내 FTA해결팀을 구성·운영하여 현재 회사가 겪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점 도출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등을 통해 새로운 FTA 경영환경 구축
 - * 자사 제품에 대한 원산지결정을 위해 1차 소요부품별 품목분류를 정립하였고, 모호한 경우에는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질의
- **(FTA인프라구축)** 체계적인 원산지관리를 위해 전산시스템 구비가 필수이나 개발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이를 포기하고 대안으로 관세청에서 개발한 FTA-PASS를 활용하여 원산지관리 비용 절감
 - * 전산프로그램 개발자에게 의뢰한 결과 약 4~5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회신
- **(협력업체 교육)** 150여개 부품공급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원산지결정에 필요한 원산지확인서 징구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한 뒤 협력도를 측정하여 그에 걸 맞는 수주량 조정
 - * 원산지확인서 징구에 대한 협력도가 낮은 부품공급 업체에 대해서는 납품거절 등 고강도 대응으로 FTA경영체제로 흡수

5. 활용 효과

- 각각적 노력을 통해 서울세관으로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지위를 획득함에 따라 유럽 바이어에게 당당하게 C/O를 제공하였고, 그 결과 무관세 통관에 따른 가격경쟁력 확보로 매출실적 3배 거양*
 - * 이탈리아 ○○바이어 대상 '10년 2백만불 매출 → '11년 6백만불 매출

- 한·EU FTA 학습효과로 한·미 FTA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가능해져 對미 수출액이 87% 증가(283천불→530천불)하였고 현재에도 지속적인 매출상승 추세
- FTA 활용은 결국 주문량 증가로 이어졌고 동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라인증설과 아울러 30명을 신규 고용하였고, 장애인 근로사업장에 조립공정을 일부 위탁하여 장애인 근로 창출(35명)



위탁생산

라인증설

6. 시사점

- 치열한 원가경쟁 하에서는 낮은 수준(2%)의 관세인하 효과도 가격경쟁력 확보에 절대적인 변수인 점을 감안, 관세철폐를 가격협상에 유리한 카드로 제시할 수 있도록 FTA 기업경영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급선무
- FTA 활용을 통한 수출(매출)액 증대는 생산시설 확충과 고용증대를 견인하여 기업의 외형적 성장 유도

원산지관리 효율화형 | 30-2

F1(FTA No.1) 그랑프리, 거침없는 무한질주!

1. 기업 및 제품소개

- N사는 끊임없는 자동차엔진 R&D투자로 시동모터와 발전기 분야인 Starter와 Alternator의 No.1 Maker로서 선도적인 역할 수행
 - 주요수출국은 멕시코(65%) ▶ USA(12%) ▶ EU(8%) ▶ 중국(8%) ▶ 브라질(5%) 順
- 제품소개

품목	세계시장 점유율
고출력 시동모터 및 발전기(Heavy duty Starter & alternator)	20%
저출력 시동모터 및 발전기(Light duty Starter & alternator)	13%

2. FTA 활용전 상황

-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산업은 글로벌 경제침체와 내수부진 등으로 어두운 그림자가 계속 엄습해 오고 있는 현실에 직면

<p>1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 경쟁구도 심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9년 대비 업체수 2.4% 증가 	<p>2 국내의 경기침체로 매출액 감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9년 대비 매출액 10.2%감소
<p>3 국제유가·원자재 가격 등 생산비용 상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20년간 유가·원자재 400%, 300%이상 증가 	<p>4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대외경쟁 심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국 정부의 자국 산업보호 목적 비관세장벽강화

3. 장애 요소

무역부 김과장 설명회란 설명회는 모조리 다녀 이제 FTA에 대하여 조금은 안다고 생각이 들지만, 인증수출자를 받기 위해 당장 무슨 일부터 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① FTA이해부족 : 각 기관의 설명회 및 교육내용은 포괄적이고 추상적
- ② 직원들의 무관심 : “FTA는 무역팀 담당자만의 업무”라는 인식 팽배
- ③ 협력업체 무관심 : 원산지관리를 위한 전담인력, 정보부족 등 이유로 FTA활용포기
- ④ 협정위반의 강도 높은 제재와 업무과부하에 대한 두려움

4. 극복 방법

- (1차 진단) 세관 FTA집행센터 컨설팅을 통한 회사 진단/처방 파악

진단결과 문제점	Solution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의 정확한 인식과 정보 부족 • 고객사 주관의 주입식 원산지 확인서 관련 교육의 한계 ▶ 협력업체의 원산지확인서 발급 어려움 • 발급된 확인서의 신뢰성 문제 및 사후검증에 대한 불안감 팽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진과의 미팅에서 FTA업무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인식의 전환 유도 • 완성품 제조·공급기업 및 협력업체의 품목별인증수출자 인증유도 ▶ 신뢰성 있는 FTA관련 서류 발급 및 원산지 검증에 대한 사전대비 • 한-EU FTA체결국으로부터의 원재료 공급방안 강구(역내산 누적기준 활용)

- (2차 실천계획) FTA활용을 위한 로드맵 수립

중점 추진 활동	세부 실행 계획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인원 총원(전담자 1명+담당자 1명) • 원산지관리사 자격 취득(전담자)
전사적 원산지관리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추진 TFT 구성확대 • 원산지관리 사내 경영규정 제정
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방안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내 ERP SYSTEM 개선 • 협력사관리시스템 개발추진(Partner System개발)
협력사 관리 방안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사 교육/검증 계획 수립(Top&Down 맞춤형) • 인증수출자 취득컨설팅 진행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품목 5개 선정 • 협정별 원산지소명서 작성

● (3차 검증대비) 원산지사후검증에 대한 role model 수립

- (모니터링 결과) 협력사가 발급한 원산지확인서에 대한 신뢰성 낮음

* 본부세관 사전검증('11.8월), 고객사(현대차, 모비스) 검증('11.9월, 11월)

▶ FTA상대국의 고객사 대상 원산지검증시 "1차 협력업체 자격"으로, "당사에 대한 원산지검증", "하위 협력사로부터 수취한 원산지확인서의 정확성 검증" 필요

역할 1	국내거래에 대한 고객사에게 "원산지확인서" 교부
역할 2	직접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역할 3	국산원재료에 대해 협력사들로부터 "원산지확인서" 수취

● 협력사와 상생적·유기적 관리체계 구축

- 협력사에게 원산지검증,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지원 등 총체적 지원을 하고 원산지검증을 자체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이 성과 거양

* 검증방법 : 자율사전+세관합동 현장검증 (68개 업체)

구분	결과 및 시사점
자율사전검증 ('12년 3월)	S등급 3개, A등급 3개, B등급 5개업체 (원산지관리능력은 미흡한 수준이나 협력사의 인식변화가 큰 성과)
현장검증(6월)	B등급 이상 11개에서 30개로 비약적 향상

- 협력업체들도 원산지인증수출자 획득

5. 활용 효과

● 수출경쟁력 확보 및 협력사로의 FTA성과 향유

- 한-EU 및 한-미 FTA 협정에 따른 해외바이어 관세절감 : 338,539불

- 협력사 매출액 30% 향상 등 협력사로의 FTA 성과 확산

● 국내산업 활성화

- (일자리 창출) 협력사 상위 12개 업체 평균 13%의 고용창출

주요 협력사 최근 3년간 고용실적



- (新성장동력 확보) 신규사업분야(Alternator) 확장, 제조라인 증설

6. 시사점

- 원청기업과 협력기업의 FTA활용을 위한 공동노력은 수출량 증대로 이어져 발주량 증가 등 협력관계의 공고화는 물론 신규 고용창출 등 기업규모 확장까지 견인할 수 있어 Win-Win효과를 발생시키는 선순환 구조라는 인식 필요

제3장

원산지 규정 활용형

모델 31	미소기준(최소허용기준) 활용 모델	180
모델 32	중간재규정 활용 모델	186
모델 33	누적기준 활용 모델	193
모델 34	특정공정 수행기준 활용 모델	197
모델 35	완전생산기준 활용 모델	202

모델 31

미소기준 (최소허용기준) 활용 모델

01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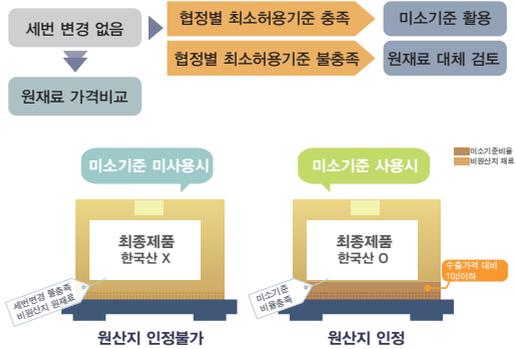
- 원재료 중 일정비율 이하의 물품에 대하여 미소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시키고 원산지관리를 간소화한 모델
 - 세번변경기준 물품의 원산지판정 시 간과하기 쉬운 '미소 기준'을 적용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 수출경쟁력 확보

미소기준 어떤 물품의 생산과정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가 당해물품에서 차지하는 비중(가격 혹은 중량)이 아주 미미한 경우에는 품목별 원산지요건(PSR)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02 | 비즈니스 모델

- 산업구조가 복잡해지고 분업화되어 모든 원재료가 세번변경 기준을 충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
- 세번변경기준의 취약성을 보완하고자 협정에서 규정한 미소기준의 활용 사례를 공유하여 FTA 활용혜택 수혜 기업의 확대 필요
 -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비원산지 재료의 사용이 가능하여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을 위한 원재료 원산지관리의 유연성 발휘
 - 원재료 종류가 많은 제품의 원산지 판정시 가격이 미미한 원재료에 미소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관리 부담을 최소화하는 효과 창출

미소기준 이용 FTA 활용모델



※ **유의사항** BOM의 품목별 세번번호와 단가를 확인하고 FOB 또는 EXW에 대한 미소기준을 반드시 확인 필요

협정별 최소허용기준

구 분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EFTA	미국	EU/터키	페루	
가격 기준	일반	8%	10%	10%	10%	10%	10%	10%	
	농수산물	1류~24류 CTSH 충족하면 적용가능	1류~14류 적용제외 15류~24류 CTSH 충족하면 적용가능		1류~14류 적용제외	1류~24류 CTSH 충족하면 적용가능		1류~24류 CTSH 충족하면 적용가능 (일부제외)	1류~14류 적용제외
중량 기준	섬유	8%	8%	10%	7%	10%	7%	8~30% 일부 가격 기준	10%

03 | 활용 및 확산분야

- 모든 산업분야 및 FTA

원산지규정 활용형 | 31-1

미국시장에서도 기술력을 인정한 의류 전문 업체

1. 기업 및 제품소개

- A사는 남성용 셔츠를 전문으로 생산하여 미국, 유럽으로 수출하는 업체임

2. FTA 활용전 상황

- A사는 와이셔츠, 티셔츠 등 섬유제품 품질에 대한 까다로운 미국 시장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품질에 대한 연구를 통한 품질의 우수성 필요

3. 장애 요소

- 원산지결정기준 수출품의 원산지 기준에 있어 국내산 재봉사를 사용해야하는 예외 조건으로 인해 수출품의 원산지를 충족하기 어려움
- 미소기준 역외산 재봉사에 대한 미소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절차 및 기준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

원산지결정 기준	미소기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105호 내지 제61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제5401호 제외)	세번변경을 거치지 아니한 섬유원료 또는 원사의 총 중량이 구성요소의 총 중량 7%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소요부품명세(BOM)

품명(재료명)	세번부호(HS)	원산지	공급자
원단(100% cotton)	5205.47	KR	○○방직
심지(Interlining)	6217.10	미상	○○사
재봉사(Sewing Thread)	5401.10	미상	○○상사
어깨테이프(Should Tape)	6217.90	KR	○○상사
.	.	.	.
.	.	.	.

4. 극복 방안

- 수출물품의 원산지판정을 위해 원재료 생산자로부터 국내제조확인서 및 원산지확인서를 발급받아 원재료의 원산지를 확인
- 비원산지원재료인 재봉사의 경우 미소기준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충족함을 확인 함

미소기준 산출 내역

구분	무게(g)	전체무게(g)	미소기준 산출
어깨테이프	0.49	244.3	5.58/244.3 × 100 = 2.28(%)
재봉사	5.58		
.	.		

- CEO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FTA활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세관의 FTA 활용 1:1 맞춤형 컨설팅 참여 등 원산지관리 능력 향상에 집중
- FTA 원산지관리 전담직원을 지정하고 전담직원이 세관, 무역협회 등 전문기관의 전문가 양성프로그램 적극 참여

5. 활용 효과

우수한 품질과 한·미 FTA 관세인하로 전년대비 對美 수출 67% 증가

6. 시사점

- FTA를 활용하기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전문기관의 컨설팅, 교육 참석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FTA 활용에 성공한 사례임

원산지규정 활용형 | 31-2

미소기준 적용으로 한-미 FTA 활용

1. 기업 및 제품소개

- B사는 스피커, 이어폰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한국과 중국, 베트남에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에 현지법인을 두고 있음
- 제품소개

품명	HS번호	원산지결정기준(한·미 FTA)	관세혜택
스피커	8518.29	4단위 세번변경 (CTH) 또는 제8518.90호로부터의 변경 (단, 집적법 35% 이상 또는 공제법 45% 이상 역내부가가치 발생한 것)	4.9% ▶ 0%

2. FTA 활용과정

1. FTA 활용시 장애요인

- 한·미 FTA를 對美 수출확대의 전략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한정된 인력과 자원을 가진 중소기업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FTA 협정을 이해하는 초기단계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음

2. 활용과정(극복과정)

- HS4단위가 변경되지 않는 원재료가 조정가격의 10% 이내인 경우 '미소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협력업체 원산지확인서 없이 자체적으로 FTA 활용 결정

수출물품 원재료 명세서(BOM)

부품	HS코드	부품의 부가가치 비중(%)			비고
		제품A	제품B	제품C	
FRAME	7209	※ 세번변경 기준 불충족 원재료의 부가가치 비중 모두 10% 미만으로 미소기준 충족			4단위 세번변경
CENTER POLE	7209				
TERMINAL	8518	1.45	1.15	1.21	미소기준 적용
-	-	기재생략			4단위 세번변경

3. 활용 효과

- FTA 관세혜택으로 수출물품의 가격경쟁력 강화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200% 수출증대 효과를 거둠
- 세번변경기준의 완화규정인 ‘미소기준’을 물품특성에 맞게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원산지확인서의 발급 및 관리에 따르는 시간·비용 절감

4. 시사점

- 세번변경기준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각 원재료별 부가가치를 감안하여 미소기준 등 보완 규정 적용 가능여부를 한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일정 역내부가가치조건 충족 시 베트남 등 FTA 체결국 현지공장에서 반제품을 무관세 수입 후 가공수출 형태의 국제분업 가능

모델 32

중간재 규정 활용 모델

01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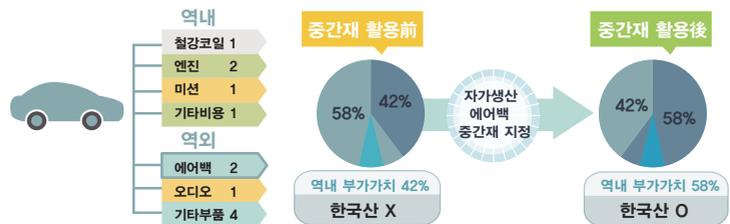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재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하여 중간재로 사용하는 가공무역이 발달함에 따라 중간재 규정 활용을 통해 FTA 활용을 제고 가능 모델
 - 중간재 규정에 대한 수출기업과 협력업체의 이해부족 등으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판단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

중간재 생산자가 역외산 재료를 사용하여 중간제품을 생산한 경우 당해 중간 제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면 역외산 재료를 무시하고 중간제품의 가격 전체를 최종 생산제품의 역내 부가가치로 취급해 주는 것

02 | 비즈니스 모델

- 부가가치 기준 적용 원산지 판정할 때 미세한 차이로 충족/불충족 시 적용
 - 역외산 재료비가 역내산 부가가치에 포함될 수 있어 원산지 기준 충족용이

중간재 규정 이용 모델



자동차 : 역내 부가가치 55%이상시 원산지 인정

협정별 근거규정 비교

구분	칠레	미국	싱가포르	페루	인도	아세안	EFTA	EU/터키
인정여부	○	○	○	○	×	×	○	○
지정의무	○	×	○	×	×	×	×	×
대상물품	자가 생산품	자가 생산품	자가 생산품	역내 생산품	×	×	역내 생산품	역내 생산품

03 | 활용 및 확산분야

- 모든 산업분야 및 중간재 적용 FTA

원산지규정 활용형 | 32-1

차근차근 풀어보는 FTA, 모범답안을 찾다!

1. 기업 및 제품소개

- C사는 유압브레이커 생산 자체 브랜드를 보유한 대표적인 수출중소 기업임
- 미국, 홍콩, 말레이시아 등 20여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유럽기계 안전규격 획득을 시작으로 ISO 9001인증을 획득하는 등 품질 향상과 상품 차별화를 통한 수출 확대 노력
- 제품 소개

거래품명	HS CODE
유압브레이커	8431.49
물품사진	
용도설명	<p>굴삭기의 유압펌프에서 발생하는 유압에너지를 받아 이를 장비내부의 충격에너지로 변환하여 목적물의 파쇄를 목적으로 개발된 장비로 콘크리트 파쇄 및 아스팔트 파쇄와 각종 배수로, 관로공사, 도로공사, 석산 등 암석파쇄작업 및 아파트 등 대형 공사장의 터파기 공사의 암석 굴착용 장비임</p>

2. FTA 활용전 상황

- C사는 인도와 아세안 국가로의 수출량이 전체 수출의 약 66%를 차지
- 관세율 차이가 5% 이상으로서 FTA실익이 매우 큼
- 원산지 결정기준 불충족, 협력업체 비협조 등의 이유로 FTA 미활용

3. 장애 요소

- 한-아세안 FTA와 한-인도 CEPA 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인 세번 변경기준(CTH 또는 CTSH) 불충족
- 원재료 공급처인 B사 등으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 등 역내산이라는 원산지 확인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워 활용 포기 상태

4. 극복 방안

협정	품명	세번	원산지 결정기준	적용 기준	미소 기준	실행 세율	협정 세율
한-아세안 FTA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유압 브레이커	8431.49	CTH or RVC40%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RVC40%	10% (가격)	15% 5% 1%	10% 0% 0%
한-인도 CEPA	유압 브레이커	8431.49	CTSH & RVC35%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3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CTSH & RVC35%	10% (가격)	12.5/kg	5%

극복 과정	주요 내용
미소기준 활용	- 107개 원재료 중 원산지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금액이 작은 원재료 O-ring 등 48개품목은 미소기준 적용 - 미소기준은 물품가격의 10% 이내 범위의 역외산 원재료는 세번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됨
수입원재료 거래선의 전환(중국→국내)	- 중국 '0000'로부터 수입하는 'MOUNTING BRACKET ASSY' 등 4개 품목은 국내 업체인 '000'로 거래선 전환
중간재 활용	- 주요 부품 실린더는 원재료인 철강 잉곳을 직접 생산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중간재 기준 활용 - 중간재 지정으로 역내부가가치 상승하여 안정적인 FTA 활용 가능
협력사 설득	- 'VALVE HOUSING' 등 미소기준 적용 이외 품목에 대하여는 공급 업체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 유도

- 한-아세안 FTA 원산지기준(RVC 40% 이상)을 종전에는 미충족 하였으나, 당사에서 생산하는 주요부품인 철강잉곳을 중간재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결정기준 충족(RVC 51%)

직접재료비		직접경비, 제조간접비	판매 /일반관리비	이익	FOB가격	RV비율 (%)
역내	역외					
4,389,492원	6,237,357원	3,847,251원		1,274,900원	12,749,000원	51%

3. 활용 효과

- FTA를 통한 바이어의 수입 관세인하 효과와 일부 중국에서 수입하던 원재료의 수입선을 국내로 전환하여 제품의 품질 향상 및 국내 원재료 사용 촉진

4. 시사점

- 원산지기준 충족을 위해 FTA협정에서 인정하는 미소기준, 중간재 규정 적용 및 원재료 일부를 역내산으로 변경하여 FTA 적극 활용한 사례

원산지규정 활용형 | 32-2

중간재 활용으로 한-EU FTA 원산지 규정 극복

1. 기업 및 제품소개

- D사는 DVR(디지털 영상저장장치)를 제조하여 주로 유럽, 미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 제품소개

수출물품(HS)	적용 FTA	원산지결정기준	관세율(%)	
			MFN	FTA
DVR (8521.90)	한-EU	MC 45%*	13.9	0 (5년간 균등철폐)

* 역외산 원재료비율 45%이하

2. FTA 활용 상황

1. FTA 활용시 장애요인

- 역외산재료 사용비율이 높아 원산지 불충족 판단 ⇒ FTA 활용 포기
- FTA 원산지결정기준 및 인증수출자 신청절차등에 대한 이해 부족
- 다수 부품(200여개)에 대한 품목분류 애로

2. 활용과정(극복과정)

- FTA 활용 Total Consulting

인증 전

- 우편물 발송, 전화상담을 통한 인증제도 홍보
 -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절차 안내
 - 원산지결정기준 설명 및 기준 미충족에 대한 해결 방안 제시
 - 역외산 재료 비율이 높아 원산지기준 불충족으로 인증 포기
 - 200여개 부품의 세번 검토에 장시간 소요
- *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최종 제품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재료(=중간재)의 가격 전체를 원산지 재료비로 인정 가능

인증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물품, 원재료 가격 산정 방법 안내 ● 원산지소명서, BOM 등 구비서류 작성 방법 안내 ● 원재료의 품목분류에 대한 의견 제시 ● 중간재* 규정 적용으로 원산지 기준 충족 가능성을 컨설팅 ● 원산지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재료 세번 검토
인증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신고서 문안 작성 등 활용 방법 안내 ● 서류 보관 등 사후관리 방법 안내

-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으로 FTA 활용 토대 마련
 - 인증수출자 준비로 전사적 원산지관리 체계 정비, 원산지 관리 능력 배양
 - 한-EU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위 획득('11.6.28.)

3. 활용 효과

- 한-EU FTA 활용으로 관세절감 · 수출증대 예상
 - 관세절감 : 연간 약 7만불('10년 당기순이익의 14% 상당액)
 - 수출증대 : 연간 약 30만불 예상
- FTA를 활용한 수출경쟁력 강화를 통한 신규 해외시장 개척 등으로 글로벌 시장경쟁에서 우위 확보

4. 시사점

- 'FTA 교역시대' 진입으로 FTA 활용은 기업 생존을 위한 필수 요건이며, 원산지 전문가를 활용하여 업체별 특성에 맞는 FTA 활용 전략 수립
- 부가가치기준 적용 시 판정결과가 미세한 경우 '중간재' 규정 적극 활용

모델 33

누적기준 활용 모델

01 | 개요

- 수출자가 국내산 원재료만으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이 어려운 경우, 계약상대국의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하여 수출하면 수입 원재료를 역내산으로 인정받아 원산지기준 충족 가능 모델

누적기준 어떤 물품의 원산지 결정시 계약상대국에서 발생한 생산과정 투입요소를 자국의 것으로 간주하는 것

02 | 비즈니스 모델

- **(재료누적)** 계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한 재료를 사용한 경우 원산지 판정시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며 모든 FTA협정에서 인정
- **(공정누적)** 상대국 수행 생산공정을 자국 수행 생산공정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미, 한-페루 FTA에서는 인정되나, 한-인도, 한-아세안, 한-EU, 한-EFTA FTA에서는 불인정

누적기준 활용 모델



※ (유의사항) 누적규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빙서류 첨부가 필요하며, 협정에 공정누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품목별기준에서 누적을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예외적으로 공정누적 인정가능

03 | 활용 및 확산분야

- 모든 산업분야 및 누적기준 적용 FTA
- 특히 체약상대국과 운송비가 적게드는 경우 유리

누적기준 적용가능 협정

구분	칠레	싱가포르	페루	미국	인도	아세안	EFTA/ EU/터키
㉠재료누적	○	○	○	○	○	○	○
㉡공정누적	○	○	○	○	×	×	×
근거규정	제4.5조	제4.9조	제6.6조	제6.5조	제3.7조	제7조	3조

원산지규정 활용형 | 33-1

FTA, 수출전선에 무지개를 띄우다

1. 기업 및 제품소개

- E사는 자동차 내외장용 플라스틱 코팅 도료(Paint) 전문제조업체로 국내 자동차회사에 내수판매와 미국, EU, 인도, 중국 등 해외로 수출
※ 2009년도 500만불 수출의 탑, 2010년도 1,000만불 수출의 탑 수상
- 수출물품(Paint, HS 제3208호)은 자동차 내·외부의 범퍼, 핸들, 휠커버, 라디에이터 그릴, 썬루프, 센터 콘솔, 글로브 박스, 오디오판넬, 에어백, 등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코팅재로서 첨단 기술 적용 제품
※ 2012.3월 업체별 인증수출자로 지정 받아 한-EU, 한-인도 CEPA 등 활용

2. FTA 활용전 상황

- 동사는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하여 2006년도부터 FTA 협상 및 발효국인 인도, 체코, 중국, 미국 등에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현지화 전략 추진
- 2011년 FTA 체결국 수출금액은 전체 수출액의 55%(850만불)를 차지하여 FTA활용이 절대적으로 필요
- FTA 협정별 현황

수출물품	적용협정	기본세율(%)	협정세율(%)
3208.10	한-미	3.7	0
	한-EU	6.5	0
	한-인도	12.5	7.8
3208.20	한-미	3.6	0
	한-EU	6.5	0
	한-인도	12.5	7.8
3208.90	한-미	3.2	0
	한-EU	6.5	0
	한-인도	12.5	5

- 한-미, 한-EU는 관세 즉시철폐 품목으로 3.2%~6.5% 관세 혜택

3. 장애 요소

- 한-미 FTA 활용 장애요인
 - 협력업체 원산지확인서 미제출 ⇒ 원산지결정기준(CC) 미충족
 - 인적 물적 비용 발생 ⇒ 소요 원재료 전체에 대한 원산지확인서 미확보

4. 극복 방안

- 한-미 FTA 활용 극복과정 : FTA활용 Total Consulting 실시
 - 원산지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재료관리 단순화(인력/비용 절감)
 - 미국산 원재료를 수입하는 국내 협력업체를 설득하여 미국산임을 증명하는 원산지확인서를 확보하여 누적기준을 적용(세번변경기준 충족)

한-미 FTA 협정의 도료(Paint) 원산지 결정기준

HS	품목	원산지 결정기준
3208.10	Based on polyester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CC)
3208.20	Based on acrylic or vinyl polymer	
3208.90	other	

5. 활용 효과



- 수출증가에 따른 2012년도 연간 관세혜택 예상액은 약 6.6억원으로 추정

6. 시사점

- 협력업체와 유대관계 형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외국산 원재료를 역내산으로 변경하여 FTA를 활용한 사례

모델 34

특정공정 수행기준 활용 모델

01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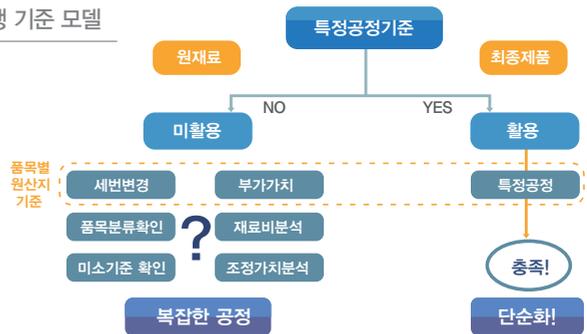
- 협정에 따라 수출물품에 개별 적용되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또는 류 또는 호의 주 형식으로 규정된 특정가공공정 규정을 활용한 모델

특정공정기준은 제품의 제조공정 중 각 제품에 대해 가장 중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당해 제품의 주요한 특성을 발생시키는 기술적 제조·가공작업을 열거하여 지정된 공정이 역내에서 수행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

02 | 비즈니스 모델

- 원재료의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 발생수준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 없고 특정공정만 입증하면 되므로 원산지관리가 편리한 모델
 - 해당 공정에 대한 입증자료 등을 갖춘 상태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 FTA 활용 수출업체의 사후 원산지검증 등 원산지 관리 비용 감소와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가능성 증가
- 원재료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원산지가 인정되므로 단가가 저렴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최종제품의 가격경쟁력 향상 가능

특정 공정 수행 기준 모델



※ (유의사항) 수출물품이 협정의 특정공정기준 적용물품인지 확인한 후 자사 수행 공정이 원산지결정기준에 부합되는지 엄밀히 확인 필요

03 | 활용 및 확산분야

- 석유 화학제품 등 특정공정 기준이 규정된 품목

원산지규정 활용형 | 34-1

화학기업 3가지 약점을 버리고 1가지 장점으로

1. 기업 및 제품소개

- F사는 글리신과 자일리톨 등 식품 및 의약품용 소재, 중합방지제 및 기타 정밀화학제품을 제조하여 미국 등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

2. FTA 활용전 상황

- FTA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달리 철저한 사전준비 부족으로 매출처의 원산지확인서 발급요청에 대한 대응 미흡
- FTA 원산지 증명서 미발급시 오히려 기존 국내 거래처 및 바이어에 대한 거래 중단 우려

3. 장애 요소

- FTA 활용 시 장애요인(세가지 약점 : 3W(Weakness))

1W : 전문인력 부족 - 중소기업으로 원산지관리 전문인력 부재

2W : 세번분류와 원가관리의 어려움 - HS품목분류 전문지식 부족, 원재료 가격관리 어려움

3W : 원산지 판정·관리 능력 부재 - 협정 규정 이해도 낮음, 지속적인 관리능력 부족

4. 극복 방안

- 다양한 협정기준에 대한 컨설팅 경험이 많은 본부세관 컨설팅팀에서 화학물품의 원산지 결정의 상세기준 정밀분석
- 화학제품의 경우 한미-FTA협정이 타 FTA협정과 다른 결정기준이 있음에 착안

화학제품류의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물품 및 HS	미국	칠레	싱가포르	EFTA/EU
석유 및 화학제품 (27류~38류)	CTH or 규칙	CTH or RVC(45/30)	CTH	CTH or MC50

- 한-미 FTA 협정의 화학제품 원산지 규칙 세부내용
 - 화학반응이 일어나면 원산지물품으로 취급된다는 규칙1의 내용을 설명, 화학물질의 혼합·여과 공정 등 수행시 분자구조식이 변경되어 원산지 충족됨을 확인

화학제품 가공공정기준 적용 예시(제 6부 주)

① 화학반응: 반응전 재료의 세번과 반응 후 상품의 세번이 동일하나 원산지 인정

OC(=O)C(O)C(=O)O
 옥살산 (2917.11)

$+ 2\text{NaOH}$

[O-]C(=O)C(O)C(=O)[O-]
 옥살산나트륨 (2917.11)

$+ 2\text{NaOH}$

[O-]C(=O)C(O)C(=O)[O-]
 옥살산나트륨 (2917.11)

OC(=O)C(O)C(O)C(=O)O
 구연산 (2918.15)

$+ 3\text{NaCO}_3$

[O-]C(=O)C(O)C(=O)[O-]
 구연산나트륨(2918.15)

② 정제과정: 정제전 재료의 세번과 상품의 세번이 동일하나 원산지 인정

95% 에틸렌 C₂H₄
 (2901.21)

\rightarrow

99.9% 에틸렌 C₂H₄
 (2901.21)

90% 페놀 C₆H₅OH
 (2907.11)

\rightarrow

99% 페놀 C₆H₅OH
 (2907.11)

5. 활용 효과

- 수출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에 신뢰감 생성으로 공급처와 수출자 모두 사후 검증에 대한 부담감 해소
- 국내 공급업체에 원산지(포괄)확인서 미발급으로 인한 매출손실 위기 해소와 동시에 연계산업의 FTA 활용 지원

6. 시사점

- 화학제품류(28~39류)의 한-미 FTA 협정 원산지 결정기준 특성을 이용하여 다른 업체에 대한 확대 가능
- 화학반응에 따른 분류는 기업에서 더 전문성이 있어 결정기준을 이해하기 쉬우며 충족 여부에 대해 확인이 가능

원산지규정 활용형 | 34-2

협력업체를 통한 손쉬운 FTA 활용

1. 기업 및 제품소개

- G사는 섬유제품 제조업체가 생산한 Polyester Staple Fiber를 구입하여 아프리카, 미국 등지로 수출하는 도매업체임
- 수출물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순수하게 도매업만을 영위

2. FTA 활용전 상황

- 폴리에스터 화이버의 경우 국내 섬유산업 환경상 한-EU FTA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이 용이함에도 원산지 관리능력 및 시스템 부재로 활용 저조
 - * SP: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로부터 생산된 것
- FTA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원산지확인서 등 증명자료 구비가 어려워 FTA 활용이 어려움

3. 극복 방법

- 한-EU FTA 활용을 위해 발효 이후 세관 설명회 참석
 - 인증수출자 제도 이해 및 FTA 활용방법 제고를 통해 두려움 해소
- 완제품을 생산하는 협력업체의 협조를 통해 인증수출자 지정('11.8.1)
 - 컨설팅으로 완제품 생산업체 원산지결정기준(SP) 충족 확인 및 원산지확인서 등 필요서류 구비를 통해 인증수출자 지정
- 한-EU FTA 활용 경험을 바탕으로 한-미 FTA 발효 즉시 활용
 - 한-EU FTA 원산지기준 충족하는 경우 한-미 FTA 협정도 충족

- EU 인증담당자와 바로 연락하여 한-미 FTA 발효 즉시 원산지 증명서 발행방법 등 상담을 받고 즉시 활용

품명	HS	협정	원산지 결정기준	관세율 → 협정세율
Polyester Staple Fiber	5503.20	한-EU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로부터 생산된 것	4% ▶ 0%
		한-미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 (품목번호 5201부터 5203까지, 5401부터 5402까지, 5403.20, 5403.33부터 5403.39 및 5403.42부터 5405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4.3% ▶ 0%

▶ 화학재료(Polyester Resin)로부터 제품이 생산되어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4. 활용 효과

- 한-미 FTA 발효 100일간 전년 동기 대비 대미 수출액 100% 증가
 - 미국 수출물량이 증가추세로 단일의 수입자와 거래를 해왔으나, 한-미 FTA 발효 후 새로운 바이어 확보를 통한 향후 대미 수출확대 예상
- 한-EU FTA 발효 후 새로운 거래선을 확보하여 원산지 인증품목을 수출함으로써 FTA활용을 통한 수출 증대

5. 시사점

- 수출자, 완제품 공급자 등의 연관기업간에 FTA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원산지 증명서류의 원활한 공급을 유도하여 FTA 활용효과를 극대화 필요

구분	상세내역
업종(품목)	인조섬유,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HS 제5503.20호)
적용협정	한-EU FTA
추천업체	섬유제품 수출업체

모델 35

완전생산기준 활용 모델

01 | 개요

- 원산지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원산지 입증 모델

- ① 농산물 출하확인서, 조합원확인서류, 수산물수매확인서, 어촌계장확인서 등
- ② 농지원부, 경작증명서, 선박국적증서, 어업허가증, 원양어획반입신고서 등

- 일반적으로 ①거래단계에서 발행되고 있거나 ②국가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등으로 완전생산 및 획득사실 입증(해당서류로 원산지확인서 대체)
- 해당 공정에 대한 입증자료 등을 갖춘 상태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02 | 비즈니스 모델

- 원산지확인서 대체가능 서류로 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 입증이 가능해짐에 따라 1차생산품의 FTA 활용 가능성이 높아짐
 - 완전생산기준인 경우 농수축산물 등 1차 생산제품이 많으며, 대부분 생산자가 농어민으로 원산지확인서 구비에 어려움이 있음
 - * (예시) 수산물인 경우 수출자의 입장에서 최초생산자(선주)가 바다에 있어 원산지확인서 징구가 어렵고,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음
 - 또한 공산품과는 달리 당해물품의 재배, 채취, 어로 등 생산에 대한 명확한 근거서류가 없고, 서류 확보 또한 어려움



03 | 활용 및 확산분야

- 농수축산물 생산 업체 및 1차 생산제품 가공 수출업체

원산지규정 활용형 | 35-1

역내산이 된 진도 맛김

1. 기업 및 제품소개



- H사는 2000년에 설립된 종업원 30여명의 소규모 업체로 조미김, 김밥김 등 해조류를 가공하여 수출하며 수출 실적이 2012년 인증수출자 인증 후 매년 괄목할만하게 증가하고 당기순이익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단위 : 천불

수출실적

HS (품명)	2011		2012		2013		2014.6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212.21-1010 (건조김)	5	27	14	945	15	806	7	764
2106.90-4010 (조미김)	11	98	17	297	35	689	32	699

2. FTA 활용전 상황

- 2010년, 2011년 총 수출은 각각 142천불(11건), 125천불(16건)으로 주로 내수에 치중, 주로 수출업체에 납품하여 직접 수출실적은 미비
- 2012년 해외로 판매시장을 확장함에 따라 필요에 의해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을 득함.
- 동사는 국내 김 생산자로부터 물김을 공급받아 자회사인 ○○○푸드에서 건조김을 가공한 후 건조김을 공급받아 수출하거나 조미한 후 수출



3. 장애 요소

- 마른 김은 각 FTA 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에서 규정한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을 입증할 근거자료 확보 어려움
 - 공장에서 제조되는 물품은 원재료 공급 시 생산자가 발급하는 원산지 (포괄)확인서 등으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하나 어업인 발급 원산지 (포괄)확인서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
 - 1차 산물인 ‘김’의 경우 물김의 국내 생산자로부터 국내 재배, 수확, 채취를 입증 할 근거서류가 무엇인지와 근거서류의 확보가 어려움.

조미김의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체결국	결정기준
페루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1211.20 호의 것, 제 1212.20 호의 것, 또는 제 1302.19 호의 인삼 제품을 제외한다) 에서 변경된 것
아세안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211.20호, 제1212.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건조김은 완전생산품이어야 하고 아세안, 페루 FTA에서 조미김의 재료로 사용되는 ‘김’은 완전생산품이어야 함.

- 체결국별 품목분류 상이로 품목분류에 어려움
 - ‘김’은 제조 공정에 따라 건조김(HS 제1212.20호 2007기준), 구운김 (HS 제2008.99호), 조미김(HS 제2106.90호)에 각각 분류되나 EU에서는 조미김이 HS 제2008.99호에 분류

4. 극복 방법

- 1차 산물의 국내 생산 근거자료 확보
 - 우리나라에서 김 양식을 하는 어업권이 있는 어업인(어촌계)은 당해 지역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과 계약을 체결하여 수협에서 위탁 판매를 실시한다는 수산업계 현황을 파악
 - 면허가 있는 어업인(어촌계)과 수협의 어업권행사계약서 및 물김의 위탁판매 출하확인서(수협), 수협의 물김 송품장 등을 근거서류로 확보

5. 활용 효과

- 2012년 이후 매년 건조김 및 조미김에 대한 수출 증가
 - 수출자에 대한 공급을 포함하여 2013년 수출 전년대비 20% 증가
 - 2013년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전년대비 2%, 6% 증가
- 국내생산 완전생산품의 업계 현황을 분석, 각 협정의 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국내에서 생산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지원

6. 시사점

- 1차 산업 생산품의 원산지 증빙 방법 체계화로 우리 농어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 농어업이 FTA 최대 피해산업에서 FTA 활용산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FTA 시대 농어촌 활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제4장

민·관 협력형

모델 36	관세청 YES FTA 지원 프로그램 활용 모델	208
모델 37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 활용 모델	213
모델 38	원산지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원산지관리 모델	216
모델 39	Job Matching을 활용한 FTA 인재 영입 모델	221
모델 40	품목분류 상이 극복모델	226

모델 36

관세청 「YES FTA」 지원 프로그램 활용 모델

01 | 개요

- FTA 활용 방법 및 원산지 관리에 대한 지식이 없어 제도적인 지원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모델

02 | 비즈니스 모델

- 기업의 FTA활용단계에 맞춰 FTA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 세관의 무료 지원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민간 컨설팅 비용을 절감
 - 원산지관리 능력 향상으로 FTA 활용도를 높이고 사후 검증 대비 가능

〈예시〉 원산지관리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 원산지 사전검증 제도 활용

- FTA활용 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 → 예산컨설팅* 활용

- 회사내 신규 채용된 원산지관리 전담 직원 → FTA상설교육 수강

* FTA컨설팅이 필요한 업체에 전문컨설턴트를 연계 ·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

관세청 YES FTA 지원 프로그램 활용 모델



03 | 활용 및 확산분야

- 모든 산업분야 및 FTA

민·관 협력형 | 36-1

「YES FTA」 지원으로 비용은 절감, 수출은 증가

1. 기업 및 제품소개

- B사는 폴리우레탄 소재의 타이어 주형틀(모형)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기업으로 수출품 제작과정은 비교적 단순하지만 자체 가공 프로그램 개발 및 양질의 프로그래머 양성을 통해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

2. 활용 전 상황

- B사는 설립 1년도 되지 않은 신생기업이지만 타이어 주형틀 제작분야에 우수한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설립 당시부터 국내시장보다는 해외시장 판매를 목적으로 제품 개발 및 판로 확보에 역점
- 지속적인 해외 마케팅 및 홍보 전략을 통해 중국, 루마니아 등 해외에서 수출계약 성사

3. 장애 요인

- 제품개발 및 생산 분야를 제외한 분야의 경험·지식 부재로 루마니아 바이어로부터 한-EU FTA 원산지신고서 구비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여 수출 중단 위기
- 수출시 본품(주형틀)과 함께 수출하는 예비부분품 추가분에 대한 계약국 검증에 대한 불안감 존재

4. 극복 방법

- YES FTA센터의 전폭적인 컨설팅 지원

- 기업 원산지 담당자와 상담 실시 ▶ FTA개요 및 활용필요성 인식 ▶ 광주세관 예산 컨설팅 연계 ▶ 컨설팅 완료
- 컨설팅과 동시에 한-EU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을 동시에 진행하여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
- FTA 활용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애로 사항 해결
 - 기업의 가장 큰 부담이었던 원재료 품목분류 문제 해결
 - 부분품이라 할지라도 본품과 따로 수출하거나 수량이 예비부분품의 한도를 넘는 경우에 대비하여 부분품에 대한 추가인증으로 사후검증 대비

5. 활용 효과

- 對루마니아 수출품에 대한 특혜 관세적용(관세인하 2.7% ⇒ 0%, 2014. 5월 이후 약 3,249 USD 관세 절감) 및 한-미 FTA적용 및 물품취급 수수료 절감으로 수출시장 다양화에 박차
- FTA 원산지관리 업무에 대한 자신감 획득 및 차질 없는 원산지관리로 바이어의 신뢰도 향상
- 매출액 증가에 따라 적기 생산물품 공급을 직원 10명 추가 고용 (프로그래머 5명, 현장 가공직원 5명)
 - ▶ 기존 직원수 대비 29% 고용 증대 (35명 ⇒ 45명)
- 수출물품에 대한 체계적인 원산지관리를 통하여 FTA 원산지 관리업무에 대한 자신감 획득
- 종전에는 원산지 관리가 필요 없는 중국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FTA 원산지관리가 가능함으로써 FTA 체결국가인 EU, 북미 지역으로의 수출시장 확대

6. 시사점

- 신생 제조업체의 경우 수출절차나 FTA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여 컨설팅, 인증수출자 인증 지원 등 세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민·관 협력형 | 36-2

「YES FTA」 지원으로 미국세관 검증대응에 성공

1. 기업 및 제품소개

- C사는 1997년에 설립되어 꽃다발 포장재 등 섬유제품을 제조하여 미국, 유럽, 중국 등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 제품소개

품명(HS)	적용협정	원산지결정기준	기본세율	협정세율
Plastic wrapping mesh (HS 제5407호)	한·EU	SP	8	0
	한·미	SP	8.5	0

2. 활용 전 상황

- C사의 포장재는 크리스마스 장식용품 및 인테리어 소품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 유럽, 미국 등 해외 수출량이 꾸준히 증가
- 유럽, 미국과의 FTA협정 발효로 수출량은 증가되었지만 원산지관리 인력은 부족하여 원산지 검증 위험에 노출

3. 장애 요인

- 홍콩 에이전트사의 제3국 송장발행에 따른 생산자 의심으로 시작된 미국세관 검증 시작
- 섬유제품의 복잡한 원산지결정방법과 까다로운 미국세관의 서류 제출 요구에 전 직원 10명 내외의 C사는 제품 생산에도 큰 위기를 맞음

4. 활용 과정

- 한·EU FTA 인증출자 지정 준비를 위한 FTA상설교육 수강, 원산지관리사 지정 운영, 원산지 증빙서류 5년간 보관으로 검증 대응 준비
- 한-미 원산지증명서 자율 발급을 준비하면서 FTA 협정별 원산지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세관의 YES FTA 프로그램 지원 요청
- 서울세관 YES FTA 지원팀은 한-미 FTA 원산지검증을 대비한 원산지관리 시스템 구축 및 협정별 FTA활용 방법 컨설팅 실시

세관의 FTA 활용 지원 위한 YES FTA 프로젝트



5. FTA활용 효과

- 인증수출자 지정 준비 및 YES FTA컨설팅을 통한 증빙 서류 보관 등 철저한 원산지 관리로 미국세관 검증에 성공적으로 대응
- 한·EU 인증수출자 지정 이후 연간 최대 338%의 수출 증가 및 인증수출자 교육에 따른 사전대비로 미국검증에 성공적으로 대응
- 한·미 FTA활용 이후 2013년 기준 연간 약 1억 8천만원의 관세절감 및 관세 및 물품취급수수료 연간 약 100만원 절감 효과

6. 특징 및 시사점

- 관세당국의 원산지관리 지원과 이에 부합하는 수출자의 성실한 준비로 수출 증대 및 검증 대응에 성공한 모범사례

모델 37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 확인 활용 모델

01 | 개요

- 원산지확인서 작성 능력이 없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원재료 및 공급처의 개수가 많아 원산지확인서를 확인하는 업무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수출자가 활용할 수 있는 모델

02 | 비즈니스 모델

- 공급자는 원산지 증빙자료를 공신력이 있는 세관에 직접 제출하여 원산지확인서에 대한 사전확인 받음
- 수출자는 공급자가 제출한 세관장 사전확인 원산지확인서를 근거로 원산지 증명서를 신속하게 발급 받음

공급자	수출자
원산지확인서 신뢰성 향상	(기관)원산지증명서 신속발급
제품정보(원가 등) 노출 위험성 하락*	(자율)원산지증명서 신뢰성향상
원산지 관리 능력 향상	협력사 및 원재료 관리 용이
원산지 검증 사전 대비	원산지 검증 사전 대비

* 세관공무원은 제출된 원산지 증명자료에 대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0조(비밀유지 의무)를 준수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 제도 활용 모델



03 | 활용 및 확산분야

- 원산지 인증수출자 미취득 등 원산지 관리가 어려운 중소기업

민·관 협력형 | 37-1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으로 원산지 관리 점검

1. 기업 및 제품소개

- A사는 레버(HS 제8708.99호), 변속기 부품(HS 제8708.40호) 등을 OEM방식으로 생산하여 완성차 업체에 수출하는 자동차부품 전문기업

2. 활용 전 상황

- FTA에 대한 기본적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협력사로부터 원산지 확인서를 수기로 받기 시작
- 원산지확인서의 작성방법이나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오류 발생가능성이 상존

3. 장애 요인

- FTA환경에 적응하고 적극 활용하기 위해 FTA원산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협력사 교육 등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여전히 영세한 규모의 협력사 관리가 문제로 잔존
- 협력사 관리는 FTA활용을 위한 필수요건이나 다수의 협력사와 거래가 진행되는 기업의 경우 개별 협력사의 원산지관리 실태를 직접 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4. 극복 방법

- 협력사 중 원산지확인서 수취가 필수적인 업체를 선별하여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

-
- 원산지확인서의 오류 방지를 위해 교육지원과 별도로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인증제’를 활용하여 협력사가 제공한 원산지확인서의 오류를 수정하여 FTA활용 가능성 증진

5. 활용 효과

- 생산품을 납품하는 완성차 업체의 점검실사에 합격하여 거래처의 신뢰를 확보

6. 시사점

- 협력사 중 원산지확인서 확인 및 관리가 필수적인 기업을 선별하여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인증제’를 활용하여 원산지확인서의 정합성을 검토함으로써 FTA활용 오류 사전 예방

모델 38

원산지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원산지 관리 모델

01 | 개요

- 원산지관리 시스템(FTA-PASS 등)을 활용하여, 원재료 관리 단계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서류보관에 이르는 FTA 원산지 관리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 가능한 모델

02 | 비즈니스 모델

- FTA활용 기업들이 겪는 애로 중 하나는 생산 공정의 복잡성과 협정별로 상이한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판정과 원산지증빙서류의 관리에 대한 어려움 해소
 -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의 효율적 판단 가능
 - 원산지검증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체제 마련

원산지관리 시스템 활용을 통한 원산지 관리 모델



03 | 추진 효과

- 전산시스템에 의해 원산지를 무료로 관리하고자 하는 기업(직접 입력, 엑셀 및 ERP 연계 모듈로 관리가능)

민·관 협력형 | 38-1

포장재로 FTA 시장을 포장하다!

1. 기업 및 제품소개

- V사는 식품포장지 및 필름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인증된 품질관리 시스템(ISO 9001/KSA 9001)을 바탕으로 자동화 생산라인을 통해 국내 및 선진 미국시장에 수출하고 있는 중소기업

2. FTA 활용전 상황

- 소폭의 점진적 관세율 철폐 및 원산지 전담인력 부족

HS CODE	3923.21	3921.90
기준세율(%)	3	6.5
2014년 관세율(%)	2.1(단계적 관세인하)	4.5(단계적 관세인하)

- 제품의 특성상 원재료, 품목, 모델이 다양하여 원산지관리에 어려움 발생

3. 장애 요인

- 수출물품의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환율, 유가상승 및 경쟁심화로 판매가 인상 곤란

4. 극복 방법

-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활용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실시
-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활용을 위한 세관의 예산지원 무료 컨설팅 및 유관기관 통합 지원을 받아 원산지증빙서류 발급

5. 활용 효과

- 한-미 FTA 발효 후 수출경쟁력 향상
 - 1) 수출금액 127%, 수출건수 104% 증가 ▶ 미화 2.5만불 관세절감 효과
 - 2) 관세 완전 철폐시(2016년) 67만불(805백만원) 관세 절감 혜택 예상
 - 3) 제2의 주력시장인 인도 수출 급성장 ▶ 11.8만불 관세 절감 혜택
- FTA-PASS 시스템 운영으로 원산지관리 전담 인력 2명, 인건비 절감

6. 시사점

- 점진적 관세철폐의 FTA 활용으로 가격경쟁시 우위선점 가능
- 원산지판정 및 관리를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이용한 시스템적 관리로의 인식 전환 계기

민·관 협력형 | 38-2

한국산 CCTV로 FTA ZOOM-IN

1. 기업 및 제품소개

- W사는 매출 602억, 종업원수 104명인 CCTV Camera 제조업체

2. FTA 활용전 상황

- CCTV Camera 1개의 품목이지만, 다양한 모델에 따른 원재료 종류가 많고,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이 상이함

3. 장애 요인

- 수많은 원재료 사용으로 여러 모델을 생산함에 따라 완제품에 대한 원산지관리가 어렵고, 영세한 협력업체의 FTA활용 능력부족으로 원산지확인서 발급이 불가능

4. 극복 방법

- 인천세관 자유무역협정과 1:1 현장컨설팅 활용으로 기업지원 및 FTA 관련 설명회, 교육 실시
-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도움으로 한-EU 및 한-아세안 FTA에 따른 여러 종류의 원재료를 관리
- 원산지관리 전담자가 직접 협력업체 담당자에게 원산지관리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을 실시하여 원산지(포괄)확인서 제출

5. 활용 효과

- 한-미 FTA(2.1%→0%), 한-EU FTA(4.9%→0%) 적용으로 상대국에서 관세절감 효과에 따른 거래 확대 및 수출물량 증가 예상

6. 시사점

- 여러 모델별로 원재료의 종류가 많은 경우, FTA-PASS를 사용하여 다품종의 원재료를 관리하고, 원산지관리 전담자의 적극적인 교육이나 컨설팅 실시로 효과적인 원산지관리를 수행 가능

모델 39

Job Matching을 활용한 FTA 인재 영입 모델

01 | 개요

- 원산지관리의 실행주체는 사람임
- 원산지관리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세관에서 지원하는 Job Matching 사업을 통해 훈련된 원산지전담자를 확보하여 FTA를 활용하는 모델

02 | 비즈니스 모델

- 세관이 기업의 FTA전문인력 수요를 파악하여 교육·양성한 인재를 현장으로 피드백
 - 경력 단절 여성, 특성학교 졸업생, 퇴직 공무원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
 - FTA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Job Matching 활용한 FTA 인재 영입 모델



03 | 활용 및 확산분야

- 영세 중소기업
- FTA 전문인력 구인기업

민·관 협력형 | 39-1

아줌마도 FTA 잘해요, 경단여성 FTA인재 일자리 창출

1. 기관 소개

- 서울본부세관이 경력단절여성의 직업훈련과 재취업 연계 중심기관인 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과 협력하여 추진

2. 잡매칭 과정

- FTA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업에 적합한 과정을 선정한 후 세관 FTA 교육으로 전문인재를 양성

FTA 취업적합과정

센터명	과정 (160~200시간)	FTA 관련 취업적합과정 선정 이유
영○	관세사무원	「무역~FTA~통관」까지 이론 및 실무교육 총괄, FTA 교육내용 다수 포함
영○	세무사무원	통계 추출 및 회사 회계자료 작성에 능숙, BOM 및 부가가치기준에 유리
구○	무역사무원	무역, 수출입, FTA 등 FTA 기본 커리큘럼과 과정 동일, 무역기본지식 보유
서○	회계사무원	통계추출 및 회계자료 작성에 능숙, BOM 및 부가가치기준 관련서류 작성에 유리
서○	무역전문가	무역~수출입~FTA 등 FTA 기본 커리큘럼과 과정 동일, 무역 기본지식 다량 보유
중○	중소기업경리	회계장부 및 경리업무에 능숙, BOM 및 부가가치기준 서류 작성에 유리
성○	전산세무회계	통계 추출 및 회사 회계자료 작성 가능, 전산실무에 능함, BOM 작성 및 부가가치기준에 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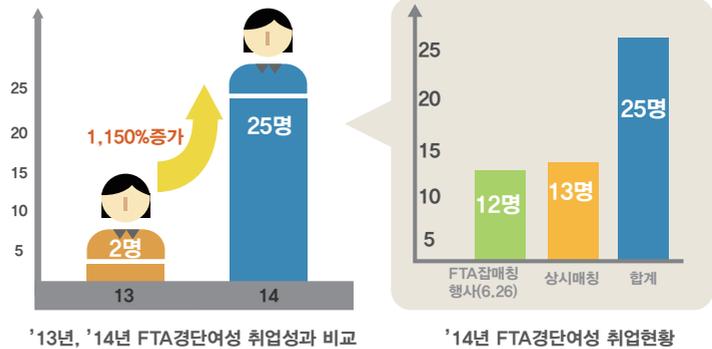
- 인천센터에서 전산회계과정 30~40대 경단여성(전산회계 1~2급 자격증 획득)을 대상으로 FTA강의를 의뢰
- 서울세관 「제1기 경력단절 여성 FTA 교육」 운영으로 FTA 전문가 14명을 양성하여 既 실시한 「관세사무원 채용수요조사」로 상시매칭에 돌입

- 전국 최초 경단여성 대상 「FTA Job Matching Day」행사 개최

[시소] 2014. 6.26.(목) 09:30~13:00, 서울본부세관 별관 2층
 [구인·구직자] 약 75명 (구인업체 17개社, 경단여성 FTA 구직자 58명)

3. 잡매칭 효과

- '14년 경력단절 여성 FTA인재 잡매칭으로 도약적인 취업률 달성
 - ▶ 상반기임에도 전년대비 1,150% 증가



- 1인당 매월 50만원씩 6개월동안 300만원으로 구인업체에 재정 지원
- 세관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FTA 효과 확대 및 FTA 품순환* 생태계 조성

일자리 창출 ▶ FTA 활용 증가 ▶ 수출증가 ▶ 투자·고용 증진

4. 시사점

-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전문교육 이수 및 지원금 수여 등으로 양방향 수혜자 발생
- 사회진출 및 재취업이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에 「인재양성교육·취업 연계」까지 원스탑 지원으로 건강한 일자리 제공 및 경제활동 참여 도모
- 영세 관세사무소에 지원금을 포함한 FTA인재 연계로 친화적 환경 조성 및 관세업계 활성화 제고

민·관 협력형 | 39-2

FTA를 만난 학생들, 이건 특급기회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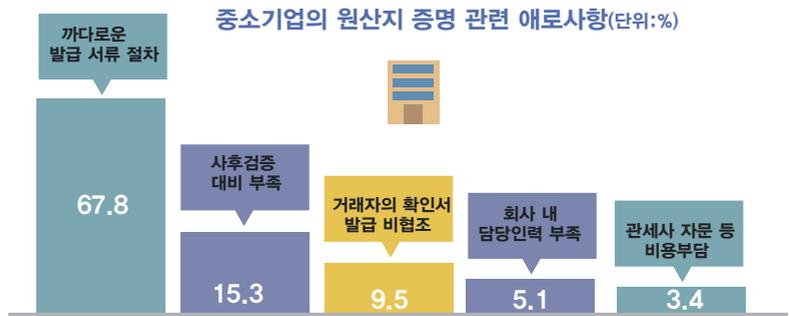
1. 배경

- 중소기업이 채용가능한 고졸 FTA 전문인력을 세관이 양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FTA활용 강소기업 육성 필요

2. 집매칭 과정

- FTA협정별 상이한 원산지 규정 등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중소기업들은 원산지관리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FTA실무에 능통한 자 필요

FTA활용 시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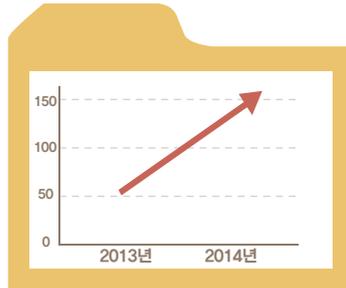
- 서울 유일의 무역업계 특성화고인 성암국제무역고등학교를 시작으로 매향 여자정보고, 경기상업고 등 FTA전문인력 과정* 운영(총 9개교 433명 수료)

* (커리큘럼) FTA 이론 · FTA 원산지관리를 위한 기본역량 함양(3회 24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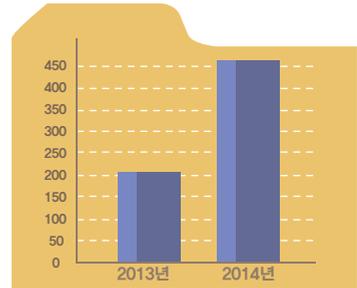
- 구인기업 · 구직자 DB를 활용한 수시 매칭과 취업박람회 개최 「전문인력 육성 ▶ 고용 ▶ 중소기업 성장 ▶ 전문인력 고용 확대」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

3. 잠재칭 효과

- 사회경험이 없는 특성화 고교생 등이 다양한 산업의 원산지관리 경험을 쌓아 기업선호인력으로 성장



특성화고 FTA교육시간 추이



특성화고 전문가양성 추이

- 특성화 고교생 FTA 전문인력 양성 확대로 신규 일자리의 지속적 창출 환경 마련

4. 시사점

- 중소기업 FTA활용의 성공모델

성공 요인



- 성공사례를 통해 산업별 FTA전문인력 양성, 민간 FTA시장 활성화 및 퇴직공무원 재취업 모델로 적용모델 확산

모델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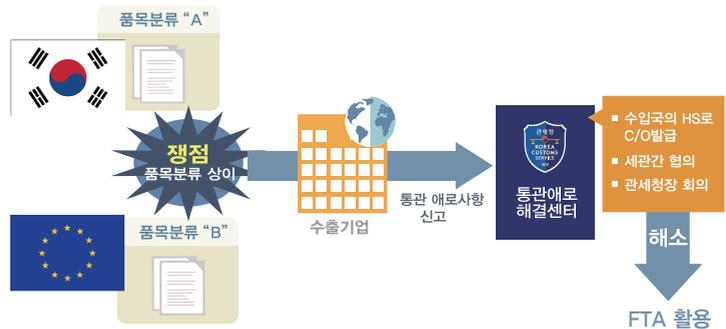
품목분류 상이 극복모델

01 | 개요

- 국가간 품목분류의 해석과 의견 차이로 동일 물품에 부여되는 HS코드가 상이한 경우가 발생되면 원산지 충족여부도 변동되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한 모델

02 | 비즈니스 모델

- 하나의 제품 또는 원재료에 대해 계약상대국간 품목분류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 사전 해결
 - 품목분류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및 세율이 달라지는 경우 우리나라 수출세번 뿐 아니라 계약상대국 수입세번으로 원산지 충족을 입증하는 것이 효과적
 - 상대국 품목분류체계를 중심으로 한 품목분류를 통해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의 신뢰를 얻고, 향후 타 원산지 검증에 대해서도 효과적 대처 가능



03 | 활용 및 확산분야

- 모든 산업분야 및 FTA
 - 특히, 수출상대국과 우리나라의 품목분류(HS)가 상이한 물품

민·관 협력형 | 40-1

까다로운 검증! 약이 되는 건강검진입니다!

1. 기업 및 제품소개

- S사는 PVC GLOVE를 필두로 POLYESTER WIPER 등 다양한 종류의 청정용품을 세계 각지의 반도체 공장에 공급하는 세계 선도 기업

2. FTA 활용전 상황

- 반도체 클린룸용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에 분류되나, 수출입 및 FTA활용 등 체계적인 원산지관리가 부족한 중견기업
- 수출물품을 소량으로 빈번하게 EU국가에 수출하면서 불필요한 물류 비용과 원산지관리의 어려움 발생

3. 장애 요인

- Wiper에 대한 프랑스 관세당국의 간접검증 요청으로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품목분류 의견이 상이함을 인지

폴리에스테르사로 원단을 Kintting 후 정사각형상으로 Thermal Cutting, 초순수 세탁 거친 반도체 클린룸용 와이퍼(가로세로 30cm 이내, 1개의 비닐팩에 100장씩 소매포장)의 품목분류 의견 상이

* 한국 HS 제6307.10호 인증, 프랑스 HS 제6003.30호 → 각 HS 별 PSR 상이

4. 극복 방법

- EU역내인 네덜란드 보세창고에서 보세창고도거래(BWT, Bonded warehouse Transaction)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잦은 선적 등 물류비용은 감소시키면서 원산지 오해 소지는 제거

- ① 원산지신고서에 인증/비인증품목 명백히 구분
 - ② 원산지신고서 작성장소는 “한국”
 - ③ 직접운송 요건 확인을 위해 네덜란드에서 단순히 보관만 함을 입증하는 계약서 또는 보증서 수령
- 검증수행 중 Wiper에 대한 프랑스와 아국의 품목분류 의견이 상이 하였으나 정확한 국내·외 품목분류사례 제공으로, 향후 다른 협정의 검증에 대비하여 각 품목분류별 PSR 및 품목분류 이견 해소방안 제시

5. 활용 효과

- 정확한 품목분류 및 PSR 적용으로 100% “한국산” 충족 검증대비
 - ▶ 매년 약 2억 4천만원 관세절감 및 사후검증 불안감 완전 해소
- 원산지관리 전담자 및 기업의 FTA 중요성 인지가 미흡하였으나, 검증 과정에서 기업의 검증 대비 능력과 중요성 제고
 - ▶ 향후 업체별인증수출자로 전환 예정

6. 시사점

- 소량 빈번 수출거래시, 물류비용 절감할 수 있는 역내 BWT 거래 활용
- 정확한 품목분류 및 PSR 적용으로 검증위험 요인 사전 대비 필요

민·관 협력형 | 40-2

적극적인 검증 대응, 900만불 사수하다

1. 기업 및 제품소개

- C사는 자동차, 공작기계 오일쿨러 전문 생산기업으로 1986년 설립되었으며, 연매출(120억원)의 33%를 인도네시아 2개 자회사에 수출
- 제품소개 : 자동차, 산업용 오일쿨러, 부분품 등 60여종 (HS 제8708호)
 - 국내에서 부품 수출 (총 생산량의 90%) =>인도네시아에서 현지조립



2. 장애요소

- 인도네시아 수입자는 그동안 오일쿨러 부분품을 제8708.99호(자동차 부품), CAP을 제8708.91호(방열기 부품)로 일괄신고하여 인도네시아에서 FTA 특혜를 계속적으로 적용

[HS CODE : 8708.99-9000(HS2007)] OIL COOLER PARTS 1 GT 312,596 EA & 760 KG N/WGT:8,037.10 KG G/WGT:8,841 KG EURO-2, L-300, KTB SPC Manufacturer : SARIC CO., INC.	RVC45%	8,841 KG FOB 86,993 USD
[HS CODE : 8708.91-0000(HS2007)] PARTS OF RADIATORS 1 PK 263,000 EA N/WGT:390.40 KG G/WGT:429.40 KG MINI CAP (KVB)	RVC40%	429.40 KG FOB 10,525 USD

- 그러나 원칙적으로 각각 개별물품을 구분하여 품목분류를 해야 함(HS 통칙1, 16부 주2, 17부 주2)
- 이에 대하여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은 우리나라 세관에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 충족확인을 요청해 옴

3. 극복 방안

RVC 자료 확보 (18개사, 62종) ⇒ 검증세관 설득(3차방문) ▶ 印泥통보

- **(원인파악)** ① 품목분류 오류 ② OCP(원산지증명 운영절차) 무시 ③ 잘못된 관행
- **(대안마련)** 세관검증팀과 끝없는 소통(미팅 · 전화 · 이메일 등)
- **(자료확보)** 18개사 62품목(BOM, 구매내역서, 공정도, 원산지포괄확인서등)
- **(현지확인)** 제출자료의 정확성 검증차 세관검증팀 2곳 현지실사 ▶ 모두적정



- **(Expert활용)** 당사 원산지관리사 자격소지자인 W대리가 주도(K이사 지원)

4. 활용 효과

인니 수출한 900만불의 한-ASEAN FTA 원산지 지위 유지!

- **(원산지지위)** 당해 검증건의 적극적 대응으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 **(가격경쟁력)** FTA 협정세율 적용분 가격 경쟁력 확보(10% 우위)
- **(기업신뢰도)** 당사의 對인도네시아 관세당국 신뢰도 제고 ▶ 대외경쟁력 확보

5. 시사점

FTA는 기본기 + 소통, 열정이 동반되어야!

- **(기본에 충실)** 자사물품의 HS품목분류, 협정문의 의정서, 결정기준 등 정확한 품목분류에 기반, 협정에 충실하고 절차에 맞도록 업무진행
- **(소통과 열정)** 소통으로 검증당국 설득, 전문가적 열정으로 역경 극복 등 본부세관 Yes FTA센터에 문의, 해결방안 공동 모색 (정부 3.0추진)

부록

▶ 민원사례로 본 알기쉬운 FTA활용법

I. 품목분류 상이	232
II. 원산지증명서	235
III. 직접운송	249
IV. 여행자휴대품 등 소액물품 통관	252
V. 기타 특혜관세 제도	254

▶ FTA 주요 지침

257



민원 사례로 본 알기쉬운 FTA활용법

1. 품목분류 상이

1. 수입국과 HS번호 상이 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적용협정 : 한-아세안

- 현행 FTA 협정 및 FTA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한-아세안 FTA의 경우에는 수입국의 HS 번호를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 HS 번호가 상이한 경우에는 상기 수입국의 품목번호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첨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우리나라와 수입국의 품목번호가 달리 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공식적인 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수입국의 HS번호가 기재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
 - ⇒ 수입국의 품목번호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 수입국의 수입신고필증, 품목분류 확인서, 사전심사결정서 (advance ruling) 등 공식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임
 - 수입자가 송부하는 협약서는 수입자 자신이 작성한 비공식 서류 이므로 인정되지 않음

2. 수입국과 HS번호 상이 시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업무 안내

적용협정 : 공통

- 우리나라와 수입국의 품목번호가 다른 경우에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에 유의하여야 함

-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

- 인증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의 HS번호(6단위)로 인증하고 있음
- 수입국에서 HS번호를 달리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때에는 수입국의 품목번호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 동 품목번호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이 인증된 품목과 같거나 인증수출자가 제출한 서류로 부합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수입국의 HS번호로 추가로 인증 처리할 수 있음

3.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업체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요령

적용협정 : 공통

-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하거나, 그 물품의 생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확인서 또는 원산지소명서를 근거로 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음
- 자율발급의 경우에도 상대국의 HS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수입국의 품목번호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확인하고, 상대국의 HS번호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
 - 사후검증이 실시되는 경우 그 근거서류를 갖춘 경우에는 허위 원산지증명서 작성 등의 벌칙이 적용되지 않음
-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작성을 위해 생산자에게 원산지확인서 또는 원산지소명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통지할 수 있음
 - ① 협정의 명칭 및 수출예정국가
 - ② 수출물품의 품목분류번호 및 해당 원산지결정기준

※ 참고 : 주요 협정별 품목분류 상이사례

협정	품명	한국	상대국	구분	조치사항
한-미	플라스틱 성형기기	3920.10	3921.90	수출	3921.90으로 원산지신고서 작성
	신발	6403.19	6403.99	수출	6403.99로 원산지신고서 작성 * EU : 6403.19
	트레킹화	6404.19 (기타신발)	6404.11 (스포츠용)	수출	6404.19로 분류 * 64류 소호주의 스포츠용신발류 정의에 따라 트레킹화는 6404.11호(민감품목)가 아닌 6404.19호로 분류됨이 타당
	연마용 조제품	3405.40	3405.90	수입	3405.40 (실리카, 알칼리화합물 재료) *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사전회시
	신발 부자재	5903.20	5903.90	수입	5903.20 *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사전회시
	구운김	2106.90	2008.99	수출	2008.99
한-EU	구운김	2106.90	2008.99	인증	2106.90, 2008.99호로 동시 지정
	음향증폭세트	8518.50	8519.81	인증	8518.50, 8519.81호로 동시 지정 * EU측의 품목분류 확인서 첨부
아세안	스크린 바스켓	8439.99	8421.91 (태국)	수출	8421.91 * 수입국의 HS번호 기재
	delinking agent	3824.90	3402.90 (태국)	수출	3402.90 * 3824.90(관세평가분류원 분류)
	자동차 부품	8516.80	베트남	수입	8516.80(자동차용 열발생시트) * 관세평가분류원 분류
인도	밸브제어장치	8481.90 (부분품)	8481.20 (공기압전송)	수출	8481.20 * 인천세관 분류(업체 오기 분류)

II. 원산지증명서

(step1) 원산지증명서 발급 주체

적용협정 : EU

1. 물품의 생산지와 수출자 국가가 다른 경우

- 한-EU FTA에서 영국의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로 프랑스에서 생산한 물품을 프랑스에서 수출시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함
- 다만 영국의 수출자가 인증수출자이고 직접운송 등 동 협정에서 정한 다른 기준을 충족하고,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유효한 원산지신고서가 제출되어야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함

2. 인증수출자가 당사국 역내의 다른업체 상업서류 상에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

- 인증수출자가 본인이 발급한 서류가 아닌 그 물품의 수출과 관련되어 수출 당사국 역내의 다른 업체에서 발행한 상업서류 상에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여도 인정됨
- 다만, 다른 업체에서 발행한 상업서류에 '인증수출자'가 원산지신고 문안을 작성하는 경우 작성 장소와 작성일자가 해당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되어야 함

3. 비당사국에서 재발행된 송품장 원산지신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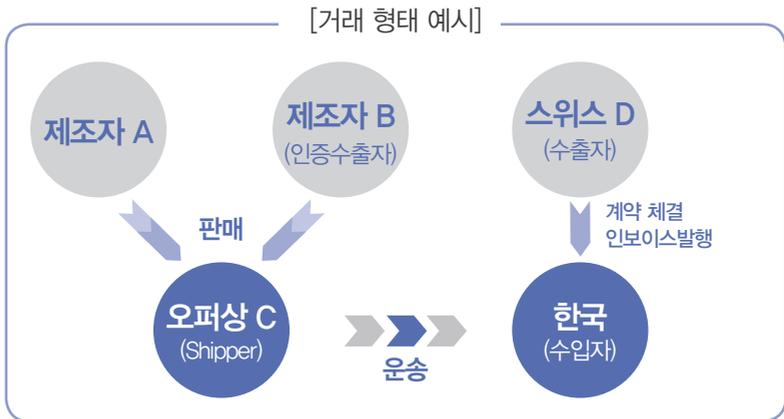
- 한-EU 자유무역협정의 제15조(일반요건) 및 제16조(원산지신고서 작성 조건)에 따라 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가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작성하여야 함

- 비당사국에서 송품장이 다시 발행되는 무역거래인 경우에도 EU 역내 수출자가 해당 수출거래와 관련된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따라서 EU 역내 수출자가 아닌 비당사국에 소재하는 자가 재발행한 송장에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한 경우에는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음

관련 규정 | 한-EU FTA 제15조(일반요건)

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유럽연합당사자로 수입될 때, 그리고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될 때, 이후 “원산지신고서”라 지칭되는 신고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원산지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진다.

4. 제3국에 소재하는 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



Q 스위스업체가 인보이스를 발행하고, 동 인보이스에 이탈리아 제조사 B의 인증수출자번호로 원산지신고서 작성한 경우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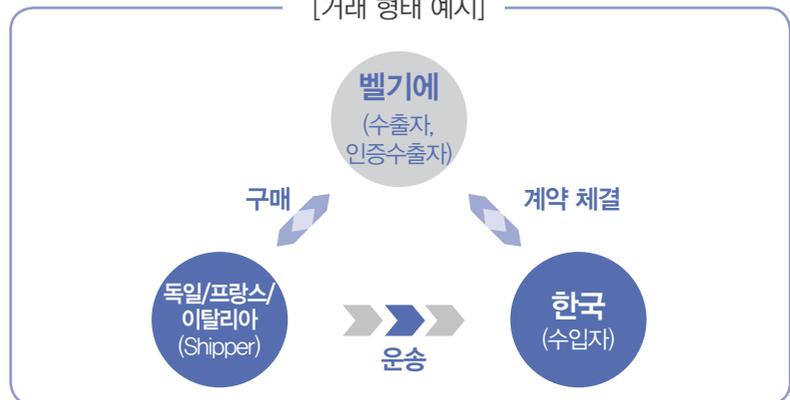
A

- 한-EU FTA 협정상 6,000유로 초과하는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 당사자의 각 법과 규정 및 협정에 충족하는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자(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 신고서 작성이 가능

- 또한, 수출자라 함은 FTA체결 상대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자이어야 하고 제3국의 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 작성권한 및 입증책임이 없으므로 제3국에서 작성한 송품장에 인증수출자 번호와 원산지 신고문안이 기재되어도 원산지증명서류로 인정되지 않음
- EU 회원국 제조자가 생산한 물품에 대해 EU회원국이 아닌 제3국에 소재하는 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는 유효한 신고서로 인정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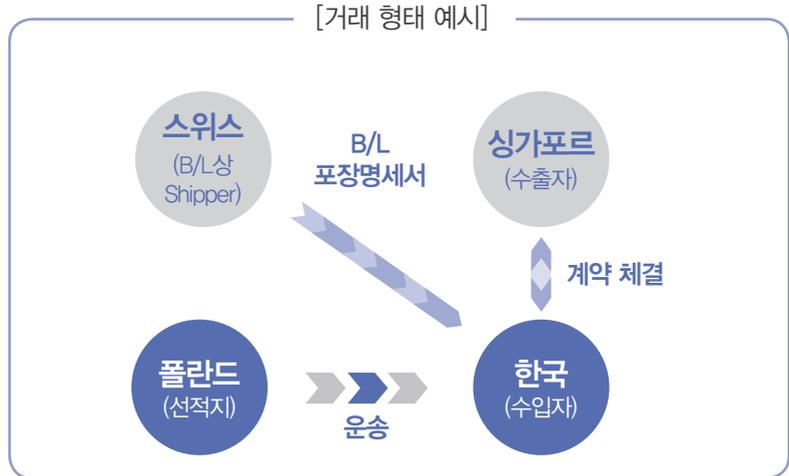
5. 제3자 무역형태의 한-EU FTA 협정적용 여부

[거래 형태 예시]



- Q** 인증수출자인 벨기에 업체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EU에서 생산된 물품을 구매하여 발행한 인보이스상에 원산지신고문안을 기재하여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 A**
- 원산지신고서는 수출당사자의 법과 규정 및 협정에 충족하는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자(인증수출자)만이 작성 가능
 - 수출자와 생산자의 일치 여부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 작성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

6. 작성장소가 불분명한 원산지 신고서의 적정성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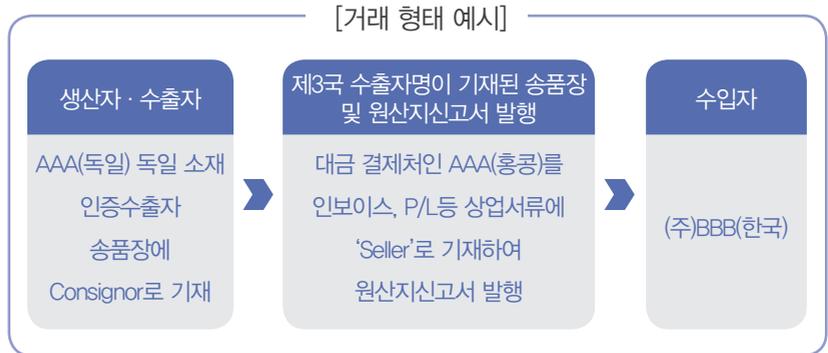
Q EU역내(폴란드)에서 선적된 물품이나 B/L상 Shipper는 스위스업체이며 포장명세서는 스위스 업체가 작성하고 포장명세서에 원산지신고문안은 기재되어 있으나 작성주체를 알 수 없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 A**
- 수출품이 EU 역내(폴란드)에서 선적되었더라도 원산지신고서가 제3국에서 송부되어 작성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원산지 신고서 문안에 작성장소, 작성일자 및 작성자의 서명(인증수출자는 생략)이 병기 되어야 함
 - 원산지신고서 작성자가 EU 역내 수출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음

7. 제3국 발행 송장의 유효성

Q 인보이스 상 Seller는 AAA(홍콩)로 기재되어있으나 실질 인보이스 발행자는 AAA(독일)로서 해당서류에 Consignor로 병기하여 원산지증명서 발행(발행 장소 및 서명권자의 서명 포함)

- 상업서류 상 Seller로 제3국 수출자가 기재된 원산지증명서는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 A**
-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신고서는 계약당사국에 소재하는 수출자(물품가격이 6,000불을 초과하는 경우 인증수출자)가 발행
 - 독일 소재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송품장의 'Seller'란에 EU 회원국이 아닌 제3국에 소재하는 자가 기재된 경우에도 상업서류에 의해 수출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유효한 원산지 신고서로 인정 가능

적용협정 : 아세안, 인도, 싱가포르

8. 수출업무 대행사 명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 여부

-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제도를 규정한 한-싱가포르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는 각 협정의 규정에 의거 원산지증명서의 원활한 발급을 위하여 위임규정을 두고 있음
- 한-싱가포르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협정은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위임하였을 경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원산지 증명서의 신청 업무만 대리가 가능

**관련 규정 | 한-아세안 FTA 부속서3 부록 1 제4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1. 물품의 생산자 그리고 또는 수출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받은 대리인은 당사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수출전 검사를 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관련 규정 | FTA 특례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
(원산지증명서 신청인)**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자와 그 자로부터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가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step2) 원산지증명서 작성

적용협정 : EU

1. 한-EU FTA 원산지신고 인증수출자 번호

- 한-EU FTA협정상 수출물품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원산지 신고 문안에는 반드시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된 원산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원산지신고서에 인증수출자번호가 아닌 EORI번호 또는 VAT번호를 기재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불가
 - EORI번호는 우리나라의 통관고유번호 같은 제도로서, EU에서 무역과 관련된 자에게 부여하는 등록번호와 같은 것임
 - 유럽의 수출자에게 인증수출자 번호를 요청하여 원산지신고서를 발급 요청하는 경우, EORI번호를 기재해 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
 - ※ EORI번호 확인방법
 -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os/eori_validation.jsp
 - 접속 후 「EORI」 선택 후 Validate EORI number 클릭
 - ※ VAT번호 확인방법
 -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common/databases/index_en.htm
 - 접속 후 「VIES」 선택 후 국가를 선택하고 번호를 입력

적용협정 : EU

2. 원산지 신고문안의 위치가 다른 경우 유효성 여부

Q 한-EU FTA 원산지 신고문안을 협정에서 정하는 문구와 인증번호 기재 위치가 다르게 기재된 경우, 유효한지 여부

〈사례 1〉 The Exporter(authorized exporter authorization-number DE/8750/EA/0042)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EU(Germany) preferential origin

〈사례 2〉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European Community preferential origin.
Approved exporter's licence number (DE/3450/EA/0329) HZA Giessen

A 원산지 신고서 문안에 인증번호 기재 위치 오류는 원산지를 확인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미한(형식적) 오류로 판단되므로

- 동 FTA에 따른 원산지제품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될 수 있음
- 다만, 원산지신고서 작성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적용협정 : EU

3. 다수 송품장 동일 원산지신고 가능여부

Q 한-EU FTA협정상 다수건의 송품장을 하나의 원산지증명서로 작성 가능 여부

- A**
- 한-EU FTA협정 원산지의정서 제15조에 따라 원산지신고는 원산지제품이 수입될 때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특혜 관세대우를 받는 것이며, 원산지신고는 해당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작성해야 함
 - 원산지신고서는 물품을 수출할 때 그 제품에 대해 작성하는 것이므로 여러 건의 송품장상의 물품을 하나의 상업서류에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는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볼 수 없음

적용협정 : EU, 미국

4. 분할운송시 협정관세 적용

- 하나의 기능단위기계를 운송목적으로 분할 운송하는 경우 한-EU FTA 및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여부
 - (1) 동일선박/ 동일항차의 여러 B/L로 수입하는 경우
 - (2) 다른선박/ 다른항차의 여러 B/L로 수입하는 경우
- 한-EU FTA의 경우에는
 - (1) 동 협정 제20조(분할수입)에 따라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협정관세 적용 가능
- 한-미 FTA의 경우에는
 - (1) 동 협정에 다른 원산지제품은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가능
 - ① 수출국에서 생산되어 선적한 원산지 제품으로서 '관세·통계통합 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에 따른 완성물품의 주요특성을 가진 미완성 제품일 것
 - ② 포장,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해 분할해서 수입하는 물품일 것
 - ③ 우리나라에서 단순 조립이상의 추가 가공이 발생하지 않을 것
 - ④ 관세법 제17조(적용법령)에서 정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이 있을 것

적용협정 : 미국

5.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 한-미 FTA에서는 원산지 증명서의 작성 양식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원산지정보로서 포함되어야 할 정보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협정에서 정한 정보가 포함된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로 원산지증명이 가능
- 원산지증명서 상에 원산지 결정기준은 필수 기재 정보는 아니므로 기재되거나 기재되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음
- 다만, 원산지증명의 편의를 위하여 한-미 FTA 협정 원산지 증명서 권고 서식을 운영하고 있음

- 따라서, 권고서식에 따라 세번변경기준의 경우 원산지 결정기준을 “B”로 표시하거나, 기재하지 않더라도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로 인정 가능함

적용협정 : 아세안

6.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재발급

-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재발급하는 경우 발행일자는 당초 발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행일이 기재되어야 함
 - ※ 정정발급의 경우
 - 신청에 의해 발급기관이 승인을 하면 정정내역이 반영되며, Reference No와 발행일자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Reference Code가 바뀜
 - ※ 재발급의 경우
 - Reference No, Reference Code, 발행일자는 변동이 없으며 진정등본(Certified true copy) 문구가 인쇄되어 발급
 -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 운영절차(OCP) 개정('14.1.1))

- (발급시기) 수출기업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시기를 '수출시 또는 수출 직후'에서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 직후 3 근무일 이내'로 명확화
- (을지사용) 다수 품목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을지 사용 허용 및 을지양식 채택
- (오류정정) 줄을 그어 지우고 오류를 정정하는 방법 외에 원산지 증명서를 새로 발급하여 오류를 정정하는 방법도 허용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2개월 (개정전 6개월)
- (FOB 금액) 역내가치포함비율 기준(RVC)이 적용되는 때에만 기재. 단, 캄보디아, 미얀마는 개정일로부터 2년간 원산지기준에 관계없이 FOB금액 작성

적용협정 : 아세안

7.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건

- Q** 인도네시아산 물품을 싱가포르 업체가 수입한 후 다시 한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건
- A** “연결 원산지증명서”라 함은 최초 수출당사국이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근거로 경유하는 수출당사국에 의하여 발행되는 원산지 증명서로

- 인도네시아에서 발급된 “정당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싱가포르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 인도네시아로부터 물품을 싱가포르로 수입하는 자와 그 물품을 한국으로 다시 수출하는 자가 동일인이어야 함

적용협정 : 아세안

8. 원산지증명서에 여러 수출품이 있는 경우

- 하나의 품목번호(HS)에 물품이 여러 가지인 경우 각 물품별로 요건 충족확인하여 구분기재하여 발급 신청
 - 수출품목이 다수일 경우 품목번호(HS)별 기재에서 물품별로 기재
 - 품목번호(HS)가 동일한 품목이라도 물품이 다른 경우 품명, 규격, 품목번호(HS), 원산지기준을 각 물품별로 기재

관련규정 |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제4항

발송하는 모든 물품은 각 개별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른 크기 물품 또는 예비부품을 송부하는 때도 그러하다.

적용협정 : 공통

9. 원산지증명서 사본제출 스탬프

- Q**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 받은 경우 사본제출 시 C/O 사본 제출 스탬프를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산지증명서 사본제출 스탬프〉

본 사본이 원본과 다를 경우 관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세관에서 요구시 원본을 제출하겠습니다.

수입자 ○○○서명

- A** ●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 받은 경우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수입자의 편의를 위해 사본제출 스탬프를 날인할 것을 조건으로 사본 제출도 인정하고 있음
- 수입자의 스탬프 “날인”은 수입자가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사본으로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에 해당
 - 다만,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때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step3)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적용협정 : EU

1. 한-EU FTA 사후신청 유효기간

Q EU측 수출자의 파업으로 인해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간 (수리일로부터 1년)이 지나서 원산지신고서가 제시된 경우,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A FTA특례법에서는 협정관세 사후신청 기간내에 유효한 원산지 신고서를 제출하면 사후신청이 가능

- 예외적인 상황으로 원산지신고서의 유효기간 연장은 수용하고 있으나
- 협정관세 사후신청기간 연장은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사후 신청은 반드시 수입신고수리 후 1년 이내만 가능

관련규정 | 한-EU FTA 제18조(원산지증명의 효력)

1. 원산지증명은 수출당사자에서 발급된 날부터 12개월 동안 유효하며, 특혜관세대우는 수입당사자의 관세당국에 그 기간 내에 요청된다.
2. 제1항에 명시된 제출 마감일 이후 수입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제출된 원산지증명은,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해 정해진 마감일까지 이들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수입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따라 특혜 관세대우의 목적상 수리될 수 있다.

적용협정 : EU

2. 수입항 도착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Q '13년 6월부터 3차례에 걸쳐 독일로부터 수입한 물품으로 부산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물품을 '16년 수입통관(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14. 4월 만기)을 하여도 한-EU FTA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A**
- FTA특례법 시행령 제9조의2 제2항에 따라 한-EU FTA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FTA특례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은 유효기간에서 제외하므로
 - 수입항에 도착하는 때에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해당 원산지 증명서로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음

적용협정 : 미국

3. 한-미 FTA 원산지포괄증명서 유효성

- 원산지포괄증명의 유효기간은 포괄증명기간 개시일로부터 12월내이며 유효기간 기산일은 해당 물품의 선적일 기준
- 원산지포괄증명서 포괄증명기간의 시작일은 원산지포괄증명서의 발급일자와 다를 수 있으므로 포괄증명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소급 발급되거나 포괄증명기간의 시작일보다 먼저 발급된 원산지포괄증명서는 인정되며 해당 수입물품은 협정관세 적용 대상

구분	원산지포괄 증명기간	증명일자	협정관세 적용여부
(사례1) 소급발급되는 경우	2014.1.1 ~ 2014.12.31	2014.4.1 또는 2015.2.1	적용
(사례2) 먼저 발급되는 경우	2014.1.1 ~ 2014.12.31	2013.12.1일	적용

- 원산지포괄증명은 동일상품을 복수 선적할 때 적용하는 것이므로 원산지포괄증명기간에 협정체약상대방인 수출국(미국)에서 선적된 물품에 적용

- 포괄증명기간에 선적된 물품이 아닌 경우 보정을 요구하여 처리하되, 증빙이 되지 않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 배제

구분	원산지포괄 증명기간	선적일자	수입신고 일자	협정관세 적용여부
(사례1) 포괄증명기간에 선적된 경우	2014.1.1 ~ 2014.12.31	2014.12.15	2015.1.15	적용
(사례2) 포괄증명기간에 선적되지 않은 경우	2014.1.1 ~ 2014.12.31	2013.12.15	2014.1.15	적용배제

적용협정 : 아세안

4. 발급일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기산일

Q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AK 서식에서 11번란, 12번란의 발행일자에서 유효기간 기산일 여부

- A**
- 서식 12번란의 date는 세관에서 발급된 일자를 의미하며 11번란의 date는 세관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출력 후 서명권자가 서명한 일자를 의미
 - 한-아세안 FTA 협정에서는 유효기간을 ‘발급(행)한 날부터’(date of issue) 12개월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12번란에 인쇄된 일로부터 유효기간을 계산

<p>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goods were produced in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for the goods exported to (Importing Country)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p>	<p>12.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p>
---	--

적용협정 : 아세안

5.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6개월 →1년)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시행일 '14.1.1)
- 2013.12.31일 이전에 발급된 아세안회원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기간도 1년으로 연장
- 시행일 이전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의 경우에도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신청일 현재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같은 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 가능

※ 적용예시 : 2013.6.15일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물품으로서 2013.6.17일에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은 2014.6.15일까지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 가능

※ 참고 : 각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

구분	발급주체	서식	유효기간	제출면제기준
한-칠레	수출자 자율발급	통일서식	서명일로부터 2년	미화 1,000불 이하
한-싱가포르	(싱) 세관 (한) 세관, 상공회의소	각자 서식	발급일로부터 1년	미화 1,000불 이하
한-EFTA	수출자, 생산자 발급 * 스위스치즈 기관발급	원산지신고서 (상업서류 등)	서명일로부터 1년	미화 1,000불 이하 (EFTA : 소포 500유로, 개인수화물 1,200유로 이하)
한-아세안	(아) 세관등 국가기관 (한) 세관, 상공회의소	통일서식 (Form AK)	발급일로부터 1년	FOB 미화200불 이하
한-미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서식 미 지정 (권고서식)	발급일로부터 4년	미화 1,000불 이하
한-인도	(인) 인도수출검사 위원회 (한) 세관, 상공회의소	통일서식	발급일로부터 12개월	개인소포 및 여행자 수화물
한-EU	수출자 자율발급 * 인증수출자 요건 (6,000유로 초과)	원산지신고서 (상업서류 등)	발급일로부터 12개월	미화 1,000불 이하 (EU : 소포 500유로, 개인수화물 1,200유로 이하)
한-페루	기관발급(5년간), 자율발급 * 인증수출자 요건	통일서식	발급일로부터 1년	미화 1,000 이하
한-터키	수출자 자율발급	원산지신고서 (상업서류 등)	발급일로부터 12개월	미화 1,000불 이하의 (터키 : 소포 500유로, 개인수화물 1,200유로 이하)

Ⅲ. 직접운송

적용협정 : EU

1. 자유무역지역 보관물품의 수입 시 협정관세적용

- 수출당사국의 수출자가 우리나라에 판매하여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하고 있는 물품이
 - 수출국에서 직접 운송되고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창고에 단순 보관된 후 수입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함
- 자유무역지역 반입 신고 시 제출하였던 원산지신고서 사본과 운송서류 등 직접운송 확인서류를 제시해야 함
 - 수출자가 작성, 발급한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된 물품과 수입신고 되는 물품과의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가 수입신고 시 제출되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함
- 원산지신고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2개월이나,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의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날부터는 유효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 당해물품이 원산지신고서 유효기간은 12개월이나,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의 수입항에 도착하였다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함

적용협정 : 미국

2. 한-미 FTA 직접운송 인정서류

- Q** 미국 수출자가 홍콩의 중개인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수출하는 3자 무역에서 미국에서 출항 ▶ 중국의 보세구역 장치 ▶ 한국 입항 시 직접운송으로 인정받아 협정관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 A** ① 경유국 세관에서 발행하는 반출입 서류(원본)
 - ② 수출국인 미국의 생산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및 무역운송서류 (선하증권 등)에 의해
 - ③ 미국에서 수출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함
- 제3국의 물류창고에 보관하였던 물품도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이후 생산이나 그 밖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않고, 세관 당국의 통제 하에 머물러 있는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함

적용협정 : EU

3. 재수입 물품의 원산지 유효성

Q EU 원산지물품으로서 국내 보세창고 보관 중 제3국(홍콩)으로 반송되어 보세구역 장치된 후 다시 한국으로 재수입될 때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A 한-EU FTA에서는 EU 국가로부터 단일운송(Single Consignment)에 의해 우리나라로 운송되어야 함

- 우리나라에 도착 이후 제3국으로 재운송되어 다시 국내로 반입되는 물품은 EU로부터 직접운송된 단일 탁송화물로 볼 수 없어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 불가

관련규정 | 한 - EU FTA 의정서 제1조(정의)

카. 탁송화물이란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제품이거나,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서의 선적에 대한 단일의 운송 서류에의하여, 또는 그러한 서류가 없는 경우 단일의 송품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제품을 말한다.

적용협정 : 아세안, APTA

4. APTA 직접운송 인정서류

- 아태무역협정(APTA)에서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직접운송을 인정하는 서류
 - 수출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또는 항공운송 Airway Bill)
 - 최초수출국 운송업자(운송주선인 포함)가 전 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담보하는 하나의 운송서류로 발급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있음
- 중국 → 홍콩 → 한국 도착의 경우, 홍콩 국경 도착 시 제출하는 재화청단과 홍콩발행 항공화물 운송장은 수출국 운송인이 전구간을 보장하는 통과선하증권 형태가 아니므로 단순 경유 사실 증빙서류로 인정 곤란

IV. 여행자휴대품 등 소액물품 통관

적용협정 : EU

1. 한-EU FTA 협정적용 안내

- 미화 1천달러 미만 여행자휴대품의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범위
 - 여행자가 EU 역내 여러 판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반입하는 물품의 전체가격이 미화 1천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 각 여행자별로 미화 1천달러 미만의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도 협정관세를 적용함
 - 미화 1천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EU지역 구매영수증의 '원산지 신고문안' 및 '판매자 서명' 기재여부 확인
- 6천유로 초과 여행자휴대품 판매자의 인증수출자 인증여부
 - 6천유로 초과물품을 수출하는 수출자는 인증수출자로 인증받아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으므로,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만 협정관세를 적용 가능

적용협정 : EU, 미국

2. 여행자휴대품 통관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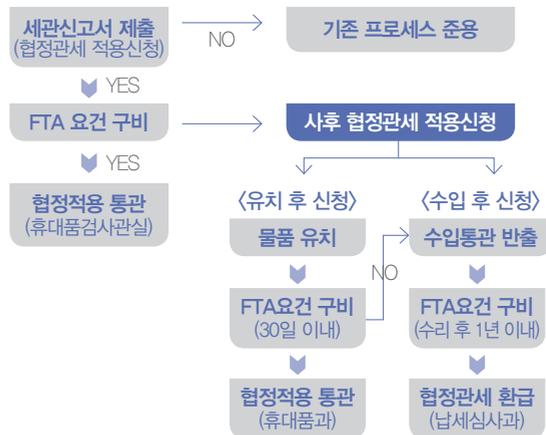
- Q** 한-EU, 한-미 FTA 협정에 따라 미화 1,000달러 이하의 제품은 무관세 통관이 가능한지?
- A** 한-EU, 한-미FTA 모두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규정은 없음. 다만, 미화 1,000달러 이하 여행자휴대품은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 한-EU FTA는 비상업용에 해당하는 물품에 한해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면제하나, 한-미 FTA는 상업용을 구분하지 않고 면제

- 이 경우 협정관세율 적용방법은 전체 구매 가격에서 여행자 면세한도 600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협정세율을 적용

적용협정 : 공통

3. 여행자휴대품 사후 FTA 협정적용 안내

- 미화 1천달러 미만 여행자휴대품의 원산지증명서 면제범위
 - 휴대품 신고시 FTA 협정세율 적용 의사가 있는 자 중 원산지증빙 자료가 불충분하여 협정적용이 어려운 경우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일반 수입신고로 전환하여 일반수입 시 사후 협정적용 절차를 준용함
 - 예외로, 일반수입신고로의 전환이 어려운 여행객은 물품유치 후 유치기간내 요건을 구비하여 협정적용 신청이 가능함



V. 기타 특혜관세 제도

1.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확인제도 안내

●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확인제도

- 제조기업이 발급한 원산지확인서에 대해 세관장이 사전에 그 적정성을 심사·확인하여 신뢰성을 부여하는 제도



● 처리절차

- 신청인은 신청서와 원산지포괄확인서 및 그 인증서류를 본부 세관장에게 제출
 - HS 6단위별로 신청하며,
 - 모델·재료·생산 공정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이 달라지는 경우 별도로 각각 신청
- 세관장은 제출서류의 형식요건을 심사하고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원산지기준·품목분류 충족여부, 재료·제품·재고관리)를 실시
- 이상이 없는 경우, 시스템에 심사결과 및 원산지포괄확인서 확인 번호를 등록
-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관세청 FTA포털(FTA, customs.go.kr)에 게시

적용협정 : EU

1.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한-EU)

- EU에서 수입했던 6,000유로 이하의 원산지제품을 수리를 목적으로 재수출했다가 다시 재수입되는 경우, 수리비를 탁송화물 전체가격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및 인증 받지 않은 수출자가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

※ [예시] 물품가액 : 5,000유로, 수리비 1,500유로

-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수리비를 포함한 물품금액이 해당 탁송화물의 전체가격이므로 물품금액과 수리비를 합산한 금액이 6,000유로를 초과한 경우에는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신고서 작성이 가능
- 수리된 물품이 탁송화물이고, 물품이 수리되어 해당 물품의 가치가 증가된 것이므로 수리비는 탁송화물의 전체가격에 포함되어야 함

적용협정 : 미국

1.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

- 한-미 FTA 협정에 따라 자국 영역에서 다른 당사국 영역으로 일시적으로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해 수출된 후 자국 영역으로 재반입 되는 상품의 과세 여부
-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상품은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하며,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당초 수출된 물품의 가격뿐만 아니라 수리에 소요된 기타 제비용을 포함

수리비, 왕복운임을 포함한 물품의 가치가 과세가격임

- 따라서 한-미 FTA 협정 및 법령에서 정하는 수리·개조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으면 원산지에 관계없이 수리비 및 왕복운임 모두 면제

2. 원산지소명서 작성방법

- 미소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16번 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를 “예” 또는 “아니오” 중 어느 것으로 표기해야 하는지 여부
 - ⇒ 미소기준 적용 시 원산지소명서는 다음과 같이 표기
 - 16번 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 : ‘예’ 표기
 - 19번 최소기준 적용여부 : ‘예’ 표기(세부내역은 별지에 작성 첨부)
- 부가가치기준 충족시 부가가치비율은 품목별 원산지기준의 한도를 적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부가가치를 적는 것인지
 -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한 경우 17번에 ‘예’ 표기하고, 물품 생산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부가가치 비율을 기재

FTA 주요 지침

한-EU FTA 집행에 관한 지침

(FTA집행기획담당관-1169, 2011. 6. 28)

지침 1

이 지침에서 '한-EU FTA'는 '협정'이라 하고, '한-EU FTA 협정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는 '한-EU FTA 원산지의정서'라 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은 'FTA특례법'이라 함

1. 한-EU FTA 협정 집행 일반 사항

1.1. 인증수출자가 발급하는 원산지신고서

- 수출입금액(협정상 '전체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인증 수출자만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 6,000유로 초과여부는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물품 또는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판단
 - 운송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송품장의 물품가액에 의하여 판단
 - (원칙) 송품장의 물품가액 기준
 - (예외) 단일탁송화물에 여러 송품장이 발행된 경우 운송서류에 표시된 물품가액 기준

[참조]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6조 원산지신고서 작성 조건, 제1조 정의

- ※ EU 각 국가통화의 6,000유로 해당금액은 별도 게시(공문시행 및 FTA포탈 게시 예정)
 - 그 외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18조(과세환율)를 적용

1.2. 인증수출자가 원산지의정서 부속서 2-가(원산지결정기준 부가규정)에 따라 발급하는 원산지신고서

- ※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부속서 2-가(원산지결정기준 부가규정)에 따른 물품은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동 의정서 부속서 2(원산지결정기준)에서 정한 원산지기준과 다른 원산지기준에 의해 역내산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 물품별로 정해진 수출쿼터가 있으며 유럽집행위원회에 의해 선착순으로 운영됨

- 이 물품을 수출할 경우 인증수출자는 부속서3에 규정된 원산지 신고서 문안에 아래의 문구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Derogation – Annex II(a) of Protocol...”

[참조]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부속서 2-가, 부속서 3

1.3. 인증수출자가 아닌 업체가 발급하는 원산지신고서

- 인증수출자가 아닌 업체는 6,000유로 이하의 수출물품에 대하여만 원산지신고서 작성가능

– 이 경우 원산지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인증수출자번호는 생략되거나 빈칸으로 남겨두어도 되지만, ‘원산지’표기와 수기로 작성된 원본서명은 반드시 있어야 함

※ 인증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에 원본서명 생략 가능

[참조]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6조 제5항

2. 수입물품 특혜통관 관련 사항

2.1. 협정발효 적용시점 : 협정발효일 오전 0시 신고분부터 적용

2.2. 협정발효일에 적용되는 경과규정

① 발효일 이후에 수입신고(협정관세적용신청)한 물품은 협정관세 적용 가능

– 협정에서 정한 서류*를 구비하여 협정관세 적용 수입통관 가능

* 직접운송 입증서류, 소급하여 작성된 원산지신고서

– 기본세율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한 이후,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하여도 적용 가능

※ 협정발효일에 운송중에 있거나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있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신고서의 유효기간은 발효일부터 12개월임에 유의

- 사후신청 가능기간 기산일이 협정과 FTA특례법과 다름

• [협정] 협정발효일부터 12개월내에 원산지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함

• [특례법]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까지 협정관세사후신청 가능

☞ 경과규정 대상물품을 협정발효일 이후에 수입통관한 경우 증빙서류는 발효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세관에 제출해야만 유효

(예) 보세구역반입일 2011.6.27 발효일 2011.7.1 수입신고수리일 2011.7.15인 경우 : 2012.6.30까지 세관에 접수된 증빙서류(원산지신고서 등)만 유효

② 인증수출자가 소급하여 작성한 원산지신고서가 있어야 적용 가능

- 단, 수출 당시에 인증수출자만 소급작성 권한 있음

※ EU측 인증수출자 지정일자는 의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

- 원산지신고서는 발효일 이후에 소급발행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발효일 전에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는 인정 불가

- 원산지신고서 소급발행 방법은 제한이 없으나, 소급하여 발행된 원산지신고서임이 명백히 확인되도록 작성되어야 함

※ (예) 최초 발행된 송장에 원산지신고문구(작성일자 명기)를 추가 기재 발행, 원산지신고문구를 기재한 송장 등 상업서류 추가 발행 등

[참조]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34조 통과 또는 보관중인 상품에 대한 경과규정, FTA특례법 시행령 제11조

2.3. 직접운송의 적용 범위

① 원산지 제품이라 해도 양 당사자간 직접적으로 운송되어야 협정관세 적용 가능

- EU역내 국가이면 수출국과 선적국(출항국)이 다르더라도 EU역내에서 우리나라로 직접운송 된 경우에는 적용 대상

② 협정당사국 이외의 지역(역외 영역)을 경유하는 경우

-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이 부득이한 사유로 환적 또는 일시장치되는 경우 역외 영역을 경유해도 적용 가능

하지만 이 경우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않아야 하며 하역,

재선적 또는 양호한 상태로 물품을 보존하기 위한 공정을 수행한 경우에만 인정

[참조] 한-EU FTA 원산지규정서 제13조(직접운송), 제1조 정의(탁송화물), FTA특례법 제9조 제2항

2.4. 원산지 신고서의 인정 범위

- ① 무역거래 관행상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가 비당사국에서 다시 발행되는 경우에도 원산지신고서는 EU역내의 수출자*가 작성한 상업서류만 유효
 - * 6,000유로 초과 수출물품은 인증수출자만 발행 가능
 - 협정관세적용 신청시 EU역내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적용 가능
- ② EU역내에 있는 한 EU역내에서 수출물품의 생산국가와 수출자의 국가가 다르더라도 인증수출자가 수출하면 적용 가능
 - ※ (예) 독일 수출자가 원산지가 영국인 물품을 수출하여도 적용 가능
- ③ 원산지신고서 사본인정 여부
 - 원산지신고서는 세관에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 수입신고시 상업서류의 사본제출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사본을 제출하여도 협정관세 적용 가능
 - 이 경우 FTA특례고시 별표 6의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를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 ※ 원산지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물품의 원산지가 불명확한 경우 등 원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원본을 제출받아 확인
 - 하지만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하는 경우에는 FTA특례고시 제3-3-2조에 따라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2.5. 원산지신고서 작성 관련 사항

- ① 단일탁송화물에 원산지 제품과 비원산지 제품이 혼재되어 수입된 경우, 원산지 제품의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신고서 발행 가능
 - ※ 비원산지 제품의 가격은 6,000유로에 산입하지 않음
- ② 원산지신고서에는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서 문안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함
 - ※ 단순히 원산지, 인증수출자번호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 불가

- 원산지신고서는 송품장 등 상업서류 * 에 기재하여야 하며, 따로 작성된 원산지신고서는 적용 불가

* 송품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인도증서 등

- ③ 협정에 표기되어 있는 언어별 원산지신고서 문안은 수출국가가 반드시 자국언어로 표기하라는 의미가 아니므로 협정에 표기되어 있는 문구를 사용하면 협정 적용 가능

※ (예) 프랑스 수출자가 영어 신고문안을 사용하여도 적용 가능

[참조]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부속서 3 원산지 신고서 문안

- ④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EU역내 다수인 경우의 원산지신고서

- 원산지가 EU역내 여러 국가인 물품을 인증수출자가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신고서 문안의 원산지란에 'EU' 또는 'EC'로 기재하거나 각각의 원산지를 기재하면 적용 가능

- ⑤ 원산지 제품과 비원산지 제품이 혼재되어 수입되는 경우의 원산지 신고서

- 비원산지 제품이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어 원산지 제품과 비원산지 제품을 확인할 수 있으면 협정관세 적용 가능

2.6. 원산지신고문안에 작성하는 원산지 표기

- ① 원산지신고문안에 작성하는 원산지는 협정문에 있는 당사자명*,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가명, 당사자 국가의 ISO 코드, 'EU' 표기 및 'EC' 표기는 인정

* (예)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GREECE, THE EUROPEAN UNION, EUROPEAN UNION, EU, EC 표기는 인정

※ 협정문에 없는 당사자명은 인정 불가

- ② 안도라 공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HS 25류~97류)과 산마리노 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도 인정

※ 안도라공국 : ANDORRA (ISO 코드 : AD)

산마리노공화국 : SAN MARINO (ISO 코드 : SM)

[참조]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공동선언

- ③ '유럽연합당사자(EU)'에는 세우타 및 멜리아 (Ceuta and Melia)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우타 및 멜리아 원산지 제품이 포함되었을 경우

‘EU’로 표기하는 것은 인정불가

- 이 경우 ‘Ceuta and Melia’ 표기도 인정불가, ‘CM’ 표기만 인정

[참조]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31조 의정서의 적용

2.7. EU회원국의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도

- EU회원국의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도를 참조하여 번호체계가 불명확한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
 - 관련자료 심사 후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검증실시

2.8. 보세공장, 자유무역지역에서 수입하는 물품

- ① 보세공장 등 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에서 가공되어 국내로 수입되는 물품은 관세법 제189조 원료과세 해당물품인 경우 협정관세 적용 가능
 - 제품과세 물품은 동일성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적용 불가
- ② 자유무역지역과 보세구역(LME, BWT보관창고 등)에 장기간 보관하였더라도, 협정에서 정한 다른 기준을 충족하고 보관물품과 수입 신고물품의 동일성이 확인되는 경우 그 물품의 입항일자가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 이내이면 적용 가능
 - ※ 한-EU FTA에서 원산지증명은 발급일로부터 12개월동안 유효하지만 우리나라의 수입항에 도착일부터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까지는 기간계산에서 제외

[참조]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8조 제1항, FTA특례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

2.9.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적용품목(TRQ 품목*) 관련 사항

- ① 선착순방식 관세율할당 품목 :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순서에 따라 정해진 수량까지는 무관세, 초과물량은 협정에 정해진 양허유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품목
 - ※ [품명] 납치(0303-39-0000), [이행1년차 In-Quota 수량] 800M/T
 - 실제반입되는 수량이 수입신고수량과 같은 수량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제출대상으로 운영
 - ※ 동 물품의 수입통관 집행에 관한 내용은 별도 지침 참조[별도지침1]

② 수입권 공매방식 품목과 수입권 배분방식 품목 : 주무부 장관의 위임을 받은 기관(추천대행기관)의 추천을 받은 후 해당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품목

- ※ • 전자적 방식에 따른 ‘한·유럽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적용 추천서(전산용)’는 Single-Window 시스템으로 확인
- 전산용 추천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참조] 한-EU FTA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부록 2-가-1(대한민국), FTA특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2.10. 농림축산물 긴급수입제한조치 대상품목관련 사항

- 농림축산물 긴급수입제한조치 대상품목은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가 적용되는 물품
 -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특별긴급관세조치가 시행되지만, 동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운송중에 있는 물품은 제외됨
 - ※ 동일 계약상의 물품이라 하더라도 운송중에 있지 않은 물품은 특별긴급관세조치 적용
 - 특별긴급관세조치 시행일부터 수입신고되는 물품은 서류제출 대상으로 운영 (※조치시행일에 FTA포탈 등에 해당사실 게시)
 - 운송서류 등을 통해 출항일을 확인하여 조치시행일 이후에 운송되기 시작한 물품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 적용

[참조] 한-EU FTA 제3.6조 농업긴급수입제한조치

2.11. 협정관세적용신청서 확인 관련 사항

- 원산지가 EU당사국내 어느 한 국가가 아닌 경우 ‘원산지’란에 ‘EU’로 입력
- ‘원산지’가 EU당사국인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를 필수입력항목으로 변경

3. 수출물품 통관관련 사항

3.1. 수출신고서식 개정 사항 확인

- ①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자율발급하는 경우 수출신고서에 발급 여부(수출신고 후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의사)를 표시하도록 수출 신고서 개정
 - EU지역으로 수출되는 물품의 수출신고서는 '자율발급' 표기 여부 확인

별도지침1

선착순방식 수량별 차등 협정관세품목 집행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부록 2-가-1(대한민국)에서 선착순방식으로 운영하는 물품에 대한 집행절차를 규정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관세법 제154조에서 정한 보세구역에 장치한 이후 수입신고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선착순 방식 관세율 할당물품의 통관절차) 한도수량에 도달하는 날의 전날까지는 선착순으로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적용한다.

제4조(한도수량 도달일의 잔여수량배분) ①한도수량에 도달한 날에 수입신고된 물품은 잔여수량을 그날에 수입신고된 수량(수입신고수리된 수량에 한한다)에 비례하여 각각 배분한다.

②제1항에 따라 배분한 이후에도 잔여수량이 있는 경우 한도수량도달일의 다음날 순서대로 제1항의 방식에 따라 배분한다.

제5조(배분에 따른 세액보정) 통관지세관장은 배분되어 조정된 수량을 수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수입자는 관세법 제38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세액을 보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산이자는 동조 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잔여수량의 게시) 제4조에 따른 배분절차가 완료되는 날까지 품목별 총수량·사용수량과 잔여수량을 관세청 홈페이지(FTA포탈) 등을 통해 게시한다.

※ 안도라공국(ANDORRA, AD), 산마리노공화국(SAN MARINO, SM)

※ 세우타 및 멜리아(Ceuta and Melilla, CM)

한-EU FTA 집행에 관한 지침 수정분

(FTA집행기획담당관-1170, 2011. 6. 28)

지침 2

1.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1164(2011.6.27)호와 관련입니다.
2.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집행 지침 내용 중 협정에서 정한 경과물품의 원산지신고서 인정범위와 관련된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아래와 같이 수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현행	수정
2.2. 협정발효일에 적용되는 경과규정 ① (기재생략) ② 인증수출자가 소급하여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가 있어야 적용 가능 - 단, 수출 당시에 인증수출자만 소급 작성 권한 있음 ※ EU측 인증수출자 지정일자는 의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	2.2. 협정발효일에 적용되는 경과규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인증수출자가 소급하여 작성한 원산지신고서가 있어야 적용 가능 - <u>경과규정 해당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신고서를 소급발급할 당시에 인증수출자이면 적용 가능</u> ※ <u>경과규정 해당물품이 아닌 경우(협정 발효일의 다음날부터 운송한 물품)에는 동 지침 2.4조 ①항을 적용</u>
2.4. 원산지 신고서의 인정 범위 (신설)	2.4. 원산지 신고서의 인정 범위 ① <u>해당물품 수출 당시에 인증수출자만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u> - <u>수출 이후에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경우, 지정일 이전에 수출한 물품에 대해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는 인정 불가</u> ※ <u>EU측 인증수출자 지정일자는 의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u>
① (기재생략) ② (기재생략) ③ (기재생략)	② (현행 ①항과 같음) 조항 변경 ③ (현행 ②항과 같음) 조항 변경 ④ (현행 ③항과 같음) 조항 변경

한-EU FTA 집행에 관한 지침 수정분

(FTA집행기획담당관-1867, 2011. 7. 20)

지침 3

1.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1170('11.6.28)호와 관련입니다.
2.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집행 지침 내용 중 원산지신고서 인정범위와 관련하여 한-EU FTA 수석대표간 추가로 합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수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각 세관장께서는 상기 내용을 관내 수입자와 수입신고인 등에게 안내 하시고 본부세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행	수 정
2.4. 원산지 신고서의 인정 범위 ① 해당물품 수출 당시에 인증수출자만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 수출 이후에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경우, 지정일 이전에 수출한 물품에 대해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는 인정 불가 ※ EU측 인증수출자 지정일자는 의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	2.4. 원산지 신고서의 인정 범위 ① 해당물품 수출 당시에 인증수출자가 아니어도 원산지신고서 작성당시에 인증수출자이면 소급하여 작성·발급한 해당 원산지신고서도 유효 ※ FTA특례법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간(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내에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후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를 첨부
②~④ 기재생략	②~④ (현행과 같음)

한-EU FTA 원산지표기 및 인증 수출자 번호체계 확인업무 처리 지침

(FTA집행기획담당관-1668, 2011. 7. 12)

지침 4

1. 원산지신고문안에 기재되는 원산지표기 확인업무 처리

- 원산지신고문안에 기재되는 원산지표기 인정범위

<현행 인정범위>

- 협정문에 있는 당사자명 (예)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가명 (예) GREECE
- 당사자 국가의 ISO 코드 (예) IT
- 'EU' 표기, 'EC' 표기

<추가 인정범위>

- 'European Community' 표기
- 원산지가 영국인 제품 : 'UK' 표기 (협정문상 표기된 약어)
- EU측 각 당사자 언어 협정문에 표현된 'EU' 표기

- ※ (예)
 -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말타 : 'UE' 표기
 -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 'ES' 표기
 - 그리스 : 'EE' 표기
 - 불가리아 : 'EC' 표기

- ※ 한-EU FTA 적용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번역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출입물품이 동 협정에서 정한 사항을 충족한다'는 취지의 수입자 진술서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9조), 수출입 통관업무 집행시 확인할 수 없는 언어로 표현된 경우 번역본을 제출받아 확인 처리

2. 인증수출자번호체계 확인업무 처리

● 인증수출자 번호체계가 지침* 내용과 상이한 경우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집행 지침.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1170호, 2011.6.28)

① 수입통관부서는 '인증수출자 인증서(사본)'을 요구하여 확인

- 확인결과 한-EU FTA에 적용되지 않는 인증수출자 번호로 확인된 경우 협정관세 적용 금지

② 수입자가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인증서 확인 결과 한-EU FTA에 적용되는 '인증수출자 번호체계'인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우선 협정관세 적용통관 후 사후검증 절차 진행

※ 상기 건에 대하여는 先 통관 후 검증실시 대상임을 수입자에게 안내

③ 인증번호체계가 지침내용과 다른 경우(상기 ①·②항) 수입통관부서는 본부세관 FTA 원산지 검증업무 담당부서에 보고

※ 매주 금요일에 본부세관 FTA과로 취합보고(주단위 보고, 붙임1서식)

④ 본부세관 FTA업무부서는 인증수출자 확인 여부를 자체심사

※ FTA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에 따른 보정요구

※ 자체심사 기간 : 접수일로부터 14일(필요시 연장가능)

- 심사기간내에 유효한 인증수출자로 확인된 경우 심사종료

※ 심사종료 후 본청 원산지지원과로 사후보고

- 그 외의 경우 본청 원산지지원과로 보고

⑤ 본청 원산지지원과는 유효한 인증수출자로 확인되지 않는 건에 대해 원산지검증실시

3. 시행일 : 공문 발송일부터 시행

〈붙임〉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EU회원국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14. 3. 1일 기준)

- 인증번호체계 : 국가명(/) 세관번호(/) 일련번호 등으로 구성
 - '/'가 예시에 사용된 경우 코드의 일부로 인정

국가	예시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오스트리아	AT/100/015	국가코드(2)/세관코드(3)/인증번호(3)
벨기에	BE 74	국가코드(2)/인증번호(1-4)
불가리아	BG/1223/009/08	국가코드(2)/세관코드(4)/인증번호(3)/인증연도(2)
사이프러스	CY/NIC/000	국가코드(2)/세관코드(3)/인증번호(3)
크로아티아	HR/10/001/13	국가코드(2)/세관코드(2)/인증번호(3)/인증연도(2)
체코	CZ/02/0001/04, CZ/51/0001/13	국가코드(2)/세관코드(2)/인증번호(4)/인증연도(2)
덴마크	DK/51/04/237/00638 DK/04/000638	국가코드(2)/인증기관코드(2)/인증연도(2)/인증표시코드237또는239/인증번호(5) 국가코드(2)/인증연도(2)/인증번호(6)
에스토니아	EE/001/2004	국가코드(2)/인증번호(3)/인증연도(4)
핀란드	FI/50/110 FI/8/36 FI/0/2014	국가코드(2)/인증번호/세관코드(3) 국가코드(2)/인증번호/Åland지역코드(2) 국가코드(2)/인증번호/인증연도(4)
프랑스	FR 003160/0025	국가코드(2)/세관코드(6)/인증번호(4)
독일	DE/4711/EA/0007	국가코드(2)/세관코드(4)/인증수출자코드(EA)/인증번호(4)
그리스	GR/01/1234/2004	국가코드(2)/세관코드(2)/인증번호(4)/승인연도(4)
헝가리	HU123450N8000000000	국가코드(2)세관코드(5)/0/level코드(N or E)/인증연도(1)/인증번호(9)
아일랜드	IE/05/06	국가코드(2)/인증번호/인증연도(2)
이탈리아	IT/032/MI2/11 IT/002/MXP/13	국가코드(2)/인증번호(3)/지역코드(2-3)/인증연도(2)
라트비아	LV/100/2006	국가코드(2)/인증번호(1-3)/최초인증연도(4)
리투아니아	LT/VM0/011	국가코드(2)/세관코드(문자(2),숫자(1))/인증번호(3)
룩셈부르크	LU/ORDL/256	국가코드(2)/ORDL/인증번호(3)
몰타	MT/D/000	국가코드(2)/D/인증번호(3)

국가	예시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네덜란드	NL/361/02/1234	국가코드(2)/세관코드(3)/인증연도(2)/인증번호(3-4)
폴란드	PL/042010/0001	국가코드(2)/세관코드(6)/인증번호(4)
포르투갈	PT/000/P	국가코드(2)/인증번호(3)/발급지역(P or L)
루마니아	RO/DRVBV/025	국가코드(2)/세관코드(5*)/인증번호(3)
슬로바키아	SK/1050/010/05	국가코드(2)/세관코드(4)/인증번호(3)/인증연도(2)
슬로베니아	SI/123/03	국가코드(2)/인증번호(3)/인증연도(2)
스페인	ES/28/0001/98	국가코드(2)/지역코드(2)/인증번호(4)/인증연도(2)
스웨덴	SE/SHF/123456	국가코드(2)/코드*(3)/인증번호(6)
영국	GB 12345/06	국가코드(2)/인증번호(5)/인증연도(2)

한-미 FTA 운영지침

(FTA집행기획담당관실-1073, 2012. 3. 12)

지침 5

이 지침에서 '한-미 FTA 협정'은 '협정'이라 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해당 고시는 각각 '특례법', '특례법 시행령', '특례법 시행규칙', '특례고시'라고 지칭함

※ 동 지침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에 시행함(본 책자는 활용애로와 관련된 내용만 일부 발취함)

I. 한-미 FTA 일반 사항

1. 원산지 증명방식 : 자율발급

● [발급 주체]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 수입자도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작성 가능 다만, 당해 수입물품이 원산지제품인 것과 운송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서류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협정문 제6.15조(특혜관세대우 신청) 1항 가호

※ 협정문 제6.19조(수입관련 의무) 4항 아호

● [발급 형식] 서면 또는 전자증명

● 원산지증명서 서식

-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9서식에 따른 권고서식(붙임1). 또는,
- 협정에서 정한 필수항목을 기재한 서류

원산지증명서 기재항목
[협정문 제6.15조 2항]

① 증명인의 성명(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 포함)

② 상품의 수입자(이는 경우에 한한다.)

③ 상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한한다.)

④ 상품의 생산자(이는 경우에 한한다.)

⑤ 물품의 HS품목번호 및 품명

⑥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⑦ 증명일자

⑧ 증명서 유효기간(포괄증명의 경우)

※ 협정문에서 정한 필수항목 이외의 정보를 기재하여도 적용 가능
 •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기재하거나 별도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해도 적용 가능

항목별 설명

①항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주소', '전화번호', 'e-mail 주소'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이외 동 원산지증명서와 관련되어 연락가능한 정보(예 : E-mail, 전화번호)를 기재
③~④항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자'는 '생산자'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자'와 '생산자' 중 하나의 항목은 반드시 기재
⑤항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2002기준에 의한 HS품목번호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수출자는 HS2002기준에 의한 품목번호임을 명시 (예시) 9503.10 (HS 2002) ※ 수입물품은 HS2012기준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적용 가능 ● 원산지증명서의 HS품목번호(HS 6단위)와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HS 6단위)가 다른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물품과 수입신고 물품과의 동일성이 확인되고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한다면 협정관세 적용 가능
⑥항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이 동 FTA에 따른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기재 (예시) "I certify that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United 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예시) "These Goods are of KOREA Preferential origin in the Korea-United 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⑦항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자의 서명은 필수항목이 아님
⑧항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포괄증명"이란 반복되어 선적되는 동일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작성)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최초의 원산지증명서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

2. HS2012 도입에 따른 작성방법

- [필요성] 제5차 HS협약 개정안(HS2012)이 '12.1.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한-미 FTA는 'HS2002' 기준으로 협상 타결
 - HS2012기준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양국 세관당국간에 협의중에 있으며,
 - 그 전에는 임시로 "연계표(HS2012 ↔ HS2002)"를 참고하여 적용
 - ※ 기획재정부(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에서 시달
- [관련법령] FTA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시행령 : 특혜세율(양허표) 규정 (HS2012기준)
 - 시행규칙 : 원산지결정기준 규정 (HS2002기준)

- ▶ 서울과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연계표 활용 필요
- ※ 현재 기발호 FTA(EU 등)도 “연계표(HS2012 ↔ HS2007)”로 운영 중
- 관세율(HS2012기준, 원산지결정기준(HS2007기준))

● [HS품목번호 작성방법] 원산지증명서,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수입신고서상 기재방법

서류명	품목번호 작성기준
원산지증명서, 협정관세적용신청서	HS2002
수출입신고서	HS2012

3. 원산지 증명의 면제

-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1천 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 면제
 - 상업용 여부와 관계없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여행자휴대품, 우편물, 특송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 면제*
 - * 구매영수증,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를 간이하게 확인 후 협정 적용
 -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증명서발급이 면제되지 않음
 - ① 당사국 법의 준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 ② 수입물품이 사전에 계획된 일련의 수입의 일부분으로 활용되는 경우

※ 협정문 제6.16조(증명 또는 그 밖의 정보의 면제)

4. 원산지 증명의 유효기간

- 원산지증명서는 발급한 날로부터 4년 동안 유효
-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라 운송이 지연된 경우에는 증명서의 효력을 인정함*

※ 협정문 제6.15조(특혜관세대우 신청)

※ 특례법 시행령 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5항

5. 원산지증명서 발급시기

- 한-미 FTA에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시기에 대한 제한 없음
 - 따라서 수출당사국에서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된 후에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도 적용 가능
 - ※ [예] (선적일) 2012.1.15일, (C/O작성일) 2012.1.30일 → 유효
 - 다만,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내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야 함

6. 협정발효 적용시점 (경과규정)

- 수입물품에 대한 협정발효 적용시점
 - 협정발효일 이후(2012년 3월 15일)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
 - ※ 개정 FTA특례법시행령 부칙(제23336호) 제2조(일반적적용례)
 - 협정발효일 이전에 작성된 원산지증명서도 적용 가능
 - ※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4년이므로,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항도착일로부터 4년전에 작성된 원산지증명서까지 적용대상
(예) 수입항도착일 : 2012.3.15일 [2008.3.16일 이후 작성된 원산지증명서는 유효]
- 수출물품에 대한 협정발효 적용시점
 - 협정발효일 이후(2012년 3월 15일) 미국 세관당국에 최초로 수입 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

II. 수입자 관련 사항

7. 운송원칙 (제3국 통과 및 환적 물품)

- 비당사국(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신청인이 서류로 입증하여야 함

한-미 FTA에서 정하는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 ① 비당사국에서 하역·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치는 경우
- ②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는 경우

※ 다만, 현행 특레고시 제3-5-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로 명백하게 확인되면 협정관세 적용 가능

※ 협정문 제6.13조 통과 및 환적

8.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적용 신청

* [붙임 2]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참조

- 수입자는 해당 수입물품의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에 근거하여 특혜관세 적용을 신청하여야 함
 - FTA특레고시 제3-3-2조(수입신고수리전 협정관세적용신청) 준용

※ 협정문 제6.19조(수입 관련 의무)

-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작성시 (FTA특레고시 별지 제9호 서식) ⑨번란 (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를 정확하게 표시

* 1:기관, 2:자율(수출자), 3:자율(생산자), 4:자율(수입자)

- 세관에서 수입통관 심사시 원산지증명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신고 건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 FTA특레고시 별표6에 따른 원본임을 확인하는 서명이 있는 사본 제출도 가능

[참고] FTA특레고시 [별표 6] 원산지증명서 사본제출 스탬프

본 사본이 원본과 다를 경우 관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세관에서 요구시 원본을 제출하겠습니다.
수입자 000 서명

9.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적용 신청

- 수입 당시 원산지 상품이었으나 특혜관세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 신청 가능
 - 이 경우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원산지증명서* 및 세관이 요구하는 그 밖의 문서를 제시해야 함
 - ※ 동 협정에서는 수리후 협정관세적용신청시 원산지증명서 사본 인정

※ 협정문 제6.19조(수입 관련 의무) 5항

10. 수입자의 자료보관 (FTA특례법 시행령 제13조)

- 서류보관기간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 수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 포함)
- 원산지증빙자료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등)
- 수입신고필증
-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 사전심사서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사전심사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함)
- 지적재산권거래 관련 계약서

11.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적용품목(TRQ 품목*) 관련 사항

* [붙임 3]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적용품목(Tariff-Rate Quotas) 참조

① [선착순방식 TRQ 품목]

-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순서에 따라 정해진 수량까지는 무관세, 초과 물량은 협정에 정해진 양허유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품목

품명	1년차 적용수량(M/T)
넙치(0303-34-0000, 0303-39-0000)	1,530
명태(0303-67-0000, 0303-69-9000)	4,000
민어(0303-89-9091)	1,000

- 실제반입되는 수량이 수입신고수량과 같은 수량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서류제출대상으로 운영
- ※ 송품장, 선하증권 등을 확인하여 동일 수량인지 확인할 것
- 운영방법은 한-EU FTA 선착순방식 수량별 차등 협정관세품목 방식과 같음 (※ FTA 특례고시 제5장으로 신설 예정)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부록 2-가-1(대한민국)에서 선착순방식으로 운영하는 물품에 대한 운영방법

1. (대상) 보세구역에 장치한 이후 수입신고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운영

2. (통관절차)

- 한도수량에 도달하는 날의 전날까지는 선착순으로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적용
- 한도수량에 도달한 날에 수입신고된 물품은 잔여수량을 그날에 수입신고된 수량(수입신고수리된 수량에 한한다)에 비례하여 각각 배분
- 배분한 이후에도 잔여수량이 있는 경우 한도수량도달일의 다음날 순서대로 배분

3. (배분에 따른 세액보정)

- 통관지세관장 : 배분되어 조정된 수량을 수입자에게 통지
- 수입자 : 관세법 제38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세액을 보정
- ※ 가산이지는 없음(동조 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

4. (잔여수량의 게시) 배분절차가 완료되는 날까지 품목별 총수량 · 사용수량과 잔여수량을 관세청 FTA포탈(fta.customs.go.kr)을 통해 게시

② [수입권 추천*방식 TRQ 품목]

* 수입권 구매방식 품목과 수입권 배분방식 품목

- 주무부 장관의 위임을 받은 기관(추천대행기관*)의 추천을 받은 후 해당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품목

*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유가공협회 등 총7개 대행기관

※ [주의사항]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가지고 협정에서 정하는 물량을 추천기간에서 추천받아야 함

(주의) WTO 일반특혜C/O로 FTA협정관세 적용 불가

※ • 전자적 방식에 따른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적용 추천서(전산용)'는 '세관장확인대상 요건확인 시스템'으로 확인

• 전산용 추천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참조] 한-미 FTA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부록 2-나-1 (대한민국), FTA특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12. 계절관세 적용품목의 수입통관

- 한-미 FTA 계절관세 해당 물품 : 감자, 오렌지, 포도

- 적용기준 : 수입신고일자

- 다만, 세율이 인상될 예정인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하는 바, 계절관세 적용기간(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기간)에 입항하는 물품은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함

한-미 FTA 계절관세 품목

HS No	품명	관세율	적용 기간 (2012년도)
			적용조건
0701.90-0000	감자(신선, 냉장한 것) - 칩용	0	1월~4월, 12월 수입되는 물품
		304	5월~11월 수입되는 물품
0805.10-0000	오렌지	0	1월~2월, 9월~12월 수입되는 물품 중 2,500메트릭톤 이하의 물품
		50	1월~2월, 9월~12월 수입되는 물품 중 2,500메트릭톤을 초과하는 물품
		30	3월~8월 수입되는 물품
0806.10-0000	포도 (신선한 것)	24	1월~4월, 10/16일~12월 수입되는 물품
		42.3	5월~10/15일 수입되는 물품

III. 수출자 관련 사항

13. 수출자의 자료보관 (FTA특례법 시행령 제13조)

- 서류보관기간 :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 수출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 계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 사본
- 원산지증빙 자료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등)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 사본
- 수출신고필증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 서류
- 원가계산서, 원재료 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14. 생산자의 자료보관 (FTA특례법 시행령 제13조)

- 서류보관기간 : 원산지증빙서류 작성일로부터 5년
- 생산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 수출자 또는 계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해당 물품의 원산지 증명을 위해 작성·제공한 서류
- 원산지증빙 자료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등)
- 수출자와 체결한 물품공급 계약서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 서류
- 원가계산서, 원재료 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15. 원산지증빙서류 허위 발급시 처벌조항

-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발급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FTA특례법 제22조제2항)
-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급한 수출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FTA특례법 제22조제3항)

IV. 한-미 FTA 원산지 검증

16. 일반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 : 직접검증

(1) 수입당사국의 직접검증 방법 (한-미 FTA 제6.18조 제1항)

-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정보요청/질의
- 원산지증명과 관련된 기록(협정 제6.17조제1항에 언급된 기록) 검토 또는 상품생산에 사용된 시설을 시찰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 소재하는 수출자·생산자의 사업장 방문
- 수입당사국과 수출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절차 (향후 양 세관당국간에 협의할 예정)

(2) 직접검증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한-미 FTA 제6.18조 제2항·제4항·제6항)

- (특혜관세 적용배제) 다음의 경우 특혜관세 대우를 배제
 -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를 입증하는 정보 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수입당사국의 사업장 방문에 수출자·생산자가 기록 또는 시설에 대한 접근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상품이라는 허위 또는 근거 없는 신고나 증명을 제출하였음을 당사국이 적발한 경우
 - 수입자가 제6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 (특혜관세 적용중지)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허위·근거 없는 신고·증명이 적발된 경우, 원산지를 준수하고 있다고 결정할 때까지 진술·신고·증명되는 동일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적용 중지가능
 - * 원산지자격을 부여하는, 원산지 규정과 관련한 모든 측면에서 동일한 상품
- (수입자 처벌예외) 다음의 경우 특혜관세 대우에 대한 유효하지 아니한 신청을 하였음을 이유로 수입자 처벌불가
 - 수입자가 신청을 함에 있어 과실·중과실 또는 사기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납부하여야 할 모든 관세를 납부한 경우
 - 수입자가 신청이 유효하지 아니함을 인지하여 신속하고 자발적으로 그 신청을 정정하고 납부하여야 할 모든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
- (수출자 등 처벌예외)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증명을 제공받은 모든인에게 증명이 부정확하다는 것을 서면으로 자발적으로 통보한 경우 부정확한 증명을 이유로 벌칙부과 불가

17. 섬유·의류에 대한 원산지 검증

(1) 수출당사국에 의한 간접검증

- 수출당사국에 수입물품 원산지에 대한 검증 요청(한-미 FTA 제4.3조 제3항)

- 수출당사국은 수입당사국에서 원산지가 정확하다는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증을 수행
- 수출당사국은 해당물품에 대해 수입자가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검증수행 가능
- 수출당사국은 자체적인 발의에 의해서도 검증 수행 가능
- 수출당사국에 수출자·생산자·운송인 등에 대한 검증을 요청
 - 수입당사국은 수출국내에 섬유·의류무역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경우 수출당사국에 검증 요청
 - ※ 한-미 FTA 제4.3조 제5항
 - 수출당사국은 수입당사국에서 다음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증을 수행
 - 검증대상자가 섬유·의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적용 가능한 통관조치를 준수했는지 여부
 - 검증대상자가 수출 생산한 섬유·의류 원산지의 정확성 여부
 - 합리적 의심(resonable suspicion) : 다음 사실정보 및 요소에 기초한 원산지 위반 의심

- 섬유·의류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적용 가능한 통관조치에 대한 기업의 우회
- 섬유·의류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국제협정에 관한 조치의 위반을 용이하게 하거나 그러한 협정에 따라 어느 한 쪽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권리 또는 혜택의 무효화 또는 침해를 달리 용이하게 할 행위의 존재
- 수출입자가 수입을 규율하는 법 등의 위반전력
- 제조자·생산자 또는 운송인이 수입을 규율하는 법 등의 위반전력
- 특정제품 분야에서 상품의 운반에 관여한 일부 또는 모든인이 수입을 규율하는 당사국의 법 등의 위반전력
- 기타 양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정보

(2) 수입당사국과 수출당사국의 공동 현지검증 (한-미 FTA 제4.3조 제6항)

- 수입당사국과 수출당사국이 공동으로 수출국의 수출자·생산자를 공동 검증
 - 수입당사국은 수출자·생산자 등에게 사전통보 불허

- 방문 시점에 현장방문 동의요청, 동의 불허시 협정관세 배제

(3) 검증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한-미 FTA 제4.3조제10항 · 제11항)

- (특혜관세 적용중지) 수입당사국은 검증진행 동안 자국법에 따라 특혜 관세대우의 적용 중지가능
- (특혜관세 적용배제) 수입당사국이 검증요청한 이후 12월 이내에 수출당사국의 ①회신이 없거나 ②‘원산지를 불인정하는’ 회신이 온 경우 수입당사국은 특혜관세를 부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자국법에 합치되게 적절한 조치 가능
- (명단공표) 수입당사국은 자국법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원을 공개할 수 있음
 - 협정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와 섬유 · 의류 상품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통관조치를 회피한 자
 - 섬유 · 의류를 생산하거나 생산능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 자

V. 기타 집행사항

18. 관세면제대상 일시 수출입물품

- 원산지와 관계없이 다음 물품에 대해서는 무관세 일시반입을 허용

특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4

- 가. 일시입국하는 사람이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언론장비, 텔레비전 방송용 장비, 소프트웨어, 방송·영화촬영 장비 등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장비
- 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
- 다. 상업용 견본품, 광고용 필름 및 기록물
- 라. 운동경기용 물품

- 해당물품의 일시반입 기간은 일시입국자의 최초출국일 또는 1년이며, 연장 가능 [※ 관세법 제97조,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0-3조(재반출면세기간) 참조]
- 해당물품의 일시반입 요건은 특례법 시행규칙*을 준용

* 특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2항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칠레의 국민 또는 칠레에 거주하는 자에 의하여 수입될 것
2. 해당 물품을 수입한 자의 직업활동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되거나 직접적인 감독하에서 사용될 것
3. 우리나라에서 판매 또는 임대되지 아니할 것
4. 재수출될 때까지 다른 물품과의 식별이 가능할 것
5. 사용 목적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수량 이내일 것

– 재수출 대상인 경우, 감면관세액의 110%이내에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음

● 수리 또는 가공*을 위해서 우리나라와 미국간 수입되는 다음 물품에 대해서는 그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 면제

- ①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
- ② 우리나라에서 수리 또는 가공한 후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 수리·가공을 초과하는 범위 - [참조]협정 제2.6조(수리 또는 개조후 재반입되는 상품)

- 본질적 특성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상품을 만드는 것
- 미완성 상품을 완성 상품으로 변형하는 것

– 물품의 관세면제대상물품 인정 여부는 특례법 시행규칙*을 준용

* 특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 ③ 제1항 각 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수입 또는 수출된 물품과 수리 또는 가공 후 수출 또는 수입되는 물품의 품목번호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통합품목분류표”라 한다)에 따른 10단위의 품목번호를 말한다]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관세면제대상 물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 (참조) 한-미 FTA에 따른 관세감면 규정 요약

시행규칙 제11조의4		감면부호
①항	1호. 일시 입국하는 사람이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언론장비, 텔레비전 방송용 장비, 소프트웨어, 방송·영화 촬영 장비 등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장비	EF81111411
	2호.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물품	EF81111412
	3호. 상업용 견본품, 광고용 필름 및 기록물	EF81111413
	4호. 운동경기용 물품	EF81111414
③항	1호. 우리나라에서 미합중국으로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	EF81211441
	2호. 우리나라에서 수리 또는 가공한 후 다시 수출하기 위하여 미합중국에서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EF81111442

[참조] 협정문 제2.5조 상품의 일시 반입
 제2.6조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
 제2.7조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과 인쇄된 광고물의 무관세 반입

[별지 제6호의9서식] <신설 2011.12.2>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Certificate of Origin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1. Exporter (수출자)	Name (성명)	2. Blanket Period (원산지포괄종류기간)		
	Address (주소)	YYYY MM DD YYYY MM DD (년) (월) (일) (년) (월) (일)		
	Telephone (전화)	From _____ To _____ (부위) (까지)		
	Fax (팩스)			
3. Producer (생산자)	Name (성명)	4. Importer (수입자)		
	Address (주소)	Name (성명)		
	Telephone (전화)	Address (주소)		
	Fax (팩스)	Telephone (전화)		
E-mail (전자우편)		E-mail (전자우편)		
5. 원산지 증명 대상 물품 내역				
Serial No. (연번)	Description of Goods (품명·규격)	Quantity & Unit (수량 및 단위)	HS2002 No. (통관번호 HS 6자리)	Preference Criterion (원산지 결정기준)
				Country of Origin (원산지 국가)
6. Observations: (특이 사항)				
I certify that: 본인은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The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상기 서식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이고 정확하며, 기화된 사실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증명서 또는 이와 관련된 허위 진술 또는 중대한 사실 누락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Certificate,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Certificate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w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Certificate. 본인은 이 증명서를 발급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유지하며, 수정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할 한 이내에 이 증명서에 기재되거나 유효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경사항에 대해서 이 증명서를 받은 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에 동의합니다. -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 -United 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해당 물품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This Certificate consists of _____ pages, including all attachments. 이 증명서는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총 _____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 Authorized Signature (서명권자의 서명)		Company (회사명)		
Name: (호칭지칭 서명)		Title (직위)		
YYYY MM DD (년) (월) (일)		Telephone : _____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_____		Fax: _____		
1)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a) of the Agreement: 미합중국의 원산지 증명서: NO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b) of the Agreement: 미합중국의 원산지 증명서: PSR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c) of the Agreement: 미합중국의 원산지 증명서: PE * 수입자, 생산자 양면 기재 가능하며, 한글문과 영문문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음				

[참조] 원산지증명서 필수항목 [협정문 제6.15조 2항]

- ① 증명인의 성명(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 포함)
- ② 상품의 수입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 ③ 상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한한다.)
- ④ 상품의 생산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 ⑤ 물품의 HS품목번호 및 품명
- ⑥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 ⑦ 증명일자
- ⑧ 증명서 유효기간(포괄증명의 경우)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확인 및 작성업무 처리 지침

(FTA집행기획담당관실-1228, 2012.3.20)

지침 6

1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형식요건 인정범위

① 협정에서 정하는 필수항목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적용 가능

- 필수항목 이외의 정보라도 잘못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와 한-미 FTA가 아닌 다른 종류의 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 불가능

② HS품목번호와 PSR(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기재사항의 일치여부

-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른 권고서식의 경우 : WO, PSR, PE는 원산지 증명인이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형식요건 판단시 고려사항이 아님
- PSR을 CTH, RVC 등으로 기재한 경우 : 해당 HS품목번호와 PSR이 협정에서 정하는 바와 맞아야 적용 가능
- ※ 2개의 정보가 상호 맞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 불가

③ HS품목번호와 품명의 일치여부

- HS품목번호에 따른 거래품명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2개의 정보가 상호 맞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
- ※ 수입신고되는 품명과 원산지증명서의 품명과 일치여부는 통관·심사 부서에서 확인할 사항

④ '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를 포함하여 증명인의 성명'을 기재하는 항목에는 증명인의 성명과 연락처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적용 가능

- 성명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 유효하지 않은 원산지 증명서이므로 적용 불가

⑤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인정범위

-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 국가명이 표시되어 있거나, 동 FTA에서 정하는 원산지제품임을 기재한 경우 적용 가능

※ 다만, 원산지 국가명만이 표시된 경우 원산지를 증명하는 수출자나 생산자가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제품임을 기재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므로 수입통관이후 원산지 검증시 특혜관세가 배제될 수 있음을 신청인에게 안내

2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증명하는 경우 처리 방법

①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붙임1]에 따른 의무 사항이 있음을 신청인에게 안내

※ 안내 방법 : 구두, 안내문 발송 또는 원산지증명서에 스탬프 날인 등 (안내 문구 예시)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상품이 특혜관세대우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록과 증명서 발급대장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서명권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FTA특례법에 의하여 협정관세 적용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수입자'가 원산지 자율증명하는 경우 '생산자' 기재 여부

- 수입자가 원산지를 증명하는 경우, 동 협정 제6.1조, 제6.17조 및 제6.18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생산에 관한 사항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수입자'가 원산지 증명하는 경우에는 '생산자'를 표기하여야 함

※ 다만, 특별한 사유 등으로 '수입자'가 '생산자'를 알지 못하여도 그 수입물품의 생산에 관한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3 제3국 발행 송장거래시 특혜관세 적용 여부

- 무역거래 관행상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가 비당사국에서 다시 발행되는 경우, 협정당사자 영역내의 권한있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적용 가능

*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

4 원산지증명서에 발급번호가 없는 경우 협정관세적용신청서 11항 '발급번호' 기재 방법

- 해당 수입물품의 송품장 발급번호를 기재
- 송품장에 발급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발급일자를 기재

※ 같은 날짜에 발급번호가 중복되는 경우 뒤쪽에 일련번호 기재

5 미국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기재 방법

- ① HS품목번호 : HS2002와 HS2012에 따른 품목번호를 병기
(예시) 560110(HS2002), 961900(HS2012)
- ② 단일선적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송품장번호를 기재
- ③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기재 문구

I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o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ese representations;

The goods comply with all requirements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and

This document consists of _____ pages, including all attachments.

Signature:
Title:
Phone Number:
Email Address:
Date:

※ [붙임2] 'US CBP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참조

※ **붙임 1 : 원산지자율증명 수입자의 의무사항**

1. '물품 수입자' 관련 의무 사항

- 특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함

2. '원산지증명서 발급자' 관련 의무 사항

① 동 협정에 따른 원산지 증명인으로서의 의무 사항

- 원산지를 증명하는 그 상품이 특혜관세대우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록*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함

* 동 협정 제6.1조(원산지상품) 및 제6.13조(통과 및 환적)에 따라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기록과 제6.17조(기록유지요건)제1항에 따라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록

② 특례법령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의무 사항

–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및 기재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름

1. 당해 물품의 수출자·품명·수량·원산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
2.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이 비치되어 발급내역이 관리되고,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 서명할 자가 서명하여 발급할 것

※ 적용규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원산지증빙서류) 제3항

– 수입자는 서명권자를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동 지침 별지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관리** 하여야 함

- 1호. 작성번호 및 작성일자
- 2호. 수입신고 번호 및 수리일자
- 3호. 품명·품목번호·수량·금액 및 원산지
- 4호. 생산자 또는 공급자
- 5호. 수출자 및 수출국명
- 6호. 당해 물품에 적용된 협정의 명칭 및 원산지결정기준

* 준용규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3-1조(원산지증명서 작성·서명자 등)

** 준용규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자율증명절차)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운영지침

(FTA집행기획담당관실-1963, 2013.4.10)

지침 7

1. 협정적용 영역

- 대한민국 : (원산지 부호 KR)

- 한국 주권하의 육지, 해양 및 상공, 그리고 한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

- 터키공화국 : (원산지 부호 TR)

- 영토, 내수, 영해 및 그 상공, 그리고 국제법에 따라 생물이나 무생물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및 보존을 목적으로 터키가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해양지역

※ 협정 제1.3조(일반정의)

2. 원산지증명 방식

- [수출자 자율발급방식]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작성

※ 원산지의정서 제16조(원산지 신고서), 제17조(원산지 신고서 작성 조건)

※ 원산지의정서 부속서 3(원산지 신고서 문안)

- 원산지 신고서의 유효기간 : 수출 당사국에서 발급된 날부터 12개월

※ 원산지의정서 제18조(특혜관세대우 신청과 원산지 신고서의 제출)

- 원산지 신고서 면제 대상물품과 면제 기준

- 사인 간 소포로 송부되는 물품과 여행자의 개인 수화물의 경우 아래의 금액 이 하의 물품은 원산지신고서가 면제됨

- 터키로 수입되는 경우 : (소포) 500유로, (여행자 개인수화물) 1,200유로

- 한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 미화 1,000달러

- ※ 송품장이나 구매영수증 등에 표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미화 이외의 통화로 표시된 경우 관세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로 환산한 금액

- ※ 원산지의정서 제20조(원산지 신고서의 면제)

- 무역거래 관행상 송품장이 비당사국에서 다시 발행되는 경우에도 원산지신고서는 수출당사국의 수출자가 작성하여야 함

- ※ 원산지의정서 제27조(제3국 송장)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이 적용될 수 있는 HS 제16부 및 제17부 또는 제7308호 및 제9406호의 물품은 분할 수입되는 경우에도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에 대한 단일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 적용 가능

- ※ 원산지의정서 제19조(분할 수입)

3. 원산지신고서 관련사항

- 원산지신고서 문안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① preferential origin.

.....②

(Place and date)

.....③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① 란 : '제품의 원산지'를 작성 (예 : KR, KOREA, TR, TURKEY)

② 란 : '원산지신고서 작성장소와 작성일자'를 작성

※ 해당 서류에 장소와 일자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작성생략 가능 (해당서류에 장소와 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다른 경우에는 작성해야 함)

③ 란 : '수출자의 서명과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 원산지신고서 작성 관련 사항

• 원산지 신고서 문안을 영어로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작성하며, 원산지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

• 원산지 신고서에는 수출자의 원본 서명이 수기로 작성되어야 함

• 원산지제품과 비원산지제품이 하나의 원산지신고서에 혼재된 경우

– '제품의 원산지' 표기란에는 원산지제품의 원산지를 표기, 비원산지 제품은 구분될 수 있도록 해당서류에 달리 명확하게 표기

※ 구분표기하는 방법은 제한 없음

● 원산지신고서 사본인정 여부

• 원산지신고서는 세관에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 수입신고서 상업서류의 사본제출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사본을 제출하여도 협정관세 적용 가능

– 이 경우 '특례고시' 별표 6의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를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 원산지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물품의 원산지가 불명확한 경우 등 원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원본을 제출받아 확인

● '수리후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하는 때에는 '특례고시' 제3-3-2조에 따라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원산지의정서 제16조(원산지 신고서), 제17조(원산지 신고서 작성 조건)

※ 원산지의정서 부속서 3(원산지 신고서 문안)

4. 직접운송 원칙

- 협정 양 당사국간 직접운송되는 제품에만 적용되나, 단일 탁송물*을 구성하는 제품은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영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창고보관되어 그 다른 영역을 통해 운송될 수 있음

- 다만, 그 제품이 통과 또는 창고보관되는 국가에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아니해야 하고, 하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공정 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해야 함

* '탁송물'이란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제품이거나,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서의 선적에 대한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또는 그러한 서류가 없는 경우 단일의 송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제품을 말함

※ 원산지의정서 제13조(직접운송), 제1조(정의)

- 비당사국 전시물품도 협정관세 적용 대상, 구성하는 제품은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영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창고보관되어 그 다른 영역을 통해 운송될 수 있음

•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시를 위하여 발송되고 전시 후에 어느 한쪽 당사국으로의 수입을 위하여 판매된 원산지 제품은 수입시 협정관세 적용 대상

- 다만,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이 관세당국이 만족할 수 있도록 입증되어야 함

가. 수출자가 그 제품을 어느 한쪽 당사국으로부터 전시회가 개최된 국가로 운송하고, 그 제품을 그 국가에서 전시한 사실

나. 수출자가 어느 한쪽 당사국의 인에게 그 제품을 판매 또는 달리 처분한 사실

다. 제품이 전시회 기간 중 또는 전시회 직후에 전시를 위하여 발송된 상태로 운송된 사실, 그리고

라. 제품이 전시를 위하여 운송된 후 전시회에서 전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

※ 원산지의정서 제14조(전시)

5. 협정발효 적용시점

- 협정발효일 오전 0시 신고분부터 적용
- 협정발효일에 적용되는 경과규정
 - 발효일 이후에 수입신고한 물품은 협정관세적용 가능
 - 협정에서 정한 서류*를 구비하여 협정관세 적용 수입통관 가능
- ※ 직접운송 입증서류, 소급하여 작성된 원산지신고서
- 기본세율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한 이후,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수리 후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할 수 있음

※ 협정발효일에 운송중에 있거나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통관되지 않은 상태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신고서의 유효기간은 발효일부터 12개월임에 유의

- '수리후 협정관세적용 신청기간'이 협정과 FTA특례법과 다름

- [협 정] 협정발효일부터 12개월내에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해야 함
- [특례법]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까지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해야 함

☞ 경과규정 대상물품을 협정발효일 이후에 수입통관한 경우 증빙서류는 발효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수리 후 협정관세적용신청'을 하고 세관에 증빙서류(원산지신고서 등)를 제출하여야 함

(예) 보세구역반입일 2013.4.27일, 협정발효일 2013.5.1일, 수입신고수리일 2013.5.15일 인 경우: 2014.4.30일까지 '수리 후 협정관세적용신청'을 하고 세관에 증빙서류(원산지신고서 등)를 제출하여야 함

※ 원산지의정서 제32조(통과 또는 보관 중인 상품에 대한 경과 규정)

6. 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 등에 관한 사전심사

-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원산지결정 등에 관한 사전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 (FTA특례법 제14조)

- 신청인 :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
- 신청방법 : 서류제출 (사전심사신청서, 심사에 필요한 서류)

* 담당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 주요 심사요청사항 담당부서로 제출

- 처리절차

단계	세부단계	주 체	주요 내용
신청	사전심사 신청	신청인	▶ 서류제출(신청서, 심사요청관련서류) ▶ 수수료(3만원)
	▼		
접수	신청서류 확인	접수부서	▶ 해당부서가 아닌 경우 담당부서로 이송
	사전심사 접수	주관부서	▶ 담당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접수부서가 주관부서로서 해당부서에 심사사항 통보 ▶ 사전심사 신청대장 기록, 수수료 수납
▼			
검토 결정	신청내용 심사·검토	주관부서	▶ 신청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 법정처리
		심사부서	▶ 담당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사전심사담당 부서는 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만료7일전까지)
	반려 및 보정	주관부서	▶ 반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반려 ▶ 보정 : 5일 이상의 기간
	위원회 상정·검토	주관부서 심사부서	▶ 위원회 상정 : 심사부서에서 결정이 곤란하다고 판단 (예: 원산지확인위원회)
▼			
통지 공표	사전심사서 통지	주관부서	▶ 사전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
	심사결과 인터넷 공표	주관부서	▶ 한-미 FTA의 경우 FTA 포털 사전심사 공표시스템에 사전심사 결과 등재
▼			
사후 관리	이의제기	신청인	▶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 이의제기 기간 :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주관부서	▶ 처리기간 : 접수일부터 30일 ▶ 보정요구 가능 : 20일 이내
	사전심사 변경	신청인 주관부서	▶ 사실관계, 상황변경 등의 경우 사전 심사내용 변경·철회

- 터키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사전심사 대상은 아래와 같음

《원산지 등 사전심사 대상업무》

- ① 당해물품 및 재료의 원산지에 관한 사항
- ② 당해물품 및 재료의 품목분류 · 가격 또는 원가결정에 관한 사항
- ③ 당해물품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산정에 관한 사항
- ④ 그 밖에 협정관세의 적용 또는 관세면제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
- ⑤ 당해물품의 관세의 환급 · 감면에 관한 사항
- ⑥ 당해물품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사항

원산지 등 사전심사 업무별 담당부서

사전심사 대상	담당부서
당해물품 및 재료의 원산지에 관한 사항	관세평가분류원
당해물품 및 재료의 품목분류 · 가격 또는 원가결정에 관한 사항	
당해물품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산정에 관한 사항	
관세환급, 납기연장에 관한 사항	관세청 세원심사과
관세감면의 적용여부	관세청 통관기획과
원산지국가 표시	관세청 특수통관과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사항	각 담당부서

7. ‘원산지의정서 부속서 2-가’에서 정하는 물품

- 원산지의정서 부속서 2-가(Annex II(a))에서 정하는 물품은 선착순으로 수출입하는 물품에 대해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이 적용
 - 원산지를 증명하는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에 아래의 문구를 포함하여 원산지신고문안을 작성해야 함

Derogation - Annex II(a) of the Protocol on Rules of Origin and Origin Procedures

● 대상물품 및 원산지결정기준

HS	상품명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된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작업 또는 가공	연간 킬터
5205	면사(면의 함유량이 85퍼센트인 것에 한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의 것은 제외한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또는 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로부터의 생산	200 메트릭톤
5408	인조필라멘트사의 직물	인조필라멘트사로부터의 생산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증기처리,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이 동반되는 염색작업. 다만, 염색되기 전 사용된 직물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200 메트릭톤
5510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 및 소매용의 것은 제외한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또는 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로부터의 생산	200 메트릭톤

● 수입물품에 대한 운영방법

- 터키와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선착순 방식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의 운영방법

① (대상) 보세구역에 장치한 이후 수입신고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운영

※ 수입신고시 세율구분코드 : FTR5

② (통관절차)

- 한도수량에 도달하는 날의 전날까지는 선착순으로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적용
- 한도수량에 도달한 날에 수입신고된 물품은 잔여수량을 그날에 수입신고된 수량(수입신고수리된 수량에 한한다)에 비례하여 각각 배분
- 배분한 이후에도 잔여수량이 있는 경우 한도수량도달일의 다음날 순서대로 배분

③ (배분에 따른 세액보정)

- 통관지세관장 : 배분되어 조정된 수량을 수입자에게 통지
- 수입자 : 관세법 제38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세액을 보정

* 가산이자는 없음(같은 조 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

④ (잔여수량의 게시) 배분절차가 완료되는 날까지 품목별 총수량·사용수량과 잔여수량을 관세청 FTA포탈(fta.customs.go.kr)을 통해 게시

8. 수출자, 생산자 및 수입자의 자료보관

● 수출자 관련사항

- 서류보관기간 :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 수출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 계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 사본
 - 원산지증빙자료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생산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등)
 - 수출신고필증 및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출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
 -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 서류
 - 원가계산서, 원재료 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 생산자 관련사항

- 서류보관기간 : 원산지증빙서류 작성일로부터 5년
- 생산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 수출자 또는 계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해당 물품의 원산지 증명을 위해 작성·제공한 서류
 - 원산지증빙자료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등)
 - 수출자와 체결한 물품공급 계약서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 서류
 - 원가계산서, 원재료 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 원가계산서, 원재료 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 수입자 관련사항

- 서류보관기간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 수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 포함)
 - 원산지증빙자료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등)
 - 수입신고필증
 -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 사전심사서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사전심사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함)
 - 지적재산권거래 관련 계약서

※ 원산지의정서 제17조(원산지신고서 작성조건) 제21조(증빙 서류), 제22조(원산지 신고서 및 증빙 서류의 보존), 특례법시행령 제13조

9.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 검증방식 :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수행하는 간접검증방식
 -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검증 요청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거나, 그 회신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 자격 부여를 거부할 수 있음

※ 원산지의정서 제25조(원산지 신고서의 검증)

10. HS2012 도입에 따른 협정관세적용신청서 등 작성방법

- 제5차 HS협약 개정안(HS2012)이 '12.1.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터키와의 자유무역협정은 'HS2007'기준으로 협상 타결
 - HS2012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양국간 합의하기 전까지는 "연계표(HS2012 ↔ HS2002)*"를 활용
- * 연계표는 기 시달함('11.12.28)
- [문서제목] HS 2012 도입에 따른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운용 기준 알림
 - [문서번호] 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4818호
- [관련법령] FTA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시 행 령 : 특혜세율(양허표) 규정 (HS2012기준)
 - 시행규칙 : 원산지결정기준 규정 (HS2007기준)

●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수입신고서상의 HS품목번호 작성방법

서류명	품목번호 작성기준
협정관세적용신청서	HS2007
수출입신고서	HS2012

* [붙임 1] 터키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율 종류

세율종류	협정문 조항	특례법령 근거 조항	
		법	시행령
기본세율	부속서 2	법 제4조	영 제3조 제10항
덤핑방지관세	4.8조~4.11조	법 제5조의2	영 제4조의9
상계관세			영 제4조의10
긴급관세	4.1조~4.6조	법 제6조	영 제8조의19

* [붙임 2] 터키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율 구분부호

부호	내용
FTR1	- 하나의 HSK에 1개의 협정세율 적용 물품 - 하나의 HSK내에 여러 개의 다른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중 최고세율 물품
FTR2 FTR3 FTR4	- 하나의 HSK내에 여러 개의 다른 협정세율중 최고세율적용물품을 제외한 차순위 세율 순으로 FTR2, FTR3, FTR4를 순차적으로 부여
FTR5	- 선착순방식을 적용하는 물품 중 수입쿼터 물량내의 물품 (원산지기준 완화 품목)

* [붙임3]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등 사전심사 신청서

처리기간 90일				
사전심사 신청서				
<input type="checkbox"/> 수입자 <input type="checkbox"/> 수출자 <input type="checkbox"/> 관세사				
1. 신청인	(성명, 회사, 주소, 국가,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2. 수입자	(알 수 있는 경우, 성명, 회사, 주소, 국가,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3. 수출자 또는 생산자	(알 수 있는 경우, 성명, 회사, 주소, 국가,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4. 신청물품				
품명	HS번호(6단위)	조정가격(\$)	물품 설명	통관예정세관
			구상, 생산과정, 용도 *필요한 경우 간편필수	
5. 원재료 내역 (필요한 경우 기재)				
원재료 품명	HS번호(6단위)	가격(\$)	원산지(결정근거)	생산과정
·				
·				
·				
6. 사전심사 신청내용				
① 당해 물품 및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에 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② 당해 물품 및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품목분류·가격 또는 원가결정에 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③ 당해 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산정에 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④ 당해 물품의 관세의 환급·감면에 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⑤ 당해 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⑥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적용에 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⑦ 기타 협정관세의 적용 또는 관세면제에 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상세 기재)				
7. 물품의 범격지위				
(다음 중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를 하고, 물품의 성상을 나타내는 간단한 설명자료 첨부)				
① 원산지 검증 <input type="checkbox"/> ② 행정적 심사 또는 불복청구 <input type="checkbox"/> ③ 사법적 또는 준사법적 심사 <input type="checkbox"/> ④ 사전심사요청 <input type="checkbox"/>				
이 신청서에 기재한 모든 내용과 진술은 자신이 알고 있는 최상의 지식과 신뢰로 작성한 것으로서 진실하고 정확한 것임을 보증합니다. 만약 허위나 잘못 기재한 경우 관련법에 의해 처벌되거나 협정관세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_____ 작성일자 _____				
신청인과의 관계 _____ (신청인 대신 작성한 경우)				

* 만약 기재할 사항이 많은 경우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Processing Period: 90 Days

KOREA-○○○ FREE TRADE AGREEMENT				
Application for Advance Ruling				
<input type="checkbox"/> Importer <input type="checkbox"/> Exporter <input type="checkbox"/> Customs Broker (Name, company, address, country, phone number and E-mail address)				
1. Applicant				
(If known, Name,, company, address, country, phone number and E-mail address)				
2. Importer				
(If known, Name,, company, address, country, phone number and E-mail address)				
3. Exporter / Producer				
(If known, Name,, company, address, country, phone number and E-mail address)				
4. Good(s) subject to Advance Ruling				
Product Description	HS Code (6-digit)	Adjusted Value (\$)	General Description of the Good(s)	Customs to Clear Good(s)
			<i>composition, production process and anticipated use</i> <i>* sample if necessary</i>	
5. List of Raw Material(s) (If required)				
Raw Material Description	HS Code (6-digit)	Price (\$)	Country of Origin (Rules of Origin)	Production Process
.				
.				
.				
6. Requested Information for Advance Ruling				
All matters in relation to;				
① Country of Origin of the raw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in question; <input type="checkbox"/>				
② Tariff classification, price or production cost of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in question; <input type="checkbox"/>				
③ Calculation of the value added incurred in the production, process or manufacture of the good in question; <input type="checkbox"/>				
④ Drawback and duty exemption of the good in question; <input type="checkbox"/>				
⑤ Indication of country of origin of the good in question; <input type="checkbox"/>				
⑥ Application of quantity-differentiated conventional tariff or <input type="checkbox"/>				
⑦ Others (application of other conventional tariff or duty exemption etc.). <input type="checkbox"/>				
7. Legal Status of Good(s)				
(Mark <input checked="" type="checkbox"/> where applicable and provide a brief statement setting forth the status or disposition)				
① Origin Verification <input type="checkbox"/>				
② Administrative Review or Appeal <input type="checkbox"/>				
③ Judicial or Quasi-judicial Review <input type="checkbox"/>				
④ Request for Advanced Ruling <input type="checkbox"/>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information provided on this form is true and correct to the best of my knowledge. I understand that any false and misrepresentation may result in punishment and/or denial of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pplicant's Signature _____ Date of Submission _____				
Relationship to Applicant _____ (If completed on behalf of the applicant)				

* Use extra paper to complete if additional space is required

한-EU FTA 여행자휴대품 원산지 증명서 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지침

(FTA집행기획담당관실-1963, 2013.4.10)

지침 8

- 적용대상 : EU에서 구매한 물품으로서 원산지가 EU인 물품
 - 신청절차 : 휴대품 신고서에 협정세율 적용여부 신청
 - 과세가격 산정 : 여행자 휴대품의 과세가격 산정방법과 동일한 방법
(면세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
 -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확인방법
 - 협정관세 적용물품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인 경우 : EU지역 구매 영수증 또는 현품의 원산지표시를 확인
 - 협정관세 적용물품이 미화 1천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 EU지역 구매 영수증의 '원산지신고문안' 및 '판매자 서명' 기재여부 확인
 - 원산지신고문안 및 판매자 서명 확인방법
 - 원산지신고문안과 판매자 서명 등이 기재되는 원산지신고서가 협정의 규정(참조 : 붙임1)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
 - 원산지신고서의 '명백한 형식적 오류(참조: 붙임2)'인 경우에는 해당 원산지신고서를 인정하여 협정관세 적용
- ※ [붙임1] 한-EU FTA 원산지신고서 작성조건
- ※ [붙임2] 한-EU FTA 원산지신고서의 '명백한 형식적 오류'
- ※ [붙임3]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 확인업무 처리 지침('11.9.21 시행)

※ [붙임1] 한-EU FTA 원산지신고서 작성조건

* 협정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6조(원산지 신고서 작성 조건)

작성주체	· 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가 작성해야 함 · 탁송화물의 전체가격이 6천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인증수출자만 작성 가능
작성언어	· 협정에 규정된 언어본 중 하나를 사용하여 작성
작성서류	·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작성
작성방법	·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하거나 수기로 작성할 수 있음 ·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
서 명	· 수출자의 원본서명이 수기로 작성되어야 함 · 인증수출자는 서명 생략 가능

※ [붙임2] 한-EU FTA 원산지신고서의 '명백한 형식적 오류'

* 협정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4조(불일치 및 형식적 오류)

※ 원산지신고문안 예시 : 영어 본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인증수출자번호')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제품의 원산지' preferential origin.

'장소 및 일자'

수출자 또는 신고서 작성자의 서명 및 서명

※ '명백한 형식적 오류'의 예시

- ① 단어의 철자를 잘못 작성한 경우
(예) 'these products'를 'these produtcs'로 작성한 경우
- ② 협정문에서 정한 단어 이외의 단어를 사용한 경우
(예) 'these products'를 'these goods'로 작성한 경우
'these products are'를 'this product is'로 작성한 경우
- ③ 단어 순서 또는 항목 위치가 바뀌어 작성된 경우
(예) 인증수출자번호 · 제품의 원산지를 다른 위치에 기재한 경우
- ④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신고문안을 수기로 작성하면서 소문자로 작성한 경우

- ⑤ 원산지신고문안을 설명하기 위한 설명문구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예) '(customs authorisation No.)', '(Place and Date)'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 [붙임3]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 확인업무 처리 지침('11.9.21 시행)

●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 확인업무 처리 지침

1. 원산지신고문안의 형식적 요건 관련 확인 사항

※ 원산지신고문안 예시 : 영어 본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인증수출자번호'¹⁾)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제품의 원산지'²⁾ preferential origin.

'장소 및 일자'³⁾

수출자 또는 신고서 작성자의 성명 및 서명⁴⁾

- 원산지신고문안은 협정문에서 정한 바와 일치해야 함
- ①란은 'customs authorisation No'없이 '인증번호'만 기재해도 인정
(예) ~~~ document (BE 74) declares that, ~~~
- ③란은 해당 서류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 생략 가능
 - ※- 상업송장에 발행일자가 표시되어 있으면 생략 가능
 - 상업송장 발행일자와 원산지신고서 작성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기재
- ④란은 인증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생략 가능
- 원산지신고문안이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

2. 원산지신고문안의 '제품의 원산지표기' 관련 사항

(1) 원산지신고문안의 '원산지표기' 인정범위

- 협정문에 있는 당사자명 (예)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THE EUROPEAN UNION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가명 (예) Greece, England, Scotland, Wales

- 당사자 국가의 ISO 코드 (예) GR, GB, DE, IT
- 'EU' 표기, 'EC' 및 'European Community' 표기
- 원산지가 영국인 제품 : 'UK' 표기 (협정문상 표기된 약어)
- 당사국의 형용사 표기 (예) Danish, German, Italian, French
- EU측 각 당사자 언어 협정문에 표현된 'EU' 표기

언어종류	'EU'표기 (원어)	약어표기
스페인	Unión Europea	'UE'
프랑스	l'Union européenne	
이탈리아	dell'Unione europea	
폴란드	Unii Europejskiej	
포르투갈	União Europeia	
루마니아	Uniunii Europene	
말타	tal-Unjoni Ewropea	'ES'
라트비아	Eiropas Savienības	
리투아니아	Europos Sąjungos	'EE'
그리스	Ευρωπαϊκής Ένωσης	
불가리아	Европейския съюз	

(2) 원산지표기 이외에 다른 문구가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원산지표기'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으면, 다른 문구가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정
(예) EEC/Germany, Europe/FR/EU

(3) 원산지제품과 비원산지제품이 하나의 원산지신고서에 혼재된 경우

- ②란 '제품의 원산지'에는 원산지제품의 원산지를 표기, 비원산지 제품은 구분될 수 있도록 해당서류에 달리 명확하게 표기
※ 구분표기하는 방법은 제한 없음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유럽연합 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관세 적용시 원산지증명서 확인방법에 관한 지침

(FTA집행기획담당관실-1963, 2013.4.10)

지침 9

1. 미화 1천달러 미만 여행자휴대품의 원산지증명서 면제 범위

- 여행자가 유럽연합당사자 역내 여러 판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반입하는 물품의 전체가격이 미화 1천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 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1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의 총 가치는 미화 1천달러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 각 여행자별로 미화 1천달러 미만의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도 협정관세를 적용

2. 6천유로 미만 여행자휴대품 판매자의 인증수출자 인증여부

- 여행자가 유럽연합당사자 역내 여러 판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반입하는 물품의 전체가격이 6천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 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6조제1항에 따라 6천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수출하는 수출자는 인증수출자로 인증받아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으므로
 -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각 판매장별로 6천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

아세안회원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개정사항 통보

(FTA집행기획담당관실-2906, 2013. 12. 13)

지침 10

1. 2013.6.27. 제8차 한-아세안 포괄적 경제협력협정 이행위원회에서 채택되어 2014. 1. 1.자에 개정기로 결정된 “한·아세안 포괄적 경제협력협정 상품무역협정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OCP)가 개정되어 공포* 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조약 제2167호로 관보(제18159호, 2013.12.11.자 전자관보 <http://gwanbo.korea.go.kr> 참조)에 공포되었으며, 동 사항이 반영된「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14.1.1일 개정 시행될 예정

2. 각 세관장께서는 동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관내 수출입기업에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원산지증명서 서식 일부개정

- ‘FOB 금액’란은 역내가치포함비율 기준이 적용되는 때에만 작성. 다만, 캄보디아 또는 미얀마로 또는 동 국가에서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는 개정일로부터 2년의 과도기간 동안에는 원산지기준에 관계없이 FOB가치를 작성해야 함
- 다수 품목을 기재할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 을지(乙紙)를 신설

(2)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현행 발급일로부터 6개월에서 발급일로부터 12개월로 개정

(3) 원산지증명서의 오류수정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을 허용

(4) 수출 당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시기를 수출물품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 직후(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발급되는 것으로 개정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 적용범위 안내

(FTA집행기획담당관-1668, 2011. 7. 12)

지침 11

1. 「아세안회원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개정사항 통보」와 관련입니다.

* 관련공문: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2906('13.12.13)

2. '14.1.1자로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발급일로부터 1년'(종전 6월)으로 개정·시행되었으나, 일선 현장에서 '시행일 이전 발급분'에 대한 유효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일부 혼선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범위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시행일('14.1.1) 이전 발급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 근거 : 개정 「한-아세안 포괄적 경제협력협정 상품무역협정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OCP)」 제10조 및 「FTA특례법 시행령」 제9조의 2 등
- 적용예시
 - '13.10.1.자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 '14.9.30.

크로아티아공화국의 유럽연합 당사자 추가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지침

(FTA집행기획담당관실-1963, 2013. 4. 10)

지침 12

- 발효일 : 2014.5.26.(월)

* 2014.3.25 한-EU간 크로아티아 가입 추가의정서 서명 2014.4.29 동 의정서 국회 본회의 통과 2014.5.16 국내절차 완료 통보(접수일 기준) 2014.5.26 통보받은날의 10일 후부터 발효(잠정적용)

- 크로아티아가 원산지인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방법

① 2013.7.1일 이후부터 발효일 전일까지 수입신고된 물품

- [대상물품] 2013.7.1일 이후 기본관세율 등 ‘한-EU FTA’ 관세율보다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어 수입신고수리된 물품
- [신청방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협정관세사후신청’
- [신청기한] 해당 물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세관] 수입물품 통관지 세관
- [원산지신고서 인정요건] 크로아티아 수출자가 2013.7.1일 이후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 탁송화물의 전체가격이 6천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 작성 등 그 밖의 요건은 한-EU FTA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

② 발효(잠정적용)일 이후 수입신고되는 물품

- 현재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방법과 같음

- 크로아티아의 인증수출자 번호체계

- 국가부호(2자리, HR)/세관부호(2자리)/인증수출자번호(3자리)/연도(2자리)

※ (예시) HR/10/001/13

-
- 크로아티아 원산지 부호 : HR
 - 협정관세적용신청서의 ⑧란 ‘원산지부호’에 ‘HR’ 또는 ‘EU’를 기재
 -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크로아티아 자국 통화상의 금액
 - 2014년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해서는 “붙임1” 참조*
 - * 붙임1 : 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2500호, '13.10.24일
 - 2013.7.1일부터 2013.12.31일까지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해서는 “붙임2” 참조*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포괄증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지침

(FTA집행기획담당관실-1963, 2014. 8. 19)

지침 13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포괄증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시달하오니 각 세관장은 교육실시 등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① 원산지포괄증명서 포괄증명기간의 시작일은 원산지포괄증명서의 발급일자보다 수 있으므로 포괄증명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소급 발급되거나 포괄증명기간의 시작일보다 먼저 발급된 원산지포괄 증명서는 인정되며 해당 수입물품은 협정관세 적용 대상

예시

구분	원산지포괄 증명기간	증명일자	협정관세 적용여부
(사례1) 소급발급되는 경우	2014.1.1 ~ 2014.12.31	2014.4.1 또는 2015.2.1	적용
(사례2) 먼저 발급되는 경우	2014.1.1 ~ 2014.12.31	2013.12.1일	적용

- ② 원산지포괄증명은 동일상품을 복수 선적할 때 적용하는 것이므로 원산지포괄증명기간에 협정체약상대방인 수출국(미국)에서 선적된 물품에 적용

- 포괄증명기간에 선적된 물품이 아닌 경우 보정을 요구하여 처리 하되, 증빙이 되지 않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 배제

* 포괄증명기간에 선적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보정을 요구하여 처리

예시

구분	원산지포괄 증명기간	선적일자	수입신고 일자	협정관세 적용여부
(사례1)포괄증명기간에 선적된 경우	2014.1.1 ~ 2014.12.31	2014.12.15	2015.1.15	적용
(사례2) 포괄증명기간에 선적되지 않은 경우	2014.1.1 ~ 2014.12.31	2013.12.15	2014.1.15	적용배제

③ ‘한-미 FTA 원산지포괄증명 협정관세 적용 지침(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1228(‘12.6.19)호)’에 따라 원산지 검증의뢰된
건에 대한 처리방법

- (원칙) 검증대상에서 제외

- (예외) 원산지위반 가능성이 있는 물품에 한하여 검증실시

※ 이 지침은 2014.9.22(월)부터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하는 물품부터 적용하며
이 지침 시행에 따라 ‘한-미 FTA 원산지포괄증명 협정관세 적용 지침(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1228(‘12.6.19)호)’은 폐지함. 끝.

자유무역협정 및 일반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의 특혜관세적용 업무 처리방법

(FTA집행기획담당관실-2579, 2014. 11. 6)

지침 14

1. 수출국에서 발급·작성되는 원산지증명서의 HS품목번호와 수입물품의 HS품목번호가 다른 경우 특혜관세 적용업무 처리 방법

① ‘HS품목번호’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이 아닌 경우

※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한-EU FTA),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한-EFTA FTA), 터키와의 협정,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 ‘HS품목번호’가 원산지증명항목이 아니므로 원산지증명서상 ‘HS품목번호’와 무관하게 특혜관세 적용처리

② ‘HS품목번호’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인 경우

※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미국과의 협정, 칠레와의 협정, 인도와의 협정, 싱가포르와의 협정,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 원산지증명서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특혜관세 적용처리

- 원산지증명서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와 충족하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특혜관세 적용처리 후 수입자 주소지 관할구역 원산지검증 담당부서로 검증의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국제원산지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증의뢰

적용예시

원산지증명서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수입물품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처리방법
완전생산기준	완전생산기준 또는 역내가치발생기준 또는 세번변경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이므로 원산지제품에 해당 ▶ 특혜관세 적용
역내가치 발생기준 40%	역내가치발생기준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내가치기준 35%를 초과하므로 원산지제품에 해당 ▶ 특혜관세 적용
역내가치 발생기준 40%	(선택기준) 역내가치발생기준 40% 또는 세번변경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내가치기준 또는 세번변경기준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면 원산지 제품에 해당 ▶ 특혜관세 적용
역내가치 발생기준 40%	(조합기준) 역내가치발생기준 40% 및 세번변경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 확인 불가 ▶ 특혜관세 적용 ▶ 검증의뢰
세번변경기준	세번변경기준	
역내가치 발생기준 30%	역내가치발생기준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국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 특혜관세 적용 ▶ 검증의뢰
세번변경기준	완전생산기준	

③ 원산지결정기준에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APTA), 최빈개발도상국 일반특혜관세,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의 양허관세(GSTP),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간의 양허관세(TNDC)에 따라 완전생산기준이나 역내가치발생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 역내가치발생기준에 충족하면 원산지제품에 해당하므로 ‘HS품목번호’가 다른 경우에도 특혜관세 적용처리

2. 원산지증명서상 품명과 송품장의 품명이 다른 경우 특혜관세 적용업무 처리 방법

- ‘품명’은 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로서 원칙적으로 원산지증명서의 ‘품명’과 송품장의 ‘품명’은 동일해야 하지만
- 일반적으로 무역관행상 사용되는 ‘품명’과 HS품목분류상의 ‘품명’이 다른 경우에도 물품의 동일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혜관세 적용처리

적용예시

원산지증명서의 품명	송품장의 품명	처리방법
machinery parts	Bolt, nut	특혜관세 적용

※ 시행일 : 지침시달일 이후 특혜관세적용 신청 분부터 시행.

FTA 활용기업의 필수지침서 Business Model 40선

발행일 2014년 12월

발행처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기획 이명구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제영광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이승필, 유성우, 김순덕)

편집 국제원산지정보원(진병진, 임병호)
세관(권희덕, 정은석, 강민규, 조희영, 김현이)

인쇄 아미고디자인(02-517-5043)

문의 관세청(042-481-3282)